대한민국정부

관보

http://gwanbo.korea.go.kr

제17708호 2012. 2. 27.(월)

【부 령】

○국토해양부령제445호(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3
○국토해양부령제446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6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6호(금융위원회운영규칙중 개정규칙)……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호(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 승인) ……10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6호(보조금 사업〈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 228
○국세청고시제2012-5호(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228
○국세청고시제2012-6호(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229
○국세청고시제2012-7호(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23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1호(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234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5호(유독물 · 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 235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6호(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 237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9호(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중 성주군 소재 구간의 편입토지세목) …… 240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1호(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 24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2호(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 243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2호(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실시계획변경〈차〉 승인)…… 244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3호(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261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3호(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 262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지역) …… 263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 …… 263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2-1호(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 263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58호(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 · 무의 문화 · 관광 · 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264
○기술표준원고시제2012-90호(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267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0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68

(이면 계속)

발행 행정안전부 문의 ☎2100-3310, 2100-3312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우)110-760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0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 268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2호(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 269
○법무부공고제2012-42호(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69
○국방부공고제2012-50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0
○국방부공고제2012-51호(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0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7호(비영리민간단체 변경등록) …… 27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0호(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1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1호(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 272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호(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3
○지식경제부공고제2012-75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3
○보건복지부공고제2012-86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4
○환경부공고제2012-71호(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5
○환경부공고제2012-72호(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76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2호(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277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2-15호(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279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33호(자동차전용도로 지정) …… 28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3호(공시송달)…… 281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공시송달)…… 281

【법 원】

○판결(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282

【지방자치단체】

○경상북도고시제2012-59호(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세목〈변경〉)…… 287
○괴산군고시제2012-20호(백봉3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206호〉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314
○인천광역시공고제2012-239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315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2-198호(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 315

【인 사】

○인사발령(행정안전부) …… 316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서울중앙지방검찰청) …… 317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안양지청) …… 317
○압수물환부공고(수원지방검찰청평택지청) …… 319
○압수물환부공고(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 …… 320
○대차대조표(한국은행) …… 321

부 령

◉국토해양부령 제445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간주되는”을 “보는”으로,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을 “운송수입률(최대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예상수입액과 실제 운송능력을 기준으로 한 수입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100분의 35”를 “100분의 2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취항할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균 운송수입률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조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차도선형 여객선은 제외한다)으로서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에 운항 중인 기존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경우
2. 새롭게 면허를 신청한 항로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가 여객만을 운송하는 항로인 경우에 카페리 또는 차도선형 여객선을 취항시키려는 경우

제4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항로”를 “항로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로,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간주되는”을 “보는”으로, “승선 및 적취율”을 “운송수입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승선 및 적취율”을 “운송수입률”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4조제4항에 따라 산출한 평균 승선 및 적취율이 100분의 25 이상을 유지하는”을 “제4조제5항에 따라 산출한 평균 운송수입률이 100분의 25 이상으로 유지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보험업법」 제2조제5호”를 “「보험업법」 제2조제6호”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승선 및 적취율”을 “운송수입률”로, “(제4조제3항 관련)”을 “(제4조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소수점 이하는 산입하지 아니한다.”를 “출발지에 되돌아 올 수 있는 횟수까지만 산입한다. 다만, 1일 1왕복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가능 횟수를 1회로 본다.”로 한다.

1. 평균 운송수입률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text{평균 운송수입률} = \frac{(Y_P + Y_C)}{(F_P \times C_P + F_C \times C_C) + (F_P' \times C_P' + F_C' \times C_C')} \times 100$$

※ 비고

1. Y_P: 면허신청 항로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의 최근 3년간 평균 여객수입
2. Y_C: 면허신청 항로와 같은 항로로 보는 항로의 최근 3년간 평균 화물수입. 다만, 차도선형 여객선의 경우에는 화물수입 중 차량에 대한 운임(이하 “공차운임”이라 한다)의 수입만을 적용하고, 차량에 적재한 화물·수화물·소화물 등에 대한 운임수입은 제외한다.
3. F_P: 면허신청일 현재 운항 여객선의 여객 1인당 평균 운임($F_P = Y_P \div$ 최근 3년간 평균 여객수)
4. C_P: 면허신청일 현재 운항 여객선이 제공할 수 있는 연간 여객수송능력(C_P = 1일 운항가능 횟수 × 여객정원 ×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
5. F_C: 면허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항 여객선의 평균 화물운임
   가. 차도선형 여객선: 면허신청일 현재 최소형 승용차량 1대당 평균 공차운임(신고한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카페리: 면허신청일 현재 화물 1톤당 평균 운임(운임적용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6. C_C: 면허신청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운항 여객선이 제공할 수 있는 연간 화물수송능력
   가. 차도선형 여객선: 1일 운항가능 횟수 × 해당 여객선의 최소형 승용차량 기준 적재가능 대수 ×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
   나. 카페리: 1일 운항가능 횟수 × 해당 여객선의 재화중량톤(DWT) ×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
7. F_P':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허신청 여객선의 예상 평균 여객운임
   가. 현재 운항 여객선 중에 유사한 형태의 선박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일 현재 운항 여객선의 여객 1인당 평균 운임(F_P)
   나. 현재 운항 여객선 중 유사한 형태의 선박이 없는 경우: 사업계획서상 정규 여객운임(일반인 대인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8. C_P': 면허신청 여객선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여객수송능력(C_P' = 1일 운항가능횟수 × 여객정원 × 기존 운항 선박의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
9. F_C':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허신청 여객선의 예상 평균 화물운임
   가. 현재 운항 여객선 중에 유사한 형태의 선박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일 현재 운항여객선의 평균 화물운임(F_C)

나. 현재 운항 여객선 중 유사한 형태의 선박이 없는 경우

1) 차도선형 여객선: 사업계획서상 최소형 승용차량의 1대당 공차운임

2) 카페리: 사업계획서상 화물 1톤당 운임

10. C_C': 면허신청 여객선이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간 화물수송능력

가. 차도선형 여객선: 1일 운항가능 횟수 × 해당 여객선의 최소형 승용차량의 적재가능 대수 × 기존 운항 선박의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

나. 카페리: 1일 운항가능 횟수 × 해당 여객선의 재화중량톤(DWT) × 기존 운항 선박의 최근 3년간 평균 운항일수

별표 2 중 내항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여객선 보유량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수면비행선박의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총톤수 합계가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가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13일(외항 여객운송사업은 9일)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기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처리기간
9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리기간에 따른다.

◇개정이유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인 수송수요 기준을 완화하고, 해당 수송수요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선박의 범위를 정하며, 내항 여객운송사업자의 여객선 보유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수송수요 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제1호)

1)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위한 수송수요 기준인 평균 승선 및 적취율(積聚率)을 평균 운송수입률로 용어를 변경하고, 그 기준을 100분의 35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완화하며,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우수한 선령 10년 미만의 선박을 취항시키려는 경우 등에는 평균 운송수입률을 100분의 20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합리적 경쟁을 통한 여객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현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수면비행선박 보유량 기준 신설(안 별표 2)

1)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수면비행선박 보유량 기준을 총톤수 합계 30톤 이상 또는 최대승선인원 합계 30명 이상으로 함.

2)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위한 수면비행선박의 보유량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수면비행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여객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등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외항 여객운송사업의 면허신청 및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13일에서 9일로 단축함으로써 민원 편의성을 높이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국토해양부령 제4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의3”을 “제38조의3·제39조”로 한다.

제2조제7호 본문 중 “광역시”를 “광역시·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개발구역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거주자가 해당 지역 안의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상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입주자 자격제한) ①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은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로 한다.

1.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택(민영주택은 제외한다): 10년

2. 제1호를 제외한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의 주택: 3년

②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국토해양부장관 및 전산관리지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명단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5.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제11조의2제2항제2호 중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제1호의 지역은 제외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중 “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각각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한다.

제1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공급하여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중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1층의 주택을 우선 배정하여야 한다.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제22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당첨자에 대해서만 당첨자 명단을 전산검색한다.

제22조제8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9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32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공급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10조제3항제4호·제5호, 제11조의2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제2호·제4항제1호·제6항제1호, 제18조제5항 및 제32조제5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1061호, 2011. 9. 16. 공포,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의 공급대상 지역 단위를 도(道)로 확대하고, 수도권 지역에서의 가점제 적용비율을 시·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주택 당첨자 중 노인과 장애인에게 1층을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지역의 정의(안 제2조제7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로 개편된 행정구역과 주택건설지역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주택건설지역의 범위에 특별자치도의 행정구역을 추가함.

나.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주택 공급대상 확대(안 제4조제1항제4호 신설)

기업도시의 도시기능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기업도시개발구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다. 주택 공급대상 지역 단위 확대(안 제4조제3항)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거주자 생활반경의 확대를 반영하여 주택 공급대상을 주택건설지역인 해당 시·군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인 도 단위로 확대하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등 같은 생활권역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단일한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함.

라. 주택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등(안 제9조의2 신설, 안 제22조제8항)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 등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의 광고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보금자리주택지구 중 민영주택이 아닌 주택은 10년,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은 5년, 그 밖의 지역의 주택은 3년 간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입주자 자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위반행위자가 당첨자가 된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하도록 함.

마. 수도권 시·도지사의 가점제 우선 적용비율 결정(안 제11조의2제2항제2호, 제12조제2항제2호, 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12조제6항제1호)

현재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공급 시 수도권의 경우 같은 순위의 자에 대한 가점제 적용 비율이 고정되어 지역실정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비율을,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과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서는 현행 75퍼센트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75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로 하고,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은 현행 50퍼센트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로 하여, 수도권 지역에서의 가점제 적용 비율을 수도권 외의 지역과 같이 해당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바. 노인·장애인에 대한 1층 주택의 우선 배정(안 제18조제5항 신설)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5층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에게 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전산관리지정기관은 당첨자 중 65세 이상인 노인 및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장애인에게 당첨자의 희망에 따라 1층의 주택을 우선 배정하도록 함.

사. 비정규직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안 제32조제5항제5호의2 신설)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가 무주택세대주로서 입주자선정순위에도 불구하고 건설량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이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추가하도록 함.

<국토해양부 제공>

고 시

◉금융위원회고시제2012-6호

금융위원회운영규칙 중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금 융 위 원 회

1. 개정사유

□ 위원회 소관사항 중 정책적 판단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단순 행정절차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을 금융위 위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효율적 의사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위원장에 대한 추가 위임사항

○ 보험감독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7. 머.)

- 분기별 기초서류 신고수리·변경권고에 관한 처리결과 보고

○ 전자금융감독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27)

- 위기대응행동 매뉴얼 수립기관 지정 및 동 매뉴얼 통보 접수
- 비상대응훈련 실시 결과 보고 접수
- 합동비상대응훈련 실시 및 지원 요청
- 보안성 심의
- 예비허가 신청서 제출의 접수
-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 보고 접수
-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 접수

(2) 기존 위임사항 중 수정사항

○ 보험감독 관련사항(개정규칙안 별표 7. 다)

-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 또는 임원·사용인 100인 미만 법인에 한함)·보험중개사(개인 또는 임원·사용인 100인 미만 법인에 한함)의 업무정지·등록취소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승인'을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개인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미만 법인에 한함)·보험중개사(개인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 100인 미만 법인에 한함)의 업무정지·등록취소·과태료부과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의 예외 승인'으로 수정

3. 세부개정내용

□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법령정보 → 최근 제·개정 법규정보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4호

위례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2007. 4. 20 개정전 규정)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개발계획 변경(4차) 및 실시계획 변경(2차)을 승인 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전화:02-2147-2903), 성남시청 택지개발과(전화:031-729-4512), 하남시청 도시개발과(전화:031-790-5170),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전화:031-738-3205),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전화:031-786-63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1.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3차)

가. 예정지구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

나.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창곡동, 하남시 감이동·학암동 일원

다.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6,797,608.7	6,774,628.7	증) 22,980	

2.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4차)

가. 개발계획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다. 개발계획의 개요 (변경)

1)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 기정

- 수용인구 : 107,368인
- 수용호수 : 42,947세대
- 인구밀도 : 158인/ha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계	2,363,789	42,947	107,368	-		
단 독 주 택	233,025	695	1,738	274-495	100-180	
일 반 단 독	127,341	483	1,208	274	100-180	
블 럭 형 단 독	105,684	212	530	495	100	
공 동 주 택	1,956,308	38,090	95,225	55-138	160-230	
아 파 트	1,956,308	38,090	95,225	55-138	160-230	
주 상 복 합	174,456	4,162	10,405	118-138	80-270	
준 주 거 용 지	174,456	2,813	7,033	125-138	170-270	
복 합 용 지	(157,034)	1,349	3,372	118	80-245	

※ 준주거용지 187,180㎡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56㎡)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 변경

- 수용인구 : 108,548인
- 수용호수 : 43,419세대

- 인구밀도 : 160인/ha

구 분	면 적(㎡)	세 대 수(호)	계획인구(인)	표준분양면적(㎡)	용적률(%)	비 고
계	2,364,129	43,419	108,548	-		
단 독 주 택	234,160	711	1,778	229-495	100-180	
일 반 단 독	128,476	499	1,248	229-307	100-180	
블 럭 형 단 독	105,684	212	530	495	120	
공 동 주 택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아 파 트	1,955,525	38,204	95,510	55-138	160-230	
주 상 복 합	174,444	4,504	11,260	118-138	170-540	
준 주 거 용 지	174,444	2,895	7,237	125-138	170-270	
복 합 용 지	(44,503)	1,609	4,023	110-118	245-540	

※ 준주거용지 186,559㎡ 중 주상복합용도의 부지면적(174,444㎡)만 반영

※ 상업업무시설용지로 분류된 복합용지는 주택건설용지 부지면적 합계에서 제외

2)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전력공급계획 (변경)

○ 전력수요는 지구내 전기공급설비(변전소) 2개소를 신설

○ 변압기설비용량 : 기정-220,728kVA, 변경-208,494 kVA

나) 열공급계획 (변경)

○ 사업지구 내 열공급설비를 계획하여 집단에너지 공급

○ 연간열부하 : 기정-774,504.8 Gcal/년, 변경-780,428.1 Gcal/년

다) 도시가스공급계획 (변경없음)

○ 총 LNG 사용량은 대한도시가스(주)에서 공급토록 계획

3) 교통에 관한 계획 (변경)

가) 도로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류별	노선수(노선)	연 장(m)	면 적(㎡)	비고
합 계		-	237	51,050	1,039,450	
일반도로	계	-	141	40,919	963,874	
	광로	소계	5	2,859	121,510	
		1	-	-	-	
		2	-	-	-	
		3	5	2,859	121,510	
	대로	소계	29	15,555	479,944	
		1	12	7,092	252,112	
		2	1	396	12,347	
		3	16	8,067	215,485	
	중로	소계	64	17,246	311,374	
		1	35	11,335	232,709	
		2	13	2,468	37,349	
		3	16	3,443	41,316	
	소로	소계	43	5,259	51,046	
		1	39	4,808	48,080	
		2	1	130	1,040	
		3	3	321	1,926	

자동차 전용 도로	계	-	1	279	10,602	
	대로	1	1	279	10,602	
		2	-	-	-	
		3	-	-	-	
지하 도로	계	-	6	1,223	-	
	대로	1	-	-	-	
		2	1	126	-	
		3	5	1,097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89	8,629	64,974	
	소로	1	32	3,300	33,000	
		2	-	-	-	
		3	57	5,329	31,974	
기 타		-	-	-	69,045.7	도로모퉁이 등

○ 변경

구 분		류별	노선수(노선)	연 장(m)	면 적(㎡)	비고
합 계		-	236	51,209	1,045,179	
일반 도로	계	-	146	41,700	982,097	
	광로	소계	5	2,859	118,058	
		1	-	-	-	
		2	-	-	-	
		3	5	2,859	118,058	
	대로	소계	31	15,874	491,726	
		1	12	7,091	257,451	
		2	1	396	12,347	
		3	18	8,387	221,928	
	중로	소계	65	17,372	318,919	
		1	37	11,766	243,478	
		2	13	2,490	38,049	
		3	15	3,116	37,392	
	소로	소계	45	5,595	53,394	
		1	41	5,144	50,428	
		2	1	130	1,040	
		3	3	321	1,926	
자동차 전용 도로	계	-	-	-	-	
	대로	1	-	-	-	
		2	-	-	-	
		3	-	-	-	
지하 도로	계	-	6	1,191	-	
	중로	소계	1	161	-	
		1	-	-	-	
		2	1	161	-	
		3	-	-	-	
	소로	소계	5	1,030	-	
		1	-	-	-	
		2	5	1,030	-	
		3	-	-	-	
보행자 전용 도로	계	-	84	8,318	63,082	
	소로	1	31	3,288	32,902	
		2	-	-	-	
		3	53	5,030	30,180	
기 타		-	-	-	76,757.7	도로모퉁이 등

나) 철도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번호	위 치			연장(m)	면적(㎡)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소 계	-	-	-	-	5,407	59,303	
도시철도	철도1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송파구 거여동 산71-36임 일원	위례지구	4,777	36,890	
도시철도	철도2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위례지구	630	4,475	
도시철도	철도3	송파구 장지동 592-5전 일원			-	17,938	차량기지

※「철도1」의 실제면적은 39,682㎡이며, 타시설과 중복 결정되어「철도1」의 면적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주차장11 : 1,298㎡, 광장24 : 508㎡, 천1 : 986㎡

※「철도2」의 실제면적은 5,048㎡이며, 「천2」와 중복면적(573㎡)은 하천시설에 계상

○ 변경

구 분	번호	위 치			연장(m)	면적(㎡)	비 고
		기 점	종 점	주경과지			
소 계	-	-	-	-	5,497	55,884	
도시철도	철도1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송파구 거여동 산71-36임 일원	위례지구	4,777	33,311	
도시철도	철도2	성남시 복정동 179-1주 일원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위례지구	720	4,635	
도시철도	철도3	송파구 장지동 592-5전 일원			-	17,938	차량기지

※「철도1」의 실제면적은 39,707㎡이며, 타시설과 중복 결정되어「철도1」의 면적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주차장11 : 1,298㎡, 광장24 : 937㎡, 천1 : 986㎡, 도로 : 3,175㎡

※「철도2」의 실제면적은 5,610㎡이며, 타시설과 중복 결정되어「철도2」의 면적에서 제외된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천2 : 357㎡, 수도1 : 120㎡, 도로 : 498㎡

다) 주차장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11개소	41,396	
주차장	주1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9,951	
	주2	송파구 거여동 271-1전 일원	1,110	
	주3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310	
	주4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1,575	
	주5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	
	주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6	
	주7	성남시 창곡동 338-3답 일원	1,187	
	주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	
	주9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4	
	주10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36	
	주11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	기존 환승주차장 활용

○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11개소	41,298	
주차장	주1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9,951	
	주2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12	
	주3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310	
	주4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1,575	
	주5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	형상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주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6	
	주7	성남시 창곡동 338-3답 일원	1,187	
	주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	형상변경
	주9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4	형상변경
	주10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36	형상변경
	주11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	기존 환승주차장 활용

라) 자동차정류장계획 (변경)

○ 기정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1개소	56,005	
공영차고지	차1	송파구 장지동 562답 일원	56,005	

○ 변경

구 분	번 호	위 치	면적(㎡)	비 고
소 계	-	1개소	55,721	
공영차고지	차1	송파구 장지동 562답 일원	55,721	

4)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 기정

(단위:천㎡)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 고
용지보상	6,798	-	1,144	1,260	1,607	416	2,063	308	-	
조성공사	6,798	-	-	-	48	1,156	2,121	1,399	2,074	

○ 변경

(단위:천㎡)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 고
용지보상	6,775	-	1,144	436	1,861	194	1,966	1,174	-	
조성공사	6,775	-	-	-	48	837	1,375	1,696	2,819	

5)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변경)

가)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변경)

○ 기정

(단위: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 고
용지비	63,833	1,901	18,093	7,352	9,073	10,402	11,339	5,197	476	
개발비	34,231	80	34	369	704	4,567	9,145	8,381	10,951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 변경

(단위:억원)

구 분	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이후	비 고
용지비	80,134	1,900	17,996	4,895	10,238	15,599	11,167	6,127	12,212	
개발비	32,345	68	31	257	785	4,371	8,093	8,754	9,986	

※ 사업비는 간접비용(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나) 재원조달계획 (변경없음)

- 사업시행자 자체자금

6)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변경승인서와 같음 (게재생략)

라. 개발기간 (변경)

○ 기정

- 2008년 8월 5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2008년 8월 5일 ~ 2017년 12월 31일

마.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6,797,608.7	100.0	6,774,628.7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395,153	35.2	2,396,154	35.4	
	단독주택	계	233,025	3.4	234,160	3.4	
		일반단독	127,341	1.9	128,476	1.9	
		블록형단독	105,684	1.5	105,684	1.5	
	공동주택	아 파 트	1,956,308	28.8	1,955,525	28.9	
	근린생활시설		18,640	0.3	19,910	0.3	경찰지구대 4
	준 주 거		187,180	2.7	186,559	2.8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공공시설용지	소 계		4,402,455.7	64.8	4,378,474.7	64.6	
	상업업무시설용지	계	515,037	7.6	494,390	7.3	
		일반상업용지	80,267	1.2	104,462	1.5	
		근린상업용지	19,886	0.3	26,082	0.4	
		업무시설용지	257,850	3.8	319,343	4.7	
		복 합 용 지	157,034	2.3	44,503	0.7	주거,상업,업무 기능 복합
	도시지원시설용지		145,075	2.2	144,908	2.1	
	도 로		1,108,495.7	16.3	1,121,936.7	16.5	
	철 도		59,303	0.9	55,884	0.8	차량기지 포함
	주 차 장		41,396	0.6	41,298	0.6	11개소
	자동차정류장		56,005	0.8	55,721	0.8	1개소
	교통광장		35,503	0.5	42,666	0.6	2개소
	일반광장		40,304	0.6	40,911	0.6	24개소
	공 원		1,313,106	19.3	1,312,735	19.4	
	녹 지		242,578	3.6	235,320	3.5	
	공공공지		93,699	1.4	94,458	1.4	
	수도공급설비		55,567	0.8	55,655	0.8	가압장, 광역상수관 (기존시설 활용)포함
	전기공급설비		5,628	0.1	6,028	0.1	3개소
	가스공급설비		12,034	0.2	12,034	0.2	1개소
	열공급설비		44,786	0.6	44,786	0.7	1개소
	학 교		271,244	4.0	271,249	4.0	유4,초10,중5,고5

	문화시설	44,026	0.6	44,026	0.6	4개소
	사회복지시설	17,628	0.3	17,653	0.3	5개소
	하 천	165,567	2.4	154,731	2.3	
	유 수 지	11,822	0.2	11,822	0.2	3개소(총면적 91,132㎡, 2개소 79,310㎡는 하천 및 도로와 중복)
	종합의료시설	12,538	0.2	12,538	0.2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7,871	0.3	17,871	0.3	1개소
	체육시설	30,390	0.4	30,390	0.4	1개소
	교육연구시설	5,599	0.1	5,599	0.1	1개교
	종교시설	28,581	0.4	28,581	0.4	11개소
	기 숙 사	18,873	0.3	15,484	0.2	1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9,800	0.1	9,800	0.2	5개소

바.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변경)

1)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2) 면적 (변경)

	기정(㎡)	변경(㎡)	증감(㎡)	비고
위례지구	6,797,608.7	6,774,628.7	감) 22,980	

사. 개발계획평면도, 지적도와 수용할 토지등의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택지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3.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2차)

가. 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위례 택지개발사업

나.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 (변경)

구분	시행자의 명칭	주 소	성명
기정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94(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변경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이지송
	서울특별시 SH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유민근

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 (변경)

1)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정부의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2005. 8. 31)”의 후속조치로 신도시 발표 시 제시한 ‘강남지역의 안정적인 주택수급과 서민층의 주거안정 도모’ 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웰빙 주거도시로 개발

2) 수용인구 및 주택계획 (변경)

○ 기정

- 수용인구 : 107,368인
- 수용호수 : 42,947세대

○ 변경

- 수용인구 : 108,548인
- 수용호수 : 43,419세대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면 적(㎡)	구성비(%)	면 적(㎡)	구성비(%)	
총 계			6,797,608.7	100.0	6,774,628.7	100.0	
주택건설용지	소 계		2,395,153	35.2	2,396,154	35.4	
	단독주택	계	233,025	3.4	234,160	3.4	
		일반단독	127,341	1.9	128,476	1.9	
		블록형단독	105,684	1.5	105,684	1.5	
	공동주택	아 파 트	1,956,308	28.8	1,955,525	28.9	
	근린생활시설		18,640	0.3	19,910	0.3	경찰지구대 4
	준 주 거		187,180	2.7	186,559	2.8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공공시설용지	소 계		4,402,455.7	64.8	4,378,474.7	64.6	
	상업업무시설용지	계	515,037	7.6	494,390	7.3	
		일반상업용지	80,267	1.2	104,462	1.5	
		근린상업용지	19,886	0.3	26,082	0.4	
		업무시설용지	257,850	3.8	319,343	4.7	
		복 합 용 지	157,034	2.3	44,503	0.7	주거,상업,업무 기능 복합
	도시지원시설용지		145,075	2.2	144,908	2.1	
	도 로		1,108,495.7	16.3	1,121,936.7	16.5	
	철 도		59,303	0.9	55,884	0.8	차량기지 포함
	주 차 장		41,396	0.6	41,298	0.6	11개소
	자동차정류장		56,005	0.8	55,721	0.8	1개소
	교통광장		35,503	0.5	42,666	0.6	2개소
	일반광장		40,304	0.6	40,911	0.6	24개소
	공 원		1,313,106	19.3	1,312,735	19.4	
	녹 지		242,578	3.6	235,320	3.5	
	공공공지		93,699	1.4	94,458	1.4	
	수도공급설비		55,567	0.8	55,655	0.8	가압장, 광역상수관 (기존시설 활용)포함
	전기공급설비		5,628	0.1	6,028	0.1	3개소
	가스공급설비		12,034	0.2	12,034	0.2	1개소
	열공급설비		44,786	0.6	44,786	0.7	1개소
	학 교		271,244	4.0	271,249	4.0	유4,초10,중5,고5
	문화시설		44,026	0.6	44,026	0.6	4개소
	사회복지시설		17,628	0.3	17,653	0.3	5개소
	하 천		165,567	2.4	154,731	2.3	
	유 수 지		11,822	0.2	11,822	0.2	3개소(총면적 91,132㎡, 2개소 79,310㎡는 하천 및 도로와 중복)
	종합의료시설		12,538	0.2	12,538	0.2	1개소
	폐기물처리시설		17,871	0.3	17,871	0.3	1개소
	체육시설		30,390	0.4	30,390	0.4	1개소
	교육연구시설		5,599	0.1	5,599	0.1	1개교
	종교시설		28,581	0.4	28,581	0.4	11개소
	기 숙 사		18,873	0.3	15,484	0.2	1개소
	위험물저장및 처리시설		9,800	0.1	9,800	0.2	5개소

라. 사업시행기간 (변경)

○ 기정

- 2008년 8월 5일 ~ 2015년 12월 31일

○ 변경

- 2008년 8월 5일 ~ 2017년 12월 31일

마.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변경)

1) 위치 (변경없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감이동 일원

2) 면적 (변경)

- 기 정 : 6,797,608.7㎡
- 변 경 : 6,774,628.7㎡

바.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서류의 공시송달 방법 (변경없음)

○ 공시송달 방법 : 「택지개발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 및 당해 지방의 일간신문에 공고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거 당해 시의 게시판에 공고함

사.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관리자의 성명・주소 (변경) : 붙임 1

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2(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택지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비치

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붙임 3 (관계도면 게재생략)

※ 관계도면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택지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비치

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http://luris.mltm.go.kr에 게재

붙임1.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가. 편입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	기정	성남시복정동		26	1	도	792.0	642.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6	1	도	154.0	0.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26-1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복정동		26	9	도	638.0	638.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26-1에서 분할
2	기정	성남시복정동		41	6	도	1,249.0	1,24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41	6	도	190.0	190.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41-6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41	10	도	35.0	35.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41-6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41	11	도	1,024.0	1,024.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41-6에서 분할
3	기정	성남시복정동		45	5	전	205.0	205.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45	5	전	180.0	180.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45-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45	6	전	25.0	25.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45-5에서 분할
4	기정	성남시복정동		197	7	전	976.0	976.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197	7	전	896.0	896.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197-7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197	17	전	80.0	80.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197-7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5	기정	성남시복정동		199	22	도	1,089.0	1,08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199	22	도	732.0	732.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199-2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199	23	도	357.0	357.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199-22에서 분할
6	기정	성남시복정동		205	1	천	6,032.0	6,032.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05	1	천	5534.0	5534.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5-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5	4	천	424.0	424.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5-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5	5	천	74.0	74.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5-1에서 분할
7	기정	성남시복정동		207	3	도	694.0	69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07	3	도	18.0	18.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7-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7	10	도	297.0	297.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7-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7	11	도	28.0	28.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7-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7	12	도	200.0	200.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7-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7	13	도	109.0	109.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7-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7	14	도	42.0	42.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07-3에서 분할
8	기정	성남시복정동		208	0	답	129.0	129.0	국(재정경제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08	0	답	86.0	86.0	국(재정경제부)		1/1				복정동 208-0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08	1	답	43.0	43.0	국(재정경제부)		1/1				복정동 208-0에서 분할
9	기정	성남시복정동		219	9	전	398.0	398.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19	9	전	194.0	194.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219-9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19	23	전	204.0	204.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219-9에서 분할
10	기정	성남시복정동		225	3	천	912.0	912.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25	3	천	900.0	900.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25-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25	8	천	12.0	12.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25-3에서 분할
11	기정	성남시복정동		226	7	천	113.0	113.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26	7	천	503.0	503.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26-7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26	11	천	569.0	569.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26-7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26	12	천	189.0	189.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26-7에서 분할
12	기정	성남시복정동		244	3	도	546.0	54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44	3	도	244.0	244.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44-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44	23	도	181.0	181.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44-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44	24	도	97.0	97.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44-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복정동		244	25	도	24.0	24.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44-3에서 분할
13	기정	성남시복정동		257	4	구	1,669.0	3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57	4	구	1,633.0	0.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57-4번지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복정동		257	23	구	36.0	36.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57-4번지에서 분할
14	기정	성남시복정동		258	11	천	100.0	4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복정동		258	11	천	58.0	0.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58-11번지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복정동		258	21	천	42.0	42.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258-11번지에서 분할
15	기정	성남시창곡동		51	1	도	506.0	50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51	1	도	6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51-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51	3	도	44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51-1에서 분할
16	기정	성남시창곡동		73	1	도	1,388.0	1,388.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73	1	도	1212.0	121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7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73	5	도	100.0	10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7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73	6	도	76.0	7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73-1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7	기정	성남시창곡동		79	5	도	317.0	31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79	5	도	14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79-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79	7	도	17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79-5에서 분할
18	기정	성남시창곡동		85	10	도	4,057.0	4,05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85	10	도	1347.0	134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85-10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85	19	도	2502.0	250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85-10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85	20	도	208.0	20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85-10에서 분할
19	기정	성남시창곡동		119	2	도	63.0	63.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19	2	도	36.0	36.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19-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19	4	도	27.0	27.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19-2에서 분할
20	기정	성남시창곡동		120	2	도	96.0	96.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20	2	도	13.0	13.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20-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20	5	도	68.0	68.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20-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20	6	도	15.0	15.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20-2에서 분할
21	기정	성남시창곡동		120	4	구	446.0	44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20	4	구	171.0	17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20-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20	7	구	264.0	26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20-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20	8	구	11.0	1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20-4에서 분할
22	기정	성남시창곡동		130	4	도	2,983.0	2,983.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30	4	도	204.0	20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30-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30	6	도	2779.0	277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30-4에서 분할
23	기정	성남시창곡동		135	5	구	236.0	23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35	5	구	32.0	3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35-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35	6	구	85.0	8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35-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35	7	구	119.0	11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35-5에서 분할
24	기정	성남시창곡동		137	2	도	267.0	267.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37	2	도	208.0	208.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37-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37	19	도	59.0	59.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37-2에서 분할
25	기정	성남시창곡동		146	1	도	545.0	54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46	1	도	250.0	25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46	2	도	29.0	2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46	3	도	163.0	16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46	4	도	103.0	10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46-1에서 분할
26	기정	성남시창곡동		152	1	도	1,220.0	1,22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1	도	48.0	4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3	도	122.0	12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4	도	246.0	24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5	도	96.0	9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6	도	105.0	10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7	도	55.0	5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8	도	167.0	16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2	9	도	381.0	38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2-1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27	기정	성남시창곡동		153	2	천	1,335.0	1,335.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2	천	966.0	966.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53-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6	천	369.0	369.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153-2에서 분할
28	기정	성남시창곡동		153	4	구	1,010.0	1,01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4	구	157.0	15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3-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7	구	358.0	35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3-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8	구	364.0	36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3-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9	구	131.0	13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3-4에서 분할
29	기정	성남시창곡동		153	5	구	6,547.0	6,54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5	구	6152.0	615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3-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53	10	구	395.0	39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53-5에서 분할
30	기정	성남시창곡동		163	1	도	2,011.0	2,011.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63	1	도	1507.0	150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3	2	도	27.0	2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3	3	도	45.0	4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3	4	도	365.0	36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3	5	도	33.0	3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3	6	도	34.0	3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3-1에서 분할
31	기정	성남시창곡동		169	1	구	9,117.0	9,11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	구	5,518.0	5,51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9	구	76.0	7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0	구	77.0	7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1	구	798.0	79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2	구	130.0	13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3	구	559.0	55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4	구	56.0	5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5	구	76.0	7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6	구	171.0	17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7	구	97.0	9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8	구	572.0	57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19	구	294.0	29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20	구	149.0	14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21	구	385.0	38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69	22	구	159.0	15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69-1에서 분할
32	기정	성남시창곡동		172	1	도	893.0	893.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1	도	101.0	10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6	도	119.0	11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7	도	441.0	44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8	도	17.0	1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9	도	16.0	1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10	도	19.0	1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11	도	91.0	9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12	도	39.0	3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172	13	도	50.0	5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172-1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33	기정	성남시창곡동		206	4	도	324.0	32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06	4	도	2109.0	210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06-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06	13	도	76.0	7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06-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06	14	도	39.0	3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06-4에서 분할
34	기정	성남시창곡동		215	1	도	274.0	27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15	1	도	102.0	10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15-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15	5	도	51.0	5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15-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15	6	도	43.0	4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15-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15	7	도	78.0	7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15-1에서 분할
35	기정	성남시창곡동		239	1	도	982.0	982.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1	도	16.0	1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2	도	16.0	1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3	도	66.0	6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4	도	389.0	38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5	도	25.0	2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6	도	42.0	4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7	도	31.0	3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8	도	31.0	3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9	도	122.0	12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10	도	45.0	4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39	11	도	199.0	19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39-1에서 분할
36	기정	성남시창곡동		242	1	도	2,899.0	2,89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42	1	도	1164.0	116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4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42	2	도	1074.0	107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4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42	3	도	338.0	33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4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42	4	도	323.0	32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42-1에서 분할
37	기정	성남시창곡동		252	1	도	1,825.0	1,82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52	1	도	213.0	21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52	2	도	141.0	14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52	3	도	160.0	16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5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52	4	도	1311.0	131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52-1에서 분할
38	기정	성남시창곡동		268	1	구	8,094.0	8,09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	구	163.0	16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4	구	98.0	9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5	구	361.0	36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6	구	275.0	27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7	구	146.0	14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8	구	2403.0	240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9	구	170.0	17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0	구	230.0	23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1	구	93.0	9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2	구	910.0	91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3	구	140.0	14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4	구	96.0	9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5	구	755.0	75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6	구	61.0	6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7	구	243.0	24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8	구	145.0	14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19	구	104.0	10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0	구	263.0	26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1	구	324.0	32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2	구	261.0	26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3	구	188.0	18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4	구	195.0	19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5	구	110.0	11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6	구	139.0	13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68	27	구	221.0	22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68-1에서 분할
39	기정	성남시창곡동		273	3	도	594.0	59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73	3	도	424.0	42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3-3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3	4	도	170.0	17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3-3에서 분할
40	기정	성남시창곡동		278	1	구	1,960.0	1,96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1	구	21.0	2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5	구	44.0	4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6	구	72.0	7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7	구	18.0	1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8	구	377.0	37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9	구	929.0	92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10	구	202.0	20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78	11	구	297.0	29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78-1에서 분할
41	기정	성남시창곡동		282	1	도	320.0	32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82	1	도	131.0	13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82-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82	2	도	189.0	18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82-1에서 분할
42	기정	성남시창곡동		290	1	도	195.0	19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90	1	도	91.0	9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0-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0	9	도	104.0	10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0-1에서 분할
43	기정	성남시창곡동		297	1	구	1,289.0	1,28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1	구	77.0	7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3	구	616.0	61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4	구	176.0	17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5	구	89.0	8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6	구	31.0	3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7	구	35.0	3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8	구	155.0	15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9	구	110.0	11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1에서 분할
44	기정	성남시창곡동		297	2	도	261.0	261.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2	도	65.0	6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2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10	도	54.0	5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297	11	도	142.0	14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297-2에서 분할
45	기정	성남시창곡동		308	2	구	3,402.0	3,402.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2	구	1433.0	143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6	구	326.0	32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7	구	219.0	21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8	구	230.0	23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9	구	279.0	27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10	구	513.0	51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11	구	53.0	5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08	12	구	349.0	34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08-2에서 분할
46	기정	성남시창곡동		333	1	구	1,431.0	1,431.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333	1	구	300.0	30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3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33	2	구	649.0	64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3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33	3	구	482.0	48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33-1에서 분할
47	기정	성남시창곡동		383	1	구	5,167.0	5,16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1	구	728.0	72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8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8	구	786.0	78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8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9	구	3,342.0	3,34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8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10	구	66.0	6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8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11	구	121.0	12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83-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12	구	124.0	12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383-1에서 분할
48	기정	성남시창곡동		383	5	천	1,196.0	1,196.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5	천	31.0	31.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383-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13	천	718.0	718.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383-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14	천	328.0	328.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383-5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383	15	천	119.0	119.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383-5에서 분할
49	기정	성남시창곡동		410	2	전	91.0	91.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410	2	전	56.0	56.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410-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10	4	전	35.0	35.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410-2에서 분할
50	기정	성남시창곡동		414	2	도	273.0	273.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414	2	도	68.0	6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14-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14	22	도	51.0	5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14-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14	23	도	38.0	3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14-2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14	24	도	116.0	11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14-2에서 분할
51	기정	성남시창곡동		417	1	구	555.0	55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417	1	구	397.0	39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17-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17	13	구	158.0	15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17-1에서 분할
52	기정	성남시창곡동		446	1	구	4,724.0	4,72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	구	419.0	41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8	구	232.0	232.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9	구	161.0	161.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0	구	1,954.0	1,954.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1	구	435.0	435.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1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2	구	1,523.0	1,52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1에서 분할
53	기정	성남시창곡동		446	7	도	1,386.0	1,38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7	도	209.0	209.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7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3	도	30.0	3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7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4	도	16.0	1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7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5	도	167.0	167.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7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6	도	76.0	7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7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46	17	도	888.0	888.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46-7에서 분할
54	기정	성남시창곡동		454	4	도	169.0	16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454	4	도	53.0	53.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54-4에서 분할
	변경	성남시창곡동		454	8	도	116.0	116.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54-4에서 분할
55	기정	성남시창곡동		458	1	도	628.0	55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458	1	도	78.0	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458-1번지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창곡동		458	3	도	550.0	550.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458-1번지에서 분할
56	기정	성남시창곡동	산	33	0	임	423,450.0	247,494.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33	0	임	175,956.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창곡동 산33번지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33	3	임	247,494.0	247,494.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복정동 산33번지에서 분할
57	기정	성남시창곡동	산	70	2	임	414,838.0	339,32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한국전력공사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지상권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70	2	임	75,518.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한국전력공사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지상권	창곡동 산70-2번지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70	31	임	339,320.0	339,32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한국전력공사	서울시강남구삼성동167	지상권	복정동 산70-2번지에서 분할
58	기정	성남시창곡동	산	108	4	도	6,278.0	470.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108	4	도	5,808.0	0.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창곡동 산108-4번지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108	6	도	470.0	470.0	성남시	경기성남시 중원구여수동152	1/1				복정동 산108-4번지에서 분할
59	기정	성남시창곡동	산	127	0	도	1,488.0	30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127	0	도	666.0	0.0	국(건설교통부)		1/1				창곡동 산127번지에서 분할, 제척
	변경	성남시창곡동	산	127	1	도	309.0	309.0	국(건설교통부)		1/1				복정동 산127번지에서 분할
60	기정	하남시감이동	산	82	0	임	4,463.0	3,49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2	0	임	1,16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2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2	8	임	3,303.0	3,30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2에서 분할
61	기정	하남시감이동	산	83	0	임	6,797.0	5,869.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3	0	임	823.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3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3	4	임	10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3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3	5	임	5,874.0	5,874.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3에서 분할
62	기정	하남시감이동	산	85	0	임	30,829.0	26,18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5	0	임	2,003.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5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5	2	임	27,412.0	27,41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5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감이동	산	85	3	임	1,414.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감이동 산85에서 분할
63	기정	하남시학암동		5	5	임	36.0	2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5	5	임	8.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5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	11	임	27.0	2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5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5	12	임	1.0	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5에서 분할
64	기정	하남시학암동		6	6	천	261.0	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하남시학암동		6	6	천	259.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6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	28	천	2.0	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6에서 분할
65	기정	하남시학암동		43	0	전	3,617.0	2,88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43	0	전	736.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3-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43	1	전	2,881.0	2,88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3-0에서 분할
66	기정	하남시학암동		117	0	답	7,117.0	4,02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117	0	답	3,097.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17-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117	0	답	4,020.0	4,02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17-0 에서 분할
67	기정	하남시학암동		132	0	전	1,260.0	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132	0	전	1,253.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32-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132	1	전	7.0	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32-0에서 분할
68	기정	하남시학암동		140	0	전	10,837.0	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140	0	전	10,834.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40-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140	1	전	3.0	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40-0에서 분할
69	기정	하남시학암동		145	0	전	5,629.0	2,96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145	0	전	2,666.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45-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145	1	전	2,963.0	2,96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45-0에서 분할
70	기정	하남시학암동		148	0	답	4,301.0	3,44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148	0	답	854.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48-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148	1	답	3,447.0	3,44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48-0에서 분할
71	기정	하남시학암동		160	0	전	5,739.0	2,41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160	0	전	3,327.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60-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160	1	전	2,412.0	2,41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60-0에서 분할
72	기정	하남시학암동		161	0	답	43,178.0	4,17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161	0	답	39,00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61-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161	1	답	4,178.0	4,17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161-0에서 분할
73	기정	하남시학암동		213	0	잡	44,415.0	38,619.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213	0	잡	5,796.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13-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213	1	잡	38,619.0	38,619.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13-0에서 분할
74	기정	하남시학암동		226	0	잡	38,212.0	34,53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226	0	잡	1,172.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26-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226	1	잡	34,531.0	34,53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26-0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226	2	잡	6.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26-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226	3	잡	2,381.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26-0에서 분할, 제척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하남시학암동		226	4	잡	329.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26-0에서 분할, 제척
75	기정	하남시학암동		252	0	잡	46,605.0	42,014.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252	0	잡	4,591.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52-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252	1	잡	42,014.0	42,014.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52-0에서 분할
76	기정	하남시학암동		253	0	잡	27,203.0	8,28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253	0	잡	18,917.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53-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253	1	잡	3,126.0	3,12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53-0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253	2	잡	5,160.0	5,16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53-0에서 분할
77	기정	하남시학암동		266	0	잡	7,065.0	2,66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266	0	잡	4,402.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66-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266	1	잡	2,663.0	2,66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66-0에서 분할
78	기정	하남시학암동		287	0	잡	21,528.0	13,37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287	0	잡	8,159.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87-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287	1	잡	13,369.0	13,369.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287-0에서 분할
79	기정	하남시학암동		318	0	전	3,098.0	1,925.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318	0	전	1,175.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318-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318	1	전	1,923.0	1,92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318-0에서 분할
80	기정	하남시학암동		427	0	답	1,732.0	13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427	0	답	1,604.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27-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427	1	답	131.0	13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27-0에서 분할
81	기정	하남시학암동		431	1	전	13,137.0	7,87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431	1	전	5,26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31-1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431	2	전	7,877.0	7,87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31-1에서 분할
82	기정	하남시학암동		434	0	잡	61,127.0	54,51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434	0	잡	6,62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34-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434	1	잡	54,507.0	54,50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34-0에서 분할
83	기정	하남시학암동		499	0	잡	20,952.0	18,85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499	0	잡	2,096.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99-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499	1	잡	18,856.0	18,85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499-0에서 분할
84	기정	하남시학암동		576	0	도	347.0	31.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576	0	도	310.0	0.0	국(건설부)						학암동 576-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76	1	도	15.0	15.0	국(건설부)						학암동 576-0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576	2	도	22.0	22.0	국(건설부)						학암동 576-0에서 분할
85	기정	하남시학암동		592	0	도	3,580.0	1,28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하남시학암동		592	0	도	1,939.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2-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92	1	도	353.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2-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92	2	도	1,288.0	1,28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2-0에서 분할
86	기정	하남시학암동		593	0	구	6,407.0	67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593	0	구	2,614.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3-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93	1	구	3,117.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3-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93	2	구	267.0	26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3-0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593	3	구	402.0	40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3-0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593	4	구	7.0	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3-0에서 분할
87	기정	하남시학암동		596	0	도	843.0	14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596	0	도	696.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6-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96	1	도	147.0	14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6-0에서 분할
88	기정	하남시학암동		597	0	구	1,289.0	79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597	0	구	571.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7-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97	1	구	792.0	79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597-0에서 분할
89	기정	하남시학암동		599	0	구	2,221.0	71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599	0	구	1,508.0	0.0	국(국방부)						학암동 599-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599	1	구	713.0	713.0	국(국방부)						학암동 599-0에서 분할
90	기정	하남시학암동		600	0	도	1,180.0	283.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00	0	도	897.0	0.0	국(국방부)						학암동 600-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00	1	도	283.0	283.0	국(국방부)						학암동 600-0에서 분할
91	기정	하남시학암동		602	0	도	6,119.0	3,42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02	0	도	2,452.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02-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02	1	도	242.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02-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02	2	도	3,407.0	3,40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02-0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602	3	도	18.0	1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02-0에서 분할
92	기정	하남시학암동		603	0	천	10,889.0	5,91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03	0	천	95.0	0.0	국(건설부)		1/1				학암동 603-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03	1	천	5,070.0	0.0	국(건설부)		1/1				학암동 603-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03	2	천	5,913.0	5,913.0	국(건설부)		1/1				학암동 603-0에서 분할
93	기정	하남시학암동		610	0	구	2,142.0	1,998.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10	0	구	144.0	0.0	국(건설부)		1/1				학암동 610-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10	1	구	1,998.0	1,998.0	국(건설부)		1/1				학암동 610-0에서 분할
94	기정	하남시학암동		612	0	도	704.0	1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12	0	도	694.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12-0에서 분할, 제척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하남시학암동		612	1	도	10.0	1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12-0에서 분할
95	기정	하남시학암동		613	0	구	813.0	29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13	0	구	522.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13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13	1	구	291.0	291.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613에서 분할
96	기정	하남시학암동		614	0	도	198.0	13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14	0	도	7.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4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14	1	도	137.0	137.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4에서 분할
97	기정	하남시학암동		615	0	구	1,835.0	1,79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15	0	구	40.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5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15	1	구	1,795.0	1,795.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5에서 분할
98	기정	하남시학암동		618	0	도	1,527.0	1,218.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18	0	도	226.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8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18	1	도	1,218.0	1,218.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8에서 분할
99	기정	하남시학암동		619	0	천	6,218.0	3,05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19	0	천	3,162.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9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19	1	천	3,056.0	3,056.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19에서 분할
100	기정	하남시학암동		621	0	천	6,456.0	3,574.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621	0	천	2,882.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21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621	1	천	3,574.0	3,574.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621에서 분할
101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	0	임	138,645.0	137,975.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	0	임	619.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학암동 산1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	1	임	138,026.0	138,02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학암동 산1에서 분할
102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8	0	임	62,877.0	61,755.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8	0	임	1,122.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학암동 산8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8	1	임	61,755.0	61,755.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학암동 산8에서 분할
103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4	0	임	45,025.0	11,18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4	0	임	33,838.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4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4	1	임	11,187.0	11,18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4에서 분할
104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5	0	임	12,198.0	4,27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5	0	임	7,92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5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5	1	임	4,278.0	4,27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5에서 분할
105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24	2	임	18,446.0	6,53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24	2	임	11,909.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24-2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24	3	임	6,537.0	6,53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24-2에서 분할
106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30	0	임	607,141.0	100,492.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30	0	임	506,649.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학암동 산30에서 분할, 제척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30	1	임	55,636.0	55,63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학암동 산30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30	2	임	44,856.0	44,856.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소유권말소예고등기	학암동 산30에서 분할
107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38	0	임	35,901.0	27,22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38	0	임	8,673.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38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38	1	임	27,228.0	27,228.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38에서 분할
108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52	0	임	4,958.0	425.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52	0	임	4,533.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52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52	1	임	425.0	425.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52에서 분할
109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85	1	임	385,461.0	12,15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85	1	임	373,304.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85-1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85	6	임	12,157.0	12,15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85-1에서 분할
110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99	1	임	41,554.0	7,103.0	미등기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99	1	임	34,451.0	0.0	미등기		1/1				학암동 산99-1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99	3	임	1,280.0	1,280.0	미등기		1/1				학암동 산99-1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99	4	임	5,823.0	5,823.0	미등기		1/1				학암동 산99-1에서 분할
111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99	2	임	31,041.0	7,757.0	미등기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99	2	임	23,284.0	0.0	미등기		1/1				학암동 산99-2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99	5	임	7,757.0	7,757.0	미등기		1/1				학암동 산99-2에서 분할
112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00	0	임	32,330.0	32,31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박성숙		예고등기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0	0	임	2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박성숙		예고등기	학암동 산100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0	1	임	32,310.0	32,31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박성숙		예고등기	학암동 산100에서 분할
113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04	0	도	9,277.0	1,878.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4	0	도	4,658.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04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4	1	도	1,878.0	1,878.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04에서 분할
114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05	0	구	11,210.0	6,46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5	0	구	57.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05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5	2	구	6,627.0	6,627.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05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5	3	구	3,17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05에서 분할
115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07	0	구	6,746.0	3,074.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7	0	구	3,320.0	0.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07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07	1	구	3,074.0	3,074.0	국(국방부)	서울용산구용산동3가국방부1번지이태원로22번지	1/1				학암동 산107에서 분할
116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11	0	도	10,019.0	5,408.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11	0	도	3,295.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11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11	1	도	5,408.0	5,408.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11에서 분할

연번	구분	소재지	산	본번	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의종류	
117	기정	하남시학암동	산	113	0	도	977.0	471.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13	0	도	10.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13에서 분할, 제척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13	1	도	187.0	187.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13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13	2	도	342.0	0.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13에서 분할
	변경	하남시학암동	산	113	3	도	278.0	278.0	국(건설교통부)		1/1				학암동 산113에서 분할
118	기정	송파구장지동		319	20	도	12.0	12.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19	20	도	12.0	0.0	국(건설교통부)		1/1				제척
119	기정	송파구장지동		319	42	도	6.0	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19	42	도	6.0	0.0	국(건설교통부)		1/1				제척
120	기정	송파구장지동		319	43	천	1,190.0	1,19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19	43	천	1,190.0	113.0	국(건설교통부)		1/1				
121	기정	송파구장지동		319	68	천	7.0	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19	68	천	7.0	0.0	국(건설교통부)		1/1				제척
122	기정	송파구장지동		352	8	도	1,897.0	1,89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52	8	도	1,897.0	0.0	국(건설교통부)		-				제척
123	기정	송파구장지동		354	1	도	30.0	3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54	1	도	30.0	0.0	국(건설교통부)		-				제척
124	기정	송파구장지동		354	2	도	118.0	118.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54	2	도	118.0	0.0	국(건설교통부)		-				제척
125	기정	송파구장지동		354	11	도	12,729.0	12,729.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54	11	도	12,729.0	2,662.0	국(건설교통부)		-				
126	기정	송파구장지동		359	1	도	77.0	77.0	국(산림청)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359	1	도	77.0	18.0	국(산림청)		-				
127	기정	송파구장지동		538	0	도	50.0	50.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38	0	도	50.0	0.0	국(건설교통부)		-				제척
128	기정	송파구장지동		538	3	도	10,366.0	10,36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38	3	도	10,366.0	1,429.0	국(건설교통부)		-				
129	기정	송파구장지동		541	3	구	40.0	40.0	한국농촌공사	경기도의왕시포일동487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1	3	구	40.0	0.0	한국농촌공사		-				제척
130	기정	송파구장지동		541	4	답	1.0	1.0	대한민국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1	4	답	1.0	0.0	대한민국		-				제척
131	기정	송파구장지동		541	7	도	26.0	26.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1	7	도	26.0	0.0	국(건설교통부)		-				제척
132	기정	송파구장지동		541	8	답	2.0	2.0	미등기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1	8	답	2.0	0.0	미등기		-				제척
133	기정	송파구장지동		541	9	구	1,577.0	1,57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1	9	구	1,577.0	44.0	국(건설교통부)		-				
134	기정	송파구장지동		541	10	도	15.0	15.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1	10	도	15.0	0.0	국(건설교통부)		-				제척
135	기정	송파구장지동		541	11	답	7.0	7.0	최도훈	서울중구신당동21-3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1	11	답	7.0	0.0	최도훈		-				제척
136	기정	송파구장지동		547	8	도	407.0	407.0	국(건설교통부)		1/1				
	변경	송파구장지동		547	8	도	407.0	55.0	국(건설교통부)		-				

붙임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총 괄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797,608.7	감)22,980	6,774,628.7	100.0	
주 거 지 역	4,244,971	47,310	4,292,281	63.4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67,309	감)5	67,304	1.0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112,929	-	112,929	1.7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99,535	1,691	201,226	3.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82,442	감)2,485	379,957	5.6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458,293	83,548	2,541,841	37.5	
준 주 거 지 역	1,024,463	감)35,439	989,024	14.6	
상 업 지 역	437,169	21,297	458,466	6.8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376,969	29,600	406,569	6.0	
근 린 상 업 지 역	60,200	감)8,303	51,897	0.8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	-	-	-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2,115,468.7	감)91,587	2,023,881.7	29.9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2,115,468.7	감)91,587	2,023,881.7	29.9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 장지동 일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8,740	59,61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10,63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18,49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19,545	118,03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1,50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896,953	10,95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1,47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884,52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460,272	19,03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440,59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64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93,495	9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170,36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23,03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787,403.7	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33,87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29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1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728,985.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575,682.7	감)24,236	2,551,446.7	100.0	
주 거 지 역	1,585,716	33,614	1,619,330	63.5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20,206	-	20,206	0.8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88,740	862	89,602	3.5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19,545	감)33	119,512	4.7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896,953	33,590	930,543	36.5	
준 주 거 지 역	460,272	감)805	459,467	18.0	
상 업 지 역	202,563	감)22,468	180,095	7.1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193,495	감)22,468	171,027	6.7	
근 린 상 업 지 역	9,068	-	9,068	0.4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	-	-	-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787,403.7	감)35,382	752,021.7	29.5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787,403.7	감)35,382	752,021.7	29.5	

다. 성남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803,519	-	2,803,519	100.0	
주 거 지 역	1,642,404	15,250	1,657,654	59.1	
제 1종 전 용 주 거 지 역	47,103	감)5.0	47,098	1.7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71,264	-	71,264	2.5	
제 1종 일 반 주 거 지 역	99,917	829.0	100,746	3.6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61,181	감)2,452.0	158,729	5.7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865,800	51,492	917,292	32.7	
준 주 거 지 역	397,139	감)34,614.0	362,525	12.9	
상 업 지 역	179,948	42,232	222,180	7.9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133,535	52,068	185,603	6.6	
근 린 상 업 지 역	46,413	감)9,836.0	36,577	1.3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	-	-	-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981,167	감)57,482.0	923,685	32.9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981,167	감)57,482.0	923,685	32.9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일원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지역	47,103	47,09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5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99,917	99,54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375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61,181	158,72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2,45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865,800	859,74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근린상업지역		2,85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3,20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397,139	1,20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제3종 일반주거지역		1,82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361,58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32,40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11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33,535	116,48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17,04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46,413	12,72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근린상업지역		33,69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981,167	55,72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지역		56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일반상업지역		21,53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근린상업지역		3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903,31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라. 하남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18,407	1,256	1,419,663	100.0	
주 거 지 역	1,016,851	감)1,554	1,015,297	71.5	
제 1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41,665	-	41,665	2.9	
제 1종 일 반 주 거 지 역	10,878	-	10,878	0.8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01,716	-	101,716	7.2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695,540	감)1,534	694,006	48.9	

	준 주 거 지 역	167,052	감)20	167,032	11.8	
상 업 지 역		54,658	1,533	56,191	4.0	
	중 심 상 업 지 역	-	-	-	-	
	일 반 상 업 지 역	49,939	-	49,939	3.5	
	근 린 상 업 지 역	4,719	1,533	6,252	0.4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 업 지 역		-	-	-	-	
	전 용 공 업 지 역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준 공 업 지 역	-	-	-	-	
녹 지 지 역		346,898	1,277	348,175	24.5	
	보 전 녹 지 지 역	-	-	-	-	
	생 산 녹 지 지 역	-	-	-	-	
	자 연 녹 지 지 역	346,898	1,277	348,175	24.5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	경기도하남시 학암동 일원	제3종 일반주거 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695,540	694,00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근린상업지역		1,53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준주거 지역	준주거지역	167,052	167,03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녹지지역		2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자연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346,898	348,15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해당사항 없음)

3.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4.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 로

가) 총 괄

■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236	51,209	1,121,936.7	121	27,289	584,259	21	4,207	51,436	94	19,713	409,484	
일반도로	소계	146	41,700	982,097	90	24,001	551,357	15	3,016	51,436	41	14,683	379,304	
	광로	5	2,859	118,058	-	-	-	-	-	-	5	2,859	118,058	
	대로	31	15,874	491,726	12	7,091	257,451	1	396	12,347	18	8,387	221,928	
	중로	65	17,372	318,919	37	11,766	243,478	13	2,490	38,049	15	3,116	37,392	
	소로	45	5,595	53,394	41	5,144	50,428	1	130	1,040	3	321	1,926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지하도로	소계	6	1,191	-	-	-	-	6	1,191	-	-	-	-	
	중로	1	161	-	-	-	-	1	161	-	-	-	-	
	소로	5	1,030	-	-	-	-	5	1,030	-	-	-	-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84	8,318	63,082	31	3,288	32,902	-	-	-	53	5,030	30,180	
	소로	84	8,318	63,082	31	3,288	32,902	-	-	-	53	5,030	30,180	
기타		-	-	76,757.7	-	-	-	-	-	-	-	-	-	가각등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총괄표

류별		합 계			1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 계		90	21,416	496,151.7	47	11,478	267,532	8	2,296	32,552	35	7,642	146,329	
일반도로	소계	58	17,427	420,905	35	10,255	255,302	6	1,743	32,552	17	5,429	133,051	
	광로	2	736	30,199	-	-	-	-	-	-	2	736	30,199	
	대로	12	7,161	225,242	5	3,362	124,845	1	396	12,347	6	3,403	88,050	
	중로	29	8,175	152,366	17	5,651	118,037	5	1,347	20,205	7	1,177	14,124	
	소로	15	1,355	13,098	13	1,242	12,420	0	0	0	2	113	678	
자동차전용도로	소계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지하도로	소계	2	553	-	-	-	-	2	553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2	553	-	-	-	-	2	553	-	-	-	-	
보행자전용도로	소계	30	3,436	25,508	12	1,223	12,230	-	-	-	18	2,213	13,278	
	소로	30	3,436	25,508	12	1,223	12,230	-	-	-	18	2,213	13,278	
기타		-	-	49,738.7	-	-	-	-	-	-	-	-	-	가각등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3	1	45	주간선도로	635	위성 광 3-1	공공공지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광로	3	1	40.4~49.5	주간선도로	635	송파구 장지동 586-11천 위성 광 3-1	송파구 장지동 564도 공공공지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광로	3	2	45	주간선도로	101	위서 대 1-3	위성 광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광로	3	2	45~48	주간선도로	101	송파구 장지동 530-1답 위서 대 1-3	송파구 장지동 529-2답 위성 광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2	37.5	주간선도로	1,351	위하 대 1-1	위하 대 1-3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1	2	37.5~43.5	주간선도로	1,351	송파구 장지동 1-2잡 위하 대 1-1	송파구 거여동 273-1잡 위하 대 1-3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대로	1	3	39	주간선도로	236	위서 광 3-2	위하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1	3	39~42	주간선도로	236	송파구 장지 동530-1답 위서 광 3-2	송파구 장지동 529-1전 위하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4	37.5	주간선도로	7	위성 대 1-2	위서 광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1	4	37.5~43.5	주간선도로	7	송파구 장지동 529-2답 위성 대 1-2	송파구 장지동 530-2전 위서 광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5	37.5	주간선도로	1,702	위서 광 3-2	근린공원 3	일반도로	-	송파구고시 제2006-27호	
변경	대로	1	5	37.5~43.5	주간선도로	1,702	송파구 장지동 526-1답 위서 광 3-2	송파구 거여동 375-1전 근린공원 3	일반도로	-	송파구고시 제2006-27호	
기정	대로	1	6	36	주간선도로	66	송파구 장지동 319-60도 위성 대 1-3	송파구 장지동 546-7도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2	1	33	보조간선도로	396	위서 대 1-5	완충녹지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2	1	33~40.5	보조간선도로	396	송파구 거여동 391-1답 위서 대 1-5	송파구 거여동 산23-1도 완충녹지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1	27	보조간선도로	803	위하 대 3-1	위서 대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3	1	27~33	보조간선도로	803	송파구 장지동 469-1잡 위하 대 3-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대로	3	2	27	집산도로	424	위하 대 3-3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3	2	27~30	집산도로	424	송파구 장지동 500-2잡 위하 대 3-3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3	27	보조간선도로	663	위서 대 1-2	위서 대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3	27~33	보조간선도로	663	송파구 거여동 459-1전 위서 대 1-2	송파구 거여동 406전 위서 대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4	27	집산도로	493	위서 대 1-2	근린공원 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4	27~30	집산도로	493	송파구 거여동 274답 위서 대 1-2	송파구 거여동 264-4답 근린공원 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5	27	보조간선도로	539	위하 대 3-6	근린공원 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5	27~33	보조간선도로	539	송파구 거여동 587-1도 위하 대 3-6	송파구 거여동 산71-36임 근린공원 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대로	3	6	27~30	보조간선도로	481	송파구 장지동 319-10도 위성 대 3-6	송파구 장지동 57-2도 위성 대 3-4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	국지도로	180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2	송파구 장지동 485-2잡 위하 중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1	2	24	집산도로	269	위하 중 1-2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1	2	24~27	집산도로	269	송파구 장지동 485-2잡 위하 중 1-2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1	3	24	집산도로	908	위서 대 3-1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1	3	24~27.8	집산도로	91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도로	595	위성 중 1-4	위서 대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4	20~23	보조간선도로	595	송파구 장지동 319-59도 위성 중 1-4	송파구 장지동 392-2임 위서 대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185	위하 중 1-8	위서 중 1-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5	20~22.7	집산도로	182	송파구 거여동 273-1잡 위하 중 1-8	송파구 거여동 산71-14임 위서 중 1-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6	20	국지도로	214	위서 대 1-2	위서 중 1-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6	20~23	국지도로	211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대 1-2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위서 중 1-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7	20	집산도로	536	위서 대 3-3	위서 대 3-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7	20~25.8	집산도로	536	송파구 거여동 산42임 위서 대 3-3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대 3-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8	20	국지도로	133	송파구 거여동 산42임 위서 대 3-3	송파구 거여동 산42임 주제공원 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9	20	국지도로	83	송파구 거여동 산39임 위서 대 3-3	송파구 거여동 산39임 주제공원 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0	20	집산도로	748	위서 대 1-5	위서 대 2-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10	20~23	집산도로	748	송파구 거여동 376답 위서 대 1-5	송파구 장지동 101-4전 위서 대 2-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1	20	집산도로	414	위서 대 2-1	학교 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11	20~23	집산도로	414	송파구 장지동 산23임 위서 대 2-1	송파구 장지동 산30-1임 학교 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2	20	집산도로	69	송파구 거여동 491임 위서 대 1-2	송파구 거여동 543-1잡 위하 중 1-10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3	20	집산도로	205	송파구 거여동 537임 위서 대 1-2	송파구 거여동 480-2잡 위하 중 1-9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4	20	집산도로	542	위서 대 3-5	위서 대 3-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14	20~23	집산도로	542	송파구 거여동 572-1임 위서 대 3-5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대 3-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5	20	국지도로	130	송파구 거여동 산39임 위서 대 3-3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근린공원 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16	20	보조간선도로	344	송파구 장지동 586-4잡 위성 중 1-3	송파구 장지동 596-14답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신설	중로	1	17	23	국지도로	99	송파구 장지동 601-1답 위서 대 3-6	송파구 장지동 603-2답 광장 22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27	위서 중 1-11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변경	중로	2	1	15~18	집산도로	227	송파구 장지동 56-2전 위서 중 1-11	송파구 장지동 41-4도 지구계서측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54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대 3-4	송파구 거여동 산71-14임 위서 중 1-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161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위서 중 1-14	송파구 거여동 산71-14임 위서 중 2-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2	4	15	국지도로	177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위서 대 3-3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위서 중 1-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242	위서 중 1-10	근린공원 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변경	중로	2	5	15~25	국지도로	242	송파구 거여동 산30임 위서 중 1-10	송파구 거여동 산26-7임 근린공원 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02	송파구 거여동 산71-14임 위서 중 2-2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위서 중 2-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30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위서 중 2-3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108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2-2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소 3-10(특)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11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3-5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위서 소 3-18(특)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278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대 3-4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위서 중 3-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153	위서 중 1-6	위서 중 3-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변경	중로	3	6	12	국지도로	150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위서 대 3-4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3-9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중로	3	7	12	국지도로	202	완충녹지 4	위서 중 1-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폐지	중로	3	7	12	국지도로	202	완충녹지 4	위서 중 1-14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8	12	국지도로	246	위성 대 1-3	공공공지 1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폐지	중로	3	8	12	국지도로	246	위성 대 1-3	공공공지 17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9	12	국지도로	199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1-14	송파구 거여동 산61-2임 완충녹지 4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75	위서 중 3-6	위서 중 3-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폐지	소로	1	1	10	국지도로	275	위서 중 3-6	위서 중 3-6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53	위서 중 3-6	위서 중 3-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238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위서 중 3-6	송파구 거여동 산61-2임 위서 중 3-9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위서 중 3-6	완충녹지 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폐지	소로	1	3	10	국지도로	59	위서 중 3-6	완충녹지 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4	송파구 거여동 375-2전 위서 대 1-5	송파구 거여동 376-1도 근린공원 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116	위서 중 3-7	위서 소 1-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116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3-9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소 1-1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62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위서 중 3-2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위서 소 3-10(특)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92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3-3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위서 소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34	송파구 거여동 266답 위서 중 3-2	송파구 거여동 266답 위서 소 1-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72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위서 중 2-2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위서 중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 754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08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위서 중 3-2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위서 소 1-9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36	송파구 거여동 266답 위서 중 2-2	송파구 거여동 266답 위서 중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79	송파구 거여동 산51임 위서 중 3-5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위서 중 3-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소로	1	13	10	국지도로	59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중 3-6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완충녹지 3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14	10	국지도로	116	송파구 거여동 산61-2임 위서 중 3-9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위서 소 1-2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15	10	국지도로	116	송파구 거여동 산61-2임 위서 중 3-9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위서 소 1-2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3	1	6.5	보조간선도로	326	위성 소 3-1	지구계서측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2	1	8	보조간선도로	323	송파구 장지동 586-4잡 위성 소 2-2	송파구 장지동 596-14잡 지구계서측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2	6.5	보조간선도로	276	위성 소 3-2	위성 소 3-3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2	2	8	보조간선도로	230	송파구 장지동 586-4잡 위성 소 2-3	송파구 장지동 697-52천 위성 소 3-3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	6	국지도로	105	송파구 거여동 225-158도 근린공원1	송파구 거여동 225-150도 근린공원 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	송파구 거여동 225-154도 위서 소 3-3	송파구 거여동 225-154도 공공공지 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217	송파구 장지동 393임 광장 12	송파구 장지동 393임 근린공원 8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67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2	송파구 장지동 393임 광장10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68	위서 중 1-2	광장 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3	10	특수도로	69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중 1-2	송파구 장지동 393임 광장 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68	송파구 장지동 420임 위서 중 1-3	송파구 장지동 420임 광장 8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69	송파구 거여동 503-1잡 위서 중 1-3	송파구 장지동 3-1잡 광장 7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104	송파구 장지동 6-1전 위서 대 1-5	송파구 장지동 산30-1임 위서 중 1-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212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위서 대 1-2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위서 중 1-7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38	송파구 거여동 산71-14임 위서 중 3-1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광장 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177	송파구 거여동 산33임 위서 대 2-1	송파구 거여동 산32임 A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45	송파구 거여동 산37임 위서 대 1-5	송파구 거여동 산37임 위서 중 2-4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76	송파구 거여동 산30임 위서 중 2-5	송파구 거여동 산30임 근린공원 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소로	1	12	10	특수도로	81	송파구 장지동 601-4답 위서 대 3-6	송파구 장지동 561-7답 광장 26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32	송파구 장지동 485-2잡 위하 소 3-1(특)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중 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38	송파구 장지동 485-2잡 위하 소 3-2(특)	송파구 장지동 561-7답 위서 중 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23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중 1-1	송파구 장지동 393임 광장 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231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중 1-1	송파구 장지동 393임 광장 10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40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1	송파구 장지동 393임 광장 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40	송파구 장지동 393임 위서 대 3-1	송파구 장지동 393임 광장 10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262	송파구 장지동 472전 위서 대 3-1	송파구 장지동 3-1잡 광장 7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262	송파구 장지동 472전 위서 대 3-1	송파구 장지동 420임 광장 8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30	송파구 장지동 3-1잡 위서 중 1-3	송파구 장지동 420임 광장 8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27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대 3-4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위서 중 2-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34	송파구 거여동 497임 주제공원1	송파구 거여동 497임 위서 중 1-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18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소 3-10(특)	송파구 거여동 266답 위서 소 1-7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31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위서 중 2-3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광장 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31	송파구 거여동 산71-14임 위서 중 2-2	송파구 거여동 산71-14임 광장 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127	송파구 거여동 산42임 주제공원 1	송파구 거여동 산40임 위서 대 3-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160	송파구 거여동 산40임 광장 6	송파구 거여동 산41-2임 근린공원 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284	위서 소 3-32(특)	완충녹지 42-서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3	17	6	특수도로	286	송파구 장지동 583-12대 위서 소 3-32(특)	송파구 장지동 579차 완충녹지 42-서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90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위서 대 3-4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광장 5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1	광로 3-1	• 도로변경 (B=40.4~49.5m, L=63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광로 3-2	광로 3-2	• 도로변경 (B=45~48m, L=10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2	대로 1-2	• 도로변경 (B=37.5~43.5m, L=1,35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3	대로 1-3	• 도로변경 (B=39~42m, L=236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4	대로 1-4	• 도로변경 (B=37.5~43.5m, L=7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5	대로 1-5	• 도로변경 (B=37.5~43.5m, L=1,70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2-1	대로 2-1	• 도로변경 (B=33~40.5m, L=396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1	대로 3-1	• 도로변경 (B=27~33m, L=80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2	대로 3-2	• 도로변경 (B=27~30m, L=42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3	대로 3-3	• 도로변경 (B=27~33m, L=66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4	대로 3-4	• 도로변경 (B=27~30m, L=49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5	대로 3-5	• 도로변경 (B=27~33m, L=53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대로 3-6	• 도로신설 (B=27~30m, L=48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 1-2	중로 1-2	• 도로변경 (B=24~27m, L=26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3	중로 1-3	• 도로변경 (B=24~27.8m, L=91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4	중로 1-4	• 도로변경 (B=20~23m, L=59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5	중로 1-5	• 도로변경 (B=20~22.7m, L=18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6	중로 1-6	• 도로변경 (B=20~23m, L=21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7	중로 1-7	• 도로변경 (B=20~25.8m, L=536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10	중로 1-10	• 도로변경 (B=20~23m, L=74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11	중로 1-11	• 도로변경 (B=20~23m, L=41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14	중로 1-14	• 도로변경 (B=20~23m, L=54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중로 1-17	• 도로신설 (B=23m, L=9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 2-1	중로 2-1	• 도로변경 (B=15~18m, L=227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5	중로 2-5	• 도로변경 (B=15~25m, L=24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3-6	중로 3-6	• 도로변경 (B=12m, L=15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3-7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 3-8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	중로 3-9	• 도로신설 (B=12m, L=19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 1-1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2	소로 1-2	• 도로변경 (B=10m, L=23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3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5	소로 1-5	• 도로변경 (B=10m, L=116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소로 1-13	• 도로신설 (B=10m, L=5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14	• 도로신설 (B=10m, L=116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15	• 도로신설 (B=10m, L=116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 3-1	소로 2-1	• 도로변경 (B=8m, L=32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3-2	소로 2-2	• 도로변경 (B=8m, L=23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3	소로 1-3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10m, L=6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	소로 1-12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10m, L=8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소로 3-17	소로 3-17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286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다) 성남시

■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08	21,995	438,157	55	11,094	210,607	8	1,245	8,432	45	9,656	204,571	
일반 도로	소계	57	16,891	389,300	39	9,221	191,855	4	607	8,432	14	7,063	189,013	
	광로	2	1,909	78,550	-	-	-	-	-	-	2	1,909	78,550	
	대로	9	5,639	175,999	3	2,352	87,940	-	-	-	6	3,287	88,059	
	중로	19	5,738	99,973	10	3,394	70,177	3	477	7,392	6	1,867	22,404	
	소로	27	3,605	34,778	26	3,475	33,738	1	130	1,040	-	-	-	

자동차 전용 도로	소계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지하 도로	소계	4	638	-	-	-	-	4	638	-	-	-	-	
	중로	1	161	-	-	-	-	1	161	-	-	-	-	
	소로	3	477	-	-	-	-	3	477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47	4,466	34,310	16	1,873	18,752	-	-	-	31	2,593	15,558	
	소로	47	4,466	34,310	16	1,873	18,752	-	-	-	31	2,593	15,558	
기타		-	-	14,547	-	-	-	-	-	-	-	-	-	가각등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4	주간선도로	1,599	근린공원 10	위서 광 3-1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262호	
변경	광로	3	1	40.4~51	주간선도로	1,599	성남시 창곡동 산108-4도 근린공원10-성	성남시 복정동 223-1구 위서 광 3-1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262호	
기정	광로	3	2	45	주간선도로	310	위서 광 3-2	위성 대 1-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광로	3	2	45~51	주간선도로	310	성남시 창곡동 1-3전 위서 광 3-2	성남시 창곡동 19-4도 위성 대 1-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1	37.5	주간선도로	1,225	위성 광 3-1	위하 대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1	1	37.5~47.5	주간선도로	1,227	성남시 창곡동 446-1구 위성 광 3-1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위하 대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대로	1	2	37.5	주간선도로	953	위성 광 3-1	위서 대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1	2	37.5~47.5	주간선도로	951	성남시 복정동 199-22도 위성 광 3-1	성남시 창곡동 19-4도 위서 대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3	36	주간선도로	175	위성 광 3-2	위서 대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1	3	36~39	주간선도로	174	성남시 창곡동 1-3전 위성 광 3-2	성남시 창곡동 4-2도 위서 대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1	27	집산도로	713	위성 대 1-1	위성 대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3	1	27~33	집산도로	713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1-1	성남시 창곡동 92-1전 위성 대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대로	3	2	27	보조간선도로	922	위성 대 1-1	위하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2	27~36	보조간선도로	922	성남시 창곡동 137-1대 위성 대 1-1	성남시 창곡동 234-2도 위하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3	27	보조간선도로	814	위성 대 1-1	위성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3	27~33	보조간선도로	814	성남시 창곡동 137잡 위성 대 1-1	성남시 창곡동 25전 위성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4	27	보조간선도로	759	위성 광 3-2	위성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4	27~30	보조간선도로	560	성남시 창곡동 51-3도 위서 대 3-6	성남시 창곡동 59-1전 위성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5	27	집산도로	240	위하 대 3-4	위성 대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5	27~30	집산도로	240	성남시 창곡동 128잡 위하 대 3-4	성남시 창곡동 92-1전 위성 대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대로	3	6	27	보조간선도로	38	성남시 창곡동 4-1구 위서 대 1-6	성남시 창곡동 4-2도 위서 대 3-6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1	1	20	국지도로	151	위성 대 3-1	위성 중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1	1	20~23	국지도로	150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1	2	20	국지도로	570	위성 대 1-2	위성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1	2	20~23	국지도로	570	성남시 복정동 214-5답 위성 대 1-2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1	3	20	보조간선도로	241	위성 광 3-1	위서 중 1-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3	20~20.9	보조간선도로	241	성남시 복정동 231-11전 위성 광 3-1	성남시 복정동 223-1구 위서 중 1-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4	20	보조간선도로	75	위성 광 3-2	위서 중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4	20~23	보조간선도로	75	성남시 창곡동 1-3전 위성 광 3-2	성남시 창곡동 4-2도 위서 중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5	24	집산도로	266	성남시 창곡동 산15-1임 위하 중 1-3	성남시 창곡동 143-5대 위성 대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6	23	국지도로	51	위성 광 3-1	위성 중 1-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6	23	국지도로	53	성남시 복정동 46-3대 위성 광 3-1	성남시 창곡동 439전 위성 중 1-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1	7	20	국지도로	289	위성 중 1-8	A2-1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7	20~23	국지도로	265	성남시 창곡동 415-26대 위성 중 1-8	성남시 창곡동 436잡 A2-1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8	20	집산도로	1,075	위성 대 1-1	위성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8	20~31.5	집산도로	1,075	성남시 창곡동 352-1도 위성 대 1-1	성남시 창곡동 195-2대 위성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9	20	집산도로	341	위성 대 3-2	위하 중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9	20~23	집산도로	341	성남시 창곡동 194-1전 위성 대 3-2	성남시 창곡동 232-2도 위하 중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중로	1	10	23~26	보조간선도로	358	성남시 창곡동 1-3전 위성 광 3-2	성남시 창곡동 46-1전 위성 대 3-4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284	성남시 복정동 203-9전 위성 대 1-2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114	위성 대 3-1	문화 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2	2	15~18	국지도로	114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문화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2	3	15.5	보조간선도로	126	위성 광 3-1	위성 소 3-1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2	3	17.9~18	보조간선도로	161	성남시 복정동 244-14도 위성 광 3-1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위성 소 2-2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2	4	18	국지도로	57	위성 중 1-9	위성 중 3-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2	4	18	국지도로	79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위성 중 1-9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위성 중 3-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251	위성 중 1-2	위성 중 2-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중로	3	1	12	국지도로	251	위성 중 1-2	위성 중 2-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147	위성 중 1-2	위성 중 2-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중로	3	2	12	국지도로	147	위성 중 1-2	위성 중 2-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3	12	국지도로	459	위성 중 2-1	위성 중 2-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중로	3	3	12	국지도로	459	위성 중 2-1	위성 중 2-1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3	4	12	국지도로	579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1-8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1-8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3	5	12	국지도로	381	성남시 창곡동 299답 위성 중 1-8	성남시 창곡동 278-11구 위성 소 2-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3	6	12	국지도로	121	위하 중 3-1	위성 중 2-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3	6	12	국지도로	125	성남시 창곡동 232-2도 위하 중 3-1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위성 중 2-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중로	3	7	12	국지도로	171	성남시 복정동 204-6구 위성 중 1-2	성남시 창곡동 386전 위성 중 2-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8	12	국지도로	232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1-2	성남시 창곡동 390-1전 위성 중 2-1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9	12	국지도로	379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2-1	성남시 창곡동 384-5전 위성 중 2-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203	위성 중 3-1	위성 중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117	성남시 복정동 201-2전 위성 중 3-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3-8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117	위성 중 3-1	위성 소 1-7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122	성남시 복정동 201-6전 위성 중 3-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3-8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123	위성 중 3-1	위성 소 1-7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1	3	10	국지도로	123	위성 중 3-1	위성 소 1-7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107	위성 중 2-1	위성 소 1-3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1	4	10	국지도로	107	위성 중 2-1	위성 소 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63	위성 소 1-3	위성 소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111	성남시 창곡동 산88-5임 위성 소 1-2	성남시 창곡동 390전 위성 소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10	위성 소 1-4	위성 소 1-8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121	성남시 창곡동 387-6전 위성 중 3-7	성남시 창곡동 390-2전 위성 중 3-8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138	위성 소 1-1	위성 소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7	10	국지도로	90	성남시 창곡동 387-5대 위성 소 1-2	성남시 창곡동 391전 위성 소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46	위성 중 2-1	위성 소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1	8	10	국지도로	146	위성 중 2-1	위성 소 1-1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122	위성 중 2-1	위성 중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1	9	10	국지도로	122	위성 중 2-1	위성 중 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09	위성 소 1-9	위성 소 1-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20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3-9	성남시 창곡동 384-5전 위성 중 3-9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09	위성 소 1-9	위성 소 1-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20	성남시 창곡동 376-1잡 위성 중 3-9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위성 중 3-9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14	위성 중 2-1	위성 중 3-3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14	위성 중 2-1	위성 중 3-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301	위성 중 1-3	위성 광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1	13	10	국지도로	373	성남시 복정동 226-9전 위성 중 1-3	성남시 복정동 197-16도 위성 광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20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5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4(특)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89	성남시 창곡동 340-2전 위성 소 1-16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263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3-4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3-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289	성남시 창곡동 340전 위성 소 1-16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30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3-4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31	위성 소 1-15	위성 소 1-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1	19	10	국지도로	32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5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31	위성 소 1-16	위성 소 1-1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1	20	10	국지도로	32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6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9	성남시 창곡동 290-4답 위성 소 1-15	성남시 창곡동 290-5대 위성 소 1-5(특)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9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7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6(특)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24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위성 대 3-2	성남시 창곡동 195-23대 위성 중 1-8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194	성남시 창곡동 195-15대 위성 소 1-23	성남시 창곡동 170-8답 위성 소 1-23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8	성남시 창곡동 193-3대 위성 소 1-24	성남시 창곡동 193-3대 위성 소 1-8(특)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소로	1	26	10	국지도로	279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3-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3-8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7	10	국지도로	32	성남시 창곡동 392-2잡 위성 중 3-8	성남시 창곡동 산89-2임 위성 소 1-26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8	10	국지도로	187	성남시 복정동 204-4답 위성 중 3-7	성남시 창곡동 387-6전 위성 중 3-7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29	10	국지도로	183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3-9	성남시 창곡동 377-6수 위성 중 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0	10	국지도로	165	성남시 창곡동 384-5전 위성 중 3-9	성남시 창곡동 377-6수 위성 중 3-9	일반도로	-	-	
신설	소로	1	31	11	국지도로	34	성남시 창곡동 393-6대 위성 중 1-2	성남시 창곡동 394-1대 위성 소 1-19(특)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1	8	국지도로	130	위성 중 3-5	수도공급설비 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2	1	8~12	국지도로	130	성남시 창곡동 278-11구 위성 중 3-5	성남시 창곡동 산65-1임 수도공급설비 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	6.5	보조간선도로	231	위성 중 2-3	위서 중 1-16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2	2	8	보조간선도로	198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위성 중 2-3	성남시 복정동 223-1구 위서 소 2-1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2	6.5	보조간선도로	251	위성 중 2-3	위서 소 3-2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2	3	8	보조간선도로	262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위성 중 2-3	성남시 복정동 223-1구 위서 소 2-2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	6.5	보조간선도로	13	위서 소 3-2	지구계서측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2	4	8	보조간선도로	17	성남시 복정동 257-11구 위서 소 2-2	성남시 복정동 258-11천 지구계서측	지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123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1-1	성남시 창곡동 350전 광장2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55	위성 광 3-1	위성 중 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1	2	10	특수도로	55	성남시 복정동 180전 위성 광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54	위성 광 3-1	위성 중 1-7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폐지	소로	1	3	10	특수도로	54	위성 광 3-1	위성 중 1-7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0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3-4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14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5	10	특수도로	9	성남시 창곡동 290-5대 위성 중 3-4	성남시 창곡동 290-5대 위성 소 1-2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6	10	특수도로	14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1-8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소 1-2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7	10	특수도로	343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대 1-1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위성 중 1-8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8	10	특수도로	9	성남시 창곡동 195-12전 위성 중 1-8	성남시 창곡동 193-3대 위성 소 1-25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9	10	특수도로	328	성남시 창곡동 240-1답 위성 대 3-2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위성 중 1-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0	10	특수도로	233	성남시 창곡동 137-4잡 광장 17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위성 중 1-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1	10	특수도로	100	성남시 창곡동 137잡 광장 18	성남시 창곡동 137잡 A2-4-성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2	10	특수도로	98	성남시 창곡동 120-7구 위성 대 3-3	성남시 창곡동 114-3도 주제공원 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3	10	특수도로	92	위성 중 1-5	철도 1-성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1	13	10	특수도로	93	성남시 창곡동 130잡 위성 중 1-5	성남시 창곡동 92-8전 철도1-성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4	10	특수도로	103	성남시 창곡동 92-1전 위성 대 3-5	성남시 창곡동 92-8전 철도1-성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5	10	특수도로	110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광장 19	성남시 창곡동 25전 A2-2-성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6	10	특수도로	223	성남시 창곡동 27전 광장 20	성남시 창곡동 46-1전 A2-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7	10	특수도로	45	위성 중 1-2	공공공지 25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폐지	소로	1	17	10	특수도로	45	위성 중 1-2	공공공지 25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1	18	10	특수도로	18	위성 중 1-2	위성 소 1-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폐지	소로	1	18	10	특수도로	18	위성 중 1-2	위성 소 1-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1	19	11	특수도로	22	성남시 창곡동 394-1대 위성 소 1-31	성남시 창곡동 394-1대 위성 대 1-1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104	위성 대 3-1	광장 2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3	1	6	특수도로	144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146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109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광장 2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142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2-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25	위성 중 1-1	위성 중 3-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5	6	특수도로	25	위성 중 1-1	위성 중 3-1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120	위성 중 3-1	위성 소 1-7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6	6	특수도로	120	위성 중 3-1	위성 소 1-7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3	위성 소 3-6(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7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3	위성 소 3-6(특)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117	위성 중 2-1	위성 소 1-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8	6	특수도로	117	위성 중 2-1	위성 소 1-3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25	위성 대 3-1	위성 중 3-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9	6	특수도로	25	위성 대 3-1	위성 중 3-1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17	위성 중 3-1	위성 소 3-8(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10	6	특수도로	17	위성 중 3-1	위성 소 3-8(특)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1	6	특수도로	30	위성 소 1-7	위성 소 1-8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11	6	특수도로	30	위성 소 1-7	위성 소 1-8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2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8	위성 소 3-13(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12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8	위성 소 3-13(특)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3	6	특수도로	134	위성 소 1-1	위성 중 2-1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13	6	특수도로	134	위성 소 1-1	위성 중 2-1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4	6	특수도로	18	위성 소 3-13(특)	위성 중 3-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14	6	특수도로	18	위성 소 3-13(특)	위성 중 3-2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5	6	특수도로	26	위성 대 1-2	위성 중 3-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소로	3	15	6	특수도로	26	위성 대 1-2	위성 중 3-2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150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2-2	성남시 창곡동 374-3수 주제공원 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7	6	특수도로	14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2-2	성남시 창곡동 374-3수 주제공원 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18	6	특수도로	25	위성 대 3-1	위성 중 3-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3	18	6	특수도로	28	성남시 창곡동 376-1잡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376-1잡 위성 소 1-2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19	6	특수도로	17	위성 중 3-3	위성 소 3-20(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3	19	6	특수도로	32	성남시 창곡동 376-1잡 위성 소 1-29	성남시 창곡동 376-1잡 위성 중 3-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0	6	특수도로	124	위성 중 2-1	위성 중 3-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20	6	특수도로	124	위성 중 2-1	위성 중 3-3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1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9	위성 소 3-20(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21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9	위성 소 3-20(특)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2	6	특수도로	33	위성 소 1-9	어린이공원 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3	22	6	특수도로	44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3-9	성남시 창곡동 377-4전 어린이공원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3	6	특수도로	28	위성 소 1-12	어린이공원 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3	23	6	특수도로	28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위성 중 3-9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어린이공원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4	6	특수도로	40	위성 중 3-3	위성 소 1-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3	24	6	특수도로	34	성남시 창곡동 384-1전 위성 소 1-30	성남시 창곡동 384-1전 위성 중 3-9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5	6	특수도로	59	위성 중 2-1	위성 소 3-24(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폐지	소로	3	25	6	특수도로	59	위성 중 2-1	위성 소 3-24(특)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6	6	특수도로	28	위성 대 1-2	위성 중 3-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소로	3	26	6	특수도로	28	성남시 창곡동 383-2도 위성 대 1-2	성남시 창곡동 384-1전 위성 소 1-30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7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2	위성 소 3-6(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폐지	소로	3	27	6	특수도로	17	위성 소 1-2	위성 소 3-6(특)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8	6	특수도로	47	위성 중 3-3	위성 소 3-24(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폐지	소로	3	28	6	특수도로	47	위성 중 3-3	위성 소 3-24(특)	보행자전용도로	-	-	
기정	소로	3	29	6	특수도로	174	성남시 창곡동 122-1대 위성 대 3-3	성남시 창곡동 114-1답 위성 소 1-12(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0	6	특수도로	197	성남시 창곡동 111-1답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122-1대 위성 대 3-3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1	6	특수도로	241	성남시 창곡동 111-2답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82-4답 주제공원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2	6	특수도로	168	성남시 창곡동 80-2답 위성 대 1-2	성남시 복정동 207-13도 위서 소 3-17(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3	6	특수도로	96	성남시 창곡동 산18-5임 위성 대 3-3	성남시 창곡동 92-8전 위성 소 1-13(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4	6	특수도로	96	성남시 창곡동 산18-5임 위성 대 3-3	성남시 창곡동 92-8전 위성 소 1-14(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35	6	특수도로	142	성남시 창곡동 산16-1임 위하 소 3-3(특)	성남시 창곡동 92-8전 위성 소 1-13(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신설	소로	3	36	6	특수도로	50	성남시 복정동 179-1주 위성 광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중 1-2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37	6	특수도로	2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대 3-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소 1-26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38	6	특수도로	54	성남시 복정동 182-2전 위성 광 3-1	성남시 복정동 181-2전 위성 중 1-2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39	6	특수도로	18	성남시 복정동 204-2도 위성 중 1-2	성남시 창곡동 산88-7임 위성 소 1-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0	6	특수도로	34	성남시 창곡동 산88-7임 위성 소 1-1	성남시 창곡동 산88-7임 위성 소 1-2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1	6	특수도로	100	성남시 창곡동 산88-7임 위성 소 1-2	성남시 창곡동 388답 위성 소 1-6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2	6	특수도로	18	성남시 창곡동 388답 위성 소 1-6	성남시 창곡동 388답 위성 중 2-1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3	6	특수도로	18	성남시 창곡동 388답 위성 중 2-1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위성 소 1-10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4	6	특수도로	40	성남시 창곡동 385-2구 위성 소 1-11	성남시 창곡동 377-6수 위성 중 3-9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5	6	특수도로	34	성남시 복정동 204답 위성 소 1-28	성남시 복정동 201-6전 위성 중 3-7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6	6	특수도로	24	성남시 복정동 204-3답 위성 대 1-2	성남시 복정동 204-3답 위성 소 1-28	보행자전용도로	-	-	
신설	소로	3	47	6	특수도로	28	성남시 복정동 산83-1임 위성 대 1-2	성남시 복정동 산83-1 위성 소 1-28	보행자전용도로	-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1	광로 3-1	• 도로변경 (B=40.4~51m, L=1,59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광로 3-2	광로 3-2	• 도로변경 (B=45~51m, L=31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1	대로 1-1	• 도로변경 (B=37.5~47.5m, L=1,227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2	대로 1-2	• 도로변경 (B=37.5~47.5m, L=95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3	대로 1-3	• 도로변경 (B=36~39m, L=17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1	대로 3-1	• 도로변경 (B=27~33m, L=71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2	대로 3-2	• 도로변경 (B=27~36m, L=92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3	대로 3-3	• 도로변경 (B=27~33m, L=81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4	대로 3-4	• 도로변경 (B=27~30m, L=56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5	대로 3-5	• 도로변경 (B=27~30m, L=24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대로 3-6	• 도로신설 (B=27m, L=3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 1-1	중로 1-1	• 도로변경 (B=20~23m, L=15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2	중로 1-2	• 도로변경 (B=20~23m, L=57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3	중로 1-3	• 도로변경 (B=20~20.9m, L=24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4	중로 1-4	• 도로변경 (B=20~23m, L=7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6	중로 1-6	• 도로변경 (B=23m, L=5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7	중로 1-7	• 도로변경 (B=20~23m, L=26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8	중로 1-8	• 도로변경 (B=20~31.5m, L=1,07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9	중로 1-9	• 도로변경 (B=20~23m, L=34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중로 1-10	• 도로신설 (B=23~26m, L=35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 2-2	중로 2-2	• 도로변경 (B=15~18m, L=11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3	중로 2-3	• 도로변경 (B=17.9~18m, L=16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4	중로 2-4	• 도로변경 (B=18m, L=7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3-1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 3-2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 3-3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중로 3-6	중로 3-6	• 도로변경 (B=12m, L=12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중로 3-7	• 도로신설 (B=12m, L=17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중로 3-8	• 도로신설 (B=12m, L=23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중로 3-9	• 도로신설 (B=12m, L=37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 1-1	소로 1-1	• 도로변경 (B=10m, L=117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2	소로 1-2	• 도로변경 (B=10m, L=12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3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4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5	소로 1-5	• 도로변경 (B=10m, L=11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6	소로 1-6	• 도로변경 (B=10m, L=12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7	소로 1-7	• 도로변경 (B=10m, L=9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8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9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10	소로 1-10	• 도로변경 (B=10m, L=12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11	소로 1-11	• 도로변경 (B=10m, L=12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12	-	• 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 1-13	소로 1-13	• 도로변경 (B=10m, L=37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19	소로 1-19	• 도로변경 (B=10m, L=3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20	소로 1-20	• 도로변경 (B=10m, L=3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	소로 1-26	• 도로신설 (B=10m, L=27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27	• 도로신설 (B=10m, L=3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28	• 도로신설 (B=10m, L=187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29	• 도로신설 (B=10m, L=18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30	• 도로신설 (B=10m, L=16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소로 1-31	• 도로신설 (B=11m, L=3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 2-1	소로 2-1	• 도로변경 (B=8~12m, L=13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3-1	소로 2-2	• 도로변경 (B=8m, L=19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3-2	소로 2-3	• 도로변경 (B=8m, L=26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3-3	소로 2-4	• 도로변경 (B=8m, L=17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1-2	소로 1-2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10m, L=5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1-3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13	소로 1-13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10m, L=9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1-17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1-18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소로 1-19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11m, L=2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3-1	소로 3-1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14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5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6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7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8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9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10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11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12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13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14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15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18	소로 3-18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2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19	소로 3-19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3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20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21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22	소로 3-22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4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23	소로 3-23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2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24	소로 3-24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3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25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26	소로 3-26	• 보행자전용도로변경 (B=6m, L=2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변경
소로 3-27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소로 3-28	-	• 보행자전용도로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폐지
-	소로 3-36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5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37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2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38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5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39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1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0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3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1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10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2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1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3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1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4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4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5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3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6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2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소로 3-47	• 보행자전용도로신설 (B=6m, L=2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라) 하남시

■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비고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38	7,798	187,628	19	4,717	106,120	5	666	10,452	14	2,415	58,584	
일반도로	소계	31	7,382	171,892	16	4,525	104,200	5	666	10,452	10	2,191	57,240	
	광로	1	214	9,309	-	-	-	-	-	-	1	214	9,309	
	대로	10	3,074	90,485	4	1,377	44,666	-	-	-	6	1,697	45,819	
	중로	17	3,459	66,580	10	2,721	55,264	5	666	10,452	2	72	864	
	소로	3	635	5,518	2	427	4,270	-	-	-	1	208	1,248	
자동차 전용 도로	소계	-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
지하 도로	소계	-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
	소로	-	-	-	-	-	-	-	-	-	-	-	-	-
보행자 전용 도로	소계	7	416	3,264	3	192	1,920	-	-	-	4	224	1,344	
	소로	7	416	3,264	3	192	1,920	-	-	-	4	224	1,344	
기타		-	-	12,472	-	-	-	-	-	-	-	-	-	가각등

■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1	43.5	주간선도로	214	위하 대 1-3	위하 대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광로	3	1	43.5~47.5	주간선도로	214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대 1-3	하남시 학암동 3-5전 위하 대 1-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1	37.5	주간선도로	601	위성 대 1-1	위서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1	1	37.5~47.5	주간선도로	601	하남시 학암동 535잡 위성 대 1-1	하남시 학암동 620구 위서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대로	1	2	39	주간선도로	630	위서 대 1-3	위하 대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1	2	39~42	주간선도로	630	하남시 학암동 629구 위서 대 1-3	하남시 학암동 535잡 위하 대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3	37.5	주간선도로	68	위서 대 1-2	위하 광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1	3	37.5~43.5	주간선도로	68	하남시 학암동 273-1잡 위서 대 1-2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광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1	4	37.5	주간선도로	78	위하 광 3-1	주차장 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1	4	37.5~43.5	주간선도로	78	하남시 학암동 3-5전 위하 광 3-1	하남시 학암동 5-5임 주차장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1	27	보조간선도로	19	위하 대 1-1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3	1	27~30	보조간선도로	19	하남시 학암동 504잡 위하 대 1-1	하남시 학암동 469-1잡 위서 대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대로	3	2	27	보조간선도로	943	위성 대 3-2	위하 대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3	2	27~30	보조간선도로	943	하남시 학암동 465잡 위성 대 3-2	하남시 학암동 504잡 위하 대 1-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대로	3	3	27	집산도로	5	위하 대 1-2	위서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대로	3	3	27~30	집산도로	5	하남시 학암동 566잡 위하 대 1-2	하남시 학암동 627구 위서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4	27	집산도로	76	하남시 학암동 566잡 위하 대 1-2	하남시 학암동 630임 위성 대 3-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5	27	보조간선도로	605	위하 대 1-1	위하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대로	3	5	27~30	보조간선도로	605	하남시 학암동 535잡 위하 대 1-1	하남시 학암동 434잡 위하 대 3-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대로	3	6	27	보조간선도로	49	하남시 학암동 3-5전 위하 광 3-1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서 대 3-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	20	국지도로	20	하남시 학암동 625구 위서 중 1-1	하남시 학암동 548잡 위하 중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1	2	24	집산도로	158	위하 대 1-2	위서 중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1	2	24~27	집산도로	158	하남시 학암동 561잡 위하 대 1-2	하남시 학암동 625구 위서 중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1	3	24	집산도로	53	하남시 학암동 561잡 위하 대 1-2	하남시 학암동 630임 위성 중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4	20	집산도로	65	위성 중 1-9	위하 대 3-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4	20~23	집산도로	65	하남시 학암동 232-2도 위성 중 1-9	하남시 학암동 514잡 위하 대 3-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358	위하 대 3-2	위하 대 3-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5	20~23	집산도로	358	하남시 학암동 287잡 위하 대 3-2	하남시 학암동 514잡 위하 대 3-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6	20	집산도로	1,319	위하 광 3-1	위서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6	20~23	집산도로	1,319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광 3-1	하남시 학암동 103전 위서 대 1-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7	20	국지도로	340	위하 광 3-1	위하 중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7	20~23	국지도로	340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광 3-1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1-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8	20	집산도로	29	위하 광 3-1	위서 중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1	8	20~23	집산도로	29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광 3-1	하남시 학암동 273-1잡 위서 중 1-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9	20	집산도로	226	하남시 학암동 614도 위서 중 1-13	하남시 학암동 252잡 위하 중 1-10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1	10	20	집산도로	153	하남시 학암동 618도 위서 중 1-12	하남시 학암동 252잡 위하 중 2-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73	위하 대 3-2	위하 중 1-10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2	1	15~18	집산도로	173	하남시 학암동 499잡 위하 대 3-2	하남시 학암동 252잡 위하 중 1-10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85	위하 중 1-10	폐기물처리시설 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중로	2	2	15~17	국지도로	85	하남시 학암동 252잡 위하 중 1-10	하남시 학암동 252잡 폐기물처리시설1	일반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178	하남시 학암동 산8임 위하 중 1-6	하남시 학암동 산105구 위하 소 3-1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2	4	18	국지도로	154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1-6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1-7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구분	규모				기 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76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1-6	하남시 학암동 산1임 광장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56	위하 대 3-5	위성 중 3-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52	하남시 학암동 482임 위하 대 3-5	하남시 학암동 482임 위성 중 3-6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20	하남시 학암동 621천 위하 대 3-2	하남시 학암동 621천 연결녹지 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150	하남시 학암동 38임 위하 중 1-6	하남시 학암동 산30임 근린공원 4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77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2-5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2-5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08	위하 중 2-3	수도공급설비 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변경	소로	3	1	6~15	국지도로	208	하남시 학암동 산105구 위하 중 2-3	하남시 학암동 산3임 수도공급설비 2	일반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74	하남시 학암동 37답 위하 중 1-6	하남시 학암동 54전 A3-4-하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42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1-7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2-4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76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2-4	하남시 학암동 산1임 광장 4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1	6	특수도로	68	하남시 학암동 561잡 광장 14	하남시 학암동 625구 위서 소 3-1(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2	6	특수도로	62	하남시 학암동 561잡 광장 15	하남시 학암동 625구 위서 소 3-2(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소로	3	3	6	특수도로	75	하남시 학암동 561잡 광장 14	하남시 학암동 630임 위성 3-35(특)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19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중 1-6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위하 소 1-2	보행자전용도로	-	국토부 2010-754호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광로 3-1	광로 3-1	• 도로변경 (B=43.5~47.5m, L=214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1	대로 1-1	• 도로변경 (B=37.5~47.5m, L=601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2	대로 1-2	• 도로변경 (B=39~42m, L=63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3	대로 1-3	• 도로변경 (B=37.5~43.5m, L=6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1-4	대로 1-4	• 도로변경 (B=37.5~43.5m, L=7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1	대로 3-1	• 도로변경 (B=27~30m, L=1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2	대로 3-2	• 도로변경 (B=27~30m, L=94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3	대로 3-3	• 도로변경 (B=27~30m, L=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대로 3-5	대로 3-5	• 도로변경 (B=27~30m, L=60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2	중로 1-2	• 도로변경 (B=24~27m, L=15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4	중로 1-4	• 도로변경 (B=20~23m, L=6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1-5	중로 1-5	• 도로변경 (B=20~23m, L=35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6	중로 1-6	• 도로변경 (B=20~23m, L=1,31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7	중로 1-7	• 도로변경 (B=20~23m, L=340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1-8	중로 1-8	• 도로변경 (B=20~23m, L=29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1	중로 2-1	• 도로변경 (B=15~18m, L=173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2-2	중로 2-2	• 도로변경 (B=15~17m, L=85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중로 3-1	중로 3-1	• 도로변경 (B=12m, L=52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소로 3-1	소로 3-1	• 도로변경 (B=6~15m, L=208m)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변경

2) 주차장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개소	41,396	감)98	41,298		
기정	1	주차장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9,951	-	9,951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변경	2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110	감)98	1,012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310	-	1,31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4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1,575	-	1,575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변경	5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	-	1,480	국토부 2010-754호	근린상업지역
기정	6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6	-	1,296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7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338-3답 일원	1,187	-	1,187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변경	8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	-	2,628	국토부 2009-1423호	일반상업지역
변경	9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4	-	1,164	국토부 2009-142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10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36	-	1,236	국토부 2009-1423호	준주거지역
기정	11	복정지하철 환승주차장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	-	18,459	송파구고시 제1996-8호 (1996.5.1)	자연녹지지역
신설	2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271-1전 일원	-	1,110	1,110	-	
신설	3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	1,310	1,310	-	
신설	4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	1,575	1,575	-	
신설	5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	1,480	1,480	-	
신설	6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	1,296	1,296	-	
신설	7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338-3답 일원	-	1,187	1,187	-	
변경	8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52	감)24	2,628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9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668	496	1,164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10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873	363	1,236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11	복정지하철 환승주차장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034	425	18,459	송파구고시 제1996-8호(1996.5.1)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개소	22,454	감)98	22,356		
변경	2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110	감)98	1,012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310	-	1,31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4	주차장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1,575	-	1,575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11	복정지하철 환승주차장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	-	18,459	송파구고시 제1996-8호 (1996.5.1)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차장	• 변경 위치 : 송파구 거여동산49 일원 A = 1,110㎡ → 1,01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개소	8,991	-	8,991		
변경	5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	-	1,480	국토부 2010-754호	근린상업지역
기정	6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6	-	1,296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7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338-3답 일원	1,187	-	1,187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변경	8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	-	2,628	국토부 2009-1423호	일반상업지역
변경	9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4	-	1,164	국토부 2009-142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10	주차장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36	-	1,236	국토부 2009-1423호	준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주차장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A = 1,48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형상변경
8	주차장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A = 2,62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형상변경
9	주차장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A = 1,16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형상변경
10	주차장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A = 1,23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형상변경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9,951	-	9,951		
기정	1	주차장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9,951	-	9,951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3) 자동차정류장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56,005	감)284	55,721		
변경	1-서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송파구 장지동 562답 일원	55,613	감)146	55,46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성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392	감)138	254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55,613	감)146	55,467		
변경	1-서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송파구 장지동 562답 일원	55,613	감)146	55,46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서	자동차정류장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62답 일원 A = 55,613㎡ → 55,46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392	감)138	254		
변경	1-성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392	감)138	254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성	자동차정류장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A = 392㎡ → 25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4) 철도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	-	5,497	63,255		
기정	1-서-1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485-2잡 일원	송파구 거여동 산71-36임 일원	위례지구	2,620	20,961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1-서-2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송파구 장지동 583-9도 일원	위례지구	917	8,804	국토부 2010-754호	
변경	1-서-2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송파구 장지동 583-9도 일원	위례지구	917	8,829	-	
기정	1-성	철도	도시철도	성남시 창곡동 207-3도 일원	성남시 창곡동 산15-1임 일원	위례지구	1,060	8,475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하	철도	도시철도	하남시 학암동 530임 일원	하남시 학암동 625구 일원	위례지구	180	1,442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위례지구	630	5,048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성남시 복정동 179-1주 일원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위례지구	720	5,610	-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592-5답 일원			-	17,938	국토부 2010-754호	차량기지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	-	3,537	47,728		
기정	1-서-1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485-2잡 일원	송파구 거여동 산71-36임 일원	위례지구	2,620	20,961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1-서-2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송파구 장지동 583-9도 일원	위례지구	917	8,804	국토부 2010-754호	
변경	1-서-2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송파구 장지동 583-9도 일원	위례지구	917	8,829	-	
기정	3	철도	도시철도	송파구 장지동 592-5답 일원			-	17,938	국토부 2010-754호	차량기지

주) 철도1-서-1 : 하천1(986㎡), 도로(1,575㎡)와 중복결정

철도1-서-2 : 주차장11(1,298㎡), 광장24-서-2(937㎡), 도로(857㎡)와 중복결정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서-2	철도	• 변경 기점 :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종점 : 송파구 장지동 583-9도 L = 917m A = 8,804㎡ → 8,82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	-	1,780	14,085		
기정	1-성	철도	도시철도	성남시 창곡동 207-3도 일원	성남시 창곡동 산15-1임 일원	위례지구	1,060	8,475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	철도	도시철도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위례지구	630	5,048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2	철도	도시철도	성남시 복정동 179-1주 일원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위례지구	720	5,610	-	

주) 철도1-성 : 도로(743㎡)와 중복결정
철도2 : 하천2(357㎡), 수도1(120㎡), 도로(498㎡)와 중복결정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철도	• 변경 기점 : 성남시 복정동 179-1주 일원, 종점 :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L = 630m → 720m A = 5,048㎡ → 5,61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	-	-	180	1,442		
기정	1-하	철도	도시철도	하남시 학암동 530임 일원	하남시 학암동 625구 일원	위례지구	180	1,442	국토부 2009-1423호	

나. 공간시설

1) 광장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0개소	75,807	7,770	83,577		
소계				25개소	40,304	607	40,911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575전 일원	2,023	-	2,02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산105구 일원	1,542	-	1,54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4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575	-	575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5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일원	960	-	96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정	6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산40임 일원	929	-	929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7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1잡 일원	2,100	-	2,10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8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근린상업지역
기정	9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10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11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19잡 일원	1,048	-	1,04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2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910	-	91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3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89-2잡 일원	887	-	88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4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61잡 일원	3,608	-	3,60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기정	15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61잡 일원	3,998	-	3,99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6-성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128-1잡 일원	5,408	-	5,40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16-하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61잡 일원	3,243	-	3,243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17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137-4잡 일원	1,078	-	1,07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8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133전 일원	1,019	-	1,019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9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050	-	1,05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0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050	-	1,05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1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814	-	814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폐지	22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422	감)1,422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22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603-3주 일원	-	933	933	-	일반상업지역
변경	23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393-1대 일원	1,840	14	1,854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신설	26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561-7답 일원	-	1,082	1,082	-	일반상업지역
소계				5개소	35,503	7,163	42,666		
변경	24-서-1	광장	교통광장	송파구 장지동 553-36도 일원	14,049	12,047	26,09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4-서-2	광장	교통광장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3,265	1,114	4,379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폐지	24-성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17,143	감)17,143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24-성-1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창곡동 4답 일원	-	18	18	-	자연녹지지역
신설	24-성-2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	11,127	11,127	-	자연녹지지역
기정	25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복정동 232-20도 일원	1,046	-	1,04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4개소	29,923	15,176	45,099		
소계				12개소	12,609	2,015	14,624		
기정	1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575전 일원	2,023	-	2,02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기정	5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일원	960	-	96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정	6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거여동 산40임 일원	929	-	929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7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1잡 일원	2,100	-	2,10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8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근린상업지역
기정	9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10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12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910	-	91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3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389-2잡 일원	887	-	88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22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603-3주 일원	-	933	933	-	일반상업지역
신설	26	광장	일반광장	송파구 장지동 561-7답 일원	-	1,082	1,082	-	일반상업지역
소계				2개소	17,314	13,161	30,475		
변경	24-서-1	광장	교통광장	송파구 장지동 553-36도 일원	14,049	12,047	26,09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4-서-2	광장	교통광장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3,265	1,114	4,379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주) 광장24-서-1 : 도로(5,328㎡)와 중복결정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광장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603-3주 일원 A=93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26	광장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61-7답 일원 A=1,08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24-서-1	광장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53-36도 일원 A=14,049㎡ → 26,09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4-서-2	광장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A=3,265㎡ → 4,37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개소	31,870	감)7,406	24,464		
소계				7개소	13,681	감)1,408	12,273		
기정	16-성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128-1잡 일원	5,408	-	5,40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17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137-4잡 일원	1,078	-	1,07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8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133전 일원	1,019	-	1,019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9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050	-	1,05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0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050	-	1,05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1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814	-	814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폐지	22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422	감)1,422	-	국토부 2010-754호	-
변경	23	광장	일반광장	성남시 창곡동 393-1대 일원	1,840	14	1,854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소계				3개소	18,189	감)5,998	12,191		
폐지	24-성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17,143	감)17,143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24-성-1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창곡동 4답 일원	-	18	18	-	자연녹지지역
신설	24-성-2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	11,127	11,127	-	자연녹지지역
기정	25	광장	교통광장	성남시 복정동 232-20도 일원	1,046	-	1,04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주) 광장24-성 : 도로(692㎡)와 중복결정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광장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23	광장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393-1대 일원 A=1,840㎡ → 1,85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4-성	광장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24-성-1	광장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4답 일원 A=1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4-성-2	광장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A=11,12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개소	-	14,014	14,014		
신설	2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산105구 일원	-	1,542	1,54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신설	4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	575	575	국토부 2010-754호	일반상업지역
신설	11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19잡 일원	-	1,048	1,04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14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61잡 일원	-	3,608	3,60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신설	15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19잡 일원	-	3,998	3,99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신설	16-하	광장	일반광장	하남시 학암동 561잡 일원	-	3,243	3,243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주) 광장14 : 도로(3,608㎡)와 중복결정
광장15 : 도로(3,998㎡)와 중복결정

2) 공원

가)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2(10)	1,345,076	22(10)	1,344,674	3	4,672	3	4,535
수변공원	1	71,770	1	71,770	-	-	-	-
역사공원	1	79,953	1	80,171	-	-	-	-
체육공원	-	-	-	-	-	-	-	-
근린공원	17(10)	1,188,681	17(10)	1,188,198	-	-	-	-
어린이공원	3	4,672	3	4,535	3	4,672	3	4,535

주) 괄호( )안에 숫자는 행정구역에 걸쳐 분할된 공원 개소수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10(3)	372,098	10(3)	372,006	1	1,647	1	1,510
수변공원	1	71,770	1	71,770	-	-	-	-
역사공원	-	-	-	-	-	-	-	-
체육공원	-	-	-	-	-	-	-	-
근린공원	8(3)	298,681	8(3)	298,726	-	-	-	-
어린이공원	1	1,647	1	1,510	1	1,647	1	1,510

주) 괄호( )안에 숫자는 행정구역에 걸쳐 분할된 공원 개소수

근린공원11-서 : 수도1(2,160㎡)과 중복결정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3)개소	372,098	감)92	372,006		
소 계				1개소	71,770	-	71,770		
기정	1	주제공원	수변공원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71,770	-	71,77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소 계				8(3)개소	298,681	45	298,726		
기정	1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거여동 산71-17임 일원	79,750	-	79,75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거여동 산41-1임 일원	110,317	-	110,31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거여동 371대 일원	37,524	-	37,524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5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거여동 476-1임 일원	19,368	-	19,36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7-서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8,826	-	8,82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8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624	-	10,624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1-서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6,653	45	6,69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2-서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송파구 거여동 573-1임 일원	25,619	-	25,61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소 계				1개소	1,647	감)137	1,510		
변경	1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송파구 거여동 산61-3임 일원	1,647	감)137	1,51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1-서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A=6,653㎡ → 6,69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1	어린이공원	• 변경 위치 : 송파구 거여동 산61-3임 일원 A=1,647㎡ → 1,51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6(3)	736,634	6(3)	736,324	2	3,025	2	3,025
수변공원	-	-	-	-	-	-	-	-
역사공원	1	79,953	1	80,171	-	-	-	-
체육공원	-	-	-	-	-	-	-	-
근린공원	3(3)	653,656	3(3)	653,128	-	-	-	-
어린이공원	2	3,025	2	3,025	2	3,025	2	3,025

주) 괄호( )안에 숫자는 행정구역에 걸쳐 분할된 공원 개소수

주제공원2 : 수도1(16,014㎡)과 중복결정

근린공원10-성 : 수도1(11,885㎡)과 중복결정

근린공원11-성 : 수도1(1,875㎡)과 중복결정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3)개소	736,634	감)310	736,324		
소 계				1개소	79,953	218	80,171		
변경	2	주제공원	역사공원	성남시 창곡동 379-2답 일원	79,953	218	80,17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소 계				3(3)개소	653,656	감)528	653,128		
변경	9-성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성남시 창곡동 산33임 일원	12,719	감)446	12,27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0-성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성남시 창곡동 산33임 일원	630,750	감)68	630,68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1-성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성남시 복정동 223답 일원	10,187	감)14	10,17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소 계				2개소	3,025	-	3,025		
기정	2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500	-	1,50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변경	3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1,525	-	1,525	국토부 2009-1423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주제공원 (역사공원)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379-2답 일원 A = 79,953㎡ → 80,17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9-성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33임 일원 A = 12,719㎡ → 12,27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10-성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33임 일원 A = 630,750㎡ → 630,68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11-성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3답 일원 A = 10,187㎡ → 10,17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	생활권공원 (어린이공원)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A = 1,500㎡ → 1,50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형상변경

라) 하남시(변경 없음)

■ 총괄표

구분	행정구역(㎡)				시가화구역(㎡)			
	기정		변경후		기정		변경후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6(4)	236,344	6(4)	236,344	-	-	-	-
수변공원	-	-	-	-	-	-	-	-
역사공원	-	-	-	-	-	-	-	-
체육공원	-	-	-	-	-	-	-	-
근린공원	6(4)	236,344	6(4)	236,344	-	-	-	-
어린이공원	-	-	-	-	-	-	-	-

주) 괄호( )안에 숫자는 행정구역에 걸쳐 분할된 공원 개소수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4)개소	236,344	-	236,344		
소 계				6(4)개소	236,344	-	236,344		
기정	4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하남시 학암동 산8임 일원	168,843	-	168,84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6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10,031	-	10,03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7-하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5,630	-	5,63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9-하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하남시 학암동 산100임 일원	40,500	감)2,273	38,22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0-하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하남시 학암동 429임 일원	4,101	2,273	6,374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2-하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7,239	-	7,23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 원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9-하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 신설 위치 : 하남시 학암동 산100임 일원 A = 40,500㎡ → 38,22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10-하	생활권공원 (근린공원)	• 신설 위치 : 하남시 학암동 429임 일원 A = 4,101㎡ → 6,37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 녹지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7개소	242,578	감)7,258	235,320		
소계				58개소	166,067	감)7,258	158,809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706	-	706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일원	611	-	611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2,083	감)330	1,753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1-1임 일원	4,359	-	4,359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5-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1-1임 일원	2,842	-	2,84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5-하-1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103전 일원	676	-	67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5-하-2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90임 일원	1,037	-	1,03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064	-	1,064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086	-	1,086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274답 일원	1,203	-	1,203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3,823	-	3,82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9-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103전 일원	514	-	514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3,632	-	3,63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453-1답 일원	861	-	861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378답 일원	2,408	-	2,40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산13-2도 일원	2,589	-	2,58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산15-2임 일원	16,017	2	16,01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408임 일원	3,735	-	3,73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12-1전 일원	3,374	-	3,374	국토부 2010-754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7-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476임 일원	700	-	70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7-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226잡 일원	16,919	-	16,91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1,701	-	1,701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3,286	-	3,28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0-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582	-	1,58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0-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137-4잡 일원	1,742	-	1,74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71	-	171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880	-	1,88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317전 일원	3,717	-	3,71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341종 일원	2,287	-	2,28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47-1답 일원	3,499	477	3,97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3,612	-	3,61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3,835	-	3,83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3,532	-	3,53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0-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23잡 일원	2,226	-	2,22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0-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66잡 일원	1,125	-	1,12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91-2임 일원	1,233	-	1,23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62-2답 일원	2,117	-	2,11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33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54-11도 일원	1,060	감)1,060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33-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19-10도 일원	-	9	9	-	자연녹지지역
신설	33-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답 일원	-	21	21	-	자연녹지지역
변경	34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634-10도 일원	3,017	558	3,575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5-서-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81답 일원	6,203	-	6,20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5-서-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36잡 일원	2,232	-	2,23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5-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1창 일원	3,721	-	3,721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6-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29-2답 일원	5	-	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36-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9,501	감)5,068	4,43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7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5전 일원	6,177	감)6,177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37-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56-3전 일원	-	1,219	1,219	-	자연녹지지역
신설	37-성-1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5전 일원	-	939	939	-	자연녹지지역
신설	37-성-2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	7,483	7,483	-	자연녹지지역
변경	38-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634-9도 일원	6,493	감)4,445	2,04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8-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4,125	996	5,12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9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457	-	1,45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40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2임 일원	3,435	감)790	2,64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41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3,460	감)3,460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41-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74-1전	-	1,707	1,707	-	일반상업지역
신설	41-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6-9전 일원	-	437	437	-	일반상업지역
변경	42-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3,184	감)1,133	2,051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변경	42-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73-1도 일원	886	감)5	881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폐지	43-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73-2답 일원	1,812	감)1,812	-	국토부 2010-754호	-
폐지	43-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6-9전 일원	315	감)315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43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	3,489	3,489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계				9개소	76,511	-	76,511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감이동 산85임 일원	9,878	-	9,87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578천 일원	5,488	-	5,48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서	녹지	연결녹지	송파구 거여동 459전 일원	4,521	-	4,52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하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145전 일원	20,191	-	20,19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504잡 일원	1,794	-	1,794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499잡 일원	2,609	-	2,60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287잡 일원	19,109	-	19,10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성남시 창곡동 244-1전 일원	2,551	-	2,551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송파구 장지동 19전 일원	10,370	-	10,37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개소	99,098	감)5,285	93,813		
소계				30개소	84,207	감)5,285	78,922		
기정	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4잡 일원	706	-	706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3임 일원	611	-	611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2,083	감)330	1,753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1-1임 일원	4,359	-	4,359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5-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1-1임 일원	2,842	-	2,84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6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064	-	1,064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7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086	-	1,086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정	8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274답 일원	1,203	-	1,203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9-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3,823	-	3,82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0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3,632	-	3,63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453-1답 일원	861	-	861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378답 일원	2,408	-	2,40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3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산13-2도 일원	2,589	-	2,58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4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산15-2임 일원	16,017	2	16,01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5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408임 일원	3,735	-	3,73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6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12-1전 일원	3,374	-	3,374	국토부 2010-754호	제2·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7-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거여동 476임 일원	700	-	70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9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3,532	-	3,53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0-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23잡 일원	2,226	-	2,22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91-2임 일원	1,233	-	1,23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62-2답 일원	2,117	-	2,11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33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54-11도 일원	1,060	감)1,060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33-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19-10 도 일원	-	9	9	-	자연녹지지역
변경	34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634-10도 일원	3,017	558	3,575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5-서-1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381답 일원	6,203	-	6,20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5-서-2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36잡 일원	2,232	-	2,23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6-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29-2답 일원	5	-	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37-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56-3전 일원	-	1,219	1,219	-	자연녹지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8-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634-9도 일원	6,493	감)4,445	2,04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신설	41-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74-1전	-	1,707	1,707	-	일반상업지역
변경	42-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3,184	감)1,133	2,051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폐지	43-서	녹지	완충녹지	송파구 장지동 573-2답 일원	1,812	감)1,812	-	국토부 2010-754호	-
소계				2개소	14,891	-	14,891		
기정	3-서	녹지	연결녹지	송파구 거여동 459전 일원	4,521	-	4,52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8	녹지	연결녹지	송파구 장지동 19전 일원	10,370	-	10,37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A=2,083㎡ → 1,75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4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거여동 산61-1임 일원 A=4,35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14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거여동 산61-1임 일원 A=16,017㎡ → 16,01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3	완충녹지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33-서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319-10 도 일원 A=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4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634-10도 일원 A=3,017㎡ → 3,575㎡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7-서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319-10 도 일원 A=1,21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8-서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634-9도 일원 A=6,493㎡ → 2,04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41-서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74-1전 A=1,70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42-서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A=3,184㎡ → 2,05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43-서	완충녹지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9개소	50,506	감)1,973	48,533		
소계				18개소	47,955	감)1,203	45,982		
기정	20-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582	-	1,582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1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137-4잡 일원	1,742	-	1,742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2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71	-	171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정	23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880	-	1,880	국토부 2010-754호	제1종 전용주거지역
기정	24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317전 일원	3,717	-	3,71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5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341종 일원	2,287	-	2,28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26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47-1답 일원	3,499	477	3,97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33-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답 일원	-	21	21	-	자연녹지지역
기정	35-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1창 일원	3,721	-	3,721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36-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9,501	감)5,068	4,43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37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5전 일원	6,177	감)6,177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37-성-1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5전 일원	-	939	939	-	자연녹지지역
신설	37-성-2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	7,483	7,483	-	자연녹지지역
변경	38-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4,125	996	5,12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9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457	-	1,45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40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2임 일원	3,435	감)790	2,64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41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3,460	감)3,460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41-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6-9전 일원	-	437	437	-	일반상업지역
변경	42-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73-1도 일원	886	감)5	881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43-성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46-9전 일원	315	감)315	-	국토부 2010-754호	-
신설	43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	3,489	3,489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계				1개소	2,551	-	2,551		
기정	7	녹지	연결녹지	성남시 창곡동 244-1전 일원	2,551	-	2,551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6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447-1답 일원 A=3,499㎡ → 3,97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3-성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4답 일원 A=2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6-성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A=9,501 → 4,43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7	완충녹지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37-성-1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5전 일원 A=93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7-성-2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A=7,48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8-성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A=4,125㎡ → 5,12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40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2임 일원 A=3,435㎡ → 2,645㎡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41	완충녹지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41-성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46-9전 일원 A=43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42-성	완충녹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73-1도 일원 A=886㎡ → 88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43-성	완충녹지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43	완충녹지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A=3,48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개소	92,974	-	92,974		
소계				10개소	33,905	-	33,905		
기정	5-하-1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103전 일원	676	-	67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5-하-2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90임 일원	1,037	-	1,037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9-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103전 일원	514	-	514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7-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226잡 일원	16,919	-	16,91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8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1,701	-	1,701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9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3,286	-	3,28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0-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1,200	-	1,20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7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3,612	-	3,61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8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3,835	-	3,83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30-하	녹지	완충녹지	하남시 학암동 566잡 일원	1,125	-	1,125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소계				6개소	59,069	-	59,069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감이동 산85임 일원	9,878	-	9,87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578천 일원	5,488	-	5,48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하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145전 일원	20,191	-	20,191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4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504잡 일원	1,794	-	1,794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5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499잡 일원	2,609	-	2,60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6	녹지	연결녹지	하남시 학암동 287잡 일원	19,109	-	19,10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4) 공공공지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7개소	93,870	1,289	95,159		
기정	1-서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587도 일원	7	-	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하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3-5전 일원	1,622	-	1,62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225-153대 일원	195	-	195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225-156대 일원	190	-	19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4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375-2전 일원	79	-	7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5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7,792	-	7,79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6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04잡 일원	835	-	835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7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499잡 일원	700	-	700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8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499잡 일원	383	-	383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9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621천 일원	890	-	890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0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19잡 일원	1,146	-	1,14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1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26잡 일원	4,438	-	4,43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2-성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산22-5임 일원	2,019	-	2,019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2-하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1,546	-	1,54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3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2,232	-	2,232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14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161답 일원	2,090	감)8	2,08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433답 일원	7,518	-	7,51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6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19-10천 일원	163	-	16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7-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431-6임 일원	20,410	감)878	19,53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7-성-1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1-1전 일원	507	1	50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7-성-2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1-3전 일원	807	-	80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8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777	-	77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9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910	-	910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0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052	-	2,052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1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5,253	-	5,25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2-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29-2답 일원	390	-	39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2-성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2,472	-	2,47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3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887	-	1,88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4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87-1전 일원	3,862	-	3,86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25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00-4전 일원	2,477	감)1,735	742	국토부 2010-754호	근린상업지역
변경	26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0-1전 일원	2,474	감164	2,31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27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일원	6,343	-	6,34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8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일원	985	9	994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9-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86-22수 일원	342	4	34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9-성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5답 일원	309	-	30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0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6-3대 일원	708	감)6	70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1-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86-4잡 일원	195	-	195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1-성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4천 일원	55	감)2	5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2-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92-7답 일원	2,979	감)2	2,97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2-성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81	감)5	7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3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37	-	1,83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4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622-9답 일원	1,913	감)1,105	80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신설	35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602-18답 일원	-	1,929	1,929	-	준주거지역
신설	36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66-14답 일원	-	1,440	1,440	-	일반상업지역
신설	37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	476	476	-	자연녹지지역
신설	38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	129	129	-	자연녹지지역
신설	39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182-2전 일원	-	1,206	1,206	-	근린상업지역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1개소	53,002	1,864	54,866		
기정	1-서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587도 일원	7	-	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225-153대 일원	195	-	195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225-156대 일원	190	-	190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4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375-2전 일원	79	-	7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5	공공공지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7,792	-	7,79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5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433답 일원	7,518	-	7,51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6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19-10천 일원	163	-	16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17-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431-6임 일원	20,410	감)878	19,53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8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777	-	77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9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910	-	910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0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052	-	2,052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1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5,253	-	5,253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2-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29-2답 일원	390	-	390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29-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86-22수 일원	342	4	34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1-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86-4잡 일원	195	-	195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2-서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92-7답 일원	2,979	감)2	2,97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33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37	-	1,837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4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622-9답 일원	1,913	감)1,105	808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신설	35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602-18답 일원	-	1,929	1,929	-	준주거지역
신설	36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66-14답 일원	-	1,440	1,440	-	일반상업지역
신설	37	공공공지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	476	476	-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7-서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431-6임 일원 A=20,410㎡ → 19,53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9-서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86-22수 일원 A=342㎡ → 34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2-서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92-7답 일원 A=2,979㎡ → 2,97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4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622-9답 일원 A=1,913㎡ → 80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5	공공공지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602-18답 일원 A=1,92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6	공공공지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66-14답 일원 A=1,44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7	공공공지	• 신설 위치 :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A=47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8개소	29,308	71	29,379		
기정	12-성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산22-5임 일원	2,019	-	2,019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13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2,232	-	2,232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14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161답 일원	2,090	감)8	2,08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17-성-1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1-1전 일원	507	1	508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17-성-2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1-3전 일원	807	-	80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2-성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2,472	-	2,47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3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887	-	1,887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정	24	공공공지	성남시 창곡동 87-1전 일원	3,862	-	3,862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	25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00-4전 일원	2,477	감)1,735	742	국토부 2010-754호	근린상업지역
변경	26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0-1전 일원	2,474	감164	2,310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기정	27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일원	6,343	-	6,34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8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일원	985	9	994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9-성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5답 일원	309	-	309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0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6-3대 일원	708	감)6	70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1-성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4천 일원	55	감)2	53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32-성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81	감)5	76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신설	38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	129	129	-	자연녹지지역
신설	39	공공공지	성남시 복정동 182-2전 일원	-	1,206	1,206	-	근린상업지역

주) 공공공지25 : 하천3(335㎡)과 중복결정
공공공지39 : 하천3(395㎡)과 중복결정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4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161답 일원 A=2,090㎡ → 2,08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17-성-1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1-1전 일원 A=507㎡ → 50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5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00-4전 일원 A=2,477㎡ → 74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6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0-1전 일원 A=2,474㎡ → 2,51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8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7-4도 일원 A=985㎡ → 99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9-성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5-5답 일원 A=309㎡ → 30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0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6-3대 일원 A=708㎡ → 70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1-성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5-4천 일원 A=55㎡ → 53㎡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2-성	공공공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A=81㎡ → 7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8	공공공지	• 신설 위치 :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A=12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9	공공공지	• 신설 위치 : 성남시 복정동 182-2전 일원 A=1,20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개소	11,560	-	11,560		
신설	1-하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3-5전 일원	1,622	-	1,622	국토부 2010-754호	자연녹지지역
신설	6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04잡 일원	835	-	835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7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499잡 일원	700	-	700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8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499잡 일원	383	-	383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9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621천 일원	890	-	890	국토부 2010-754호	제2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10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19잡 일원	1,146	-	1,14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11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26잡 일원	4,438	-	4,438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12-하	공공공지	하남시 학암동 535잡 일원	1,546	-	1,546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다. 유통 및 공급시설

1) 수도공급설비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 간선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 계			2(2)개소			512 (2.9)	42,960		
기정	1-서	수도공급설비	지구계 동남측	근린공원 11-서	-	512 (0.5)	5,907	국토부 2010-754호	송수시설
변경	1-서	수도공급설비	지구계 남동측	근린공원 11-서	복정역	512 (0.5)	7,618	-	송수시설
기정	1-성	수도공급설비	근린공원 11-서	지구계 서남측	-	512 (2.3)	37,053	국토부 2009-1423호	송수시설
변경	1-성	수도공급설비	근린공원 11-서	지구계 남서측	복정역	512 (2.4)	35,342	-	송수시설

주) 괄호( )안에 숫자는 행정구역에 걸쳐 분할된 수도공급설비 개소수 및 사업지구내 연장

■ 결정(변경)조서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개소	18,685	-	18,685		
기정	2	수도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산8임 일원	2,497	-	2,497	국토부 2010-754호	배수지
기정	3	수도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산30임 일원	10,494	-	10,494	국토부 2010-754호	배수지
기정	4	수도공급설비	성남시 창곡동 산65-1임 일원	5,244	-	5,244	국토부 2010-754호	배수지
기정	5	수도공급설비	송파구 거여동 453-1답 일원	450	-	450	국토부 2010-754호	가압장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 간선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 계			1개소			512 (0.5)	7,618		
기정	1-서	수도공급설비	지구계 동남측	근린공원 11-서	-	512 (0.5)	5,907	국토부 2010-754호	송수시설
변경	1-서	수도공급설비	지구계 남동측	근린공원 11-서	-	512 (0.5)	7,618	국토부 2010-754호	송수시설

주) 수도1-서 : 천2-서(1,078㎡), 도로(613㎡)와 중복결정

■ 결정(변경)조서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450	-	450		
기정	5	수도공급설비	송파구 거여동 453-1답 일원	450	-	450	-	가압장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서	수도공급설비	• 변경 L = 512(0.5)km A = 5,907㎡ → 7,618㎡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 간선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연장 (㎞)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경과지				
합 계			1개소			512 (2.4)	35,342		
기정	1-성	수도공급설비	근린공원 11-서	지구계 서남측	-	512 (2.3)	37,053	국토부 2009-1423호	송수시설
변경	1-성	수도공급설비	근린공원 11-서	지구계 남서측	-	512 (2.4)	35,342	국토부 2009-1423호	송수시설

주) 수도1-성 : 천2-성(1,955㎡), 도로(2,344㎡)와 중복결정

■ 결정(변경)조서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5,244	-	5,244		
기정	4	수도공급설비	성남시 창곡동 산65-1임 일원	5,244	-	5,244	국토부 2010-754호	배수지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성	수도공급설비	• 변경 L = 512(2.3)km → 512(2.4)km A = 37,053㎡ → 35,342㎡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 단위시설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12,991	-	12,991		
기정	2	수도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산8임 일원	2,497	-	2,497	국토부 2010-754호	배수지
기정	3	수도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산30임 일원	10,494	-	10,494	국토부 2010-754호	배수지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수도공급설비	• 신설 A = 2,497㎡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3	수도공급설비	• 신설 A = 10,49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2) 전기공급설비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5,628	400	6,028		
기정	1	전기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213잡 일원	2,655	-	2,655	국토부 2009-1423호	변전시설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송파구 장지동 539-2잡 일원	2,973	-	2,973	산업자원부고시 (2004-73)	변전시설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성남시 창곡동 459전 일원	-	400	400	-	철탑부지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973	-	2,973		
기정	2	전기공급설비	송파구 장지동 539-2잡 일원	2,973	-	2,973	산업자원부고시 (2004-73)	변전시설

다) 하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	400	400		
신설	3	전기공급설비	성남시 창곡동 459전 일원	-	400	400	-	철탑부지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전기공급설비	• 신설 위치 : 성남시 창곡동 459전 일원 A = 40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신설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2,655	-	2,655		
기정	1	전기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213잡 일원	2,655	-	2,655	국토부 2009-1423호	변전시설

3) 가스공급설비

가) 총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2,034	-	12,034		
기정	1	가스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252잡 일원	12,034	-	12,034	국토부 2009-1423호	

나)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2,034	-	12,034		
기정	1	가스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252잡 일원	12,034	-	12,034	국토부 2009-1423호	

4) 열공급설비

가) 총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44,786	-	44,786		
기정	1	열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226잡 일원	44,786	-	44,786	국토부 2009-1423호	

나)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44,786	-	44,786		
기정	1	열공급설비	하남시 학암동 226잡 일원	44,786	-	44,786	국토부 2009-1423호	

라.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가) 총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4개소	271,244	5	271,249		
소계				4개소	3,693	-	3,693		
기정	21	학교	유치원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4	-	804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2	학교	유치원	하남시 학암동 287잡 일원	1,094	-	1,094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3	학교	유치원	성남시 창곡동 167-14대 일원	906	-	906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24	학교	유치원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일원	889	-	889	국토부 2010-754호	
소계				10개소	116,574	5	116,579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하남시 학암동 54전 일원	12,070	-	12,07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334	-	10,334	국토부 2010-754호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17전 일원	11,030	-	11,030	국토부 2010-754호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1,921	5	11,926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하남시 학암동 508잡 일원	12,313	-	12,313	국토부 2010-754호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803	-	10,803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199-7전 일원	12,000	-	12,00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8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11,843	-	11,843	국토부 2010-754호	
기정	9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27전 일원	12,160	-	12,16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0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2,100	-	12,100	국토부 2010-754호	
소계				5개소	61,380	-	61,380		
기정	11	학교	중학교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12,906	-	12,906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2	학교	중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일원	11,222	-	11,222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3	학교	중학교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1,097	-	11,097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14	학교	중학교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3,098	-	13,098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5	학교	중학교	성남시 창곡동 70-2임 일원	13,057	-	13,057	국토부 2010-754호	
소계				5개소	89,597	-	89,597		
기정	16	학교	고등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11,800	-	11,80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7	학교	고등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33임 일원	35,318	-	35,318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8	학교	고등학교	하남시 학암동 487잡 일원	14,475	-	14,475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9	학교	고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59-1전 일원	14,040	-	14,04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0	학교	고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297답 일원	13,964	-	13,964	국토부 2010-754호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개소	114,329	5	114,334		
소계				1개소	804	-	804		
기정	21	학교	유치원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4	-	804	국토부 2010-754호	
소계				4개소	44,088	5	44,093		
기정	2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334	-	10,334	국토부 2010-754호	
기정	3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17전 일원	11,030	-	11,030	국토부 2010-754호	
변경	4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1,921	5	11,926	국토부 2009-1423호	
기정	6	학교	초등학교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803	-	10,803	국토부 2009-1423호	
소계				2개소	22,319	-	22,319		
기정	12	학교	중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일원	11,222	-	11,222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3	학교	중학교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1,097	-	11,097	국토부 2009-1423호	
소계				2개소	47,118	-	47,118		
기정	16	학교	고등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11,800	-	11,80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7	학교	고등학교	송파구 거여동 산33임 일원	35,318	-	35,318	국토부 2010-754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4	학교	• 변경 위치 :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A = 11,921㎡ → 11,926㎡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0개소	104,057	-	104,057		
소계				2개소	1,795	-	1,795		
기정	23	학교	유치원	성남시 창곡동 167-14대 일원	906	-	906	국토부 2009-1423호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4	학교	유치원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일원	889	-	889	국토부 2010-754호	
소계				4개소	48,103	-	48,103		
기정	7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199-7전 일원	12,000	-	12,00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8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11,843	-	11,843	국토부 2010-754호	
기정	9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27전 일원	12,160	-	12,16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0	학교	초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2,100	-	12,100	국토부 2010-754호	
소계				2개소	26,155	-	26,155		
기정	14	학교	중학교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3,098	-	13,098	국토부 2010-754호	
기정	15	학교	중학교	성남시 창곡동 70-2임 일원	13,057	-	13,057	국토부 2010-754호	
소계				2개소	28,004	-	28,004		
기정	19	학교	고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59-1전 일원	14,040	-	14,04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0	학교	고등학교	성남시 창곡동 297답 일원	13,964	-	13,964	국토부 2010-754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4	학교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일원 A = 889㎡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라)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개소	52,858	-	52,858		
소계				1개소	1,094	-	1,094		
기정	22	학교	유치원	하남시 학암동 287잡 일원	1,094	-	1,094	국토부 2010-754호	
소계				2개소	24,383	-	24,383		
기정	1	학교	초등학교	하남시 학암동 54전 일원	12,070	-	12,070	국토부 2010-754호	
기정	5	학교	초등학교	하남시 학암동 508잡 일원	12,313	-	12,313	국토부 2010-754호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초 결정일	비고
소계				1개소	12,906	-	12,906		
기정	11	학교	중학교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12,906	-	12,906	국토부 2010-754호	
소계				1개소	14,475	-	14,475		
기정	18	학교	고등학교	하남시 학암동 487잡 일원	14,475	-	14,475	국토부 2010-754호	

2) 사회복지시설

가) 총괄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5개소	17,628	감)17,628	-		
폐지	1	사회복지시설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1,575	감)1,575	-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폐지	2	사회복지시설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16	감)8,016	-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3	사회복지시설	송파구 거여동 503-1잡 일원	2,055	감)2,055	-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폐지	4	사회복지시설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947	감)2,947	-	국토부 2009-1423호	준주거지역
폐지	5	사회복지시설	성남시 창곡동 164-7잡 일원	3,035	감)3,035	-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3개소	13,018	감)13,018	-		
폐지	2	사회복지시설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16	감)8,016	-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폐지	3	사회복지시설	송파구 거여동 503-1잡 일원	2,055	감)2,055	-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폐지	4	사회복지시설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947	감)2,947	-	국토부 2009-1423호	준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사회복지시설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3	사회복지시설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4	사회복지시설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기정	면적(㎡) 변경	면적(㎡) 변경후	최 초 결정일	비고
합 계			1개소	3,035	감)3,035	-		
폐지	5	사회복지시설	성남시 창곡동 164-7잡 일원	3,035	감)3,035	-	국토부 2010-754호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5	사회복지시설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라) 하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575	감)1,575	-		
폐지	1	사회복지시설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1,575	감)1,575	-	국토부 2010-754호	준주거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사회복지시설	• 폐지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지

마. 방재시설

1) 하천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4(2)개소			-	-	165,844		
기정	1	하천	소하천	송파구 거여동 476-1임	송파구 장지동 315-8천	송파구 장지동 5-1천	1.5	16~130	79,089	송파구고시 제2006-509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서	하천	소하천	송파구 장지동 258-11천	송파구 장지동 697-52천	성남시 창곡동 697-52천	0.4	19~27	6,730	송파구고시 제2006-509호	
변경	2-서	하천	소하천	송파구 장지동 258-11천	송파구 장지동 697-52천	성남시 창곡동 697-52천	0.4	19~27	6,731	송파구고시 제2006-509호	자연녹지지역
기정	2-성	하천	소하천	성남시 창곡동 279-2수	성남시 복정동 258-11천	성남시 창곡동 383-1구	2.0	19~27	68,306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2-성	하천	소하천	성남시 창곡동 279-2수	성남시 복정동 258-11천	성남시 창곡동 383-1구	2.0	16~90	68,604	-	자연녹지지역
기정	3	하천	소하천	성남시 복정동 204-12구	성남시 복정동 223-6천	성남시 복정동 220-1전	0.7	11~22	11,442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3	하천	소하천	성남시 복정동 204-12구	성남시 복정동 223-6천	성남시 복정동 220-1전	0.7	11~22	11,420	-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주) 괄호( )안에 숫자는 행정구역에 걸쳐 분할된 하천 개소수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km)	폭원(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2(1)개소			-	-	85,820		
기정	1	하천	소하천	송파구 거여동 476-1임	송파구 장지동 315-8천	송파구 장지동 5-1천	1.5	16~130	79,089	송파구고시 제2006-509호	
기정	2-서	하천	소하천	송파구 장지동 258-11천	송파구 장지동 697-52천	성남시 창곡동 697-52천	0.4	19~27	6,730	송파구고시 제2006-509호	자연녹지지역
변경	2-서	하천	소하천	송파구 장지동 258-11천	송파구 장지동 697-52천	성남시 창곡동 697-52천	0.4	19~27	6,731	송파구고시 제2006-509호	자연녹지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서	하천	• 변경 기점 : 송파구 장지동 258-11천, 종점 : 송파구 장지동 697-52천 L = 0.4km, A = 6,73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연장(km)	폭원(m)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합 계				2(1)개소			-	-	80,030		
기정	2-성	하천	소하천	성남시 창곡동 279-2수	성남시 복정동 258-11천	성남시 창곡동 383-1구	2.0	19~27	68,306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2-성	하천	소하천	성남시 창곡동 279-2수	성남시 복정동 258-11천	성남시 창곡동 383-1구	2.0	16~90	68,604	-	자연녹지지역
기정	3	하천	소하천	성남시 복정동 204-12구	성남시 복정동 223-6천	성남시 복정동 220-1전	0.7	11~22	11,442	국토부 2009-1423호	
변경	3	하천	소하천	성남시 복정동 204-12구	성남시 복정동 223-6천	성남시 복정동 220-1전	0.7	11~22	11,420	-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성	하천	• 변경 기점 : 성남시 창곡동 279-2수, 종점 : 성남시 창곡동 258-11천 L = 2.0km A = 68,306㎡ → 68,604㎡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3	하천	• 변경 기점 : 성남시 복정동 204-12구, 종점 : 성남시 복정동 223-6천 L = 0.7km A = 11,442㎡ → 11,420㎡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2) 유수지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개소	90,846	286	91,132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48,609	-	48,609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송파구 장지동 367전 일원	11,822	-	11,822	국토부 2010-754호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성남시 창곡동 368-3답 일원	30,415	286	30,701	국토부 2010-754호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60,431	-	60,431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48,609	-	48,609	국토부 2010-754호	
기정	2	유수지	저류시설	송파구 장지동 367전 일원	11,822	-	11,822	국토부 2010-754호	

주) 유수지 1 : 하천1(48,609㎡)과 중복결정

다) 성남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30,415	286	30,701		
변경	3	유수지	저류시설	성남시 창곡동 368-3답 일원	30,415	286	30,701	국토부 2010-754호	

주) 유수지 3 : 하천2(28,793㎡), 도로(1,908㎡)와 중복결정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유수지	• 변경 위치 : 성남시 창곡동 368-3답 일원 A = 30,415㎡ → 30,701㎡	•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변경

바. 환경기초시설

1) 폐기물처리시설

가) 총 괄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7,871	-	17,871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하남시 학암동 213잡 일원	17,871	-	17,871	국토부 2009-1423호	

나) 하남시(변경 없음)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17,871	-	17,871		
기정	1	폐기물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하남시 학암동 213잡 일원	17,871	-	17,871	국토부 2009-1423호	

5.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S=1/5,000) : 게재생략

붙임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

도면표시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위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일원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	6,797,608.7	감)22,980	6,774,628.7	
서울	위례(서울)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장지동 일원	2,575,682.7	감)24,236	2,551,446.7	
성남	위례(성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복정동 일원	2,803,519	-	2,803,519	
하남	위례(하남)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일원	1,418,407	1,256	1,419,663	

Ⅱ.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게재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와 같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조서

1) 단독주택용지(변경)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33,025	490개소	233,025	
D1-1	①	1,608	-1	26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8	
			-3	268	
			-4	268	
			-5	268	
			-6	26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②	2,377	-1	27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8	
			-3	253	
			-4	260	
			-5	263	
			-6	266	
			-7	264	
			-8	264	
			-9	264	
	③	1,302	-1	25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1	
			-3	261	
			-4	261	
			-5	260	
	④	1,110	-1	28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6	
			-3	276	
			-4	276	
	⑤	4,014	-1	25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0	
			-3	250	
			-4	250	
			-5	250	
			-6	250	
			-7	250	
			-8	254	
			-9	254	
			-10	250	
			-11	250	
			-12	250	
			-13	250	
			-14	250	
			-15	250	
			-16	253	
	⑥	2,048	-1	25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6	
			-3	256	
			-4	256	
			-5	256	
			-6	256	
			-7	256	
			-8	256	
	⑦	1,290	-1	26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57	
			-5	257	
	⑧	2,125	-1	26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6	
			-3	266	
			-4	26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5	266	
			-6	266	
			-7	266	
			-8	266	
	⑨	1,323	-1	26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0	
			-3	262	
			-4	268	
			-5	273	
	⑩	1,935	-1	27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6	
			-3	276	
			-4	276	
			-5	276	
			-6	276	
			-7	276	
D1-2	①	1,962	-1	28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0	
			-3	280	
			-4	280	
			-5	280	
			-6	280	
			-7	280	
	②	2,673	-1	26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8	
			-3	268	
			-4	268	
			-5	267	
			-6	264	
			-7	268	
			-8	268	
			-9	268	
			-10	266	
	③	2,268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2	
			-3	257	
			-4	252	
			-5	251	
			-6	255	
			-7	252	
			-8	252	
			-9	242	
	④	891	-1	30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300	
			-3	291	
D1-3	①	1,965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5	
			-3	245	
			-4	245	
			-5	245	
			-6	245	
			-7	245	
			-8	2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②	997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8	
			-3	248	
			-4	253	
	③	3,697	-1	26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3	
			-3	263	
			-4	263	
			-5	263	
			-6	263	
			-7	267	
			-8	266	
			-9	263	
			-10	263	
			-11	263	
			-12	263	
			-13	263	
			-14	267	
	④	3,542	-1	25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55	
			-8	255	
			-9	252	
			-10	252	
			-11	252	
			-12	252	
			-13	252	
			-14	256	
	⑤	2,227	-1	27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8	
			-3	278	
			-4	279	
			-5	279	
			-6	278	
			-7	278	
			-8	279	
	⑥	3,575	-1	25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54	
			-8	259	
			-9	257	
			-10	257	
			-11	257	
			-12	257	
			-13	25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4	261	
	⑦	1,358	-1	27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1	
			-3	271	
			-4	271	
			-5	272	
D2-1	①	760	-1	25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5	
			-3	255	
	②	993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8	
			-3	248	
			-4	249	
	③	799	-1	26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6	
			-3	266	
	④	1,000	-1	25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0	
			-3	250	
			-4	250	
	⑤	4,332	-1	27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1	
			-3	270	
			-4	267	
			-5	269	
			-6	271	
			-7	271	
			-8	277	
			-9	275	
			-10	270	
			-11	270	
			-12	270	
			-13	270	
			-14	269	
			-15	269	
			-16	273	
	⑥	562	-1	28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281	
	⑦	551	-1	27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280	
	⑧	1,966	-1	28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1	
			-3	281	
			-4	280	
			-5	281	
			-6	281	
			-7	281	
	⑨	1,198	-1	29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99	
			-3	300	
			-4	300	
	⑩	776	-1	25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260	
	⑪	1,215	-1	24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3	
			-3	243	
			-4	243	
			-5	243	
	⑫	779	-1	25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9	
			-3	261	
	⑬	1,176	-1	294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94	
			-3	294	
			-4	294	
	⑭	1,041	-1	26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61	
	⑮	1,347	-1	26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1	
			-3	271	
			-4	270	
			-5	266	
	⑯	1,031	-1	25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60	
	⑰	1,934	-1	27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5	
			-3	275	
			-4	275	
			-5	275	
			-6	275	
			-7	280	
	⑱	1,922	-1	27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5	
			-3	267	
			-4	264	
			-5	283	
			-6	283	
			-7	290	
	⑲	1,817	-1	25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60	
			-5	266	
			-6	260	
			-7	260	
	⑳	1,634	-1	264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4	
			-3	266	
			-4	280	
			-5	279	
			-6	28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㉑	1,916	-1	27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6	
			-3	275	
			-4	276	
			-5	273	
			-6	271	
			-7	270	
	㉒	1,897	-1	27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1	
			-3	271	
			-4	271	
			-5	271	
			-6	271	
			-7	271	
	㉓	1,125	-1	28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1	
			-3	281	
			-4	281	
	㉔	837	-1	27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9	
			-3	279	
	㉕	1,672	-1	28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7	
			-3	277	
			-4	277	
			-5	277	
			-6	277	
	㉖	1,636	-1	28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0	
			-3	270	
			-4	270	
			-5	270	
			-6	270	
	㉗	273	-1	273	
	㉘	270	-1	270	
	㉙	2,725	-1	27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2	
			-3	272	
			-4	272	
			-5	272	
			-6	272	
			-7	272	
			-8	272	
			-9	272	
			-10	274	
	㉚	1,990	-1	284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4	
			-3	284	
			-4	284	
			-5	284	
			-6	284	
			-7	28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㉛	1,323	-1	25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7	
			-3	267	
			-4	267	
			-5	267	
D2-2	①	516	-1	25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8	
	②	2,455	-1	27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3	
			-3	273	
			-4	273	
			-5	273	
			-6	273	
			-7	270	
			-8	270	
			-9	277	
	③	3,552	-1	26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9	
			-3	249	
			-4	249	
			-5	249	
			-6	249	
			-7	265	
			-8	265	
			-9	249	
			-10	249	
			-11	249	
			-12	249	
			-13	249	
			-14	266	
	④	532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267	
	⑤	3,182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5	
			-3	265	
			-4	265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7	
D2-3	①	968	-1	24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2	
			-3	242	
			-4	242	
	②	548	-1	27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2	
	③	3,237	-1	27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9	
			-3	26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4	269	
			-5	269	
			-6	270	
			-7	270	
			-8	269	
			-9	269	
			-10	269	
			-11	269	
			-12	268	
	④	1,014	-1	25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5	
	⑤	2,514	-1	25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1	
			-3	251	
			-4	251	
			-5	252	
			-6	252	
			-7	251	
			-8	251	
			-9	251	
			-10	252	
	⑥	3,025	-1	25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52	
			-8	252	
			-9	252	
			-10	252	
			-11	252	
			-12	252	
	⑦	3,607	-1	26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57	
			-5	257	
			-6	257	
			-7	259	
			-8	259	
			-9	257	
			-10	257	
			-11	257	
			-12	257	
			-13	257	
			-14	259	
	⑧	3,607	-1	26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5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5	257	
			-6	257	
			-7	259	
			-8	259	
			-9	257	
			-10	257	
			-11	257	
			-12	257	
			-13	257	
			-14	259	
	⑨	3,441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4	
			-3	244	
			-4	244	
			-5	244	
			-6	244	
			-7	249	
			-8	255	
			-9	244	
			-10	244	
			-11	244	
			-12	244	
			-13	244	
			-14	249	
	⑩	1,373	-1	27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4	
			-3	274	
			-4	274	
			-5	275	
	⑪	797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5	
			-3	267	
D2-4	①	25,613	-1	10,722	
			-2	14,891	
D2-5		39,731	-1	19,800	
			-2	19,931	
D3-1	①	4,045	-1	26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0	
			-3	250	
			-4	250	
			-5	250	
			-6	250	
			-7	250	
			-8	261	
			-9	261	
			-10	250	
			-11	250	
			-12	250	
			-13	250	
			-14	250	
			-15	250	
			-16	26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②	2,144	-1	27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7	
			-3	267	
			-4	267	
			-5	267	
			-6	267	
			-7	267	
			-8	267	
D3-2	①	29,883	-1	10,075	
			-2	19,808	
D3-3	-	10,457	D3-3	10,457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34,160	506개소	234,160	
D1-1	①	1,608	-1	26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8	
			-3	268	
			-4	268	
			-5	268	
			-6	268	
	②	2,377	-1	27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8	
			-3	253	
			-4	260	
			-5	263	
			-6	266	
			-7	264	
			-8	264	
			-9	264	
	③	1,302	-1	25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1	
			-3	261	
			-4	261	
			-5	260	
	④	1,110	-1	28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6	
			-3	276	
			-4	276	
	⑤	4,014	-1	25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0	
			-3	250	
			-4	250	
			-5	250	
			-6	250	
			-7	250	
			-8	254	
			-9	254	
			-10	250	
			-11	250	
			-12	2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3	250	
			-14	250	
			-15	250	
			-16	253	
	⑥	2,048	-1	25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6	
			-3	256	
			-4	256	
			-5	256	
			-6	256	
			-7	256	
			-8	256	
	⑦	1,290	-1	26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57	
			-5	257	
	⑧	2,125	-1	26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6	
			-3	266	
			-4	266	
			-5	266	
			-6	266	
			-7	266	
			-8	266	
	⑨	1,323	-1	26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0	
			-3	262	
			-4	268	
			-5	273	
	⑩	1,935	-1	27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6	
			-3	276	
			-4	276	
			-5	276	
			-6	276	
			-7	276	
D1-2	①	1,962	-1	28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0	
			-3	280	
			-4	280	
			-5	280	
			-6	280	
			-7	280	
	②	2,673	-1	26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8	
			-3	268	
			-4	268	
			-5	267	
			-6	264	
			-7	268	
			-8	268	
			-9	26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0	266	
	③	2,268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2	
			-3	257	
			-4	252	
			-5	251	
			-6	255	
			-7	252	
			-8	252	
			-9	242	
	④	891	-1	30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300	
			-3	291	
D1-3	①	997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8	
			-3	248	
			-4	253	
	②	1,965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5	
			-3	245	
			-4	245	
			-5	245	
			-6	245	
			-7	245	
			-8	247	
	③	3,697	-1	26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3	
			-3	263	
			-4	263	
			-5	263	
			-6	263	
			-7	267	
			-8	266	
			-9	263	
			-10	263	
			-11	263	
			-12	263	
			-13	263	
			-14	267	
	④	1,358	-1	27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1	
			-3	271	
			-4	271	
			-5	272	
	⑤	3,519	-1	25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1	
			-3	251	
			-4	251	
			-5	251	
			-6	251	
			-7	252	
			-8	253	
			-9	25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0	251	
			-11	251	
			-12	251	
			-13	251	
			-14	252	
	⑥	3,522	-1	25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1	
			-3	251	
			-4	251	
			-5	251	
			-6	251	
			-7	253	
			-8	253	
			-9	251	
			-10	251	
			-11	251	
			-12	251	
			-13	251	
			-14	253	
	⑦	2,013	-1	25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1	
			-3	251	
			-4	251	
			-5	251	
			-6	251	
			-7	251	
			-8	254	
D2-1	①	1,616	-1	274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8	
			-3	268	
			-4	268	
			-5	268	
			-6	270	
	②	1,025	-1	25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5	
			-3	255	
			-4	262	
	③	788	-1	26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2	
			-3	263	
	④	1,011	-1	25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2	
	⑤	1,011	-1	25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5	
	⑥	758	-1	24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3	
			-3	256	
	⑦	758	-1	24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3	256	
	⑧	2,239	-1	27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1	
			-3	285	
			-4	286	
			-5	270	
			-6	282	
			-7	278	
			-8	282	
	⑨	2,291	-1	27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8	
			-3	291	
			-4	295	
			-5	279	
			-6	288	
			-7	285	
			-8	288	
	⑩	2,339	-1	22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33	
			-3	233	
			-4	233	
			-5	236	
			-6	232	
			-7	233	
			-8	233	
			-9	233	
			-10	244	
	⑪	571	-1	28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288	
	⑫	744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8	
			-3	248	
	⑬	744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8	
			-3	248	
	⑭	1,011	-1	25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5	
	⑮	1,014	-1	25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2	
	⑯	853	-1	28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84	
			-3	284	
	⑰	2,236	-1	24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2	
			-3	245	
			-4	248	
			-5	250	
			-6	250	
			-7	25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8	254	
			-9	253	
	⑱	1,212	-1	25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5	
			-3	231	
			-4	238	
			-5	238	
	⑲	780	-1	26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0	
			-3	260	
	⑳	1,032	-1	25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8	
			-3	258	
			-4	258	
	㉑	1,960	-1	24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5	
			-3	245	
			-4	245	
			-5	245	
			-6	245	
			-7	245	
			-8	245	
	㉒	2,613	-1	26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1	
			-3	261	
			-4	261	
			-5	262	
			-6	261	
			-7	261	
			-8	261	
			-9	261	
			-10	261	
	㉓	1,519	-1	254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3	
			-3	253	
			-4	253	
			-5	253	
			-6	253	
	㉔	1,672	-1	28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8	
			-3	278	
			-4	278	
			-5	278	
			-6	280	
	㉕	4,180	-1	24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9	
			-3	259	
			-4	248	
			-5	244	
			-6	243	
			-7	243	
			-8	244	
			-9	2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10	257	
			-11	257	
			-12	239	
			-13	248	
			-14	239	
			-15	231	
			-16	231	
			-17	258	
	㉖	1,871	-1	23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30	
			-3	230	
			-4	260	
			-5	231	
			-6	230	
			-7	230	
			-8	230	
	㉗	917	-1	30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305	
			-3	307	
	㉘	748	-1	25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9	
			-3	249	
	㉙	1,843	-1	23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30	
			-3	230	
			-4	230	
			-5	230	
			-6	230	
			-7	230	
			-8	232	
	㉚	2,566	-1	23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30	
			-3	230	
			-4	242	
			-5	242	
			-6	231	
			-7	233	
			-8	234	
			-9	230	
			-10	230	
			-11	232	
D2-2	①	516	-1	25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258	
	②	2,455	-1	27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3	
			-3	273	
			-4	273	
			-5	273	
			-6	273	
			-7	270	
			-8	270	
			-9	27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③	3,552	-1	26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9	
			-3	249	
			-4	249	
			-5	249	
			-6	249	
			-7	265	
			-8	265	
			-9	249	
			-10	249	
			-11	249	
			-12	249	
			-13	249	
			-14	266	
	④	532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267	
	⑤	3,182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5	
			-3	265	
			-4	265	
			-5	265	
			-6	265	
			-7	265	
			-8	265	
			-9	265	
			-10	265	
			-11	265	
			-12	267	
D2-3	①	968	-1	24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2	
			-3	242	
			-4	242	
	②	548	-1	27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272	
	③	3,237	-1	27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9	
			-3	269	
			-4	269	
			-5	269	
			-6	270	
			-7	270	
			-8	269	
			-9	269	
			-10	269	
			-11	269	
			-12	268	
	④	1,014	-1	25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5	
	⑤	2,514	-1	252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1	
			-3	25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4	251	
			-5	252	
			-6	252	
			-7	251	
			-8	251	
			-9	251	
			-10	252	
	⑥	3,025	-1	253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2	
			-3	252	
			-4	252	
			-5	252	
			-6	252	
			-7	252	
			-8	252	
			-9	252	
			-10	252	
			-11	252	
			-12	252	
	⑦	3,607	-1	26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57	
			-5	257	
			-6	257	
			-7	259	
			-8	259	
			-9	257	
			-10	257	
			-11	257	
			-12	257	
			-13	257	
			-14	259	
	⑧	3,607	-1	26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7	
			-3	257	
			-4	257	
			-5	257	
			-6	257	
			-7	259	
			-8	259	
			-9	257	
			-10	257	
			-11	257	
			-12	257	
			-13	257	
			-14	259	
	⑨	3,441	-1	2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44	
			-3	244	
			-4	244	
			-5	244	
			-6	24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7	249	
			-8	255	
			-9	244	
			-10	244	
			-11	244	
			-12	244	
			-13	244	
			-14	249	
	⑩	1,373	-1	27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4	
			-3	274	
			-4	274	
			-5	275	
	⑪	797	-1	26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5	
			-3	267	
D2-4	①	25,613	-1	10,722	
			-2	14,891	
D2-5		39,731	-1	19,800	
			-2	19,931	
D3-1	①	4,045	-1	26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50	
			-3	250	
			-4	250	
			-5	250	
			-6	250	
			-7	250	
			-8	261	
			-9	261	
			-10	250	
			-11	250	
			-12	250	
			-13	250	
			-14	250	
			-15	250	
			-16	262	
	②	2,144	-1	275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67	
			-3	267	
			-4	267	
			-5	267	
			-6	267	
			-7	267	
			-8	267	
D3-2	-	29,883	-1	10,075	
			-2	19,808	
D3-3	-	10,457	D3-3	10,457	

나. 근린생활시설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640	37개소	18,640	
근생1	-	1,125	근생1	1,125	경찰지구대
근생2	-	1,094	근생2	1,094	경찰지구대
근생3	-	1,071	근생3	1,071	경찰지구대
근생4	-	1,158	근생4	1,158	경찰지구대
근생5	①	1,484	-1	487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496	
			-3	501	
근생6	①	1,231	-1	41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414	
			-3	401	
	②	2,186	-1	44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433	
			-3	432	
			-4	447	
			-5	433	
근생7	①	2,146	-1	434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428	
			-3	428	
			-4	428	
			-5	428	
	②	1,015	-1	34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344	
			-3	323	
근생8	①	1,643	-1	42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405	
			-3	405	
			-4	405	
	②	2,282	-1	466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472	
			-3	463	
			-4	443	
			-5	438	
	③	2,205	-1	42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443	
			-3	443	
			-4	443	
			-5	447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910	27개소	19,910	
근생1	-	1,125	근생1	1,125	경찰지구대
근생2	-	1,094	근생2	1,094	경찰지구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근생3	-	1,071	근생3	1,071	경찰지구대
근생4	-	1,158	근생4	1,158	경찰지구대
근생5	①	1,571	-1	78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790	
근생6	①	1,869	-1	631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643	
			-3	595	
	②	1,578	-1	774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804	
근생7	①	2,396	-1	598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599	
			-3	599	
			-4	600	
	②	1,164	-1	53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634	
근생8	①	2,158	-1	740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709	
			-3	709	
	②	3,215	-1	64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634	
			-3	644	
			-4	644	
			-5	644	
	③	1,511	-1	729	연접한 2개의 필지를 합병 가능
			-2	782	

다. 공동주택용지및준주거용지

1) 공동주택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56,308	34개소	1,956,308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A1-1	-	65,147	A1-1	65,147	
A1-2	-	60,231	A1-2	60,231	
A1-3	-	31,988	A1-3	31,988	
A1-4	-	33,279	A1-4	33,279	
A1-5	-	62,282	A1-5	62,282	
A1-6	-	28,598	A1-6	28,598	
A1-7	-	37,158	A1-7	37,158	
A1-8	-	44,184	A1-8	44,184	
A1-9	-	60,522	A1-9	60,522	
A1-10	-	120,415	-	120,415	
A1-10-서			A1-10-서	112,787	
A1-10-성			A1-10-성	7,628	
A1-11	-	82,392	A1-11	82,392	
A2-1	-	79,574	A2-1	79,574	
A2-2	-	68,171	-	68,171	
A2-2-서			A2-2-서	6,467	
A2-2-성			A2-2-성	54,569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2-2-하			A2-2-하	7,135	
A2-3	-	42,008	A2-3	42,008	
A2-4	-	76,396	-	76,396	
A2-4-성	-		A2-4-성	59,219	
A2-4-하			A2-4-하	17,177	
A2-5	-	31,445	A2-5	31,445	
A2-6	-	37,605	-	37,605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A2-6-성			A2-6-성	25,346	
A2-6-하			A2-6-하	12,259	
A2-7	-	52,722	A2-7	52,722	
A2-8	-	64,713	-	64,713	
A2-8-성			A2-8-성	43,482	
A2-8-하			A2-8-하	21,231	
A2-9	-	39,467	A2-9	39,467	
A2-10	-	98,550	A2-10	98,550	
A2-11	-	88,977	A2-11	88,977	
A2-12	-	50,902	A2-12	50,902	
A2-13	-	45,241	A2-13	45,241	
A3-1	-	35,787	A3-1	35,787	
A3-2	-	33,936	A3-2	33,936	
A3-3a	-	15,863	A3-3a	15,863	
A3-3b	-	21,793	A3-3b	21,793	
A3-4	-	111,271	-	111,271	
A3-4-서			A3-4-서	1,553	
A3-4-하			A3-4-하	109,718	
A3-5	-	42,118	-	42,118	
A3-6	-	83,924	-	83,924	
A3-6-서			A3-6-서	7,119	
A3-6-하			A3-6-하	76,805	
A3-7	-	57,173	A3-7	57,173	
A3-8	-	81,088	A3-8	81,088	
A3-9	-	71,388	-	71,388	
A3-9-성			A3-9-성	17,847	
A3-9-하			A3-9-하	53,541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55,525	34개소	1,955,525	
A1-1	-	65,147	A1-1	65,147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A1-2	-	60,231	A1-2	60,231	
A1-3	-	31,988	A1-3	31,988	
A1-4	-	33,279	A1-4	33,279	
A1-5	-	62,282	A1-5	62,282	
A1-6	-	28,598	A1-6	28,598	
A1-7	-	37,158	A1-7	37,158	
A1-8	-	44,184	A1-8	44,184	
A1-9	-	63,916	A1-9	63,916	
A1-10	-	120,415	-	120,415	
A1-10-서			A1-10-서	112,787	
A1-10-성			A1-10-성	7,628	
A1-11	-	82,392	A1-11	82,392	
A2-1	-	79,652	A2-1	79,652	
A2-2	-	68,171	-	68,171	
A2-2-서			A2-2-서	6,46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A2-2-성			A2-2-성	54,569	
A2-2-하			A2-2-하	7,135	
A2-3	-	42,008	A2-3	42,008	
A2-4	-	76,396	-	76,396	
A2-4-성			A2-4-성	59,219	
A2-4-하			A2-4-하	17,177	
A2-5	-	31,445	A2-5	31,445	
A2-6	-	33,284	-	33,284	
A2-6-성			A2-6-성	22,274	
A2-6-하			A2-6-하	11,010	
A2-7	-	52,722	A2-7	52,722	
A2-8	-	64,713	-	64,713	공동주택용지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단, 주택법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4조, 제5조에 해당하는 부대복리시설은 대지분할 가능)
A2-8-성			A2-8-성	43,482	
A2-8-하			A2-8-하	21,231	
A2-9	-	39,467	A2-9	39,467	
A2-10	-	98,550	A2-10	98,550	
A2-11	-	88,977	A2-11	88,977	
A2-12	-	50,902	A2-12	50,902	
A2-13	-	45,307	A2-13	45,307	
A3-1	-	35,787	A3-1	35,787	
A3-2	-	33,936	A3-2	33,936	
A3-3a	-	15,863	A3-3a	15,863	
A3-3b	-	21,793	A3-3b	21,793	
A3-4	-	111,271	-	111,271	
A3-4-서			A3-4-서	1,553	
A3-4-하			A3-4-하	109,718	
A3-5	-	42,118	-	42,118	
A3-5-서			A3-5-서	9,525	
A3-5-하			A3-5-하	32,593	
A3-6	-	83,924	-	83,924	
A3-6-서			A3-6-서	7,119	
A3-6-하			A3-6-하	76,805	
A3-7	-	57,173	A3-7	57,173	
A3-8	-	81,088	A3-8	81,088	
A3-9	-	71,388	-	71,388	
A3-9-성			A3-9-성	17,848	
A3-9-하			A3-9-하	53,540	

2) 준주거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7,180	29개소	187,180	
C1-1	-	23,948	C1-1	23,948	주거복합용지(아파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C1-2	-	24,103	C1-2	24,103	
C1-3	-	21,044	C1-3	21,044	
C1-4	-	20,558	-	20,558	
C1-4-서			C1-4-서	20,519	
C1-4-하			C1-4-하	39	
C1-5	-	9,493	-	9,493	
C1-5-서			C1-5-서	5,487	
C1-5-하			C1-5-하	4,006	
C1-6	-	8,625	-	8,625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1-6-서			C1-6-서	664	
C1-6-하			C1-6-하	7,961	
C1-7	①	3,163	-1	1,032	준주거용지(상업)는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065	
			-3	1,066	
C2-1	-	9,108	C2-1	9,108	주거복합용지(아파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C2-2	-	9,651	C2-2	9,651	
C2-3	-	7,031	C2-3	7,031	
C2-4	-	13,866	C2-4	13,866	주거복합용지(아파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C2-5	-	9,819	C2-5	9,819	
C2-6	-	17,210	C2-6	17,210	
C2-7	①	3,580	-1	1,747	준주거용지(상업)는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1,833	
C3-1	①	5,981	-1	502	준주거용지(상업)는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502	
			-3	502	
			-4	502	
			-5	502	
			-6	487	
			-7	474	
			-8	502	
			-9	502	
			-10	502	
			-11	502	
			-12	502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6,559	28개소	186,559	
C1-1	-	23,948	C1-1	23,948	주거복합용지(아파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C1-2	-	24,103	C1-2	24,103	
C1-3	-	21,044	C1-3	21,044	
C1-4	-	20,558	-	20,558	
C1-4-서			C1-4-서	20,519	
C1-4-하			C1-4-하	39	
C1-5	-	9,493	-	9,493	
C1-5-서			C1-5-서	5,487	
C1-5-하			C1-5-하	4,006	
C1-6	-	8,625	-	8,625	
C1-6-서			C1-6-서	664	
C1-6-하			C1-6-하	7,961	
C1-7	①	3,163	-1	1,032	준주거용지(상업)는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065	
			-3	1,066	
C2-1	-	9,108	C2-1	9,108	주거복합용지(아파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C2-2	-	9,651	C2-2	9,651	
C2-3	-	7,031	C2-3	7,031	
C2-4	-	13,854	C2-4	13,854	주거복합용지(아파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C2-5	-	9,819	C2-5	9,819	주거복합용지(아파트)의 필지분할 및 합병 불허
C2-6	-	17,210	C2-6	17,210	
C2-7	-	2,971	C2-7	2,971	
C3-1	①	5,981	-1	502	준주거용지(상업)는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502	
			-3	502	
			-4	502	
			-5	502	
			-6	487	
			-7	474	
			-8	502	
			-9	502	
			-10	502	
			-11	502	
			-12	502	

라. 상업 및 업무용지

1) 일반상업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80,267	27개소	80,267	
일상1	①	6,434	-1	3,233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3,201	
일상2	①	3,040	-1	1,018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011	
			-3	1,011	
일상3	①	12,743	-1	2,787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3,069	
			-3	3,059	
			-4	3,828	
일상4	①	4,450	-1	2,312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2,138	
일상5	①	5,356	-1	1,763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829	
			-3	1,764	
일상6	①	3,853	-1	1,804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2,049	
일상7	①	6,058	-1	3,230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2,828	
일상8	①	4,942	-1	924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977	
			-3	1,140	
			-4	943	
			-5	958	
일상9	①	14,683	-1	7,156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 가능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7,527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일상10	①	9,397	-	9,397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일상10-성			일상10-성	3,903	
일상10-하			일상10-하	5,494	
일상11	-	9,311	-	9,311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04,462	35개소	104,462	
일상1	①	5,898	-1	3,042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2,856	
일상2	①	4,220	-1	1,055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049	
			-3	1,049	
			-4	1,067	
일상3	①	8,295	-1	2,786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2,769	
			-3	2,740	
	②	3,967	-1	1,891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2,076	
일상4	①	3,742	-1	1,890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1,852	
일상5	①	5,356	-1	1,763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829	
			-3	1,764	
일상6	①	3,853	-1	1,804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2,049	
일상7	①	6,058	-1	3,230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2,828	
일상8	①	4,942	-1	924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977	
			-3	1,140	
			-4	943	
			-5	958	
일상9	①	14,683	-1	7,156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 가능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7,527	
일상10	-	9,397	-	9,397	
일상10-성			일상10-성	3,903	
일상10-하			일상10-하	5,494	
일상11	-	9,311	-	9,311	
일상12	①	24,740	-1	4,052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3,387	
			-3	10,010	
			-3-서	4,670	
			-3-성	5,340	
			-4	7,291	

2) 근린상업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9,886	10개소	19,886	
근상1	①	3,413	-1	1,706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2	1,707	
	②	6,459	-1	1,604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605	
			-3	1,606	
			-4	1,644	
근상2	①	5,239	-1	1,729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755	
			-2-성	951	
			-2-하	804	
			-3	1,755	
근상3	-	4,775	근상3	4,775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6,082	13개소	26,082	
근상1	①	6,412	-1	1,613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598	
			-3	1,599	
			-4	1,602	
	②	5,788	-1	1,930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931	
			-3	1,927	
근상2	①	9,107	-1	2,965	연접한 2개의 필지 합병 가능 연접한 3개의 필지를 2개의 필지로 조정 가능
			-2	1,321	
			-2-성	990	
			-2-하	331	
			-3	1,613	
			-3-성	1,014	
			-3-하	599	
			-4	1,808	
			-5	1,400	
근상3	-	4,775	근상3	4,775	

3) 업무시설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57,850	26개소	257,850	
업무1	-	29,936	송파구 거여동 산 38임 일원	29,936	공공청사(복합공공청사) 또는 업무시설
업무2	-	31,496	성남시 창곡동 396-2답 일원	31,496	공공청사(복합공공청사) 또는 업무시설

업무3	-	11,429	송파구 거여동 산 30임 일원	11,429	공공청사(경찰서) 또는 업무시설
업무4	-	10,840	송파구 거여동 산 37임 일원	10,840	공공청사(소방서) 또는 업무시설
업무5	-	3,000	하남시 학암동 88전 일원	3,000	공공청사(우체국) 또는 업무시설
업무6	-	3,012	성남시 창곡동 126-1잡 일원	3,012	공공청사(우체국) 또는 업무시설
업무7	-	1,541	하남시 학암동 산 1임 일원	1,541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8	-	1,827	송파구 거여동 286-2전 일원	1,827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9	-	2,030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2,030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0	-	1,807	성남시 창곡동 126-1잡 일원	1,807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1	-	1,692	성남시 창곡동 300답 일원	1,692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2	-	1,652	송파구 거여동 459-1전 일원	1,652	공공청사(119안전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3	-	1,874	성남시 복정동 200-5전 일원	1,874	공공청사(119안전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4	-	2,000	성남시 창곡동 산 22-1임 일원	2,000	공공청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업무시설
업무15	-	30,021	송파구 거여동 367전 일원	30,021	군업무시설
업무16	-	6,372	송파구 거여동 367전 일원	6,372	
업무17	-	11,541	송파구 거여동 산 40임 일원	11,541	
업무18	-	2,318	송파구 거여동 산 41-1임 일원	2,318	트램업무시설
업무19	-	5,411	송파구 거여동 산 41-1임 일원	5,411	
업무20	-	10,589	송파구 거여동 산 42임 일원	10,589	
업무21	-	6,687	송파구 거여동 산 71-17임 일원	6,687	오피스텔
업무22	-	14,656	-	14,656	
업무22-서	-	3,112	송파구 거여동 528-2잡 일원	3,112	
업무22-하	-	11,544	성남시 창곡동 504잡 일원	11,544	
업무23	-	4,995	하남시 학암동 253잡 일원	4,995	
업무24	-	13,517	-	13,517	오피스텔
업무24-성	-	8,242	성남시 창곡동 128잡 일원	8,242	
업무24-하	-	5,275	하남시 학암동 566잡 일원	5,275	
업무25	-	3,460	성남시 창곡동 126전 일원	3,460	
업무26	-	44,147	-	44,147	유통시설
업무26-서	-	27,250	송파구 거여동 537임 일원	27,250	
업무26-하	-	16,897	하남시 학암동 252잡 일원	16,897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19,343	33개소	319,343	
업무1	-	29,936	송파구 거여동 산32-1임 일원	29,936	공공청사(복합공공청사) 또는 업무시설
업무2	-	31,799	성남시 창곡동 396-2답 일원	31,799	공공청사(복합공공청사) 또는 업무시설
업무3	-	11,429	송파구 거여동 산 30임 일원	11,429	공공청사(경찰서) 또는 업무시설
업무4	-	10,840	송파구 거여동 산 37임 일원	10,840	공공청사(소방서) 또는 업무시설
업무5	-	3,000	하남시 학암동 88전 일원	3,000	공공청사(우체국) 또는 업무시설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업무6	-	3,012	성남시 창곡동 126-1잡 일원	3,012	공공청사(우체국) 또는 업무시설
업무7	-	1,541	하남시 학암동 산 1임 일원	1,541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8	-	1,827	송파구 거여동 산40임 일원	1,827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9	-	2,030	송파구 거여동 491임 일원	2,030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0	-	1,807	성남시 창곡동 126-1잡 일원	1,807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1	-	1,692	성남시 창곡동 300답 일원	1,692	공공청사(주민자치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2	-	1,652	송파구 거여동 459-1전 일원	1,652	공공청사(119안전센타) 또는 업무시설
업무13	-	1,480	성남시 창곡동 437-1대 일원	1,480	119안전센타 존치
업무14	-	2,000	성남시 창곡동 산 22-1임 일원	2,000	공공청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업무시설
업무15	-	30,021	송파구 거여동 367전 일원	30,021	군업무시설
업무16	-	6,372	송파구 거여동 367전 일원	6,372	
업무17	-	11,541	송파구 거여동 산 40임 일원	11,541	
업무18	-	2,318	송파구 거여동 산 41-1임 일원	2,318	트램업무시설
업무19	-	5,411	송파구 거여동 산 41-1임 일원	5,411	
업무20	-	10,589	송파구 거여동 산 42임 일원	10,589	
업무21	-	6,687	송파구 거여동 산 71-17임 일원	6,687	오피스텔
업무22	-	14,656	-	14,656	
업무22-서	-	3,112	송파구 거여동 528-2잡 일원	3,112	
업무22-하	-	11,544	성남시 창곡동 504잡 일원	11,544	
업무23	-	4,995	하남시 학암동 253잡 일원	4,995	
업무24	-	13,517	-	13,517	오피스텔
업무24-성	-	8,242	성남시 창곡동 128잡 일원	8,242	
업무24-하	-	5,275	하남시 학암동 566잡 일원	5,275	
업무25	-	3,460	성남시 창곡동 126전 일원	3,460	
업무26	①	44,147	-1	19,835	
			-1-서	15,464	
			-1-하	4,371	
			-2	13,884	
			-2-서	11,786	
			-2-하	2,098	
			-3	10,428	
업무27	-	16,201	-	16,201	
업무27-서	-	35	송파구 장지동 57-2도 일원	35	
업무27-성	-	16,166	성남시 창곡동 5전 일원	16,166	
업무28	-	14,337	성남시 창곡동 산1임 일원	14,337	
업무29	①	16,863	-1	7,687	
			-2	9,176	
업무30	-	14,183	송파구 장지동 602-7전 일원	14,183	

마. 교육시설용지

1) 유치원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693	4개소	3,693	
학21	-	804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4	
학22	-	1094	하남시 학암동 287잡 일원	1,094	
학23	-	906	성남시 창곡동 167-14대 일원	906	
학24	-	889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일원	889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3,693	4개소	3,693	
학21	-	804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4	
학22	-	1094	하남시 학암동 287잡 일원	1,094	
학23	-	906	성남시 창곡동 167-14대 일원	906	
학24	-	889	성남시 창곡동 384-4전 일원	889	

2) 초등학교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16,574	10개소	116,574	
학1	-	12,070	하남시 학암동 54전 일원	12,070	
학2	-	10,334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334	
학3	-	11,030	송파구 장지동 17전 일원	11,030	
학4	-	11,921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1,921	
학5	-	12,313	하남시 학암동 508잡 일원	12,313	
학6	-	10,803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803	
학7	-	12,000	성남시 창곡동 199-7전 일원	12,000	
학8	-	11,843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11,843	
학9	-	12,160	성남시 창곡동 27전 일원	12,160	
학10	-	12,100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2,100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16,579	10개소	116,579	
학1	-	12,070	하남시 학암동 54전 일원	12,070	
학2	-	10,334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334	
학3	-	11,030	송파구 장지동 17전 일원	11,030	
학4	-	11,926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1,926	
학5	-	12,313	하남시 학암동 508잡 일원	12,313	
학6	-	10,803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0,803	
학7	-	12,000	성남시 창곡동 199-7전 일원	12,000	
학8	-	11,843	성남시 창곡동 137잡 일원	11,843	
학9	-	12,160	성남시 창곡동 27전 일원	12,160	
학10	-	12,100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2,100	

3) 중학교(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61,380	5개소	61,380	
학11	-	12,906	하남시 학암동 514잡 일원	12,906	
학12	-	11,222	송파구 거여동 산50임 일원	11,222	
학13	-	11,097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11,097	
학14	-	13,098	성남시 창곡동 산3-1임 일원	13,098	
학15	-	13,057	성남시 창곡동 70-2임 일원	13,057	

4) 고등학교(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89,597	5개소	89,597	
학16	-	11,800	송파구 거여동 산43임 일원	11,800	
학17	-	35,318	송파구 거여동 산33임 일원	35,318	군기숙형 고등학교
학18	-	14,475	하남시 학암동 487잡 일원	14,475	
학19	-	14,040	성남시 창곡동 59-1전 일원	14,040	특성화고교
학20	-	13,964	성남시 창곡동 297답 일원	13,964	

5) 교육연구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599	1개소	5,599	
교1	-	5,599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5,599	

사. 기타시설용지

1) 주차장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1,396	11개소	41,396	
주1	-	9,951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9,951	
주2	-	1,110	송파구 거여동 271-1전 일원	1,110	
주3	-	1,310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310	
주4	-	1,575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1,575	
주5	-	1,480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	
주6	-	1,29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6	
주7	-	1,187	성남시 창곡동 338-3답 일원	1,187	
주8	-	2,62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	
주9	-	1,164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4	
주10	-	1,236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36	
주11	-	18,459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	기존 환승주차장 활용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1,298	11개소	41,298	
주1	-	9,951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9,951	
주2	-	1,012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012	
주3	-	1,310	송파구 거여동 266답 일원	1,310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주4	-	1,575	송파구 거여동 산38임 일원	1,575	
주5	-	1,480	성남시 창곡동 산22-1임 일원	1,480	
주6	-	1,296	성남시 창곡동 170-2답 일원	1,296	
주7	-	1,187	성남시 창곡동 338-3답 일원	1,187	
주8	-	2,628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628	
주9	-	1,164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1,164	
주10	-	1,236	성남시 창곡동 383-4답 일원	1,236	
주11	-	18,459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18,459	신교통수단결정단계에서 기존 환승주차장 활용여부 연계 검토

2) 자동차정류장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6,005	1개소	56,005	
차1	-	56,005	-	56,005	
차1-서	-	55,613	송파구 장지동 586-2전 일원	55,613	
차1-성	-	392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392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5,721	1개소	55,721	
차1	-	55,721	-	55,721	
차1-서	-	55,467	송파구 장지동 562답 일원	55,467	
차1-성	-	254	성남시 복정동 225답 일원	254	

3) 철도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7,938	1개소	17,938	
철도3	-	17,938	송파구 장지동 592-5답 일원	17,938	차량기지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연장(m)	면적(㎡)	
합계		63,255	3개소			5,500	63,255	
철도1		39,707	-			5,500	39,707	
철도1-서-1	-	20,961	송파구 장지동 485-2잡 일원	송파구 거여동 산71-36임 일원	위례지구	2,620	20,961	
철도1-서-2	-	8,829	송파구 장지동 600-2차 일원	송파구 장지동 583-9도 일원	위례지구	917	8,829	
철도1-성	-	8,475	성남시 창곡동 207-3도 일원	성남시 창곡동 산15-1임 일원	위례지구	1,060	8,475	
철도1-하	-	1,442	하남시 학암동 530임 일원	하남시 학암동 625구 일원	위례지구	180	1,442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연장(m)	면적(㎡)	
철도2	-	5,610	성남시 복정동 179-1주 일원	성남시 창곡동 109-1답 일원	위례지구	723	5,610	
철도3	-	17,938	송파구 장지동 592-5답 일원			-	17,938	차량기지

주) 철도1-서-1 : 하천1(986㎡), 도로(1,575㎡)와 중복결정
철도1-서-2 : 주차장11(1,298㎡), 광장24-서-2(937㎡), 도로(857㎡)와 중복결정
철도1-성 : 도로(743㎡)와 중복결정
철도2 : 하천2(357㎡), 수도1(120㎡), 도로(498㎡)와 중복결정

4) 복합용지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57,034	2개소	157,034	
E1-1	-	20,404	-	20,404	
E1-1-서	E1-1-서	19,854	송파구 거여동 산 62-1임 일원	19,854	
E1-1-하	E1-1-하	550	하남시 학암동 산 1임 일원	550	
E1-2	-	136,630	-	136,630	
E1-2-서	E1-2-서	98,867	송파구 장지동 627답 일원	98,867	
E1-2-성	E1-2-성	37,763	성남시 창곡동 산 1임 일원	37,763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4,503	3개소	44,503	
E1-1	-	20,299	-	20,299	
E1-1-서	E1-1-서	19,749	송파구 거여동 산 62-1임 일원	19,749	
E1-1-하	E1-1-하	550	하남시 학암동 산 1임 일원	550	
E1-2	①	24,204	-1	11,889	
			-2	12,315	
			-2-서	11,920	
			-2-성	395	

5) 문화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4,026	4개소	44,026	
문화1	-	5,590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5,590	문화센타 및 여성정보센타
문화2	-	27,80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7,807	문화센타 및 연구센타
문화3	-	10,269	성남시 창곡동 359-2답 일원	10,269	
문화4	-	360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360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4,026	4개소	44,026	
문화1	-	5,590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5,590	문화센타 및 여성정보센타
문화2	-	27,807	성남시 창곡동 산83-1임 일원	27,807	문화센타 및 연구센타
문화3	-	10,269	성남시 창곡동 359-2답 일원	10,269	
문화4	-	360	성남시 창곡동 385전 일원	360	

6) 사회복지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7,628	5개소	17,628	
복지1	-	1,575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1,575	주간노인보호센타
복지2	-	8,016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16	노인주거복지시설
복지3	-	2,055	송파구 거여동 503-1잡 일원	2,055	
복지4	-	2,947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947	
복지5	-	3,035	성남시 창곡동 164-7잡 일원	3,035	노인복지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7,653	5개소	17,653	
복지1	-	1,575	하남시 학암동 산1임 일원	1,575	주간노인보호센타
복지2	-	8,041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8,041	노인주거복지시설
복지3	-	2,055	송파구 거여동 503-1잡 일원	2,055	
복지4	-	2,947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947	
복지5	-	3,035	성남시 창곡동 164-7잡 일원	3,035	노인복지시설

7) 종교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28,581	11개소	28,581	
종1	-	5,861	하남시 감이동 산85임 일원	5,861	
종2	-	2,640	하남시 학암동 37답 일원	2,640	
종3	-	4,119	하남시 학암동 287잡 일원	4,119	
종4	-	2,030	송파구 장지동 393임 일원	2,030	
종5	-	1,400	송파구 장지동 406전 일원	1,400	
종6	-	1,565	송파구 장지동 363전 일원	1,565	
종7	-	1,839	성남시 창곡동 244-1전 일원	1,839	
종8	-	2,105	성남시 창곡동 293-4수 일원	2,105	
종9	-	4,114	성남시 창곡동 산60임 일원	4,114	
종10	-	1,293	성남시 창곡동 산70-2임 일원	1,293	
종11	-	1,615	성남시 복정동 231-11전 일원	1,615	

8) 전기공급설비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5,628	2개소	5,628	
전1	-	2,655	하남시 학암동 213잡 일원	2,655	변전시설
전2	-	2,973	송파구 장지동 539-2잡 일원	2,973	변전시설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6,028	3개소	6,028	
전1	-	2,655	하남시 학암동 213잡 일원	2,655	변전시설
전2	-	2,973	송파구 장지동 539-2잡 일원	2,973	변전시설
전3	-	400	성남시 창곡동 459전 일원	400	철탑부지

9) 가스공급설비(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2,034	1개소	12,034	
가1	-	12,034	하남시 학암동 252잡 일원	12,034	

10) 열공급설비(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44,786	1개소	44,786	
열1	-	44,786	하남시 학암동 226잡 일원	44,786	

11) 수도공급시설

■기정

도면번호	시설명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685	4개소	18,685	
수도2	-	2,497	하남시 학암동 산8임 일원	2,497	배수지
수도3	-	10,494	하남시 학암동 산30임 일원	10,494	배수지
수도4	-	5,244	성남시 창곡동 산65-1임 일원	5,244	배수지
수도5	-	450	송파구 거여동 453-1답 일원	450	가압장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61,645	5개소			61,645	
수도1	-	42,960	지구계 남동측	지구계 남서측	복정역	42,960	송수시설
수도1-서			지구계 남동측	근린공원 11-서	복정역	7,618	
수도1-성			근린공원 11-서	지구계 남서측	복정역	35,342	
수도2	-	2,497	하남시 학암동 산8임 일원			2,497	배수지
수도3	-	10,494	하남시 학암동 산30임 일원			10,494	배수지
수도4	-	5,244	성남시 창곡동 산65-1임 일원			5,244	배수지
수도5	-	450	송파구 거여동 453-1답 일원			450	가압장

주) 수도1-서 : 천2-서(1,078㎡), 도로(613㎡)와 중복결정

수도1-성 : 천2-성(1,955㎡), 도로(2,346㎡)와 중복결정

12) 폐기물처리시설(변경 없음)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7,871	1개소	17,871	
폐1	-	17,871	하남시 학암동 213잡 일원	17,871	폐기물처리시설

1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9,800	5개소	9,800	
위1	-	1,800	송파구 거여동 산37임 일원	1,800	주유소
위2	-	2,586	-	2,586	주유소

위2-서	-	19	송파구 장지동 319-5도 일원	19	
위2-성	-	2,567	성남시 창곡동 1-3전 일원	2,567	
위3	-	2,266	-	2,266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3-서	-	444	송파구 장지동 544-3잡 일원	444	
위3-성	-	1,822	성남시 창곡동 1-3전 일원	1,822	
위4	-	1,706	성남시 창곡동 446-4답 일원	1,706	주유소
위5	-	1,442	성남시 복정동 231-3대 일원	1,442	주유소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9,800	5개소	9,800	
위1	-	1,800	송파구 거여동 산37임 일원	1,800	주유소
위2	-	2,586	-	2,586	주유소
위2-서	-	19	송파구 장지동 319-5도 일원	19	
위2-성	-	2,567	성남시 창곡동 1-3전 일원	2,567	
위3	-	2,266	-	2,266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위3-서	-	444	송파구 장지동 544-3잡 일원	444	
위3-성	-	1,822	성남시 창곡동 1-3전 일원	1,822	
위4	-	1,706	성남시 창곡동 446-4답 일원	1,706	주유소
위5	-	1,442	성남시 복정동 231-3대 일원	1,442	주유소

14) 군자녀기숙사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8,873	1개소	18,873	
기1	-	18,873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8,873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5,484	1개소	15,484	
기1	-	15,484	송파구 장지동 420임 일원	15,484	

15) 종합의료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2,538	1개소	12,538	
의1	-	12,538	송파구 거여동 산49임 일원	12,538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2,538	1개소	12,538	
의1	-	12,538	송파구 거여동 산60-1임 일원	12,538	

16) 도시지원시설

■기정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45,075	4개소	145,075	
지원1	①	89,186	-	89,186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 가능
		44,834	-1	44,834	
지원1-1-서		26,260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26,260	

지원1-1-성		18,574	성남시 창곡동 73전 일원	18,574	
		44,352	-2	44,352	
지원1-2-서		3,843	송파구 장지동 579차 일원	3,843	
지원1-2-성		40,509	성남시 창곡동 79-6답 일원	40,509	
지원2	지원2	49,379	성남시 복정동 213답 일원	49,379	
지원3	지원3	6,510	성남시 복정동 227-7전 일원	6,510	

■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합계		144,908	4개소	144,908	
지원1	①	89,005	-1	44,658	대지분할가능선에 따라 분할 가능
			-1-서	26,627	
			-1-성	18,031	
			-2	44,347	
			-2-서	3,843	
			-2-성	40,504	
지원2	-	49,376	성남시 복정동 213답 일원	49,376	
지원3	-	6,527	성남시 복정동 227-7전 일원	6,527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도 (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단독주택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	D1-1 ~ D1-3, D2-1 ~ D2-5, D3-1 ~ D3-3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1층 전체 바닥면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필지당 가구수	•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겸용주택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재료는 친환경소재를 권장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단, 1층이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D	D1-1 ~ D1-3, D2-1 ~ D2-5, D3-1 ~ D3-3	형태 및 외관	• 지붕 및 옥탑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겸용주택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단독주택용지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50% 이내에서 허용한다. 단 평지붕은 휴게시설, 녹지공간 또는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2.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3. 평지붕외곽을 따라 띠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4.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색채 및 옥외 광고물	•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3>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는 가로형간판만 허용한다. - 가로형간판의 설치는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며, 점포당 1개 이내로 제한한다. 가로형광고물은 입체형문자, 도형부착으로 제한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타 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1-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R1 (점포겸용주택)	R2 (일반형주택)	R3 (블록형주택)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주택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내지 자목, 타목 중 노래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3층 이하 공동주택 (단, 아파트, 기숙사 제외) • 환경친화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형 집합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서울시 / 성남시 / 하남시 150% 이하 / 160% 이하 / 180% 이하	10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다가구주택일 경우 1층부 전체를 필로티 설치 후 주차장으로 사용시 4층)	2층	3층
1필지당 가구수		5가구 이하 (근린생활시설 입지시 4가구 이하)	2가구 이하	50가구 미만
해당블록		D1-1, D1-3, D2-1, D2-2, D3-1	D1-2, D2-3	D2-4, D2-5*, D3-2*, D3-3*

주) * 특별계획구역

<별표1-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규모(㎡)	비고
계			105,684	212	530		2.5인/세대
D2-4		85㎡초과	25,613	51	127	495	
	-1		10,722	21	52	495	
	-2		14,891	30	75	495	
D2-5*		85㎡초과	39,731	80	200	495	
	-1		19,800	40	100	495	
	-2		19,931	40	100	495	
D3-2*		85㎡초과	29,883	60	150	495	
	-1		10,075	20	50	495	
	-2		19,808	40	100	495	
D3-3*		85㎡초과	10,457	21	53	495	

주) * 특별계획구역

<별표1-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블록형 단독주택	• 용지의 조성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부록5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 요령'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전체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다단식 대지단면계획 -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 - 1호 내지 2호에 부합되는 입체적 건축물 단면계획 - 대상지 주변의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연접부에 대한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구분	조성기준
	- 자연자원(수목, 표토, 수계)의 보존 및 활용계획과 다단계 시행계획 - 위례신도시 경관형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외관계획, 지정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단지경관 시뮬레이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구배는 15% 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 시에는 강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 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m 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m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옹벽(석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m까지만 허용한다. - 옹벽(석축 포함)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m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m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른다.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D	D1-1~ D1-3, D2-1~ D2-5, D3-1~ D3-3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주거(거실, 식당, 침실, 화장실) 또는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별표1-1>에 따라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허용된 점포겸용주택의 경우 1층과 지하층에 근린생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지하층 층별 면적은 건축면적 이내로 하며, 지하2층 이하는 기계실 및 주차용도에 한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1필지당 가구수	• 1필지당 세대수는 <별표1-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점포겸용주택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의 경우 건축물의 재료는 친환경소재를 권장한다. - 동일용도 주변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단독주택용지 1층 층고는 4.5m 이내가 되도록 한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단, 1층이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단독주택용지의 점포겸용주택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단독주택용지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50% 이내에서 허용한다. 단 평지붕은 휴게시설, 녹지공간 또는 기타 시설물 유지관리 이외에 용도로 사용하면 아니된다. 2.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불법증축을 예방하기 위해 복층구조를 위한 2중 슬라브 설치를 금지하고, 허용층수와 연계된 다락 복층구조는 허용한다. 3. 경사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D	D1-1 ~ D1-3, D2-1 ~ D2-5, D3-1 ~ D3-3	형태 및 외관	4. 평지붕외곽을 따라 띠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5.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6.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뒷면 지붕에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및 대문의 높이는 1.2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단독주택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색채 및 옥외 광고물	•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3>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단독주택용지 내 점포는 가로형간판만 허용한다. - 가로형간판의 설치는 지상1층 상단 정면에 한하며, 점포당 1개 이내로 제한한다. 가로형광고물은 입체형문자, 도형부착으로 제한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대지 내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기타 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1-1>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R1 (점포겸용주택)	R2 (일반형주택)	R3 (블록형주택)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점포겸용주택 -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목 내지 자목, 타목 중 노래연습장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주택 (단, 다중주택 제외) - 3층 이하 공동주택 (단, 아파트, 기숙사 제외) • 환경친화적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단독형 집합주택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50% 이하	50% 이하
용적률		서울시: 150% 이하 / 성남시: 160% 이하 / 하남시: 180% 이하	100% 이하	120% 이하
최고층수		4층 (1/2이상 필로티를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포함)	2층	3층
가구수		호당 5가구 이하	호당 3가구 이하	필지당 50호 미만 호당 3가구 이하
해당블록		D1-1, D1-3, D2-1, D2-2, D3-1	D1-2, D2-3	D2-4, D2-5, D3-2*, D3-3*

주) * 특별계획구역

<별표1-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평균규모(㎡)	비고
계			105,684	212	530		2.5인/세대
D2-4		85㎡초과	25,613	51	127	495	
	-1		10,722	21	52	495	
	-2		14,891	30	75	495	
D2-5		85㎡초과	39,731	80	200	495	
	-1		19,800	40	100	495	
	-2		19,931	40	100	495	
D3-2*		85㎡초과	29,883	60	150	495	
	-1		10,075	20	50	495	
	-2		19,808	40	100	495	
D3-3*		85㎡초과	10,457	21	53	495	

주) * 특별계획구역

<별표1-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기준

구분	조성기준
블록형 단독주택	• 용지의 조성은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부록5 '환경친화적인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조성요령'에 의거하여야 하며, 이때 주택을 건설하고자하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시 전체필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나친 옹벽발생 및 과도한 토공사 발생을 억제시키는 다단식 대지단면계획 - 주변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활용하고 자연지형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 - 1호 내지 2호에 부합되는 입체적 건축물 단면계획

구분	조성기준
	- 대상지 주변의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연접부에 대한 환경친화적 공간계획 - 자연자원(수목, 표토, 수계)의 보존 및 활용계획과 다단계 시행계획 - 위례신도시 경관형성계획에 따른 건축물의 형태, 외관계획, 지정한 주요 조망점에서의 단지경관 시뮬레이션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되도록 하여야 한다. - 도로구배는 15% 이하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5% 초과 시에는 강우, 강설시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승인(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원형지내 자연법면(식재처리)의 구배는 50% 이하로 조성한다. - 높이 1.5m 이하의 단은 자연법면을 원칙으로 한다. - 높이 1.5m를 초과하는 법면의 처리는 자연법면과 옹벽(석축 포함)처리의 동시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한 단의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으며, 옹벽(석축 포함) 설치는 높이 1.5m까지만 허용한다. - 옹벽(석축 포함) 및 법면이 계단식으로 반복될 경우 연속하여 3단 이상의 조성은 금지한다. 이때 연속된 옹벽(석축 포함)간은 최소 3m 이상 이격되어야 하며, 단과 단 사이는 최소 1.5m 이상의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법면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6'을 따른다.

2) 근린생활시설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	근생1 ~ 근생8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층고는 4.5m 이내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2.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0.8m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근생	근생1 ~ 근생8	색채 및 옥외 광고물	•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3>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점포는 가로형간판만 허용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SR1 (일반근린생활시설용지)	SR2 (공공근린생활시설)	SR3 (공공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2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5층
해당블록		근생5, 근생6, 근생7, 근생8	근생3	근생1, 근생2, 근생4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근생	근생1 ~ 근생8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며, 지하층은 교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2-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획지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전면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지침도상에 표기된 폭 이상으로 후퇴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지상에 노출되는 지하층의 외벽이나 기초벽 등 도로에 면하는 건물 기단부는 지상층의 외벽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기존건축물 또는 개발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 근린생활시설의 1층 층고는 4.5m 이내로 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지붕 형태 및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계획한 경우,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2. 물탱크는 지붕구조물 내에 차폐 · 설치하며, 실외기 및 안테나 등은 전면가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이때 지붕의 형태 및 색상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차폐시설의 계획을 권장한다. • 담장 및 대문, 계단 등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0.8m 이하의 규모로 설치할 수 있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건축물의 담장 재료는 친환경소재의 투시형 재료 또는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근생	근생1 ~ 근생8	색채 및 옥외 광고물	• 색채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변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여야 한다.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건축물 색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3-3>을 따른다. • 옥외광고물 -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점포는 가로형간판만 허용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2-1>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허용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SR1 (일반근린생활시설용지)	SR2 (공공근린생활시설)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요양소 제외)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해당블록		근생5, 근생6, 근생7, 근생8	근생1, 근생2, 근생3, 근생4

3) 공동주택용지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1~ A1-11, A2-1~ A2-13, A3-1~ A3-9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단, 85㎡초과 주택유형일 경우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배치 및 건축선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초고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 중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통경구간 -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지정한다. - 통경구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직각배치구간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직각배치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가로에대응한배치구간 - 트랜짓 몰 및 근린상업시설 인접가로를 따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하여 1층 또는 2층으로 커뮤니티 시설(부대복리시설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이 때 상층부에 아파트가 배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층수의 제한을 받으나, 형태의 제약은 두지 않는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단, 지침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은 <별표3-4>의 기준에 따른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또는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50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15층 이하 건축물의 동길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10층 이하 : 1개동 길이 80m 이하 2. 11층 이상 15층 이하 : 1개동 길이 60m 이하 •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 동일 주거동내 층수에 변화를 줄 경우,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차이가 최고층 높이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거동의 입면적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25층 이상의 주거동일 경우에는 20% 범위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계획고에서부터 옥탑부를 제외한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
		형태 및 외관	• 입면의 구성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동 입면을 구분한다. - 주거동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한다. -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구 분	최상층부	기준층부	지상층부
16층 이상	최상층에서 부터 2개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15층~7층	최상층	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
6층 이하	최상층부 구분 없음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

• 필로티
-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등에 따른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를 통하여 단지내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필로티를 설치한다.

• 접지층 계획
- 접지층(1층) 세대의 방범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1층 바닥높이 및 주동배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융통형 구조
- 융통형 구조의 세대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2.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3.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4.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 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며, 구배의 범위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2.5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MP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형태 및 외관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 최상층부에 차별화된 디자인의 입면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단지 내 변화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한다.

• 담장, 계단 등
-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조성하고,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색채 및 옥외 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3-3>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고명도(8.0이상), 저채도(2.0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중고명도(5.0~7.5), 중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설정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 지붕색은 아스팔트싱글, 금속기와 등 기성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보조색과 유사한 색상을 선정하여 사용한다. • 건축물의 입면 색채변화는 수직형보다는 수평형을 권장하며, 저층부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건설업체의 브랜드명(건설업체명 표기 금지), 주거동 호수 순으로 표기한다. • 마을이름과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은 간선도로변, 단지주출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명기하되,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심벌 또는 로고 포함)을 표기하는 경우 폭 4m, 높이 3m 이내로 표기할 수 있으며, 마을이름과 병기할 경우 건설업체의 심벌 또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 • 아파트 최상층부와 지상층부 구간에는 단지이름이나 주거동 호수 등 일체 표기를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자연지반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8-5>의 기준에 의한다. • 녹지면적률 - 전용면적 60㎡ 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15% 이상을 확보한다. - 전용면적 60~85㎡ 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 전용면적 85㎡ 초과 블록인 경우는 최소 30% 이상을 확보한다. - 혼합블록인 경우 단지내 전용면적별 세대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보존수목 활용율 - 보존수목 활용율을 30% 이상 조치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우수활용시설 - 우수활용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8-5>의 기준에 의한다. •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8-5>의 기준에 의한다. • 표토재활용율 -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사항	•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8-6>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3-1>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A1-1~A1-11, A2-1~A2-13, A3-1~A3-9

<별표3-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1,956,308	38,090	95,225	102	18	50		
A1-1	60~85㎡	65,147	1,416	3,540	92	17	50	200	분양
A1-2	85㎡초과	60,231	829	2,072	138	18	50	190	분양
A1-3	60~85㎡	31,988	557	1,392	109	17	50	190	분양
A1-4	85㎡초과	33,279	506	1,265	138	17	50	210	분양
A1-5	60~85㎡	62,282	1,314	3,285	109	21	50	230	분양
A1-6	60㎡이하	28,598	760	1,900	79	18	50	210	임대
A1-7	85㎡초과	37,158	565	1,413	138	19	50	210	분양
A1-8	60㎡이하	44,184	1,140	2,850	79	20	50	210	분양
A1-9	60~85㎡	60,522	1,500	3,750	92	19	50	230	임대
A1-10	60㎡이하	84,290	1,813	4,533	79	16	50	170	임대
	60~85㎡	36,125	626	1,565	98	16	50	170	임대
A1-11	60㎡이하	49,435	1,210	3,025	79	18	50	200	분양
	60~85㎡	32,957	600	1,500	109	18	50	200	분양
A2-1	60㎡이하	79,574	2,332	5,830	58	15	50	170	국민임대
A2-2	60㎡이하	47,720	1,087	2,718	79	15	50	180	분양
	60~85㎡	20,451	337	842	109	16	50	180	분양
A2-3	85㎡초과	42,008	517	1,293	138	14	50	170	분양
A2-4	60㎡이하	76,396	2,568	6,420	55	18	50	185	국민임대
A2-5	85㎡초과	31,445	410	1,025	138	15	50	180	분양
A2-6	60~85㎡	37,605	899	2,248	92	19	50	220	임대
A2-7	60~85㎡	52,722	1,289	3,223	92	20	50	225	임대
A2-8	85㎡초과	64,713	1,137	2,842	128	20	50	225	분양
A2-9	85㎡초과	39,467	693	1,733	128	20	50	225	분양
A2-10	85㎡초과	98,550	1,385	3,462	128	17	50	180	분양
A2-11	60~85㎡	88,977	1,550	3,875	109	17	50	190	분양
A2-12	85㎡초과	50,902	627	1,567	138	14	50	170	분양
A2-13	85㎡초과	45,241	565	1,412	128	13	50	160	임대
A3-1	85㎡초과	35,787	559	1,398	128	18	50	200	분양
A3-2	85㎡초과	33,936	477	1,193	128	21	50	180	분양
A3-3	60㎡이하	15,062	519	1,297	58	16	50	200	국민임대
	60㎡이하	22,594	571	1,427	79	16	50	200	임대
A3-4	85㎡초과	111,271	1,999	4,997	128	20	50	230	분양
A3-5	85㎡초과	42,118	699	1,748	138	22	50	230	분양
A3-6	85㎡초과	83,924	1,376	3,440	128	20	50	210	분양
A3-7	85㎡초과	57,173	982	2,455	128	19	50	220	분양
A3-8	60~85㎡	81,088	1,673	4,183	109	20	50	225	분양
A3-9	85㎡초과	71,388	1,003	2,507	128	17	50	180	분양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3-3> 권역별 색채계획

구분	색구분	색 상		공동주택단지	공공청사
A-1	주조색		YR ~ Y	명도: 8이상 채도 : 1.5이하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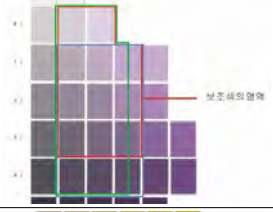	YR ~ Y, P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6.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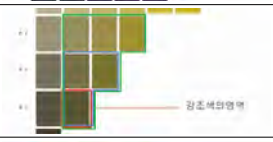	Y~YR, N9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6.0 채도: 4.0~10.0
A-2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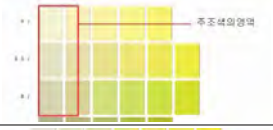	YR~Y	명도: 8이상 채도: 1.5이하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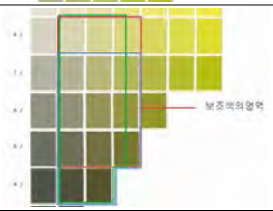	YR~Y, P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6.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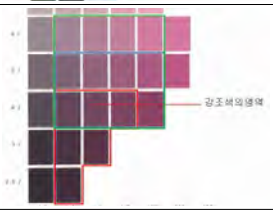	P, RP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6.0 채도: 4.0~10.0

< 권역별 색채테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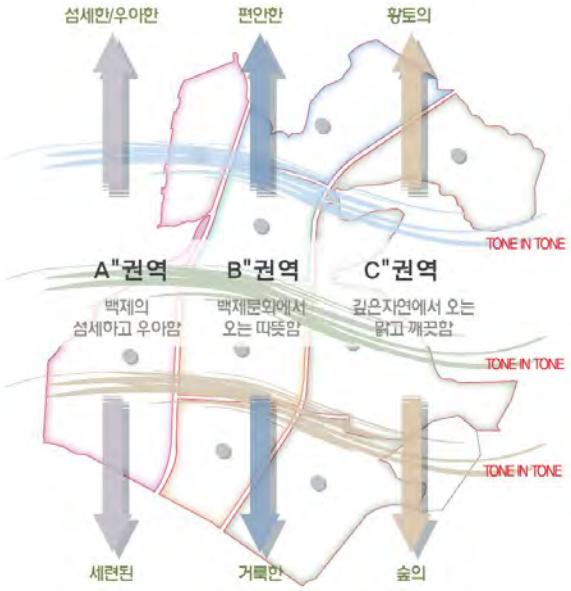

구분	색구분	색 상		공동주택단지	단독 및 공공청사	상업 및 업무
B-1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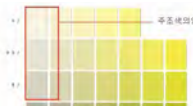	Y	명도: 8이상 채도: 1.5이하	〃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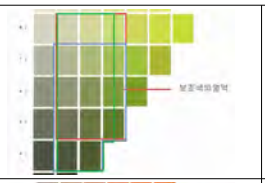	YR~GY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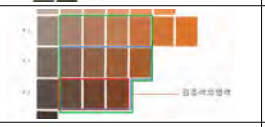	YR, GY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B-2	주조색		YR~Y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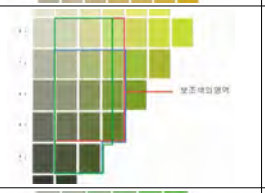	YR~Y, 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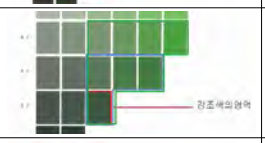	G, B, N9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B-3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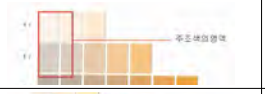	YR~Y, PB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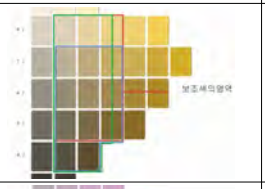	YR~Y, P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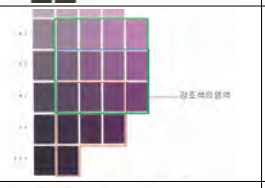	Y, B, P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B-4	주조색		YR~Y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	〃
	보조색		YR~Y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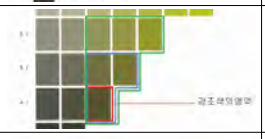	YR~Y, B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C-1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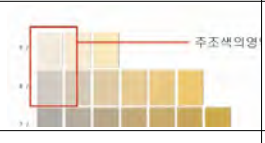	R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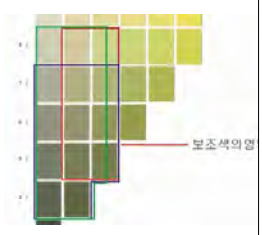	R, Y~GY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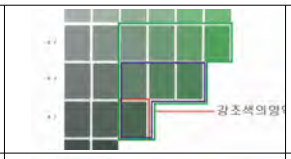	YR~Y,GY~G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C-2	주조색		Y~GY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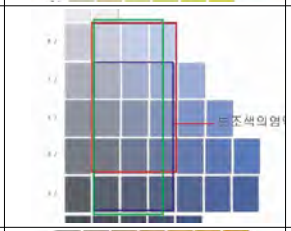	Y~GY, P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YR, Y~GY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C-3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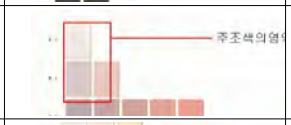	R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	〃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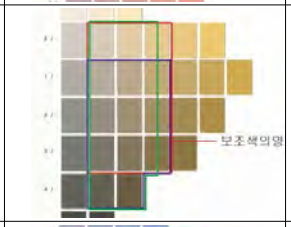	R~YR,GY~G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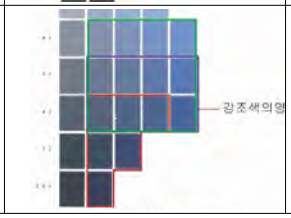	GY, PB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별표3-4>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

주택의 형태
• 가로대응형 - 트램구간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트램구간에 면하여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며 가로에 평행 및 직각배치 모두 허용하며, 15층 이하(12층 이하 권장)로 계획한다. - 각 주거동의 저층부는 다양한 형태의 연도형 시설로 계획한다. - 단지 내부로는 클러스터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주거동의 입면은 돌출형 발코니 및 복층형 평면을 통해 변화감을 준다. - 최상층부는 펜트하우스 계획으로 리듬감 있는 생활가로를 구성한다.
• 경관특화형 - 서울도심에서의 접근로와 남북방향 간선도로와의 교차부 및 위례신도시 도입 지점의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교차부에 대응하여 탑상형의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도로반대편 주거동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 경관특화형 주거동은 주요 접근로상의 경관을 고려하여 옥탑부 및 외관 디자인을 단지내 타 주거동과 차별화하여 특화한다. 또한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경관 조명을 계획한다. - 경관특화형을 배치해야하는 인접 단지간에는 상호 디자인협의를 통하여 배치 및 디자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시행시기가 다를 경우 선행 단지의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한다.)
• 지구상징형 - 지구 외부에서 위례신도시의 인지가 쉬운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위례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주거동을 계획한다.

- 주변 주거동과 차별화된 재료 및 색상으로 입면을 특화하여 디자인한다.
- 저층부 부대시설 및 필로티 계획과 연계된 중앙광장의 위치를 지정하며, 주거동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 최상층부는 신도시의 상징성이 강조되도록 디자인한다.
- 주거동은 주변 주거동보다 층수를 높게 계획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초고층권장)

• 도시경관형
- 위례신도시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는 2개의 간선도로변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간선도로변의 획일적이고 위압적인 경관 조성을 방지하고 도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상형 주거동과 탑상형 주거동 또는 판상형과 탑상형의 혼합형으로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각 주거동의 상층부는 특화된 주거유형(복층형, 펜트하우스 등) 또는 정원(옥상정원, 공중정원) 또는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조형물, 특화된 지붕형태)이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 판상형의 측벽이 도로에 면할 경우 가로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측벽 특화 디자인)
- 도로변의 저층부는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수변경관형
- 장지천과 창곡천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수변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광장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을 적절히 계획하여 수변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 수변으로의 시각적 연속성, 단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중정원과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최상층부에는 수변경관 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 테라스하우스를 계획한다.

• 산록경관형
- 청량산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산록변에 보행자 녹도축을 중심으로 탑상형을 배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 필로티 계획으로 바람길 및 시각적 통로를 확보한다.
- 최상층부는 산록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를 계획한다.
- 측벽 녹화 및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	A1-1~A1-11, A2-1~A2-13, A3-1~A3-9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3-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A1-9, A2-6, A2-7 블록은 국토해양부와 국방부간의 '위례 택지개발예정지구내 군시설 이전사업 협력을 위한 기본협약서'에 정의된 "대체시설"로서 "주거복지시설"중 군아파트 용도에 부합되어야 한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의 제2조의 제8호, 제9호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조의 부대복리시설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요구하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3-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3-2>에 따라야 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각 아파트 단지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3-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부대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근린생활시설 등은 각 블록마다 1개소가 배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규모가 큰 블록으로서 이용상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소규모 분산 상가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등은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단지출입구에 배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복리시설 중 주민운동시설, 노인정 등은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같이 보행 접근성이 양호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 설치시 유치원을 전체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커뮤니티회랑과 연접한 공동주택단지는 커뮤니티회랑 내 학교와 인접하여 복리시설배치를 권장하고 단지 내 보행로의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오픈스페이스 및 시설의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5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상시 21인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보육시설의 위치는 1층에 한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3항 각호의 위험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이격시켜야 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침도를 따른다. • 공동주택용지의 각종 건축물의 배치구간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르며, 공동주택용지 내 배치구간에 주동이 걸친 경우 적용기준은 각각의 배치구간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해지지 않은 구간에 대하여는 배치구간 경계를 기준으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 중 50% 이상이 포함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또한 주동의 수평투영면적이 각각의 배치구간에 같은 면적 비율로 포함될 경우에는 층고제한이 강화된 배치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초고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20층 이상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 중층배치구간 - 도시전체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하여 해당블록에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한다. • 통경구간 - 주요 조망축으로의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개방감을 부여하기 위하여 지상 건축물의 건축을 금지하는 구간을 지정한다. - 통경구간의 설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경구간내에는 공동주택 및 단지내 부대복리시설과 같은 일체의 건축물(지상부만 해당됨)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보행자의 휴식을 위한 벤치 및 휴게시설의 설치는 예외로 한다.

			• 건축물 직각배치구간 - 지역간 통과교통을 처리하는 간선도로변 차량소음 등의 환경악영향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고 가로변의 폐쇄감을 저감토록 하기 위해 간선가로변에 건축물 직각배치구간을 지정한다. - 직각배치구간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배치 및 건축선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개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2.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개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22.5°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대지형상이나 건축물 배치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직각배치를 준수하지 못한다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 가로에대응한 배치구간 - 트랜짓 몰 및 근린상업시설 인접가로를 따라 커뮤니티 활성화 및 생기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에 면하여 1층 또는 2층으로 커뮤니티 시설(부대복리시설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 때 상층부에 아파트가 배치될 수 있으며 아파트의 경우 층수의 제한을 받으나, 형태의 제약은 두지 않는다. • 고속도로변 배치구간 - 서울외곽고속도로변 공동주택에 한하여 건축한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별 층고를 준수하여야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 -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하며, 그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단, 지침도에 별도의 지정이 없을 경우는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최소 6m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형태 및 외관	•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은 <별표3-4>의 기준에 따른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또는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50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15층 이하 건축물의 동길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10층 이하 : 1개동 길이 80m 이하 2. 11층 이상 15층 이하 : 1개동 길이 60m 이하 •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 동일 주거동내 층수에 변화를 줄 경우,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차이가 최고층 높이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거동의 입면적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25층 이상의 주거동일 경우에는 20% 범위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계획고에서부터 옥탑부를 제외한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

<table>
<tr><td></td><td></td><td>형태
및 외관</td><td>•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은 <별표3-5>의 기준에 따른다.

• 주거동의 길이제한 및 층수변화
- 양호한 일조 및 조망의 확보, 원활한 통행의 보장, 경관 차폐감의 저감 및 질서있는 스카이라인의 조성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1개층의 호수 또는 길이(이하 '주거동의 길이'라 한다.)를 제한하며, 그 기준은 4호 연립 이하 또는 50m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단, 15층 이하 건축물의 동길이는 다음 각호와 같이 완화할 수 있다.
1. 10층 이하 : 1개동 길이 80m 이하
2. 11층 이상 15층 이하 : 1개동 길이 60m 이하

•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변화
- 동일 주거동내 층수에 변화를 줄 경우, 과도한 층수차이에 따른 경관적 부조화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주거동내의 층수차이가 최고층 높이의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주거동의 입면적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물 1동의 입면적은 3,500㎡ 이하(25층 이상의 주거동일 경우에는 20% 범위이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가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단, 합리적인 사유를 제시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축물의 길이는 건물의 전면에 대한 수평등각선의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형태가 일자형이 아닌 ㄱ,ㄷ, ㅁ, 타워형으로 된 경우 또는 절곡형의 건물로서 여러 방향에서 수평등각선상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장 긴 것을 그 건물의 길이로 한다. 건축물의 높이는 지반계획고에서부터 옥탑부를 제외한 높이(경사지붕 등 평슬라브 지붕이 아닌 경우에는 처마높이)를 말한다.

• 입면의 구성
- 대형건축물의 시각적 위압감을 저감하고, 단지 경관의 단조로움을 극복하며, 다양하면서 동질감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동 입면을 구분한다.
- 주거동은 최상층부(최상층에서부터 2개층이내), 기준층부(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 지상층부(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이내)로 구분한다.</td></tr>
<tr><td></td><td></td><td>형태
및 외관</td><td>- 각 부분에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중 2개 이상의 요소를 적용하여 각 부분간의 조화로운 입면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때, 최상층부는 재질, 색채, 입면 디자인 등에서 지붕과 동질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입면의 구분과 입면변화의 기준 >
<table><tr><th>구 분</th><th>최상층부</th><th>기준층부</th><th>지상층부</th></tr><tr><td>16층 이상</td><td>최상층에서
부터 2개층</td><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tr><tr><td>15층~7층</td><td>최상층</td><td>최상층부와 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td>지상1층에서부터
3개층</td></tr><tr><td>6층 이하</td><td>최상층부
구분 없음</td><td>지상층부를 제외한 부분</td><td>지상1층에서부터
2개층</td></tr></table>
• 필로티
- 단지 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필로티 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며, 휴먼링과 연접한 주동의 최끝단 세대는 필로티 구조로 할 수 있다.
- 건물동에 의한 옥외공간의 단절 등에 따른 보행동선의 우회, 시각적 폐쇄감 해소를 통하여 단지내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해 필로티를 설치를 권장한다.

• 접지층 계획
- 접지층(1층) 세대의 방범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1층 바닥높이 및 주동배치, 식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td></tr>
</table>

			• 융통형 구조 - 융통형 구조의 세대 조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본구조체의 전면철거 없이 리노베이션이 가능한 구조 2. 설비구조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 3. 단위세대의 평면변화가 용이한 구조 4. 인접세대와의 부분 또는 전체 통합이 가능한 구조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 공동주택의 지붕형태는 단지 내 통일감 있는 디자인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붕형태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지붕의 형태가 경사지붕이 아닌 부분(옥탑 등 천공부구조물 포함)은 옥상면적의 8분의 1 이하여야 한다. 2. 경사지붕은 용마루를 갖춘 완전 경사지붕이 되도록 하며, 구배의 범위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 : 2.5이하가 되도록 한다. 단, MP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3. 최상층은 다락방설치 또는 복층형을 권장한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및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경사지붕이 아닌 경우, 최상층부에 차별화된 디자인의 입면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단지 내 변화감 있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 담장, 계단 등 -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로 조성하고, 재료는 화목류의 생울타리로 한다. - 보행자전용도로변이나 공원 등의 공공옥외공간시설과 접한 부분에는 담장을 대신하여 식수대 또는 둔덕 등을 조성하여 경계부를 자연스럽게 처리하도록 한다. - 계단의 경우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한다. • 단지 내 조경 - 단지 내 조경면적이라 함은 녹지면적과 조경시설면적(휴게소,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수경시설, 보행광장, 보행전용통로 등)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 각 공동주택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용면적 85㎡ 이하 부분 : 30% 이상(단, 60㎡ 이하 부분은 20% 이상) 2.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40% 이상 3. 평형혼합단지의 경우 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적용비율의 평균값 이상으로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간선도로변에 면한 공동주택용지는 간선도로변에 수림대 조성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녹지는 인근 근린공원 및 교육시설내 녹지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어린이 놀이터의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1. 어린이가 가급적 단지 내 간선도로를 횡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2. 놀이터 주변은 생명력이 강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화목관류를 밀식한 생울타리의 설치를 권장한다. 3. 동반자를 위한 휴게공간과 광장, 놀이공간 등을 적절히 구획하고, 모래판을 제외한 공간은 안전을 고려하여 고무매트나 고무블럭으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4. 놀이시설물은 안전성, 편리성, 견고성을 고려하고 유지관리가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동일한 단지 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공동주택용지 내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보행자전용도로변 가로수 : 이용자의 보행흐름을 유도하고 계절감을 느낄 수 있는 화목류 또는 교목이면서 수형과 그늘이 좋은 수종을 식재한다. 2. 보행자전용도로변 녹지 : 보행자전용도로의 녹지축과 연계되도록 통합설계를 검토하고, 관상효과가 큰 관목류와 교목을 식재하며 개화시기와 단풍색 등이 다른 다양한 수목을 선택하여 계절감과 경관의 다채로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3.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하되, 경관계획에서 정한 가로별 테마수종에 부합되도록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형태 및 외관	4.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교목류를 독립수로 식재한다. 5.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단지 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 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단지 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 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원활한 우수배제를 위해'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의 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 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 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등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도로 건너편 단지의 차량출입구로부터 50m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십자형 교차로 한다. - 진입차량의 대기로 인한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비초소 또는 차량진출입 통제장치는 차도에서 15m 이상 후퇴하여 설치한다. 단,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 또는 대지의 형상 등에 의해 이격거리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단지 내 차량동선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간선도로와의 교차는 직각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 중 근린생활시설 등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 직접 출입을 금한다.

<table>
<tr><td></td><td></td><td>형태
및 외관</td><td>- 공동주택용지의 단지 내 주차장은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지상주차는 비상용,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해 10%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투수성 포장’으로 한다. 다만,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지하주차장 설치비율을 6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지하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 지하주차장 설치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단지 내 자전거주차장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위치는 복지관, 관리소, 상가 건물, 주동,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마다 1개소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주동의 경우 필로티 및 출입구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규모는 1개소당 <자전거주차장의 1개소당 설치규모>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설치한다.
- 자전거주차장의 구조 및 기타설치기준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른다.

< 자전거주차장의 1개소당 설치규모 >
<table><tr><td>구 분</td><td>보관가능대수</td></tr><tr><td>주 동</td><td>주동세대수당 0.3대</td></tr><tr><td>상 가</td><td>30대</td></tr><tr><td>복지관 및 관리소</td><td>15대</td></tr><tr><td>어린이놀이터 및 운동시설</td><td>10대</td></tr></table></td></tr>
<tr><td></td><td></td><td>색채 및
옥외
광고물</td><td>•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고 <별표3-3> 및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주조색의 색상은 제시된 색상 범위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고명도(8.0이상), 저채도(2.0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 이미지를 통일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중고명도(5.0~7.5), 중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설정한다.
-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한다.
- 지붕색은 <별표3-4> 지붕색채의 범위 및 소재에서 제시하는 소재들 중 선택하며 주어진 보조색의 범위내에서 구매가 용이한 표준화된 소재를 사용한다. (단, 기준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가장 가까운 소재를 선택하되 명도, 채도, 색상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 건축물의 입면 색채변화는 수직형보다는 수평형을 권장하며, 저층부일수록 색의 명도를 낮추어 안정감을 갖도록 한다.

• 건물 측벽 상단에는 마을이름을 표기하고 그 아래에 건설업체의 브랜드명(건설업체명 표기 금지), 주거동 호수 순으로 표기한다.</td></tr>
<tr><td></td><td></td><td>색채 및
옥외
광고물</td><td>• 마을이름과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은 간선도로변, 단지주출입구 등 식별이 용이한 곳에 명기하되,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연속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한다.
• 건설업체의 브랜드명(심벌 또는 로고 포함)을 표기하는 경우 폭 4m, 높이 3m 이내로 표기할 수 있으며, 마을이름과 병기할 경우 건설업체의 심벌 또는 로고는 사용할 수 없다.
• 아파트 최상층부와 지상층부 구간에는 단지이름이나 주거동 호수 등 일체 표기를 할 수 없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td></tr>
</table>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자연지반면적률 - 대지면적에 대하여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 생태면적률 - 생태면적률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8-5>의 기준에 의한다. • 녹지면적률 - 전용면적 60㎡ 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15% 이상을 확보한다. - 전용면적 60~85㎡ 이하의 블록인 경우는 최소 20% 이상을 확보한다. - 전용면적 85㎡ 초과 블록인 경우는 최소 30% 이상을 확보한다. - 혼합블록인 경우 단지내 전용면적별 세대수 비율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보존수목 활용율 - 보존수목 활용율을 30% 이상 조치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우수활용시설 - 우수활용시설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8-5>의 기준에 의한다. •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에 관련한 사항은 <별표8-5>의 기준에 의한다. • 표토재활용율 - 표토재활용율을 5% 이상 반드시 시행하여야 한다. 단, 택지개발사업에 의한 대지조성 후 공급되는 사업지로서 표토가 상실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기타 사항	• 개발사업자는 심의(인·허가)시 <별표8-6>에서 규정하는 심의(인·허가) 신청서류 중 관련 도서(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3-1>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공동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A
	허용용도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A1-1~A1-11, A2-1~A2-13, A3-1~A3-9

<별표3-2> 공동주택(아파트)의 주택유형, 세대수, 평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명	주택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평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고
계		1,955,525	38,204	95,510	102.6	18	50	199.4	2.5인/세대
A1-1	60~85㎡	65,147	1,416	3,540	92	17	50	200	분양
A1-2	85㎡초과	60,231	829	2,072	138	18	50	190	분양
A1-3	60~85㎡	31,988	557	1,393	109	17	50	190	분양
A1-4	85㎡초과	33,279	506	1,265	138	17	50	210	분양
A1-5	60~85㎡	62,282	1,314	3,285	109	21	50	230	분양
A1-6	60㎡이하	28,598	760	1,900	79	18	50	210	임대
A1-7	85㎡초과	37,158	565	1,413	138	19	50	210	분양
A1-8	60㎡이하	44,184	1,140	2,850	79	20	50	210	분양
A1-9	60㎡이하	23,201	650	1,625	81	21	50	230	임대
	60~85㎡	35,058	750	1,875	106		50	230	임대
	85㎡초과	5,657	100	250	126		50	230	임대

A1-10	60㎡이하	2,965	90	225	56	16	50	170	국민임대
		81,325	1,920	4,800	72		50	170	임대
	60~85㎡	36,125	644	1,610	95		50	170	임대
A1-11	60㎡이하	49,435	1,210	3,025	79	18	50	200	분양
	60~85㎡	32,957	600	1,500	109		50	200	분양
A2-1	60㎡이하	79,652	2,334	5,835	58	15	50	170	국민임대
A2-2	60㎡이하	47,720	1,087	2,718	79	15	50	180	분양
	60~85㎡	20,451	337	842	109		50	180	분양
A2-3	85㎡초과	42,008	517	1,293	138	14	50	170	분양
A2-4	60㎡이하	76,396	2,568	6,420	55	18	50	185	국민임대, (영구임대 550호 포함)
A2-5	85㎡초과	31,445	410	1,025	138	15	50	180	분양
A2-6	60~85㎡	33,284	795	1,987	92	19	50	220	임대
A2-7	60~85㎡	52,722	1,289	3,223	92	20	50	225	임대
A2-8	85㎡초과	64,713	1,137	2,842	128	20	50	225	분양
A2-9	85㎡초과	39,467	693	1,733	128	20	50	225	분양
A2-10	85㎡초과	98,550	1,385	3,462	128	17	50	180	분양
A2-11	60~85㎡	88,977	1,550	3,875	109	17	50	190	분양
A2-12	85㎡초과	50,902	627	1,567	138	14	50	170	분양
A2-13	85㎡초과	45,307	566	1,415	128	13	50	160	임대
A3-1	85㎡초과	35,787	559	1,398	128	18	50	200	분양
A3-2	85㎡초과	33,936	477	1,193	128	21	50	180	분양
A3-3a	60㎡이하	15,863	545	1,362	58	18	50	200	국민임대
A3-3b	60㎡이하	21,793	545	1,362	79	18	50	200	임대
A3-4	85㎡초과	111,271	1,999	4,997	128	20	50	230	분양
A3-5	85㎡초과	42,118	699	1,748	138	21	50	230	분양
A3-6	85㎡초과	83,924	1,376	3,440	128	20	50	210	분양
A3-7	85㎡초과	57,173	982	2,455	128	19	50	220	분양
A3-8	60~85㎡	81,088	1,673	4,183	109	20	50	225	분양
A3-9	85㎡초과	71,388	1,003	2,507	128	17	50	180	분양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3-3> 권역별 색채계획

구분	색구분	색 상		공동주택단지	단독 및 공공청사	상업 및 업무
A권역	주조색		YR~Y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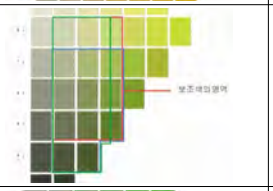	YR~Y, 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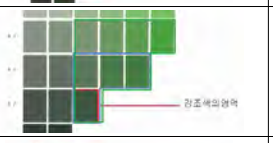	G, B, N9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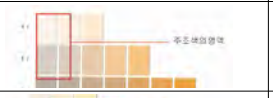	YR~Y, PB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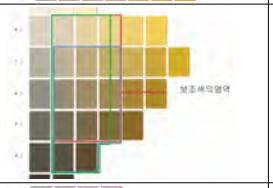	YR~Y, P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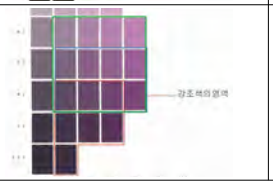	Y, B, P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B권역	주조색		YR ~ Y	명도: 8이상 채도 : 1.5이하	명도: 8이상 채도 : 1.5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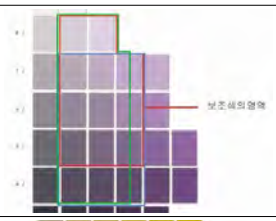	YR ~ Y, P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6.0	
	강조색		Y~YR, N9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6.0 채도: 4.0~10.0	
	주조색		YR~Y	명도: 8이상 채도: 1.5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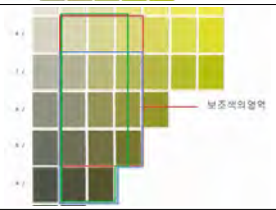	YR~Y, P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6.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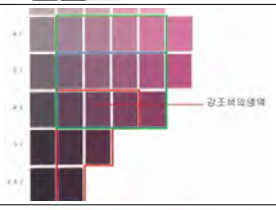	P, RP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6.0 채도: 4.0~10.0	
	주조색		Y	명도: 8이상 채도: 1.5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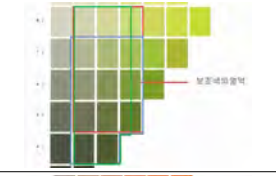	YR~GY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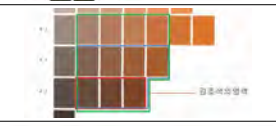	YR, GY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C권역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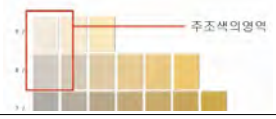	R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보조색		R, Y~GY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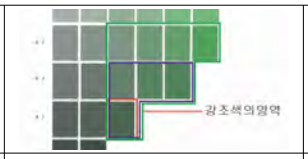	YR~Y,GY~G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주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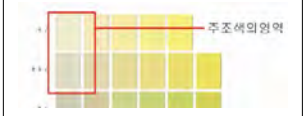	Y~GY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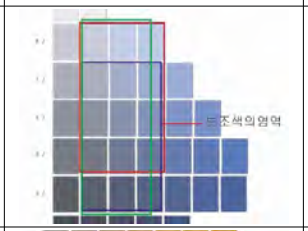	Y~GY, PB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YR, Y~GY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D권역	주조색		R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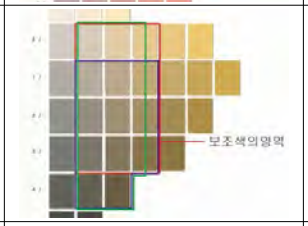	R~YR,GY~G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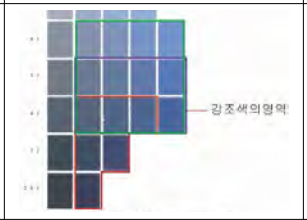	GY, PB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주조색		YR~Y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명도: 8이상 채도: 1.5 이하
	보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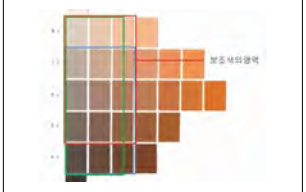	YR~Y	명도: 5.0~8.0 채도: 2.0~6.0	명도: 4.0~7.0 채도: 2.0~6.0	명도: 4.0~8.0 채도: 2.0~5.0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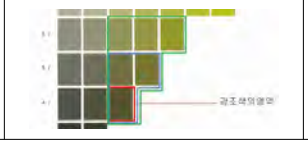	YR~Y, B	명도: 2.0~4.0 채도: 4.0~8.0	명도: 4.0~5.0 채도: 4.0~10.0	명도: 4.0~6.0 채도: 4.0~10.0

< 권역별 색채컨셉 및 적용방안 >

권역구분		컨셉	적용방안
A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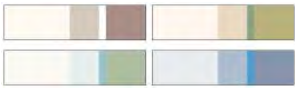	중심을 상징하는 핵심적이고 복합적인 권역 표현	중저채도 PB, RP, YR, GY계열

B권역		권역의 푸르름과 과거·현재가 공존하는 송파의 조화로움 및 세련미를 상징	중저채도의 조화로운 배색사용으로 밝고 시원한 이미지 연출 상업지역은 주거단지보다 높은 채도 사용으로 개성을 살림
C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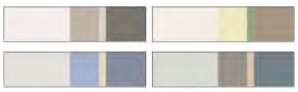	자연친화적인 이미지 상징	저채도 Y, PB, GY 계열
D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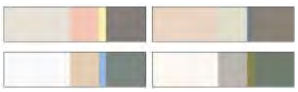	친환경 첨단도시 성남의 미리로 뻗어 나가는 젊음을 상징	중저채도 PB, RP, YR, GY계열
Color Free Zone		Color Free Zone 1 활기찬, 리듬감, 변화감	색채사용 자유 (도장이 아닌 다양한 소재의 사용마감 권장, 원색 고채도 금지) 채도의 범위만 규정
		Color Free Zone 2 개성 있는, 리듬감, 화려함	색채사용 자유 (도장이 아닌 다양한 소재 사용마감 및 조명 권장) 채도의 범위만 규정

< 색채권역 구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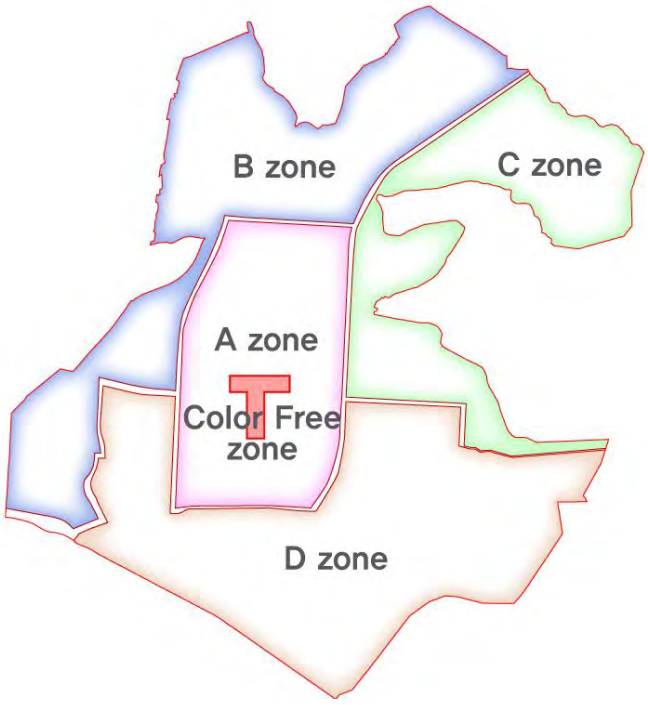

<별표3-4> 지붕색채의 범위 및 소재

소재구분	소재의 색채범위
아스팔트 싱글	L* : 27.59 a* : −5.44 b* : 4.31 Munsell 10G 2/2 L* : 25.50 a* : 4.79 b* : 6.15 Munsell 7.5YR 2/2
금속기와	L* : 31.63 a* : −2.09 b* : 4.08 Munsell 5GY 3/1 L* : 26.03 a* : −4.12 b* : 5.55 Munsell 7.5GY 3/2 L* : 29.93 a* : 3.09 b* : 4.75 Munsell 7.5YR 3/2

<별표3-5>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

주택의 형태에 관한 사항
• 가로대응형 - 트랜짓 몰 구간 및 상업용지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트랜짓 몰 구간 및 상업용지에 면하여 판상형 주동을 배치하며 가로에 평행 및 직각배치 모두 허용하며, 15층 이하(12층 이하 권장)로 계획한다. - 각 주거동의 저층부는 다양한 형태의 연도형 시설로 계획한다. - 단지 내부로는 클러스터형 외부공간을 조성한다. - 주거동의 입면은 돌출형 발코니 및 복층형 평면을 통해 변화감을 준다. - 최상층부는 펜트하우스 계획으로 리듬감 있는 생활가로를 구성한다.
• 경관특화형 - 서울도심에서의 접근로와 남북방향 간선도로와의 교차부 및 위례신도시 도입 지점의 인지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교차부에 대응하여 탑상형의 공동주택을 배치하고 도로반대편 주거동과의 조화를 고려한다. - 경관특화형 주거동은 주요 접근로상의 경관을 고려하여 옥탑부 및 외관 디자인을 단지내 타 주거동과 차별화하여 특화한다. 또한 야간경관을 고려하여 경관 조명을 계획한다. - 경관특화형을 배치해야하는 인접 단지간에는 상호 디자인협의를 통하여 배치 및 디자인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한다.(시행시기가 다를 경우 선행 단지의 배치 및 디자인을 고려한다.)
• 지구상징형 - 지구 외부에서 위례신도시의 인지가 쉬운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위례신도시를 상징할 수 있는 차별화된 디자인의 주거동을 계획한다. - 주변 주거동과 차별화된 재료 및 색상으로 입면을 특화하여 디자인한다. - 저층부 부대시설 및 필로티 계획과 연계된 중앙광장의 위치를 지정하며, 주거동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배치한다. - 최상층부는 신도시의 상징성이 강조되도록 디자인한다. - 주거동은 주변 주거동보다 층수를 높게 계획하여 인지성을 확보한다.(초고층권장)
• 도시경관형 - 위례신도시를 남북방향으로 관통하는 2개의 간선도로변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간선도로변의 획일적이고 위압적인 경관 조성을 방지하고 도로변의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상형 주거동과 탑상형 주거동 또는 판상형과 탑상형의 혼합형으로 상호 조화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 각 주거동의 상층부는 특화된 주거유형(복층형, 펜트하우스 등) 또는 정원(옥상정원, 공중정원) 또는 경관을 고려한 디자인(조형물, 특화된 지붕형태)이 반영되도록 계획한다. - 판상형의 측벽이 도로에 면할 경우 가로 경관을 고려하여 디자인한다.(측벽 특화 디자인) - 도로변의 저층부는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수변경관형 - 장지천과 창곡천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수변으로의 개방감을 확보하고 광장과 같은 개방적인 공간을 적절히 계획하여 수변 커뮤니티 활동의 거점이 되도록 한다. - 수변으로의 시각적 연속성, 단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공중정원과 필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저층부는 테라스하우스로, 최상층부에는 수변경관 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를 계획한다.
• 산록경관형 - 청량산에 면한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배치 및 건축계획 유형이다. - 산록변에 보행자 녹도축을 중심으로 탑상형을 배치하여 단지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 필로티 계획으로 바람길 및 시각적 통로를 확보한다. - 최상층부는 산록조망이 양호한 펜트하우스를 계획한다. - 측벽 녹화 및 옥상녹화를 권장한다.

4) 준주거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C	C1-1~C1-7, C2-1~C2-7, C3-1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블록별 세부기준과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은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SC1용도의 건축물은 주거 외 시설을 지상2층까지 설치할 수 있다.(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 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4-2>에 따라야 한다. •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 공동주택용지 및 트랜짓 몰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4-2>의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범위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2층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신교통수단 노선 연접부 2층 벽면지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지정한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주거외 용도가 설치되는 건축물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하고,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형태 및 외관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준주거용지 내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의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상가부분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별표8-1>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 외 규정하지 않은 주상복합용지 주거동의 외관 및 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제외)는 '공동주택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4-1> 준주거용지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구 분		준주거용지	
	도면표시	SC1	SC2
건축물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1층 :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C1-1*, C1-2*, C1-3*, C1-4*(C1-4-서, C1-4-하), C1-5*(C1-5-서, C1-5-하), C1-6*(C1-6-서, C1-6-하), C2-1*, C2-2*, C2-3*, C2-4*, C2-5*, C2-6*	C1-7, C2-7, C3-1
건축물 규모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평균용적률	전체 : 248% 이하 주거부분 : 222%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주) * 특별계획구역
학교정화구역내에 위치한 준주거용지의 경우 학교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은 불허용도임

<별표4-2> 준주거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평균용적률

블록명	규모 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비고
								주거부분	상업부분	
C1-1~ C1-6, C2-1~ C2-6	85㎡ 초과	174,456	2,813	7,033	-	-	60	248	222	2.5인/ 세대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SC	C1-1~ C1-7, C2-1~ C2-7, C3-1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블록별 세부기준과 주거용도와 주거외 용도의 비율은 <별표4-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연도형 아파트 배치구간'의 건축물은 저층부(2층 이하) 상업시설, 상층부(3층 이상) 주거시설로 구성한다.(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

			• SC1용도의 건축물 중 가로대응형 배치구간의 건축물은 상층부(3층 이상) 주거기능의 보호를 위하여 3층을 필로티 구조의 개방된 공간으로 조성하고 주거, 상업 등의 시설 설치를 불허하며, 녹지 및 휴게공간 등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 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4-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4-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용지와 조화로운 계획하고, 신교통수단과 연접한 구간은 보행활성화를 위하여 휴먼스케일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트랜짓 몰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저층 배치구간(7층 이하), 중층 배치구간 (15층 이하)으로 구분하여 높이제한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침도를 따른다. • 준주거용지 중 도면표시 SC1은 연도형배치구간, 중층배치구간, 초고층배치구간에 대하여 가로 구역별 최고높이를 적용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4-2>의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4-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 2층 벽면지정선)의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신교통수단 노선 연접부 2층 벽면지정선은 대지경계선에서 3m 후퇴하여 지정한다. • 주거 및 비주거 시설을 명확히 분리하여 계획한다. • 주거시설은 생태환경을 고려한 배치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개별 시설간의 연계성을 고려한 유기적인 건축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휴먼링 등 주변지역과 원활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트랜짓 몰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쾌적한 정주환경의 복합단지 조성을 위해 외곽 개방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건축물로 인한 위압감을 완화토록 계획한다. • 주요 진입부에 대한 다양한 테마계획을 통한 공간특화 계획을 수립한다.
		형태 및 외관	• C2-2, C2-3블록은 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접근성을 확보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토록 계획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주거외 용도가 설치되는 건축물 1층 전면부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하고, 셔터를 설치할 경우 투시형 셔터를 설치하도록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층 바닥높이 -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준주거용지 내 담장설치는 불허한다.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이때 담장의 높이는 0.8m 이하의 화관목류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 • 차량출입허용 · 불허구간 등의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을 원칙으로 하고 지상주차는 비상주차 및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를 위한 주차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 준주거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해당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형태 및 외관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상가부분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별표8-1>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그 외 규정하지 않은 주상복합용지 주거동의 외관 및 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제외)는 '공동주택용지'의 규정을 따른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4-1> 준주거용지의 건축물 용도 및 규모

구 분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C1	SC2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 교육연구시설 -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1층 : 업무시설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해당블록	C1-1*, C1-2*, C1-3*, C1-4*(C1-4-서, C1-4-하), C1-5*(C1-5-서, C1-5-하), C1-6*(C1-6-서, C1-6-하), C2-1*, C2-2*, C2-3*, C2-4*, C2-5*, C2-6*	C1-7, C2-7, C3-1
건축물 규모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전 체 : 190~300% 이하 주거부분 : 170~27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주) * 특별계획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불허용도로 함

<별표4-2> 준주거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주택 규모 (㎡)	최고 층수	건폐율 (%)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계		174,444	2,895	7,237			60			2.5인/세대
C1-1	85㎡초과	23,948	445	1,112	145	-	60	300	270	
C1-2	85㎡초과	24,103	448	1,120	145	-	60	300	270	
C1-3	85㎡초과	21,044	373	933	138	-	60	275	245	
C1-4	85㎡초과	20,558	364	910	138	-	60	275	245	
C1-5	85㎡초과	9,493	151	378	138	-	60	260	220	
C1-6	85㎡초과	8,625	137	343	138	-	60	260	220	
C2-1	85㎡초과	9,108	131	327	125	-	60	200	180	
C2-2	85㎡초과	9,651	125	312	138	-	60	200	180	
C2-3	85㎡초과	7,031	91	227	138	-	60	200	180	
C2-4	60~85㎡	13,854	214	535	110	-	60	190	170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주택규모(㎡)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C2-5	60~85㎡	9,819	151	378	110	-	60	190	170	
C2-6	60~85㎡	17,210	265	662	110	-	60	190	170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복합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C	E1-1, E1-2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용도표시는 입지위치와 기능에 따라 AC1, AC2로 구분한다. • 주거 외 시설은 지상3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2층까지 설치를 권장한다.(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 · 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5-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5-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 비행안전구역내 해당하는 제5구역과 제6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2항'에 따른다. •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상업용지 및 녹지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5-2>에 규정된 주택규모 이내로 하되,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2%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한다. - 복합용지의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주거동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탑상형인 경우 제외),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8분의 1이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옥상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2.5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하며, 간선가로변에는 설치 할 수 없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상가부분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별표8-1>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5-1> 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기본방향		마천역세권 상업 연계지원	복정역세권 상업 지원강화
	도면표시		AC1	AC2
	허용 용도	3층 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아파트
		4층 이상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E1-1 (E1-1-서, E1-1-하)	E1-2* (E1-2-서, E1-2-하)

주) * 특별계획구역

<별표5-2>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필지 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건폐율 (%)	최고 층수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계		157,034	1,349	3,372	-	-			2.5인/세대
E1-1	85㎡초과	20,404	423	1,057	60	-	350	245	
E1-2	85㎡초과	136,630	926	2,315	60	-	400	80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AC	E1-1, E1-2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5-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건축물 용도표시는 입지위치와 기능에 따라 AC1, AC2로 구분한다. • 주거 외 시설은 지상3층까지 설치할 수 있으며, 지상2층까지 설치를 권장한다.(지하는 2층까지만 허용, 주차장 및 기계실, 전기실은 예외로 한다.) • 주거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주거동의 출입구·계단 등을 주거외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5-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5-2>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확정 측량시 대지면적 감소에 따라 특정 블록의 용적률이 지구단위계획에 규정된 용적률을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용적률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높이	• 비행안전구역내 해당하는 제5구역과 제6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2항'에 따른다. 단, 자연장애물인 영장산, 복우물산을 기준으로 차폐이론에 따라 해당부대와 협의하여 완화할 수 있다. • 건축물의 높이는 주변상업용지 및 녹지축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주택의 규모 및 세대수	• 주거용도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별표5-2>에 규정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5-2>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table>
<tr><td></td><td></td><td>배치 및 건축선</td><td>•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td></tr>
<tr><td></td><td></td><td rowspan="2">형태 및 외관</td><td>• 주거동의 경우 탑상형 형태를 권장하며, 1개 층의 호수는 6호 이하로 한다.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 외벽면의 외장 재료는 주변건물과의 조화를 유지하여야 하며,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토록 한다.
- 복합용지의 건축물 1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주거동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설치할 경우(탑상형인 경우 제외), 평지붕은 전체지붕의 8분의 1이내에서 허용한다. 다만, 옥상전체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붕의 구배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2.5 이하가 되도록 한다.

• 담장설치가 필요한 경우 담장의 높이는 1.2m 이하의 화목류의 생울타리로하며, 간선가로변에는 설치 할 수 없다.</td></tr>
<tr><td></td><td></td><td>• 단지 내 차량출입
- 차량진출입구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한 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진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이 허용된 구간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간에서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대로급 도로 교차로로부터 30m 이내, 중로급 도로 교차로부터 10m 이내의 구간
2. 하천, 보행로, 버스 정차대,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공원경계부, 완충녹지대 등 공공의 시설이 설치된 곳
3. 버스정류장 및 정차대, 기타 승하차시설, 가감속차선 설치구간, 지하도 입구,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 및 통행시설이 설치된 전후 10m 이내의 구간
- 차량의 출입구의 폭원은 최소 6.5m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단지 내 차량동선
- 단지 내 도로와 보행로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 구조'로 조성하여야 한다.
- 단지 내 도로와 간선도로의 교차는 직각 교차를 원칙으로 한다.
- 단지 내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을 위한 차량동선을 분리 계획하여야 한다.

• 주차장의 설치
- 모든 복합용지 내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차장관련법령, 해당시의 주차장조례 및 교통영향평가에 의해 산정된 상업기능의 확보대수'와 '공동주택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한 주거기능의 주차장 확보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복합용지의 주차장 설치기준 >
<table><tr><td>주택규모별(전용면적:㎡)</td><td>주차장 설치기준</td></tr><tr><td>주거용도부분 (85㎡초과)</td><td>• 교통영향평가에서 규정한 주차대수와 85㎡당 1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 이상을 설치</td></tr><tr><td>주택이외의 시설</td><td>• 해당 지자체의 주차장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td></tr></table></td></tr>
<tr><td></td><td></td><td>색채 및 옥외광고물</td><td>• 상가부분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별표8-1> 옥외광고물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td></tr>
</table>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 다만, 아케이드 조성을 위한 구조물과 차량의 진·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단주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AC	E1-1, E1-2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5-1> 복합용지의 건축물 용도

구 분			복합용지	
건축물 용도	기본방향		마천역세권 상업 연계지원	복정역세권 상업 지원강화
	도면표시		AC1	AC2
	허용 용도	3층 이하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단,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 - 운동시설 - 아파트
		4층 이상	• 아파트,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제외)	
	불허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해당블록		E1-1 (E1-1-서, E1-1-하)	E1-2* (E1-2-서, E1-2-하)

주) * 특별계획구역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 근상 업무	일상1~ 일상10 근상1~ 근상4 업무1~ 업무22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6-1>,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해당용도로 확보해야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상업용지 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및'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 권장용도로 지정한다.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2>,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2>,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2>,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동일용도 주변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실내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1층부의 높이는 4.5m로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전면 1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에 타 용도로의 사용을 불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8-2>의 기준에 의한다. • 건축물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별표8-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담장 - 상업 · 업무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5-2>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필지 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건폐율 (%)	최고 층수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계		44,503	1,609	4,023	-	-	486	405	2.5인/세대
E1-1	85㎡초과	20,299	421	1,053	60	-	350	245	
E1-2	60~85㎡	24,204	1,188	2,970	60	-	600	540	

6)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 기정

<별표6-1>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1 배후상업	C2 일반상업	C3 트랜짓 몰 연계지원	C4 근린상업
단독주택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1종 근린생활시설	●	●	●	●
2종 근린생활시설	●	●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	○	○
판매시설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 한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	●	●	○ 오피스텔 제외	○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 한함(호텔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할 경우 허용)	△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 한함(호텔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할 경우 허용)	X	X
위락시설	○ 주거지역과 면한 지역은 제외	△ 주거지역과 면한 지역은 제외	X	X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	●	●	●
노유자시설	X	X	○	○
수련시설	X	X	○	○
운동시설	○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에 한함	△ 주유소에 한함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1) ● :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용도,
△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X : 불허용도

주2) 상업용지 내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1층전면 권장용도로 지정한다.

주3) 상업용지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불허용도로 함
다만, 허용용도 중 상대정화구역내 심의 후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심의 결과에 따름

주4)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용도 분류표에서 제외된 시설은 불허

<별표6-2>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1 (배후상업)	C2 (일반상업)	C3 (트랜짓 몰 연계지원)	C4 (근린상업)
건폐율	7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700% 이하	500~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	-	-	-
최소층수	-	-	-	-
해당블록	일상1, 일상2, 일상3, 일상4, 일상9	일상5, 일상6, 일상7, 일상8	일상10-성*, 일상10-하*, 일상 11*	근상1, 근상2, 근상3*

주) * 특별계획구역

<별표6-3>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B1 (공공업무)	B2 (복합공공청사)	B3 (일반업무시설)	B4 (소형 공공청사)	B5 (복합업무)	B6 (유통업무)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제외) - 운동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오피스텔제외)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판매시설 - 일반업무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50~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250~30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	-	-	-
해당블록		업무3, 업무4	업무1, 업무2	업무15~20, 업무22-서, 업무22-하, 업무23, 업무25*	업무5, 업무6*, 업무7, 업무8, 업무9*, 업무10*, 업무11, 업무12, 업무13, 업무14	업무21, 업무24-성*, 업무24-하*	업무26-서, 업무26-하

주) * 특별계획구역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일상 근상 업무	일상1~ 일상12 근상1~ 근상3 업무1~ 업무30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6-1>,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20% 이상을 해당용도로 확보해야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상업용지 내 광장 및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및'근린생활시설'을 1층 전면 권장용도로 지정한다. 1층부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에는 1층 바닥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C1 배후상업용지 중 일상3 블록② -1획지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에 한한다. • 호텔용지는 판매공고 후 1년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토지의 분양 및 매각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기존 배후상업용지의 허용용도를 적용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6-2>,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6-2>,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6-2>, <별표6-3>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동일용도 주변건축물과의 통일성 및 실내의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1층부의 높이는 4.5m로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 할 수 있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물 1층 바닥높이는 <별표8-8>의 건축물 진입에 관한 규정을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기된 바에 따라 건축하되,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법규 및 조례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전면 1층 외벽면은 50% 이상을 투시형 벽면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용도상 부득이 하여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권장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에 타 용도로의 사용을 불허한다. • 가로에 면한 부분의 입면은 연속된 가로경관연출을 위하여 주변 건축물의 1층 층고 및 건축선, 색채 및 외장재 등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는 지역중심지로서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하며,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8-2>의 기준에 의한다.

			• 건축물의 입면은 간판의 위치 및 규격과 색상을 미리 고려하여 계획하고, <별표8-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담장 - 상업 · 업무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차량출입허용 · 불허구간 등의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 상업용지 및 업무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및 해당시'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 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6-1>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용도분류표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1 배후상업	C1-1 호텔	C2 일반상업	C3 트랜짓 몰 연계지원	C4 근린상업
단독주택	X	X	X	X	X
공동주택	X	X	X	X	X
제1종 근린생활시설	●	X	●	●	●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1 배후상업	C1-1 호텔	C2 일반상업	C3 트랜짓 몰 연계지원	C4 근린상업
제2종 근린생활시설	●	X	●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	X	●	○	○
판매시설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X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 상점 및 이와 유사한 용도에 한함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에 한함	X	△ 종교집회장에 한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 종교집회장에 한함
의료시설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X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 장례식장 제외
업무시설	●	X	●	○ 오피스텔 제외	○ 오피스텔 제외
숙박시설	△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 한함(호텔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할 경우 허용)	●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 한함	△ 호텔 및 관광숙박시설에 한함(호텔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할 경우 허용)	X	X
위락시설	○ 주거지역과 면한 지역은 제외	X	△ 주거지역과 면한 지역은 제외	X	X
방송통신시설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X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 방송국, 전화국, 통신용시설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	X	●	●	●
노유자시설	X	X	X	○	○
수련시설	X	X	X	○	○
운동시설	○	X	○	○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주유소에 한함	X	△ 주유소에 한함	X	X
자동차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X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 주차장, 세차장에 한함

주1) ● : 지구단위계획에서 권장하는 용도,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한 용도,
△ :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용도, X : 불허용도
주2) 상업용지 내 보행자전용도로변은 판매 및 영업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1층전면 권장용도로 지정한다.
주3) 상업용지 중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포함되는 부분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을 불허용도로 함
다만, 허용용도 중 상대정화구역내 심의 후 설치 가능한 시설에 한하여 심의 결과에 따름
주4)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용도 분류표에서 제외된 시설은 불허
주5) C1-1(일상3 블록② -1)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호텔)으로 한정 (다만, 판매공고 후 1년 이상 호텔부지가 미 매각될 경우 C1의 허용용도 적용

<별표6-2>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1 (배후상업)			C2 (일반상업)	C3 (트랜짓 몰 연계지원)	C4 (근린상업)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7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700% 이하	700% 이하	500% 이하 / 600% 이하	600% 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		-	-	-	-

최소층수	–	–	–	–	–
해당블록	일상12*	일상1, 일상2, 일상3(②-1제외), 일상4, 일상9	일상3 ②-1	일상8	일상5, 일상6, 일상7	일상10-성*, 일상10-하*, 일상 11*	근상1, 근상2, 근상3*

주) * 특별계획구역

<별표6-3>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B1 (공공업무)	B2 (복합공공청사)	B3 (일반업무시설)	B4 (소형 공공청사)		B5 (소형 공공청사)		B6 (복합업무)				B7 (유통업무)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판매시설 - 일반업무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400% 이하	4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700%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	–	–	–		–		–				–	
해당블록		업무3, 업무4	업무1, 업무2	업무15~20, 업무22-서, 업무22-하, 업무23, 업무25*	업무12, 업무13, 업무14	업무5, 업무6*	업무9*, 업무11	업무7, 업무8, 업무10*	업무24-성*, 업무24-하*	업무21	업무28*	업무29*, 업무30*	업무26	업무27*

주) * 특별계획구역

7) 도시지원시설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D	지원1, 지원2, 지원3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토록 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장재료 · 색채는 지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에 타 용도로의 사용을 불허한다. • 담장 -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7-1>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RD1 (순수산업연구단지)	RD2 (혼합형산업연구단지)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에 한함)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미만 설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지원3

주) * 특별계획구역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RD	지원1, 지원2, 지원3	용도	• 건축물 용도는 <별표7-1>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권장용도가 지정된 경우 지상 건축연면적의 50% 이상 권장용도를 확보토록 하며, 건축연면적은 기계실, 공조실, 주차장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 '생명공학을 비롯한 첨단의료기기, 장비산업과 후방산업인 의료서비스 산업 및 그 와 관련된 업종(이하 메디바이오산업이라 칭한다)'에 한한다. 단, 지원3의 경우에는 메디바이오산업 관련 업종외의 건축물 용도도 가능하다. <별표7-1> 참조
		건폐율	• 건축물의 건폐율은 <별표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용적률	• 건축물의 용적률은 <별표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 건축물의 층수는 <별표7-2>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외벽의 재료 및 형태 - 건축물의 형태 및 외장재료 · 색채는 지역을 대표하는 메디바이오산업의 상징성 구현에 부합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 지붕 및 옥탑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여야 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이외에 타 용도로의 사용을 불허한다. • 담장 - 도시지원시설용지 내 담장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높이차가 있는 경우 보행 등의 안전성을 위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달리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차량출입허용·불허구간 등의 변경 - 차량출입불허구간과 차량출입허용구간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침에 의하여 지정된 차량 출입구의 위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련 기준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해당시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고, 자주식주차로 계획한다. 다만 자주식주차가 곤란하다고 인 ·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계식주차를 설치할 수 있다.

			- 안전시설 : 차량출입시 운전자 측에서 도로 쪽으로 확보되어야 할 안전시계 구간 내에는 시선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시설물도 설치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주차장의 출입구에는 도로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경보장치 또는 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옥외주차장의 조경 : 20대 이상을 주차시킬 수 있는 지상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지상주차장과 도로 또는 대지 내에 확보되는 보행자통로 사이 공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면적은 조경면적으로 산정된다. 20대미만의 지상주차장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대지 내 보행자통로와의 경계선에는 다음 제1호의 기준에 의해 조경을 하거나 차량출입구 부분을 제외한 경계선에 1.5m 간격으로 단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폭 1m 이상, 높이 0.5m 내지 0.6m의 식수대를 도로를 따라 설치하고 수고 3m 이상, 수관폭 1.5m 이상의 교목을 대상면적에 대하여 제곱미터당 0.1본을 식재하여야 한다. 2. 식수대는 분리할 수 있되 차량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분리의 폭이 1m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별표7-1> 도시지원시설용지의 유치업종 예시 (메디바이오산업)

종 류	분 야	업 종
산업연관표	의약품 및 화장품	• 의약품 제조업체
	의료 및 측정기기	• 의료기기, 자동조정 및 제어기기, 측정 및 분석기기 제조업체
성남시 전략산업	의료서비스 산업부문	• 첨단의료 및 메카트로닉스화를 통한 정보통신산업, U헬스케어 산업
	생물의약 치료제 및 R&D 산업	• 바이오신약 개발 및 시험, 기술실용화 시설 및 핵심기술개발 R&D시설, BT관련기업
	영상, 진단, 예방관련 의료기 연구개발	• 첨단의료기기개발연구센터, 의료기기 제조업체
	의료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기기 및 장비개발부문과 임상 및 의료정보 부문의 네트워킹	• 테스트베드 기능 제공을 위한 유효시설

<별표7-2>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RD1 (순수산업연구단지)	RD2 (혼합형산업연구단지)
	허용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에 한함)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미만 설치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지원3

주) * 특별계획구역

8)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선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담장		• 도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m를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 네트워크		• 보행자도로와 연접하거나 공지가 발생하는 용지는 <별표8-4>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따라야 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P	주1~주11, 차1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주차장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P1	주1, 주4, 주5, 주8, 주10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
P2	주2, 주3, 주6, 주7, 주9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내지 자목, 타목중 노래연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 이하
P3	주1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P4	차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유초중고	학21~학24	용도		•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한하며, 연면적의 70% 이상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학1~학10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학11~학15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학16~학20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교	교1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일반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라목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

G1	문화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수련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G2	문화2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G3	문화3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G4	문화4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마을회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3층 이하
G5	체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운동시설 가목 중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종1	종4~종8, 종10, 종1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 부속용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부속용도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종2	종1, 종2, 종3, 종9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 부속용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부속용도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K	기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중 기숙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E1	복지2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E2	복지1, 복지3~복지5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1	열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Q2	가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 가스공급설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
Q3	전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4	전2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5	수도2~수도4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6	수도5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7	폐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H1	위1, 위2, 위4, 위5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H2	위3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M1	의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은 제외)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TR1	철도3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별표8-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기본원칙	• 위례신도시 내의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위례신도시의 고유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옥외광고물 형태로서 미디어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해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간판의 설치량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상업권역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약국, 이·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 용지별 광고물의 설치권역 및 유형별 옥외광고물 수량 >

구 분		권역구분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형간판	점멸방식
일반권역		점포겸용주택 및 준주거용지	1층	불허	불허	불허 (간접조명)
단지내 상가권역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1층	불허	불허	
중점권역		복합용지	1층	조건부 허용	불허	
상업권역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	1(2)층 이하	불허	2(3)~5층 이하	
업무권역	Type1	일반업무시설용지	1층	조건부 허용	불허	
	Type2	공공업무시설용지	불허			
특화권역		트랜짓 몰 구간의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1층	불허	2층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광고물 등의 형태 및 규모 등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 등의 문자등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자 ·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는다. •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은 1개 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1층 이하 각 점포의 정면 상단에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상업권역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 설치를 허용한다. •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폭 80%이내(최대 10m 이내), 돌출폭 30cm 이내로 한다.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가로형간판은 원칙적으로 1층 이하에 설치가능하나, 건물주가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할 경우 4층 이상의 건물 최상단에 입체형으로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에 포함한다.)

			• 광고물을 건물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2m 이내의 지점에 표시한다.
		가로형광고물 표시방법	• 간판의 가로크기는 최상층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하며, 세로크기는 4층 기준 60cm 이내로 하며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1.8m 이내로 설치가능하다.
		돌출광고물 표시방법	• 상업권역내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5층 이하 건물에 건물 벽면을 따라 일정규격을 통일하여 돌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 하단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이격하고,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 세로 70cm 이내, 두께 30cm 이내로 설치한다. • 돌출형간판은 건물의 전면 상하로 일직선상에 1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의 전면폭이 20m 이상인 경우 건물의 양 측단에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지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 건물당 하나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주가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5개 이상 업체)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한다. • 광고물은 건물부지내 표시하도록 하며, 사유지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간판 1면의 면적은 3㎡ 이내, 세로의 길이는 3m 이내로 설치한다.
		공연간판 표시방법	•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하나,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트램역에 통합 디자인된 광고물의 게시대, 가로등주를 이용한 배너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 게시대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25% 이내에 한한다.
		현수막/배너 표시방법	• 현수막의 표시를 금하나,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배너형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한다. • 게시되는 배너의 수는 건물당 4개 이내, 게시시설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 게시대는 2층 창문의 하단과 3층 창문의 상단 사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에 설치되는 배너의 크기와 높이는 통일시켜야 한다. • 표기내용은 상호, 로고, 심벌에 한한다.
		미디어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미디어이용 광고물의 설치가능 여부와 위치는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판형타입 및 굴곡타입의 미디어보드 크기는 건축물 입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층 이상의 높이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다. • 블라인드형 미디어보드 설치시 내외부 투시율이 높은 건축물 전면부를 활용한다.
		옥외광고물 등 설치계획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 설치방법	•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8-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 면 번 호	위치	구분	조 성 기 준
공통		기본원칙	•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 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Reflection Lighting	백제의 문화와 역사의 의미 부여	• 건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광원사용과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배광곡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Human Lighting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이미지 조성	• 건물의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빛으로 연출하고 상층부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연출 • color free zone은 빛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 조명 사용 • 트램노선을 부각하되, 운행상 눈부심 등의 광공해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반사등 또는 바닥 매립형 조명 설치
Eco Lighting	청량산 등 자연환경의 의미부여	•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강하고 밝은 조명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 사용 • 하부로 빛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목의 실루엣을 약하게 강조 • 낮은 조도와 색온도의 조명 설치 • 솔라패널을 이용한 조명시설물 사용 • 점등시간 제한/자동점멸기 설치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및 연출방향 >

<별표8-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연면적 기준 확보해야할 대지면적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 1만㎡ 미만 : 대지면적의 5% 2.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 3만㎡ 미만 : 대지면적의 7% 3. 연면적 합계가 3만㎡ 이상 : 대지면적의 10%
공개공지	-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4.5m 이상 또는 2개층 이상으로 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 식재밀도(본/㎡) /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 0.3본 이상 /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2본 이상 / -

<별표8-4> 보행네트워크 계획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주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입체공공보행통로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단지내 보행로	• A1-8, A1-11블럭은 휴먼링과의 연계할 수 있는 동서방향으로 단지내 보행로를 확보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한다. -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단지내 보행로는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보행네트워크 계획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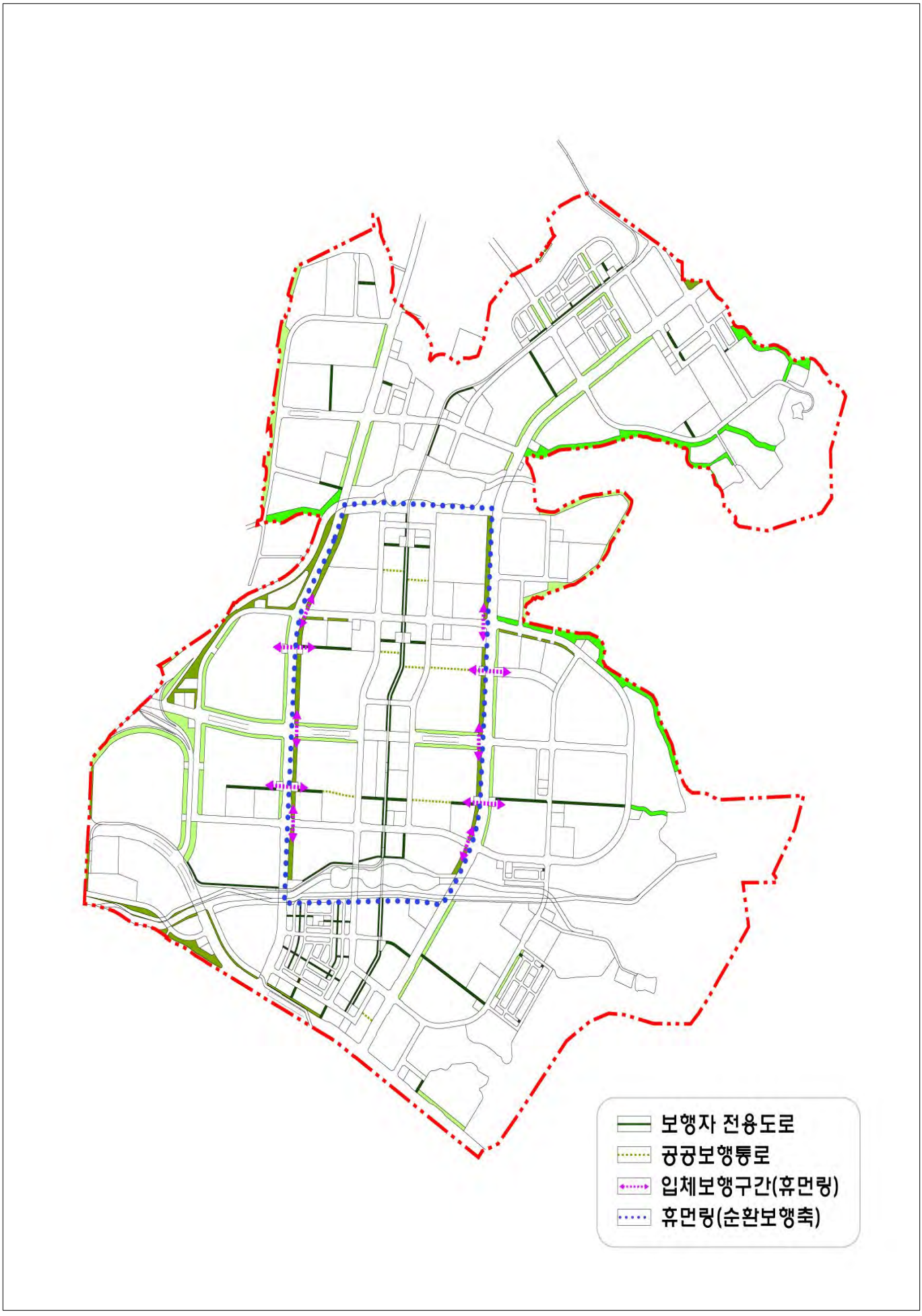

<별표8-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

<table>
<tr><th>구 분</th><th>조 성 기 준</th></tr>
<tr><td>자연지반
면적률</td><td>•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자연지반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td></tr>
<tr><td>생태
면적률</td><td>•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침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table><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적용 목표 범주</th><th colspan="3">적용 목표</th></tr><tr><th>생태적 가치 下</th><th>생태적 가치 中</th><th>생태적 가치 上</th></tr><tr><td rowspan="2">주택지</td><td>아파트</td><td>40 ~ 50</td><td>40 이상</td><td>45 이상</td><td>50 이상</td></tr><tr><td>단독주택</td><td>40 ~ 50</td><td>40 이상</td><td>45 이상</td><td>50 이상</td></tr><tr><td rowspan="3">상업지</td><td>일반상업</td><td rowspan="3">20 ~ 40</td><td rowspan="3">20 이상</td><td rowspan="3">30 이상</td><td rowspan="3">40 이상</td></tr><tr><td>근린상업</td></tr><tr><td>중심상업</td></tr><tr><td colspan="2">교육시설</td><td>40 ~ 60</td><td>40 이상</td><td>50 이상</td><td>60 이상</td></tr><tr><td colspan="2">공공시설</td><td>40 ~ 60</td><td>40 이상</td><td>50 이상</td><td>60 이상</td></tr><tr><td colspan="2">기 타 (최소 행정목표)</td><td>20</td><td colspan="3">20 이상</td></tr></table>생태적 등급 上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1, 2등급
생태적 등급 中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3등급
생태적 등급 下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4, 5등급
단, 위례지구 도입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겸용주택은 30%, 일반형택지는 40%, 블록형 단독주택은 50%로 설정</td></tr>
</table>

< 생태면적률 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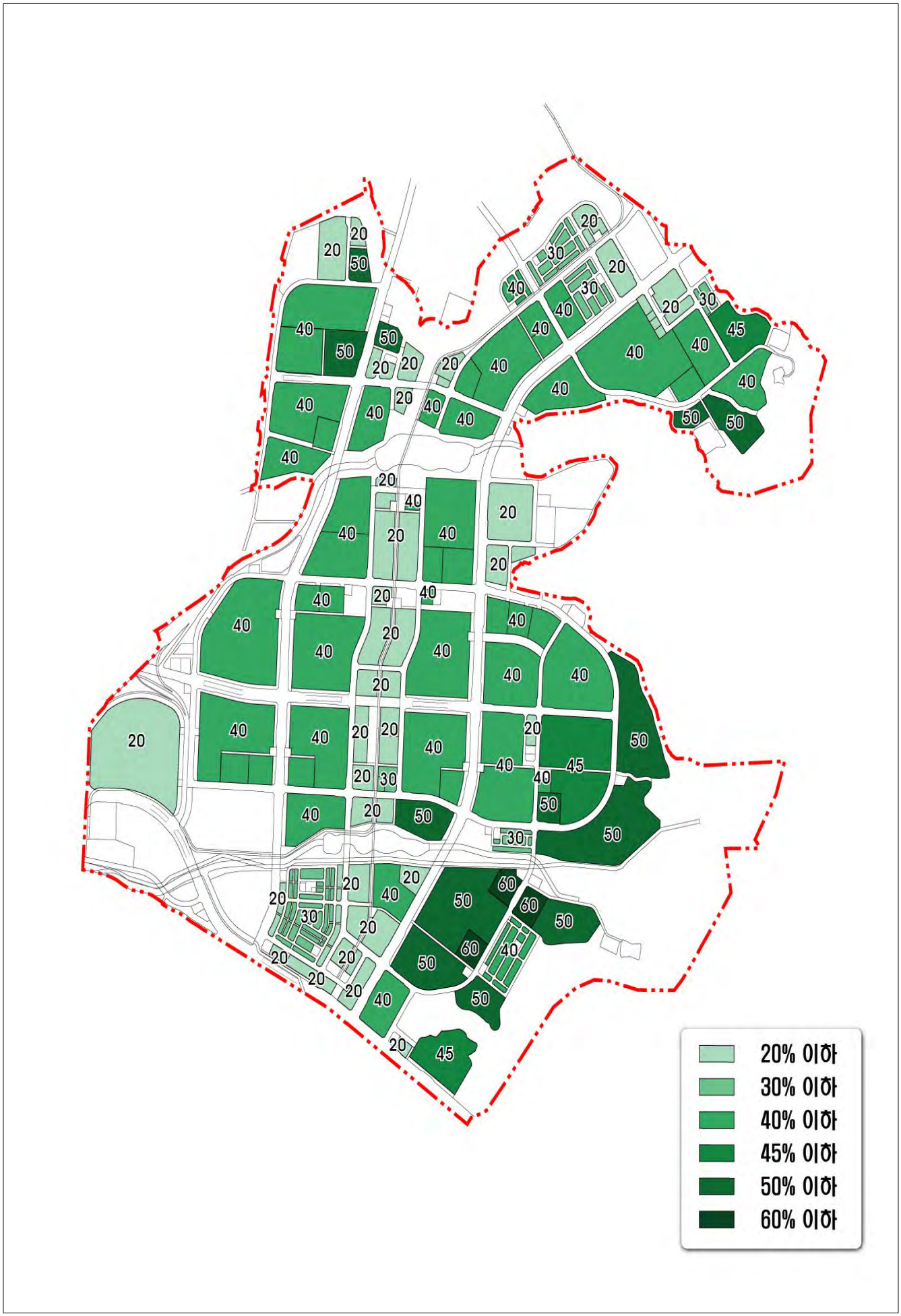

<table>
<tr><th>구 분</th><th>조 성 기 준</th></tr>
<tr><td>생태
면적률</td><td><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table>
<tr><th colspan="2">공간유형</th><th>가중치</th><th>설 명</th><th>사 례</th></tr>
<tr><td> </td><td>자연지반
녹지</td><td>1.0</td><td>-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td><td>-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td></tr>
<tr><td> </td><td>수공간
(투수기능)</td><td>1.0</td><td>-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td><td>-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td></tr>
<tr><td> </td><td>수공간
(차수)</td><td>0.7</td><td>-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td><td>-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td></tr>
<tr><td> </td><td>인공지반녹지
≥ 90㎝</td><td>0.7</td><td>-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d>-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td></tr>
<tr><td> </td><td>옥상녹화
≥ 20㎝</td><td>0.6</td><td>-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td></tr>
<tr><td> </td><td>인공지반녹지
< 90㎝</td><td>0.5</td><td>-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d>-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td></tr>
<tr><td> </td><td>옥상녹화
< 20㎝</td><td>0.5</td><td>-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td></tr>
<tr><td> </td><td>부분포장</td><td>0.5</td><td>-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td><td>-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td></tr>
<tr><td> </td><td>벽면녹화</td><td>0.4</td><td>-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td><td>-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td></tr>
<tr><td> </td><td>포장면</td><td>0.0</td><td>-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 생장이 없음</td><td>-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td></tr>
</table></td></tr>
<tr><td>녹지
면적률</td><td>• 지정목적
- 단지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 녹지면적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td></tr>
<tr><td rowspan="2">보존수목
활용율</td><td>• 지정목적
- 지역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한 기존수목은 변화된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수목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함으로서 개발로 인한 육상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식생 복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개발 후 기존 수목의 생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주환경의 쾌적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목의 보존 및 활용은 개발초기부터 반영되어야 한다.</td></tr>
<tr><td>• 보존수목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할 수종’중 ‘수고 10m 이상’ 으로서 ‘흉고직경 15㎝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20㎝ 이상’인 수목을 말한다.
• 보존수목 활용율
- 조사된 보존수목에 대한 활용 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정방식에 의거한다.</td></tr>
</table>

구 분	조 성 기 준
	- 산정방식 : 보존수목 활용율 = (대지 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 내 조사된 보존수목 본수) × 100 • 보호수 보존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노거수 및 보호수'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우수활용시설 (권장)	• 지정목적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를 유도하고 개발로 인한 우수유출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 조성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 등의 옥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정방식 : 우수활용시설용량 = 총 세대수 × 2.5(인/세대) × 176.7(ℓ/인・일) × 0.5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7년) : 176.7ℓ/인・일 (2008년도 상수도통계 : 환경부), 위례신도시 세대당 인구수 : 2.5(인/세대))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 지정목적 - 위례지구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청량산과 연접해 있으며, 신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지천, 창곡천 등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주거용지 내부로 우수의 수계경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내 열섬 완화' 및 '우수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조성기준 -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록 권장한다. - 하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 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 산계곡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단지내 수공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저에너지로 운영토록 한다. - 단지 내・외부의 기존, 계획수로와 연결되어, 주변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표토 재활용율	• 지정목적 - 미생물이 풍부한 표토(토심 약 15㎝)는 자연 상태에서 1㎝정도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소요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친화적 자원이므로 적극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표토재활용율 -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 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 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은 다음 산정방식에 따른다. - 표토 재활용율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별표8-6>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공통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계획 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table>
<tr><th>구 분</th><th>제 출 내 용</th></tr>
<tr><td></td><td>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MA가 있는 경우 포함)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td></tr>
<tr><td>친환경 부문</td><td>•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table><tr><th>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규제항목</th><th>승인(허가)시 제출도서</th></tr><tr><td>자연지반면적률</td><td rowspan="3">-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td></tr><tr><td>생태면적률</td></tr><tr><td>녹지면적(식재면적)률</td></tr><tr><td>보존수목 활용율</td><td>-개발사업전 보존 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 (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 포함)</td></tr><tr><td>우수활용시설</td><td>-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저류, 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td></tr><tr><td>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td><td>-단지내 수공간 계획서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td></tr><tr><td>표토재활용율</td><td>-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td></tr><tr><td>공통사항</td><td>-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td></tr></table></td></tr>
<tr><td>경관부문</td><td>•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 경관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 · 외관 · 형태에 관한 사항
· 지붕(옥탑 포함)</td></tr>
</table>

구 분	제 출 내 용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별표8-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 성 기 준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위례신도시는 u-City로서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공동주택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단, 60㎡이하 국민임대주택 제외)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특등급(업무시설 기준)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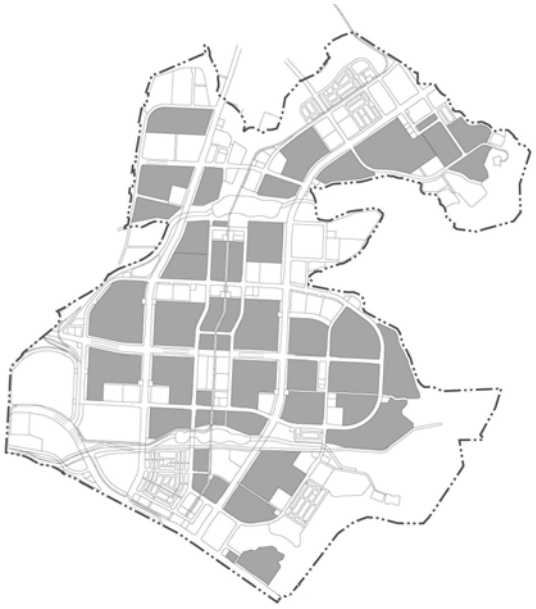

공동주택 (특등급)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50세대 미만 단독주택 (1등급)

<별표8-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 성 기 준
건축물의 진입	•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내의 공지 처리	•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개념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한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배치 및 건축선	• 교육시설의 경우 건축물은 가급적 남향 배치를 권장한다. • 건축선 -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특정일의 이용객 증가에 대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해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전면공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 출입구에 면한 대지경계선에서 3m 이상 건축선을 후퇴하여 공공조경을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동일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재료들간의 조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에 관한 사항은<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담장	• 도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면한 대지경계부와 공공공지의 담장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허하며 필요시 녹지공간이나 수공간을 두어 담장의 역할을 대신하도록 한다.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가로경관 등을 고려한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0.8m 높이의 화목류 생울타리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대지 내 공지	• 건축한계선에 의해 확보된 대지 내 공지는 <별표8-3>의 대지 내 공지 조성기준을 따른다. • 지구단위계획에서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원 및 보행자도로 등 공공의 성격이 강한 용지변에 위치한 시설용지의 경우 인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2m를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인접한 녹지 및 공지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보행 네트워크		• 보행자도로와 연접하거나 공지가 발생하는 용지는 <별표8-4> 보행네트워크 계획을 따라야 한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은 <별표8-6>의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P	주1~주11, 차1	배치 및 건축선		• 건축선의 위치와 폭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색채 및 옥외광고물		• 주차장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은 <별표8-1>을 따른다.
		친환경 계획에 관한 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따른다.
		기타사항		• 주차장용지 1층부에 근린생활시설 등을 배치할 경우 1층 바닥면적의 50% 이하로 하여야 한다.
P1	주1, 주4, 주5, 주8, 주10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 및 영업시설 - 운동시설 - 업무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높이		-
P2	주2, 주3, 주6, 주7, 주9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내지 자목, 타목중 노래연습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4층 이하
P3	주11	용도	허용용도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및 부속용도)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옥외골프연습장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P4	차1	용도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차고 및 주기장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4층 이하
유초중고	학21~학24	용도		•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에 한하며, 연면적의 70% 이상 유치원으로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층 이하

	학1~학10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병설 유치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학11~학15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학16~학20	용도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교	교1	용도	• 교육연구시설 • 일반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라목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5층 이하
G1	문화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 운동시설 - 수련시설 •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5층 이하
G2	문화2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G3	문화3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업무시설 - 교육연구시설 - 운동시설 -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군사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높이	15층 이하
G4	문화4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 (단, 공연장 및 관람장 제외) -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사목 중 마을회관 •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은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60% 이하
		높이	3층 이하
G5	체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운동시설 가목 중 골프연습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
종1	종4~종8, 종10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 부속용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부속용도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종2	종1, 종2, 종3, 종9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 부속용도로서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부속용도로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여가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16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종3	종1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종교시설 - 종교집회장의 부속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20m 이하 (종탑제외 시 12m 이하)
K	기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동주택중 기숙사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E1	복지2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E2	복지1, 복지3~복지5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1	열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3조의 열공급설비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Q2	가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의 가스공급설비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이	-

Q3	전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발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4	전2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7조의 전기공급설비 중 변전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하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옥내시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5	수도2~수도4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배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6	수도5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5조의 수도공급설비 중 도수시설 및 송수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
Q7	폐1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의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높이	-
H1	위1, 위2, 위4, 위5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5층 이하
H2	위3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자동차관련시설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50% 이하
		높이	4층 이하
M1	의1	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의료시설 중 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은 제외) - 의료시설의 부수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TR1	철도3	용도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의 철도역 및 철도차량기지에 한하여 건축하여야 한다.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240% 이하
		높이	-

<별표8-1> 옥외광고물(간판) 설치기준

도 면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기본원칙	• 위례신도시 내의 옥외광고물은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조화로운 도시경관 형성을 위해 옥외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제시된 16개 옥외광고물 중 가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연간판, 공공시설이용광고물, 현수막은 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할 수 있으며, 위례신도시의 고유한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옥외광고물 형태로서 미디어이용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한 점포에서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은 색조 및 서체에 있어서 통일된 이미지를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본 지침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 가이드라인, 해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이하 “시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간판의 설치량	•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총수는 1개로 하며, 1층 이하(상업권역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1개 업소에서 총수 2개 이내로 표시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약국, 이 · 미용업소에서 표지등(✚, 약, 싸인볼에 한한다)인 돌출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건물의 4층 이상 벽면 상단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도로의 곡각지점(2개 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모퉁이 지점을 말한다)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도로에 건물이 직접 접하고 있는 면을 말한다)인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광고물 • 공용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포함) 주진입부 전면부에는 공용주차장 표시를 부착한다.

< 용지별 광고물의 설치권역 및 유형별 옥외광고물 수량 >

구 분		권역구분	가로형간판	지주이용간판	돌출형간판	점멸방식
일반권역		점포겸용주택 및 준주거용지	1층	불허	불허	불허 (간접조명)
단지내 상가권역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1층	불허	불허	
중점권역		복합용지	1층	조건부 허용	불허	
상업권역		상업용지, 도시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	1(2)층 이하	불허	2(3)~ 5층 이하	
업무권역	Type1	일반업무시설용지	1층	조건부 허용	불허	
	Type2	공공업무시설용지	불허			
특화권역		트랜짓 몰 구간의 상업용지 및 준주거용지	1층	불허	2층	

도 면 번 호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공통		광고물 등의 형태 및 규모 등	• 광고물의 형태 및 재료로 연막,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광고물이 지면이나 도로를 향하여 빛이나 광선 등의 투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명광원을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형 전기용품 사용을 권장한다. • 건축선 밖으로 광고물이 돌출되거나 건축선 밖에 광고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광고물 등의 문자등	•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외국문자, 특수문자 등 모두 사용가능하며, 외국문자를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외국문자로 이루어져 등록한 상표만 표시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한글과 병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문자 · 도형의 면적은 간판표시면적의 3분의1 이내로 한다. • 옥외광고물에 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호 또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 표시한다.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 사용을 금한다. • 공공기관 및 공공기능 관련시설의 경우 반드시 픽토그램 표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 부드러운 간접조명방식 및 외부조명방식을 권장한다. • 내부조명 방식으로 할 경우, 문자나 도형부분의 부분조명방식을 권장한다. • 점멸방식으로 사용하거나, 광원을 노출시켜 사용하지 않는다. • 20m 미만 도로변의 상업지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가로형광고물 표시방법	• 가로형간판은 1개 업소당 하나의 광고물을 건물의 1층 이하 각 점포의 정면 상단에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다만, 상업권역내 복층 점포에 한해 2층 이하 설치를 허용한다. • 간판의 가로크기는 당해 업소 전면폭 80%이내(최대 10m 이내), 돌출폭 30cm 이내로 한다. • 동일층의 가로형간판은 좌우 1줄로 표시하며, 상하 2줄로 표시할 수 없다. • 가로형간판은 원칙적으로 1층 이하에 설치가능하나, 건물주가 건물명을 표시하거나 건물의 1/2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상호 또는 브랜드명을 표시할 경우 4층 이상의 건물 최상단에 입체형으로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업소가 표시할 경우 총수량에 포함한다.) • 광고물을 건물의 최상단에 표시하되, 그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2m 이내의 지점에 표시한다.
			• 간판의 가로크기는 최상층 가로크기의 1/2 이내로 하며, 세로크기는 4층 기준 60cm 이내로 하며 1층 증가시마다 10cm씩 증가하여 최대 1.8m 이내로 설치가능하다.
		돌출광고물 표시방법	• 상업권역내 가로형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업소에 한하여 5층 이하 건물에 건물 벽면을 따라 일정규격을 통일하여 돌출형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간판의 하단은 3m(인도가 없는 경우 4m) 이상 이격하고, 벽면으로부터 80cm 이내, 세로 70cm 이내, 두께 30cm 이내로 설치한다. • 돌출형간판은 건물의 전면 상하로 일직선상에 1줄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건물의 전면폭이 20m 이상인 경우 건물의 양 측단에 2줄로 표시할 수 있다. • 글자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지주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지주이용간판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금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시 건물당 하나의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다. • 표시내용은 당해 건물주가 건물내 입주한 업소수(5개 이상 업체)를 감안하여 균형 있게 배분한 종합안내판 형식으로 한다. • 광고물은 건물부지내 표시하도록 하며, 사유지경계로부터 1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지주이용간판 1면의 면적은 3㎡ 이내, 세로의 길이는 3m 이내로 설치한다.

		공연간판 표시방법	• 공연간판의 표시를 금하나, 복합상영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공공시설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트램역에 통합 디자인된 광고물의 게시대, 가로등주를 이용한 배너 등에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 게시대의 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25% 이내에 한한다.
		현수막/배너 표시방법	• 현수막의 표시를 금하나, 지정 게시대를 활용한 배너형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한다. • 게시되는 배너의 수는 건물당 4개 이내, 게시시설당 1개만 설치할 수 있다. • 게시대는 2층 창문의 하단과 3층 창문의 상단 사이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동일건물에 설치되는 배너의 크기와 높이는 통일시켜야 한다. • 표기내용은 상호, 로고, 심벌에 한한다.
		미디어이용 광고물 표시방법	• 미디어이용 광고물의 설치가능 여부와 위치는 심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판형타입 및 굴곡타입의 미디어보드 크기는 건축물 입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3층 이상의 높이에 한하여 설치가능하다. • 블라인드형 미디어보드 설치시 내외부 투시율이 높은 건축물 전면부를 활용한다.
공통		옥외광고물 등 설치계획	• 택지개발 사업시행자는 택지 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 등(간판)에 관한 사항을 토지공급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옥외광고물 등의(간판) 설치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건물의 분양·임대 등을 감안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총소요량을 산정하고, 설치 위치가 부족하지 않도록 업소별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외부마감재료 및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등의 재질, 색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건물 벽면 상태를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위치, 형태와 규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건물의 벽면을 보호하고 옥외광고물 등의 부착과 교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건물의 일정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는 광고물 게시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의 입면도를 활용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예시도를 칼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건축물을 분양·임대할 경우 분양·임대 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을 명시하여야 한다. • 건물명 표시, 지주형간판, 일체형돌출형간판의 세부내용은 별도의 해당시 광고물관리 위원회 심의를 받되 한 건축물에 설치하는 모든 광고물은 일괄심의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허가 및 신고절차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동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해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 지침에서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신규 또는 변경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 제3항의 옥외광고물 등 설치 계획을 기준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계획서·원색도안 및 설계도서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타인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옥외광고물 등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 시장은 건축주등이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시 동 사안이 지구단위계획수립 내용 및 건축허가시 제출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허가 또는 신고수리 하여야 한다.
		옥외광고물 등의 추가 설치방법	• 본 지침에서 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외에 도시경관 향상 등을 위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시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경우에는 고시내용에 따르되 시장이 개별 건축별, 점포별, 노선별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다.

<별표8-2> 야간경관조명 설치기준

도 면 번 호	위치	구분	조 성 기 준
공통		기본원칙	• 향후 건축심의시 야간 경관조명 개요, 경관조명 디자인개념, 경관조명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야간경관 연출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야간경관계획은 조명설비 설치를 위주로 하며, 경관효과 극대화를 위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와 연계하여 계획한다.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별 연출방향>

권역 구분	빛의 테마 설정	연출방향
Reflection Lighting	백제의 문화와 역사의 의미 부여	• 건물의 조명은 부드러운 광원을 사용하고 고휘도의 광원사용과 3층 이상에 발광식 광고물 설치 제한 • 가로등은 도로 및 보행로에 적합한 조명기구의 크기와 배광곡선을 고려하고 cut off형 조명방식 채택
Human Lighting	인간중심의 쾌적하고 활력 있는 이미지 조성	• 건물의 조명은 저층부는 화려하고 역동적인 빛으로 연출하고 상층부는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으로 연출 • color free zone은 빛의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 조명 사용 • 트램노선을 부각하되, 운행상 눈부심 등의 광공해 유발을 최소화하도록 반사등 또는 바닥매립형 조명 설치
Eco Lighting	청량산 등 자연 환경의 의미부여	• 자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강하고 밝은 조명 지양하고 은은한 조명 사용 • 하부로 빛의 방향을 조정하고 수목의 실루엣을 약하게 강조 • 낮은 조도와 색온도의 조명 설치 • 솔라패널을 이용한 조명시설물 사용 • 점등시간 제한/자동점멸기 설치

< 야간경관조명 설치 권장지역 및 연출방향 >

<별표8-3> 대지 내 공지(전면공지, 공개공지, 공공조경) 조성기준

구 분	조 성 기 준
전면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로 공개공지 · 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조성한다. •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 전면공지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지형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경계부 처리 - 전면공지는 연접한 보도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이때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 · 정차를 금지한다. - 전면공지와 보도로 이루어진 보행공간의 경계부는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단주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의 경우 불가피하게 주차출입구가 지정된 경우 그 출입구가 설치된 부분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 • 포장 -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움이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공개공지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27조의 2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 조성기준 -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제시된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1. 교차로 가각부, 교차로가 2 이상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2.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3.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에 면한 부분에 배치 -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공개공지와 연계토록 배치한다. •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 1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여 높이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시설기준 - 공개공지는 2개소 이내에 설치하되, 1개소의 최소면적은 45㎡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폭 5m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 공개공지는 대지면적 10% 이하의 범위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연면적 기준 확보해야할 대지면적 비율은 아래와 같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 이상 1만㎡ 미만 : 대지면적의 5% 2. 연면적 합계가 1만㎡ 이상 3만㎡ 미만 : 대지면적의 7% 3. 연면적 합계가 3만㎡ 이상 : 대지면적의 10% -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으로 한다. -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 벽면선 등의 지정으로 전면도로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 중 가로미관의 증진, 지역사회의 동질성 표현,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소음억제, 생태적 건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지침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이를 시행한다. • “공공조경 조성기준 및 방법”은 다음에서 제시한 지반처리 및 식수방법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 공공조경구간에는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잔디블록과 같은 ‘투수성 포장’으로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되 램프 설치 등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공조경의 단처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이 조성하여야 한다.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할 수 있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단, 공공조경구간에는 지하층 환기를 위한 시설 등은 주위와 어울릴 수 있게 설치할 수 있다. - 식재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여야 하며, 이중 상록수 50%, 낙엽수 50%가 되도록 한다. <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 수목구분 / 식재밀도(본/㎡) / 상록비율(%) 교 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 0.3본 이상 / 상록수 50% 관 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 2본 이상 / -

<별표6-4> 보행네트워크 계획

구 분	조 성 기 준
공공보행통로	• “공공보행통로”라 함은 대지 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주1)로 조성한다. - 공공보행통로에는 ‘보행지장물’주2)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 공공보행통로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경우에는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공공보행통로를 전면공지와 위의 사항에 맞게 조성하였을 경우 건축법 제43조에 의한 공개공지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입체공공보행통로	•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또는 ‘보행로와 차도의 교차구간의 공중이나 지하’에 설치되어 일반인이 차량과 보행의 직접교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말한다. 이때, 건축물 내 · 외에 입체공공보행통로가 지정되면 인접한 건물 간에는 같은 높이(같은 높이의 허용오차는 50cm 이내이며, 계단 설치는 불허함)로 연결되어야 하며, 조성 후 일반인의 보행에 항시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구 분	조 성 기 준
단지내 보행로	• A1-8, A1-11블럭은 휴먼링과의 연계할 수 있는 동서방향으로 단지내 보행로를 확보한다. - 단지내 보행로와 도로(단지내도로 포함)가 교차하는 곳은 '보행우선구조'로 한다. - 단지내 보행로에는 보행지장물을 설치해서는 아니된다. - 단지내 보행로는 각 부분의 마감높이는 양끝에서 연결되는 도로 접합부의 높이와 같도록 한다. 다만, 양끝 도로면의 높이가 다를 경우 계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계단과 함께 일부 구간에는 장애인을 위한 폭 1.5m 이상의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부분(이하 '보행자우선구간'이라 한다.)의 구조를 말한다.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 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 보행네트워크 계획 >

<별표8-5> 생태적 지구단위계획(친환경계획) 지침

<table>
<tr><th>구 분</th><th>조 성 기 준</th></tr>
<tr><td>자연지반
면적률</td><td>• 지정목적
- 수목의 원활한 생육과 우량녹지의 확보, 물순환시스템의 복원 등 생태적 건강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지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자연지반
- 지하에 인공구조물이 없으며 물의 자연 순환이 가능한 지반(토층에는 불투수성 포장금지)을 말하며, 자연지반면적률은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자연지반면적률 = (자연지반면적 ÷ 대지면적) × 100</td></tr>
<tr><td>생태
면적률</td><td>• 지정목적
- 지표면의 지나친 포장으로 인한 도시열섬현상, 도시형 홍수 발생 등을 저감하고, 토양의 우수 저장능력을 제고하며, 도시생태계의 생물 서식기반을 확보하도록 한다.
- 생태면적률의 산출은 아래의 표에 제시한 ㎡당 가중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산출한다.
- 산정방식 : 생태면적률 = (∑(공간유형별면적 × 가중치) ÷ 대지면적) × 100
- 용지별 생태면적률 적용기준에 명기된 비율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단 지침상에 명기되지 않은 용지의 경우 최소 20% 이상 생태면적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

<table>
<tr><th colspan="2"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적용 목표 범주</th><th colspan="3">적용 목표</th></tr>
<tr><th>생태적 가치 下</th><th>생태적 가치 中</th><th>생태적 가치 上</th></tr>
<tr><td rowspan="2">주택지</td><td>아파트</td><td>40 ~ 50</td><td>40 이상</td><td>45 이상</td><td>50 이상</td></tr>
<tr><td>단독주택</td><td>40 ~ 50</td><td>40 이상</td><td>45 이상</td><td>50 이상</td></tr>
<tr><td rowspan="3">상업지</td><td>일반상업</td><td rowspan="3">20 ~ 40</td><td rowspan="3">20 이상</td><td rowspan="3">30 이상</td><td rowspan="3">40 이상</td></tr>
<tr><td>근린상업</td></tr>
<tr><td>중심상업</td></tr>
<tr><td colspan="2">교육시설</td><td>40 ~ 60</td><td>40 이상</td><td>50 이상</td><td>60 이상</td></tr>
<tr><td colspan="2">공공시설</td><td>40 ~ 60</td><td>40 이상</td><td>50 이상</td><td>60 이상</td></tr>
<tr><td colspan="2">기 타 (최소 행정목표)</td><td>20</td><td colspan="3">20 이상</td></tr>
</table>
생태적 등급 上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1, 2등급
생태적 등급 中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3등급
생태적 등급 下 : 위례지구 자연생태계 보전가치등급 4, 5등급
단, 위례지구 도입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점포겸용주택은 30%, 일반형택지는 40%, 블록형 단독주택은 50%로 설정</td></tr>
</table>

< 생태면적률 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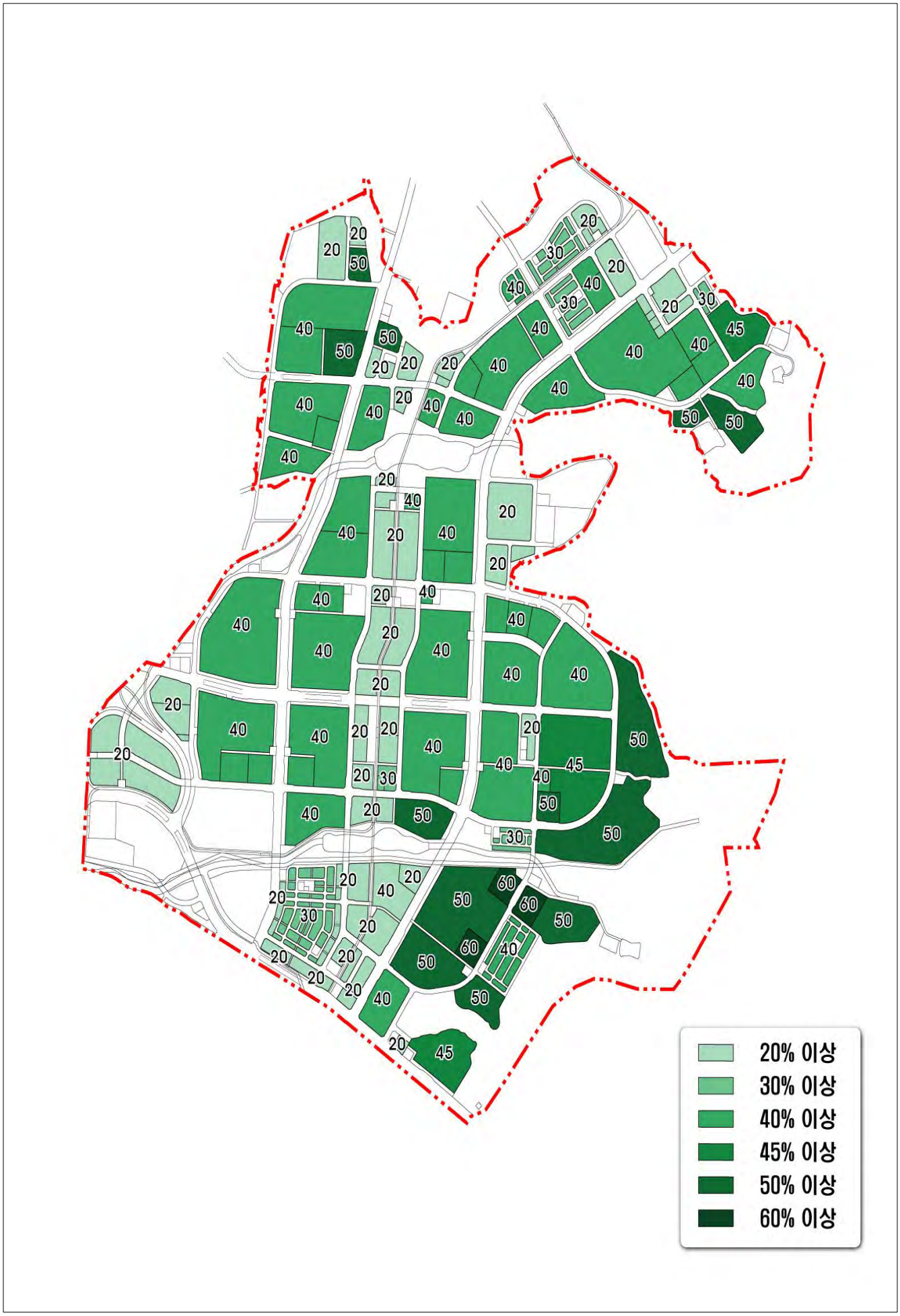

<table>
<tr><th>구 분</th><th>조 성 기 준</th></tr>
<tr><td>생태
면적률</td><td>< 생태면적률의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
<table>
<tr><th colspan="2">공간유형</th><th>가중치</th><th>설 명</th><th>사 례</th></tr>
<tr><td> </td><td>자연지반
녹지</td><td>1.0</td><td>-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td><td>-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td></tr>
<tr><td> </td><td>수공간
(투수기능)</td><td>1.0</td><td>-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td><td>-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 상태의 수공간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td></tr>
<tr><td> </td><td>수공간
(차수)</td><td>0.7</td><td>-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td><td>-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td></tr>
<tr><td> </td><td>인공지반녹지
≥ 90㎝</td><td>0.7</td><td>-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d>-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td></tr>
<tr><td> </td><td>옥상녹화
≥ 20㎝</td><td>0.6</td><td>-토심이 20㎝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중량형 녹화옥상시스템</td></tr>
<tr><td> </td><td>인공지반녹지
< 90㎝</td><td>0.5</td><td>-토심이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d>-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td></tr>
<tr><td> </td><td>옥상녹화
< 20㎝</td><td>0.5</td><td>-토심이 20㎝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td></tr>
<tr><td> </td><td>부분포장</td><td>0.5</td><td>-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td><td>-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td></tr>
<tr><td> </td><td>벽면녹화</td><td>0.4</td><td>-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td><td>-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td></tr>
<tr><td> </td><td>포장면</td><td>0.0</td><td>-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 생장이 없음</td><td>-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td></tr>
</table></td></tr>
<tr><td>녹지
면적률</td><td>• 지정목적
- 단지내 양호한 녹지공간의 조성을 통하여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도모한다.

• 녹지면적
- 보행로 및 광장, 어린이놀이터, 운동장, 휴게소, 옥상녹화 중 수목이나 초화류 등으로 식재된 면적과 자연녹지면적(순수식재면적)에 한한다. 단, 대지 안에 건축물의 면적, 도로, 주차장, 지하구조물, 지하주차장, 계단, 램프, 환기구 등은 제외한다.
- 산정방식 : 녹지면적률 = (녹지면적 ÷ 대지면적) × 100</td></tr>
<tr><td>보존수목
활용율</td><td>• 지정목적
- 지역 환경에 오랫동안 적응한 기존수목은 변화된 환경에 보다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수목의 생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존함으로서 개발로 인한 육상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단기간 내에 식생 복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개발 후 기존 수목의 생육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닌지에 따라 정주환경의 쾌적도를 가늠할 수 있는 환경지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목의 보존 및 활용은 개발초기부터 반영되어야 한다.
• 보존수목
-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이식할 수종’중 ‘수고 10m 이상’ 으로서 ‘흉고직경 15㎝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20㎝ 이상’인 수목을 말한다.
• 보존수목 활용율
- 조사된 보존수목에 대한 활용 비율을 말하며, 이때 보존수목활용율의 산출은 다음 산정방식에 의거한다.
- 산정방식 : 보존수목 활용율 = (대지 내 식재할 보존수목본수 ÷ 대지 내 조사된 보존수목 본수) × 100
• 보호수 보존은 환경영향평가서상의 ‘노거수 및 보호수’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td></tr>
</table>

구 분	조 성 기 준
우수활용시설(권장)	• 지정목적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함으로써 상수 소비절감 효과를 유도하고 개발로 인한 우수유출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절감 및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생태적 물순환시스템의 복원에 기여하고자 한다. • 조성기준 -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한 우수저류시설, 우수정화시설, 우수재활용시설 등의 설비와 수생비오톱이나 저류기능의 연못, 건지 등의 옥외 친수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 우수활용시설의 용량은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이하 '생활용수량'이라 한다.)의 50%에 해당하는 용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산정방식 : 우수활용시설용량 = 총 세대수 × 2.5(인/세대) × 176.7(ℓ/인・일) × 0.5 (1인당 우리나라 가정용수의 용도별 사용량(2007년) : 176.7ℓ/인・일 (2008년도 상수도통계 : 환경부), 위례신도시 세대당 인구수 : 2.5(인/세대))
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	• 지정목적 - 위례지구의 경우 생태적으로 중요한 요소인 청량산과 연접해 있으며, 신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장지천, 창곡천 등의 소하천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주거용지 내부로 우수의 수계경로가 형성되어 있어 '도시 내 열섬 완화' 및 '우수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수자원의 적극적 활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조성기준 - 공공부문에서 설치하는 물순환체계 시스템과 접한 블록은 옥외친수공간과 연계하여 단지내 수공간 조성이 되도록 권장한다. - 하천과 인접해서 조성되는 공원과 통합적으로 설계되어 생태 효율성을 증진시키도록 한다. - 공공부문의 녹지축, 보행자도로 등에 수로도입을 권장한다. - 산계곡에서의 계곡수는 저류지 조성을 통해 단지내 수로의 수원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 단지내 수공간은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저에너지로 운영토록 한다. - 단지 내・외부의 기존, 계획수로와 연결되어, 주변하천까지 Blue Network이 구축되도록 한다. - 기존의 수계경로(기존의 불투수층 활용)를 활용한다.
표토 재활용율	• 지정목적 - 미생물이 풍부한 표토(토심 약 15㎝)는 자연 상태에서 1㎝정도 조성되기 위해서는 수천 년이 소요되는 생태적으로 중요한 환경친화적 자원이므로 적극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 표토재활용율 - 사업지에 분포된 자연 상태의 표토량에 대한 사업 후 활용비율로 친환경적 환경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를 말하는 것으로 산정방식은 다음 산정방식에 따른다. - 표토 재활용율 = (재활용 계획에 의한 표토량 ÷ 전체표토량) × 100

<별표6-6> 심의(인 ・ 허가)용 도서제출

구 분	제 출 내 용
공통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대지의 주택건설사업 승인 또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표현된 도서를 주택건설사업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침 중 해당 블록의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에 대한 사항 3. 외부공간의 조성계획 평면도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건축물 외관에 관한 사항 6. 지침의 반영여부를 입증하는 도서 및 설명서 등의 검토 서류 7.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도서, 경관심의(인 ・ 허가)용 도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8. 아파트, 준주거(주상복합)용지일 경우 MP 자문위원(MA가 있는 경우 포함)의 검토의견 및 조치계획

<table>
<tr><th>구 분</th><th>제 출 내 용</th></tr>
<tr><td></td><td>9. 비행안전구역에 의한 위례신도시 높이제한에 부합하도록 계획되었다는 검토도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해발고도로 표현)
10. 기타 인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 제출도서의 축척
1.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건축물로 건축심의를 받고자 할 때는 축척 1/100 이상의 관련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축척 1/100~1/500 범위까지 허용한다.
2. 대지 내 공지의 포장도면은 전면보도, 좌우연접대지 전면부 등의 포장패턴이 함께 표시되어야 한다.</td></tr>
<tr><td>친환경
부문</td><td>• 개발사업자는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에게 별도의 친환경계획에 관한 정량적 수치자료(지침 준수 이행 검토자료 및 관련도서 및 인증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는 지침의 기준에 의거 친환경계획지침의 적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친환경계획과 관련한 승인(허가)시 제출 도서 목록표 >
<table><tr><th>지구단위계획에서의
친환경 규제항목</th><th>승인(허가)시 제출도서</th></tr><tr><td>자연지반면적률</td><td rowspan="3">-투수성 포장 사용계획도서 및 적용비율 산출서 (대상면적 및 적용면적 명시)
-포장재별 투수성 인증서, 제품설명서
-조경 식재 평면도, 녹지공간 면적 산출표</td></tr><tr><td>생태면적률</td></tr><tr><td>녹지면적(식재면적)률</td></tr><tr><td>보존수목 활용율</td><td>-개발사업전 보존 수목 분포도면과 수량 및 현황사진
-보존수목활용계획도면 및 수량 (보존수목활용율 산출표 포함)</td></tr><tr><td>우수활용시설</td><td>-저류지 또는 저수조 도면, 배관도 및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우수저류, 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 시방서</td></tr><tr><td>도시형 실개천 및
단지내 수공간</td><td>-단지내 수공간 계획서 (대상유역 연간 총사용 가능 강우량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 (단면도, 배관도 포함)</td></tr><tr><td>표토재활용율</td><td>-표토 재활용 계획서 (공사 중 표토관리 계획서 포함)
-관련 시방서와 도면</td></tr><tr><td>공통사항</td><td>-기타 해당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가 요구하는 자료</td></tr></table></td></tr>
<tr><td>경관부문</td><td>•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시 단지를 서로 다른 지점과 시점(최소 4곳 이상)에서 촬영한 주변상황이 포함된 현황사진(주변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계획(안)을 합성한 그림을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지점과 시점의 선택사유가 명기되어야 한다.

• 사업대상지에 인접하여 조망점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조망점에서부터 사업대상지쪽으로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성을 우선한다. 이때 제출하는 합성그림(원경2매, 근경3매 이상)은 천연색으로, A4(210×297㎜)용지 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

• 경관 심의(인·허가)용 도서제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건축물의 배치·외관·형태에 관한 사항
· 지붕(옥탑 포함)
· 건축물(입면 또는 외벽 등)의 색채, 재료, 형태디자인(공동주택의 경우 입면변화 포함)
· 담장, 대문, 계단, 기타시설 등
· 옥외광고물(간판 포함)
· 야간경관연출 계획서(건축심의 대상에 한함)
- 지구단위계획의 경관부문 지침 이행사항

• 해당시에 별도의 경관심의가 없을 경우는 건축심의시 경관 심의용 도서를 제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td></tr>
</table>

<별표8-7>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

구 분	조 성 기 준
구내통신 선로설비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① 위례신도시 내 정보인프라시설 설치를 통해 초고속광통신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② 건축물의 구내통신선로설비 설치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의 경우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공동주택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단, 60㎡이하 국민임대주택 제외) 2. 상업 및 업무용 건물의 경우'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한 대상을 기준으로 1등급(업무시설 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적용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처리지침'에서 제외된 건축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권장한다. 1. ①항의 대상 건축물 중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 미만) 건축물 및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 ②항 1호, 2호 중 해당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2. 단, 단독주택은 ②항 1호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권장한다. ④ 단독주택, 일정 규모이하(공동주택 50세대 미만, 상업 · 업무시설 연면적 3,300㎡미만) 건축물 및 ③항 1호의 그 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②항과 같은 수준의 구내통신선로설비 기준이 제정될 경우 이를 적용한다.
원격검침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아파트), 주상복합, 업무복합의 경우 전력, 도시가스, 상수도, 지역난방에 대하여 이를 공급받는 각 수용가 및 해당 시설사업자는 원격검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원격검침용 계량기와 송수신 장치의 설치를 권장한다.

< 위례신도시 초고속통신 인증 배치 계획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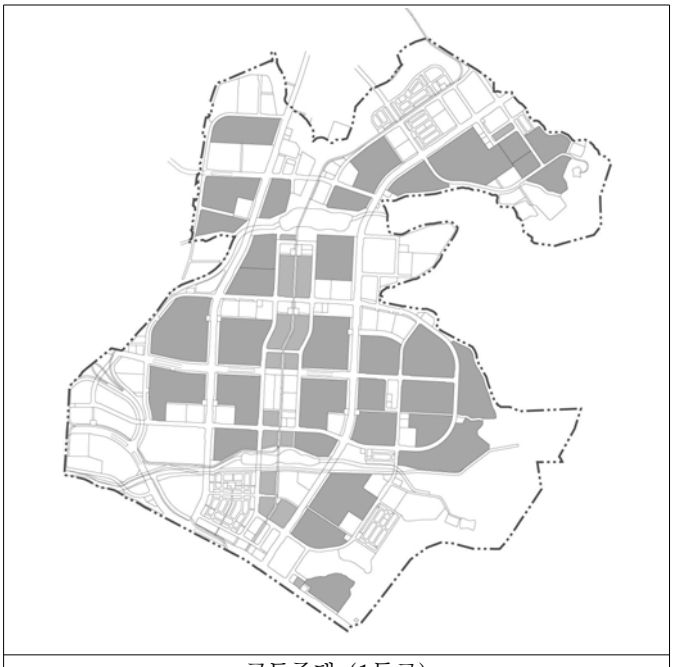

공동주택 (1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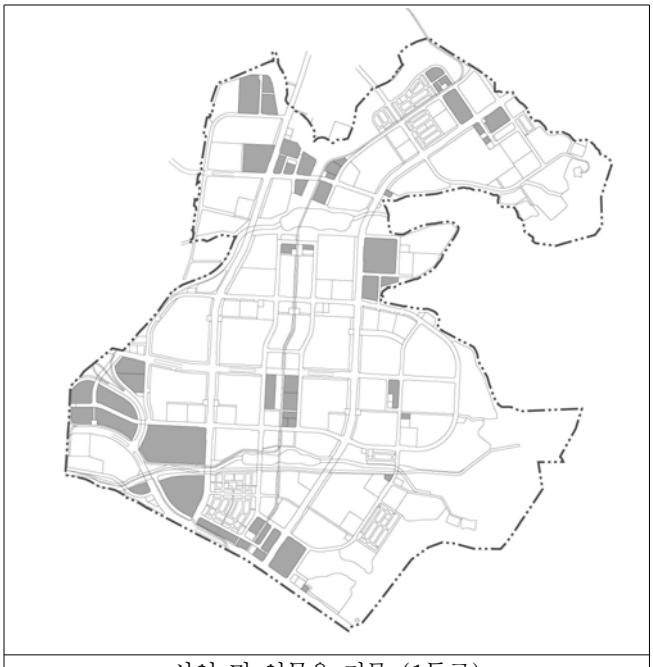

상업 및 업무용 건물 (1등급)

그 밖에 건축물 (1등급)	50세대 미만 단독주택 (1등급)

<별표8-8> 장애물 없는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구 분	조성기준
건축물의 진입	• 건축물 주 현관의 1층 바닥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바닥 높이와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한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 보도에서 건축물 주 현관에 이르는 접근로의 기울기는 1/18이하로 한다. • 보도와 건축물의 주출입구 사이의 접근로에는 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를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배수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배수구 뚜껑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의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1㎝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의 진출입	• 차량이 보도를 오르내리기 위하여 보도와 차도의 경계부분을 경사지게 할 경우 보행안전구역 이외(장애물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차량진출입 부분이 보도와 교차하는 경우 차량진출입 부분은 보도와 동일한 높이를 유지하며, 바닥마감재의 색상 또는 질감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건축한계선내의 공지 처리	• 건축한계선 후퇴 부분은 인접 보도와 단차 없이 조성하여야 하며, 보도에 그늘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로수 개념의 식재, 휴게시설 및 휴게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지형상의 이유 등으로 인접보도와 높이 차이가 불가피 한 경우 그 기울기는 1/18 이하로 하여야 한다. • 인접 보도와 공지 내 바닥높이를 단차 없이 동일하게 조성할 때는 그 높이를 보도에 우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나.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1) 특별계획구역지정

■ 기정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합계	662,177	-
특별계획구역1	136,630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E1-2)
특별계획구역2	80,776	위례지구 동측 청량산 능선 일대 (블록명 : D2-5, D3-2, D3-3)
특별계획구역3	306,206	위례지구 도시중심 신교통수단 노선의 연접구간
특별계획구역4	138,565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지원1, 지원2)

<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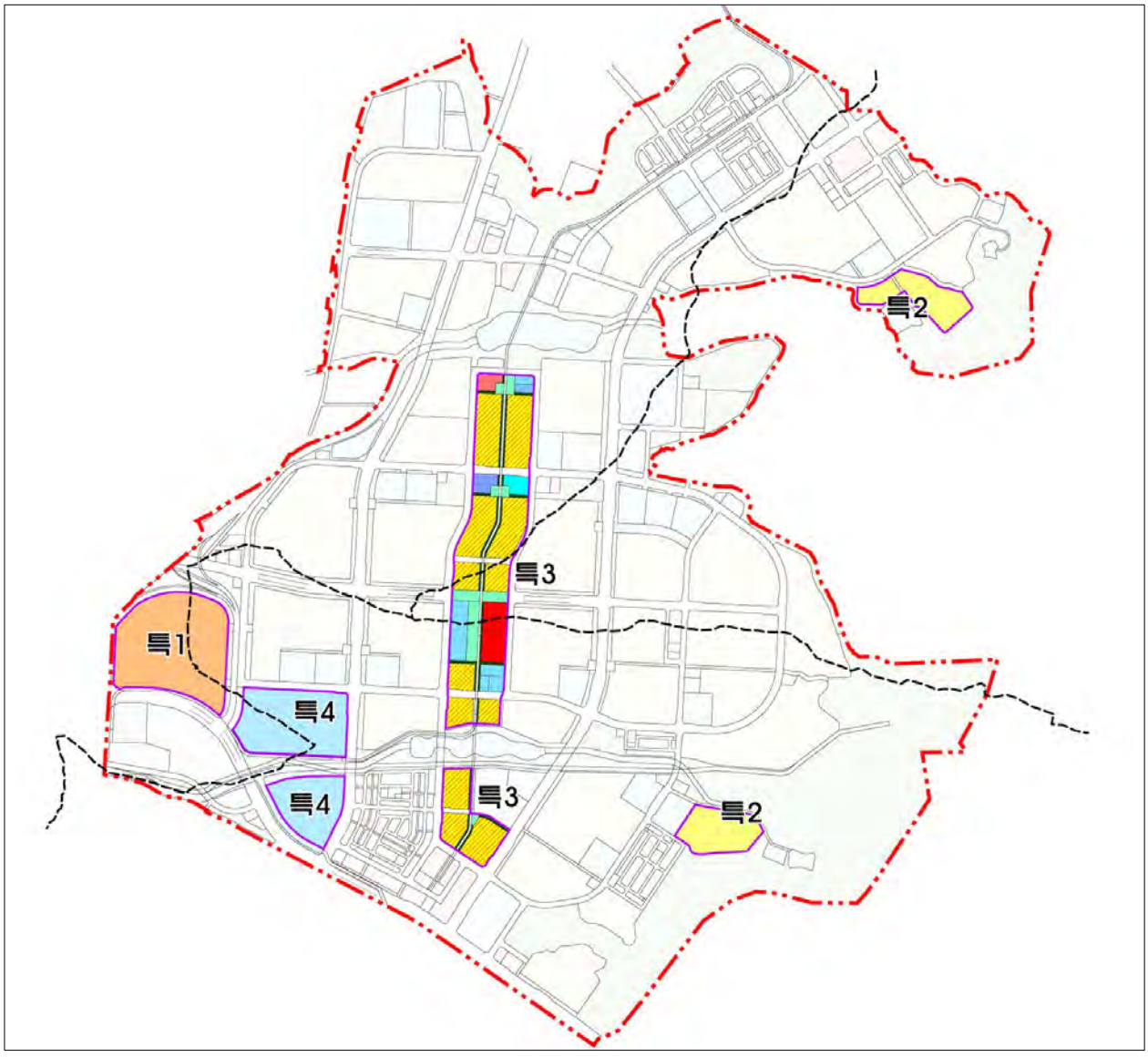

■ 변경

구역번호	면 적(㎡)	위 치
합계	617,332	-
특별계획구역1	131,680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업무27~30, 일상12, E1-2)
특별계획구역2	41,065	위례지구 동측 청량산 능선 일대 (블록명 : D3-2, D3-3)
특별계획구역3	306,206	위례지구 도시중심 신교통수단 노선의 연접구간
특별계획구역4	138,381	위례지구 남서측 (블록명 : 지원1, 지원2)

< 위례지구 지구단위계획의 특별계획구역 지정 대상 구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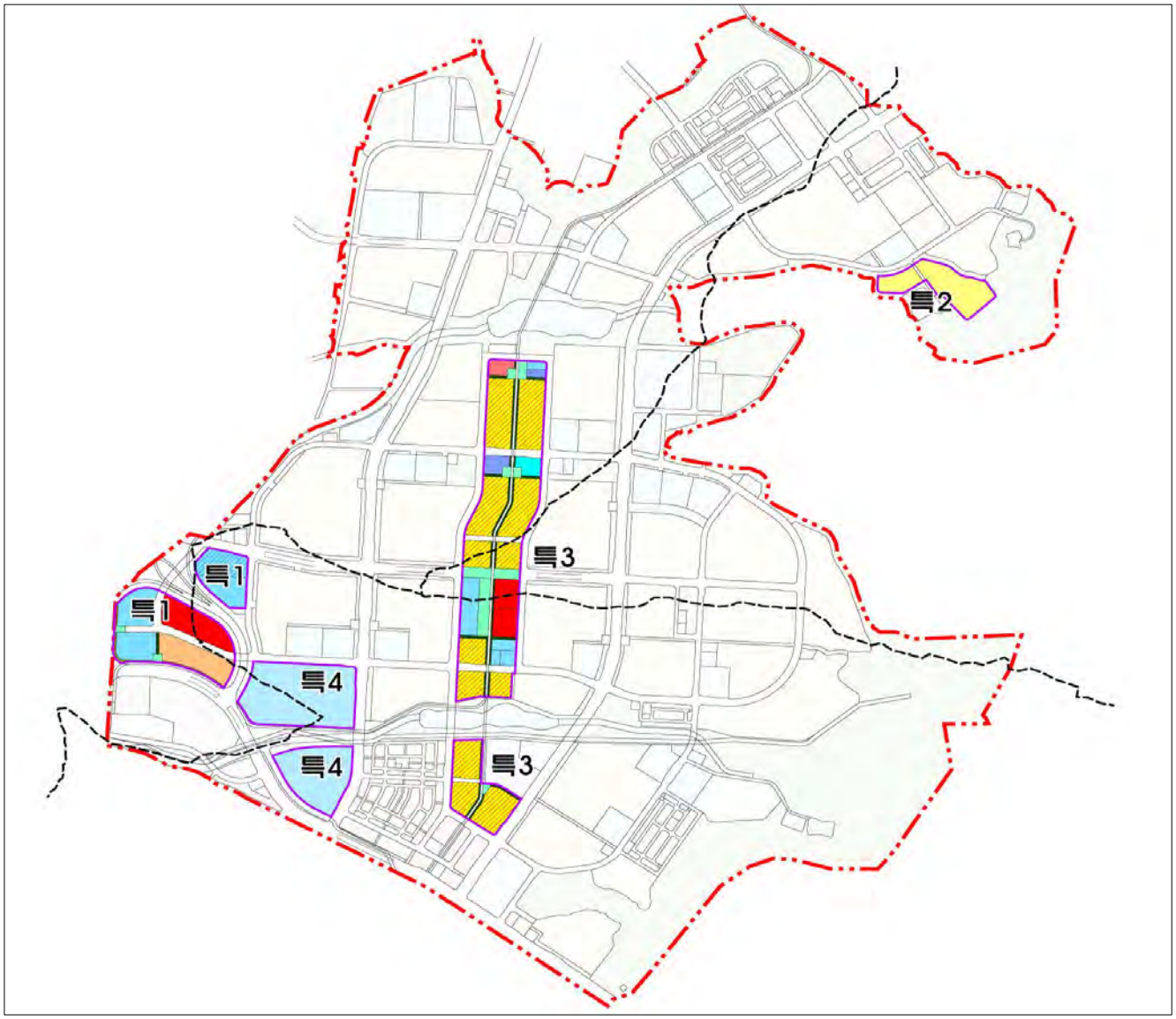

2) 특별계획구역별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및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 기정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	위례지구 남서측	지정목적	•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 · 중심성 강조 •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품격 높은 주상복합공간 창출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건축규모 및 세대수는 <별표9-1>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발방향	•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화려하고 개성 있는 디자인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이용의 편리성 도모) •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의 보행체계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1>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필지 번호	주택유형 (㎡)	필지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건폐율 (%)	최고 층수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E1-2	85㎡초과	136,630	926	2,315	60	-	400	80	2.5인/세대

나) 특별계획구역2 - 생태주거단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위례지구 동측 청량산 능선 일대	지정목적	•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 자연지형을 고려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계획수립 • 청량산과 조화되는 다양한 유형의 친환경 공동주택단지 계획수립
		용도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주택규모는 <별표9-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한다.
		개발방향	• 지형과 경사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유형을 반영한 단지 배치 • 환경과 주거와 기술을 접목시키고, 유실수 등의 조경을 통한 직접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단지 조성 • 생태환경 신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2>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비고
계			80,071	161	403		2.5인/세대
D2-5		85㎡초과	39,731	80	200	495	
	-1		19,800	40	100	495	
	-2		19,931	40	100	495	
D3-2		85㎡초과	29,883	60	150	495	
	-1		10,075	20	50	495	
	-2		19,808	40	100	495	
D3-3		85㎡초과	10,457	21	53	495	

다) 특별계획구역3 - 트랜짓 몰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위례지구 도시중심 신교통 수단 노선의 연접구간	지정목적	• 위례신도시의 커뮤니티 코아(Core) 역할을 담당할 트랜짓 몰(Transit mall)의 활성화 유도한다. • 다양한 거리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테마화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징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트랜짓 몰 구간 준주거용지(주상복합)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하며,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9-3>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개발방향	• 접지부 활성화 - Network화 / 적지적 용도배분 / 전천후 옥외활동공간 조성 •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의 다양화 • 주변 광장 및 녹지공간과 상업공간과의 적극적 연계체계 구현 • 보행자 중심의 환경조성 - 신교통수단 연접 보행자도로의 활성화 • 지역의 중심성과 상징성을 고려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3> 준주거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주택규모(㎡)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C1-1~C1-6, C2-1~C2-6	85㎡ 초과	174,456	2,813	7,033	-	-	60		222	2.5인/세대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라)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	위례지구 남동측	지정목적	• 현상설계 등을 통한 우수한 계획방안의 도입 유도 • 위례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여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발방향	•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연구와 판매의 병행이 가능한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동남권유통단지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 u-City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 변경

가) 특별계획구역1 - 복정역세권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	위례지구 남서측	지정목적	• 지하철과 신교통수단을 연결하는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의 상징성 · 중심성 강조 • 위례신도시의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상징성 있는 상업·업무공간 연출 및 대중교통 중심의 소형 주상복합공간 계획수립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건축규모 및 세대수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9-1>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개발방향	• 복정역세권내 건축물은 위례신도시의 첫인상을 심어주는 주요 관문으로 개성있는 디자인으로 특화된 랜드마크로 계획 • 위례신도시를 기준점으로 하는 주요 광역교통축과 직 ·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위례신도시의 교통결절점 기능강화(지역환승센터로 육성, 지하주차장 확보, 철도이용의 편리성 도모) • 복정역의 교통체계 구성이 도시전체 네트워크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절부에서의 보행체계와 내부도로체계를 계획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1> 복합용지의 주택 규모 및 세대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

필지번호	주택유형(㎡)	필지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건폐율(%)	최고층수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E1-2	60~85㎡	24,204	1,188	2,971	60	-	600	540	2.5인/세대

<별표9-2> 일반상업용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일반상업용지
	C1 (배후상업)
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층수	-
최소층수	-
해당블록	일상12

<별표9-3>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B6 (복합업무)		B7 (유통업무)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판매시설 - 일반업무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700% 이하	5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업무28	업무29, 업무30	업무27

나) 특별계획구역2 - 생태주거단지

도면 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 계획 구역	위례지구 동측 청량산 능선 일대	지정목적	•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생태주거단지 조성 • 자연지형을 고려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계획수립
		용도지역	• 제2종 전용주거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주택규모는 <별표9-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에서 정한 주택규모 이내로 한다.
		개발방향	• 지형과 경사를 고려한 다양한 건축유형을 반영한 단지 배치 • 자연환경과 주거기술을 접목시키고, 유실수 등의 조경을 통한 직접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친환경 단지 조성 • 생태환경 신기술을 활용하여 저탄소 녹색도시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규모 및 세대수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	세대수 (호)	인구수 (인)	평균규모 (㎡)	비고
계			40,340	81	203		2.5인/세대
D3-2		85㎡초과	29,883	60	150	495	
	-1		10,075	20	50	495	
	-2		19,808	40	100	495	
D3-3		85㎡초과	10,457	21	53	495	

다) 특별계획구역3 - 트랜짓 몰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	위례지구 도시중심 신교통 수단 노선의 연접구간	지정목적	• 위례신도시의 커뮤니티 코아(Core) 역할을 담당할 트랜짓 몰(Transit mall)의 활성화 유도한다. • 다양한 거리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을 테마화 한다.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상징적 도시이미지를 창출한다.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트랜짓 몰 구간 준주거용지(주상복합)의 주택규모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주택규모 및 세대수 이내로 한다. 세대수는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5%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9-5>에 의한 주택의 규모보다 작은 평균면적의 규모로 계획할 수 있다.
		개발방향	• 트랜짓 몰은 서울시 동남부지역과 성남시, 하남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행 및 대중교통이 활성화 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위례신도시의 중심성과 상징성 있는 공간으로 계획 • 상업활동의 업종, 가격, 품질의 다양화 • 주변 광장은 이용자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활동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최소화하고 및 녹지공간과 상업공간과의 적극적 연계체계 구현 • 트랜짓 몰내 도로는 보행자 중심의 가로로 계획하고, 단지내 보행로 및 공공보행통로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커뮤니티복합회랑을 연결하는 개방형 무장애(Barrier-free) 보행공간으로 계획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5> 준주거용지의 주택유형, 세대수,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블록명	규모유형	면적(㎡)	세대수(호)	인구수(인)	주택규모(㎡)	최고층수	건폐율(%)	용적률(%)		비고
								전체	주거부분	
계		174,444	2,895	7,237			60			2.5인/세대
C1-1	85㎡초과	23,948	445	1,112	145	-	60	300	270	
C1-2	85㎡초과	24,103	448	1,120	145	-	60	300	270	
C1-3	85㎡초과	21,044	373	933	138	-	60	275	245	
C1-4	85㎡초과	20,558	364	910	138	-	60	275	245	
C1-5	85㎡초과	9,493	151	378	138	-	60	260	220	
C1-6	85㎡초과	8,625	137	343	138	-	60	260	220	
C2-1	85㎡초과	9,108	131	327	125	-	60	200	180	
C2-2	85㎡초과	9,651	125	312	138	-	60	200	180	
C2-3	85㎡초과	7,031	91	227	138	-	60	200	180	
C2-4	60~85㎡	13,854	214	535	110	-	60	190	170	
C2-5	60~85㎡	9,819	151	378	110	-	60	190	170	
C2-6	60~85㎡	17,210	265	662	110	-	60	190	170	

주) 주택규모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한 세대수 산정기준이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별표9-6> 일반상업용지 및 근린상업용지의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일반상업용지	근린상업용지
	C3 (트랜짓 몰 연계지원)	C4 (근린상업)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600% 이하
최고층수	-	-
최소층수	-	-
해당블록	일상10-성, 일상10-하, 일상 11	근상3

<별표9-7> 업무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업무시설용지				
건축물용도	도면표시	B3 (일반업무시설)	B4 (소형 공공청사)	B5 (소형 공공청사)		B6 (복합업무)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설치의무비율 50% 이상, 오피스텔 제외)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 노유자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일반업무시설 - 운동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제1종, 2종 근린생활시설 (단,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5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	300% 이하	250% 이하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	-	-		-
해당블록		업무25	업무6	업무9	업무10	업무24-성, 업무24-하

라) 특별계획구역4 - 도시지원시설

도면번호	위 치	구분	계 획 내 용
특별계획구역	위례지구 남동측	지정목적	• 현상설계 등을 통한 우수한 계획방안의 도입 유도 • 위례신도시의 자족기능 부여
		용도지역	• 준주거지역
		배치 및 건축선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를 따른다.

		규모	•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관한 지침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발방향	• 위례신도시의 지속적인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생명공학관련 연구와 첨단의료기기, 의료장비의 제조 및 판매의 병행이 가능한 메디바이오산업 단지계획을 수립한다. • 위례신도시와 인접한 동남권유통단지를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타사항	• 생태면적률에 관한 사항은 <별표8-5>의 생태면적률을 따른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간판)은 <별표8-1>의 기준에 의한다. • 정보인프라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표8-7>의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관한 사항을 따른다. • 특별계획구역의 세부사항은 용지별 조서의 내용에 준하여 적용한다.

<별표9-8>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구 분		도시지원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D1 (순수산업연구단지)	RD2 (혼합형산업연구단지)
	허용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공동주택 중 기숙사 - 교육연구시설(학교제외) - 의료시설 중 병원(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다음의 용도 -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시형 공장) - 교육연구시설 (연구소 및 그와 유사한 시설) - 업무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집회장 중 회의장, 전시장) - 판매 및 영업시설 (상점에 한함) -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제외) - 교육연구시설 (학교제외) ※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 미만 설치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7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400% 이하
최고층수		-	-
해당블록		지원1	지원2

Ⅳ.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도(S=1:10,000) : 게재생략
2. 지역 · 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지역 · 지구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3.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S=1:5,000) : 게재생략

Ⅴ.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게재생략

※ 시행지침은 송파구청 주거정비과, 성남시청 택지개발과, 하남시청 도시개발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본부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

◉국토해양부고시제2012-76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보조금 사업(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위임사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다음 사무를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의 접수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결정
3. 법 제21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4.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5. 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실적 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 확정
6.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7. 법 제36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세청고시제2012-5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소득세법」제162조의3,「법인세법」제117조의2 및「부가가치세법」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현금영수증의 교부) ①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확인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휴대전화번호 등이 아닌 “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게시)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별표 양식의 표지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2.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제3조(추가요금) 현금영수증가맹점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이외에 어떠한 명목의 추가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4조(금지행위)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래를 한 것으로 가장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초과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3. 다른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행위
4.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5.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후 정당한 사유 또는 소비자의 동의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행위
6. 무기명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을 거래상대방이 아닌 타인에게 교부하는 행위

제5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 중 현금영수증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현금영수증가맹점 표지 양식

구 분	규 격	포함될 문구
의무발행 가맹점	가로160㎜ × 세로105㎜ ± 3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
일반 가맹점	가로125㎜ × 세로105㎜ ± 30%	현금영수증가맹점, 관련 규정, 성실납세 권장문구 등

1) 의무발행 가맹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제8항에 따른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가맹점

2) 일반 가맹점은 의무발행 가맹점외 현금영수증가맹점

◉국세청고시제2012-6호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등)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결제승인번호와 함께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상호·성명·사업장소재지·거래일자·공급가액·부가가치세·봉사료·합계금액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이하 구매자 라 한다)의 카드(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제정·고시한 국가표준(KS)을 기반으로 제작한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선형 심벌로서 국세청장이 제작하여 배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하나가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무기명으로 발급하기 위하여 "0100001234"로 발급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 및 부가가치세세액 구분 표시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구분표시 하지 아니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의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결제구분란에 "현금(소득공제)"를 표기하고, 구매자의 사업상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현금결제 승인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현금(지출증빙)"을 표기하며, 구매자의 현금결제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당초 승인거래의 승인번호, 승인일자, 취소사유를 입력하여 취소하고 "현금결제취소"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현금영수증 하단에 표기하여야 하며, 표기내용은 "현금영수증 문의 ☎126-2"를 기재하고 표기내용 변경이 수시로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④ 구매자의 거래정보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에 카드일련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가 전부 노출되지 않도록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하여야 한다.

1. 카드일련번호 : 1544 2020 **** 123456(앞 8자리 이후 4개)
2. 주민등록번호 : 710011 *******
3. 사업자등록번호 : 12* ** *1234
4. 휴대전화번호 : 010 **** 1234

⑤ 현금영수증사업자는 1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승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현금영수증발행대상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전산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전자적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결제 후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구매일시, 구매금액 등을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매자가 인터넷뱅킹·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은행계좌로 구매대금을 입금하는 경우 현금결제로 승인하는 방법
2. 신용결제와 현금결제가 모두 가능한 단말기를 휴대전화에 부착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3. 휴대전화에 현금영수증발급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금결제를 승인하는 방법

제3조(현금영수증 결제내역의 보관 및 제출)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승인신청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결제건수마다 승인번호를 부여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에게 통보하고 그 내역을 자체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3개월간 보관하고 3개월 경과 후에는 별도 매체에 수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금영수증결제내역을 아래 전산제출 양식에 의하여 국세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통보하되 당일의 결제내역은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승인번호(9바이트)－사업자 고유번호(2바이트), 거래일련번호(7바이트)
2. 가맹점사업자등록번호(10바이트)
3. 거래일자(12바이트)－연, 월, 일, 시, 분, 초(각각 2바이트)
4.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9바이트)
5. 부가가치세(9바이트)
6. 봉사료(9바이트)
7. 거래금액 총합계(9바이트)
8. 거래자구분(1바이트)－소비자(0), 사업자(1)로 구분
9. 거래구분(1바이트)－승인거래(0), 취소거래(1)로 구분
10. 신분확인(20바이트)
11. 수기입력여부(1바이트)
12. 주민번호(13바이트)-적립카드사 경우만 해당
13. 결제내역확인여부(1바이트)
14. 당초승인번호(9바이트)
15. 당초거래일자(6바이트)
16. 취소사유(1바이트)-1:거래취소, 2:오류발급, 3:기타
17. 예비(9바이트)

제4조(현금영수증가맹점의 관리)

①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사업자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보급할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의 인적사항, 발급장치 설치일과 해지일을 설치·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3제8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는 수동방식에 의한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의 입력과 국세청장이 지정한 카드를 사용한 카드일련번호와 무기명 발급시 “0100001234”의 입력이 모두 가능하여야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국세청장이 규정한 가맹점증표를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시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현금영수증사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대가를 받을 수 없다.

제5조(현금영수증사업자 승인신청 등) 현금영수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영수증사업자승인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5.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6. 영업현황 및 전산시스템 구성도
7.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개발계획서
9. 현금결제건당 원가분석표
10. 신용카드단말기 기종별 보급현황 및 보급계획서
11. 적립식카드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카드회원 현황 및 현금결제 현황

제6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제4조의 개정규정 중 카드에 관한 규정은 QR 코드, 데이터 매트릭스 또는 선형 심벌을 인식할 수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설치한 때부터, 제2조의 개정규정 중 현금영수증의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에 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취소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국세청고시제2012-7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 및 제17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제16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 제9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2제5항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3. “신고자”란「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및 「법인세법」제117조의2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4. “신고기간”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7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7항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5. “무기명”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0100001234”로 발급한 것을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대상인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거래 1건당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동일인에게 1년간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1,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같은 거래를 나누어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거래 1건당 포상금 한도액을 계산한다.

③ 제1항의 거래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으로 하되 이 규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을 포함한다.

제4조(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
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
3. 익명으로 신고
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0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현금영수증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m.taxsave.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① 「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에게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된 본인의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하며,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신고한 현금영수증 미

발급 신고서에 기재된 계좌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동일인 지급한도는 균등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신고기간에 같은 거래 건에 대하여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거래증명서류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애초에 제출된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제외)

①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거짓 사실을 신고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발급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은 포상금 지급 후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 적용 배제) 같은 거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재검토기간)「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재검토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로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모바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14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2012년 2월 2일부터 최초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분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및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홈페이지 고시란을 참조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고시제2012-21호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완료

1.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3생활권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용지에 추진한 참샘초(舊 나성초) 교사신축공사에 대한 시행계획이 완료되었기에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교육시설기획과(041-860-9234)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가. 사업시행의 종류, 명칭 및 위치

1) 사업시행의 종류 :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의 설치

2) 명칭 : 참샘초(舊 나성초)

3)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완료면적 : 12,408.41㎡

4) 사업의 시행지 :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리 2-3생활권

나.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1) 주소 : 충남 연기군 남면 대평리 142-1

2) 성명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다. 학교시설사업의 개요

1) 교지면적 : 10,604㎡

2) 건축면적 : 3,822.40㎡

3) 건축연면적 : 12,408.41㎡

4) 사업기간 : 2011년 1월 20일 - 2012년 1월 31일

라. 토지의 세목조서 : 생략.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5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유독물·관찰물질지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1호, 2012.02.06.)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관찰물질지정 중 개정규정

「유독물·관찰물질지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1의 “2012-1-635”란 다음에 “2012-1-636”란부터 “2012-1-63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1]

유 독 물(제3조 관련)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유독물의 표시사항		
		유 해 성	취급시 주의사항	유해그림
2012-1-636*	α-[2-[비스(2-히드록시에틸)아미노]프로필]-ω-히드록시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과 α-히드로-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 에테르 (1:2), 모노-C_{12-16}-알킬 에테르 [α-[2-[Bis(2-hydroxyethyl)amino]propyl]-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	·삼켰을 경우 유해함. ·화상을 일으킴. ·피부와 접촉하면 과민성을 일으킬 수 있음.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유해영향을 일으	·피부 및 눈과의 접촉을 피할 것. ·적절한 보호복, 보호장갑 및 안면보호구를 착용할 것. ·사고 시 혹은 불쾌감을 느끼면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을 것(가능하면 용기 또는 포장의 표시사항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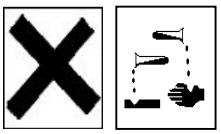 유해성 부식성 환경유해성

	ether with α-hydro-ω-hydroxy poly(oxy-1,2-ethanediyl) (1:2), mono-C_{12-16}-alkyl ethers; 176022-82-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킬 수 있음.	보여줄 것).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2012-1-637*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3,3′-Dimethoxy-[1,1′-biphenyl]-4,4′-diamine; 119-90-4] 및 그 염산염과 그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삼켰을 경우 유해함. ・암을 일으킬 수 있음.	・삼켰을 경우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고, 이 용기나 표시문을 보여줄 것. ・노출을 피할 것(사용 전 특별한 지침을 확보할 것).	유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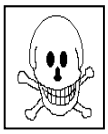 유독성
2012-1-638*	2,4-디메틸-2-(5,6,7,8-테트라히드로-5,5,8,8-테트라메틸-2-나프탈레닐)-1,3-디옥소란[2,4-Dimethyl-2-(5,6,7,8-tetrahydro-5,5,8,8-tetramethyl-2-naphthalenyl)-1,3-dioxolane; 131812-67-4, 131812-52-7, 131812-51-6]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함. ・수생환경에 장기적인 유해영향을 일으킬 수 있음.	・환경에 배출을 피할 것.	환경유해성

비 고

* 해당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혼합물질인 유독물의 경우에 한하며, 단일물질인 유독물의 표시사항은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의 [별표 4] "분류・표시 목록" 참조.

별표 2의 "2012-2-73"란 다음에 "2012-2-74"란 및 "2012-2-75"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별표2]

관찰물질(제4조 관련)

고유번호	화 학 물 질 의 명 칭
2012-2-74	(1a*R*,4*S*,7a*S*)-*rel*-1a,2,3,4,5,6,7,7a-옥타히드로-1a,3,3,4,6,6-헥사메틸나프트[2,3-*b*]옥시렌[(1a*R*,4*S*,7a*S*)-*rel*-1a,2,3,4,5,6,7,7a-Octahydro-1a,3,3,4,6,6-hexamethylnaphth[2,3-*b*]oxirene; 94400-98-3] 및 이를 25%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2012-2-75	[1,1′-비페닐]-4-일 2-메틸-2-프로펜산[[1,1′-Biphenyl]-4-yl 2-methyl-2-propenoate; 46904-74-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부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12-6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29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9조・제28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2-2호, 2012.02.06.) 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별표 4]의 "97-1-113"란, "97-1-146"란, "97-1-161"란, "97-1-176"란, "97-1-203"란, "97-1-238"란, "97-1-250"란, "97-1-271"란, "97-1-273"란, "97-1-300"란, "97-1-412"란, "97-1-428"란 및 "2002-1-529"란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2012-1-635"란 다음에 "2012-1-636"란부터 "2012-1-63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분류・표시 목록(제13조 관련)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97-1-113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74-83-9	고압가스(2.5)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생식세포변이원성(3.5)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2 3 3 2 2 2 2 1	 GHS04 GHS06 GHS08 GHS09	위험	H280 H301 H331 H315 H319 H341 H373 H400	-
97-1-146	시클로니트 [Cyclonite]	121-82-4	폭발성물질또는화약류(2.1) 급성독성-경구(3.1)	2 3	GHS01 GHS06	위험	H201 H301	-
97-1-161	아세트산 에틸 [Ethyl acetate]	141-78-6	인화성액체(2.6)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표적장기-1회노출(3.8)	2 2 3	GHS02 GHS07	위험	H225 H319 H336	-
97-1-176	Antimony trioxide	1309-64-4	발암성(3.6)	2	GHS08	경고	H351	-
97-1-203	염화 수소 [Hydrogen chloride]	7647-01-0	고압가스(2.5)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2 3 1	GHS04 GHS06 GHS05	위험	H280 H331 H314	-
	염산 [Hydrochloric acid]	7647-01-0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표적장기-1회노출(3.8)	3 3 1 3	GHS06 GHS05	위험	H301 H331 H314 H335	-
97-1-238	이피엔 [EPN]	2104-64-5	인화성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2 2 1 1 1 1	GHS02 GHS06 GHS09	위험	H225 H300 H310 H330 H400 H410	-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97-1-250	카드뮴화합물질[Cadmiumcompounds] (본고시에서별도로규정한물질은 제외)	NA	급성독성-경구(3.1)	4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
			급성독성-경피(3.1)	4			H312	
			급성독성-흡입(3.1)	4			H332	
			발암성(3.6)	1			H350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Cadmium oxide	1306-19-0	급성독성-흡입(3.1)	2	GHS06 GHS08 GHS09	위험	H330	-
			생식세포변이원성(3.5)	2			H341	
			발암성(3.6)	1			H350	
			생식독성(3.7)	2			H361	
			표적장기-반복노출(3.9)	1			H372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Cadmium diformate	4464-23-7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
			급성독성-흡입(3.1)	3			H331	
			발암성(3.6)	2			H351	
			표적장기-반복노출(3.9)	2			H373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Cadmium chloride	10108-64-2	급성독성-경구(3.1)	3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
			급성독성-흡입(3.1)	2			H330	
			생식세포변이원성(3.5)	1			H340	
			발암성(3.6)	1			H350	
			생식독성(3.7)	1			H360	
			표적장기-반복노출(3.9)	1			H372	
	Cadmium sulphate	10124-36-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Cadmium sulphide	1306-23-6	급성독성-경구(3.1)	4	GHS07 GHS08	위험	H302	-
			생식세포변이원성(3.5)	2			H341	
			발암성(3.6)	1			H350	
			생식독성(3.7)	2			H361	
			표적장기-반복노출(3.9)	1			H372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H412	
97-1-271	Sodium chromate	7775-11-3	급성독성-경구(3.1)	3	GHS05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
			급성독성-흡입(3.1)	2			H330	
			피부부식성/자극성(3.2)	1			H314	
			피부과민성(3.4)	1			H317	
			호흡기과민성(3.4)	1			H334	
			생식세포변이원성(3.5)	1			H340	
			발암성(3.6)	1			H350	
			생식독성(3.7)	1			H360	
			표적장기-반복노출(3.9)	1			H372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1			H400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H410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97-1-273	크리올라이트 [Cryolite]	15096-52-3	급성독성-흡입(3.1)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2	GHS07 GHS08 GHS09	위험	H332 H372 H411	-
97-1-300	3-Methylbenzenamine (m-Toluidine)	108-44-1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표적장기-반복노출(3.9)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3 3 3 2 1	GHS06 GHS08 GHS09	위험	H301 H311 H331 H373 H400	-
97-1-412	2-나프틸아민 [2-Naphthylamine]	91-59-8	급성독성-경구(3.1)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1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50 H400 H410	-
	2-Naphthylammonium chloride	612-52-2	급성독성-경구(3.1) 발암성(3.6)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2	GHS07 GHS08 GHS09	위험	H302 H350 H411	-
97-1-428	1,3-디클로로프로펜 [1,3-Dichloropropene]	542-75-6	인화성액체(2.6)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급성독성-흡입(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심한눈손상/눈자극성(3.3) 피부과민성(3.4) 표적장기-1회노출(3.8)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3 3 4 2 2 1 3 1 1	GHS02 GHS06 GHS09	위험	H226 H301 H311 H332 H315 H319 H317 H335 H400 H410	10
2002-1-529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니윰 [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급성독성-경구(3.1) 급성독성-경피(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3 2 1 3	GHS05 GHS06	위험	H301 H310 H314 H412	-
2012-1-636	α-[2-[비스(2-히드록시에틸)아미노]프로필]-ω-히드록시폴리[옥시(메틸-1,2-에탄디일)]과α-히드로-ω-히드록시폴리(옥시-1,2-에탄디일)의에테르(1:2), 모노-C12-16-알킬에테르[α-[2-[Bis(2-hydroxyethyl)amino]propyl	176022-82-5	급성독성-경구(3.1) 피부부식성/자극성(3.2) 피부과민성(3.4)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4 1 1 1 1	GHS05 GHS07 GHS09	위험	H302 H314 H317 H400 H410	-

유독물 또는 기존화학물질 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CAS번호	유해성분류(Code)		표시사항Code*			M계수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ω-hydroxypoly[oxy(methyl-1,2-ethanediyl)]ether withα-hydro-ω-hydroxypoly(oxy-1,2-ethanediyl)(1:2),mono-C12-16-alkylethers]							
2012-1-637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3,3′-Dimethoxy-[1,1′-biphenyl]-4,4′-diamine]	119-90-4	급성독성-경구(3.1) 발암성(3.6)	1 4	GHS07 GHS08	위험	H302 H350	-
	3,3′-디메톡시-[1,1-비페닐]-4,4′-디아민 염산염(1:2) [3,3′-Dimethoxy-[1,1′-biphenyl]-4,4′-diamine, hydrochloride (1:2)]	20325-40-0						
2012-1-638	2,4-디메틸-2-(5,6,7,8-테트라히드로-5,5,8,8-테트라메틸-2-나프탈레닐)-1,3-디옥소란 [2,4-Dimethyl-2-(5,6,7,8-tetrahydro-5,5,8,8-tetramethyl-2-naphthalenyl)-1,3-dioxolane]	131812-67-4 131812-52-7 131812-51-6	수생환경유해성-급성(4.1) 수생환경유해성-만성(4.1)	1 1	GHS09	위험	H400 H410	-

* 예방조치문구는 [별표 1] “유독물 등의 분류 및 표시사항”의 해당 유해성 항목을 참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139호

토지세목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6-62호(2006.04.07)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한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 중 성주군 소재 구간의 편입 토지 일부 세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및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는 고령-성주(1공구) 도로보상사무소(☎053-650-6740)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051-660-1057)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한다.

2012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시행기간 : 2006. 2. 6. ~ 2016. 1. 11.

2. 사업의 명칭 : 고령-성주(1공구) 국도건설공사

3. 사업 시행자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현황	면적		단위	소유자	주소	이해관계인		
		당초	편입			전체	편입				권리종류	성명	주소
1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산118-2	산118-7	도로	도로	1,785	1,598	㎡	최부곤	성주군 수륜면 남은리 807			
2	성주군 수륜면 계정리	산110-1	산110-11	임야	임야	1,689	1,413	㎡	이상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8 보네르빌리지아파트 103-190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1호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208호(관보17037호, 2009. 07. 0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용두-동면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205-8	답	2,525	205-41	40	1/1	박인덕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구도리 174	동면농업협동조합	충남 천안시 동면 동산리 578	근저당권
225-1	임야	28,554	225-2	10,614	4/8	안숙자	충남 천안시 쌍용동 2045 현대아이파크홈타운 110-1001	윤희근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	〃	〃	〃	〃	1/8	장래욱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263 청송엘지,에스케이아파트 113-501	윤희근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	〃	〃	〃	〃	1/8	김영철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302 모드니에@ 101-1001	윤희근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	〃	〃	〃	〃	1/8	윤희근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553-2 시제이나인파크 102-503	윤희근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	〃	〃	〃	〃	1/8	임대수	서울 강동구 상일동 162 주공아파트 409-207	윤희근	대전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09-1102	근저당권
227-1	임야	8,628	227-2	453	1/1	이종학	충북 청주시 내덕동 산1	-	-	-
309	답	3,220	전필	3,220	1/1	대구서씨 문중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176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7	지상권
310-3	임야	13,388	310-6	6,549	1/7	서정렬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176	-	-	-
〃	〃	〃	〃	〃	1/7	서진석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206	-	-	-
〃	〃	〃	〃	〃	1/7	서봉석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209	-	-	-
〃	〃	〃	〃	〃	1/7	서동훈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184	-	-	-
〃	〃	〃	〃	〃	1/7	서복만	충남 공주시 정안면 문천리 202	-	-	-
〃	〃	〃	〃	〃	1/7	서두석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09-16	-	-	-
〃	〃	〃	〃	〃	1/7	서동희	서울 서초구 방배동998 방배금호어울림@ 102-604	-	-	-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분할전			분할후		소 유 자			관 계 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 소	성명	주소	권 리
249-2	도로	17	전필	17	1/1	남원윤씨 동지공과 파종중	천원군 동면 화계리29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292)	-	-	-
249-1	대지	1,623	249-3	446	1/1	남원윤씨 동지공두 파종중	천원군 동면 화계리292 (충남 천안시 동남구 동면 화계리 292)	-	-	-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92호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방2)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세목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09-439호(관보17145호, 2009. 12. 03.)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한 '천안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소정-배방2)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편입되는 토지상에 있는 물건 등 포함)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세목을 고시합니다.(관계조서 사본은 국토해양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2년 2월 27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사업지역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가송리

분할전			분할후		소유자			관계인		
지번	지목	면적(㎡)	지번	면적(㎡)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산50-6	임야	2,180	전필	2,180	1/7	김창률	경기 광명시 철산동 241 아파트 1301-908	기술신용보증기금(시화지점)	부산 중구 중앙동4가 17-7	가압류
〃	〃	〃	〃	〃	〃	〃	〃	신용보증기금(경기채권관리팀)	서울 마포구 공덕동 254-5	가압류
〃	〃	〃	〃	〃	〃	〃	〃	국(마포세무서)	서울 마포구 독막로 234	압류
〃	〃	〃	〃	〃	〃	〃	〃	서울시마포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12	압류
〃	〃	〃	〃	〃	〃	〃	〃	광명시	경기 광명시 시청로 20	압류
〃	〃	〃	〃	〃	〃	〃	〃	국민건강보험공단(마포지사)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압류
〃	〃	〃	〃	〃	〃	〃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강남신용지원단)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261	전	1,939	261-9	152	1/1	성언창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상마2길 8	-	-	-
283-1	임야	12,397	283-4	4,565	1/1	방승예	충남 아산시 권곡동 205-1 청솔@ 102-703	-	-	-
290-5	전	105	전필	105	1/3	김승배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317	-	-	-
〃	〃	〃	〃	〃	1/3	김종순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317	-	-	-
〃	〃	〃	〃	〃	1/3	김홍배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317	-	-	-
295-2	전	641	전필	641	1/1	한종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155-3 금성@1단지 304호	-	-	-
295-3	전	1,240	295-5	300	1/1	한종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155-3 금성@1단지 304호	-	-	-

334-2	전	1,072	전필	1,072	1/3	이재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9-5	-	-	-
〃	〃	〃	〃	〃	1/3	이재정	울산 동구 화정동 851-6 대하@ 102-1103	-	-	-
〃	〃	〃	〃	〃	1/3	이재형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23 용암동아벽산@ 101-1501	-	-	-
335-2	전	740	전필	740	1/1	이병희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526-2 극동늘푸른@ 104-302	-	-	-
335-5	공장용지	708	전필	708	1/1	이정숙	충남 천안시 풍세면 가송리 산33	-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2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9-317호(2009.08.26)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한 바 있는 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에 대하여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1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명칭(변경없음) : 영산강권급수체계구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가. 주소 :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560(연축동 산6-2)
   나. 성명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김건호
3. 사업목적(변경없음)
   영산강권 광역급수구역인 함평군에 대하여 지역간 용수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시설의 사고 및 이상가뭄 등 비상시에 대비하여 전남남부권 광역상수도와 함평지방상수도간 용수공급체계 구축
4. 사업개요(변경없음)
   가. 수 원 : 장흥댐
   나. 시설용량 : 5천㎥/일
   다. 시설개요
      ○ 전남남부권광역→함평군 용수공급시설
         - 관 로 : D=300㎜, L=12.6㎞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변경)

위 치	면 적(㎡)		비 고
	당초	변경	
전라남도 함평군, 무안군 일원	35,194.7	34,852.2	감 342.5

6. 사업시행기간 : 2007 ~ 20011. 12월
7. 변경사유 : 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토지보상 실면적 반영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 : 붙 임
8. 공시송달 : 사업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함.
9.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062-370-1323)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이 가능함.

수용또는사용할토지세목조서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5	-	1	답	215.0		14.3	55	-	1	답	215.0		14.3		이덕현	광주시북구용봉동1248-28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5	-	2	도	13.0		10.6	55	-	2	도	13.0		10.6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7	-	2	도	60.0		51.0	57	-	2	도	60.0		51.0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8	-	4	도	20.0		15.7	58	-	4	도	20.0		15.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8	-	5	유	11,246.0		22.0	58	-	5	유	11,246.0		22.0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8	-	26	도	636.0		93.6	58	-	26	도	636.0		93.6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9	-	2	도	909.0		199.1	59	-	2	도	909.0		199.1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9	-	3	전	41.0		13.8	59	-	3	전	41.0		13.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59	-	5	전	19.0		5.9	59	-	5	전	19.0		5.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1	-	9	도	33.0		2.6	61	-	9	도	33.0		2.6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4	-	1	도	103.0		4.7	64	-	1	도	103.0		4.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4	-	4	전	745.0		120.6	64	-	4	전	745.0		120.6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4	-	6	도	300.0		95.7	64	-	6	도	300.0		95.7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8	-	1	도	218.0		152.0	68	-	1	도	218.0		152.0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8	-	5	도	126.0		26.8	68	-	5	도	126.0		26.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8	-	6	도	59.0		15.6	68	-	6	도	59.0		15.6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69	-	3	도	567.0		138.2	69	-	3	도	567.0		138.2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75	-	1	도	99.0		63.1	75	-	1	도	99.0		63.1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75	-	3	도	321.0		114.4	75	-	3	도	321.0		114.4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76	-	8	도	26.0		18.9	76	-	8	도	26.0		18.9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9	-	4	도	3.0		1.8	119	-	4	도	3.0		1.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9	-	7	도	175.0		59.8	119	-	7	도	175.0		59.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9	-	8	도	32.0		26.8	119	-	8	도	32.0		26.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41	-	2	도	2,410.0		15.3	241	-	2	도	2,410.0		15.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41	-	3	도	377.0		15.3	241	-	3	도	377.0		15.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41	-	4	도	3,269.0		130.2	241	-	4	도	3,269.0		130.2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65	-	0	답	4,573.0	240.9		265	-	1	답	147.0	147.0			곽기호	무안군무안읍성내리80	무안농협	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근저당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65	-	2	답	96.0	96.0			곽기호	무안군무안읍성내리80	무안농협	무안군무안읍성내리173-4	근저당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67	-	1	답	214.0		131.1	267	-	1	답	214.0		131.1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67	-	2	답	603.0		354.5	267	-	2	답	603.0		354.5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69	-	0	답	340.0		81.9	269	-	0	답	340.0		81.9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69	-	2	답	485.0		33.9	269	-	2	답	485.0		33.9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1	-	0	천	643.0		56.1	271	-	0	천	643.0		56.1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1	-	1	천	574.0		48.1	271	-	1	천	574.0		48.1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2	-	0	천	182.0		28.9	272	-	0	천	182.0		28.9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3	-	1	천	741.0		36.2	273	-	1	천	741.0		36.2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4	-	0	전	368.0	18.5		274	-	5	전	18.0	18.0			송길섭	무안군무안읍고절리410-1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4	-	1	천	53.0		23.5	274	-	1	천	53.0		23.5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4	-	2	전	891.0		54.2	274	-	2	전	891.0		54.2		국(국토해양부)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4	-	3	전	4.0		4.1	274	-	3	전	4.0		4.1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5	-	0	전	1,361.0	139.9		275	-	3	전	139.0	139.0			박순만	무안군무안읍고절리607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5	-	1	천	56.0		1.7	275	-	1	천	56.0		1.7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5	-	2	전	130.0		104.6	275	-	2	전	130.0		104.6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76	-	0	전	1,947.0	208.0		276	-	2	전	208.0	208.0			노백규	무안군무안읍고절리451	목포무안신안축협	무안군무안읍성내리102	근저당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87	-	2	전	518.0		170.8	287	-	2	전	518.0		170.8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89	-	2	전	585.0		328.6	289	-	2	전	585.0		328.6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93	-	0	답	1,370.0	122.4		293	-	3	답	121.0	121.0			송명용	경상남도김해시장유면대청리334-4갑오마을부영A607-402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93	-	1	답	49.0		20.2	293	-	1	답	49.0		20.2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95	-	0	전	1,835.0	122.5		295	-	1	전	124.0	124.0			송형섭	무안군무안읍고절리410-1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96	-	0	전	2,221.0	540.8		296	-	1	전	566.0	566.0			이재님	무안군무안읍고절리410-1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299	-	0	전	972.0	197.0		299	-	1	전	172.0	172.0			박풍미	무안군무안읍고절리498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1	-	10	답	899.0	129.4		331	-	36	답	85.0	85.0			곽종운	광주시동구운림동567-1라인광명A301-1108	농업기반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구분지상권	관로	보상대상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1	-	17	도	231.0		4.9	331	-	17	도	231.0		4.9		국(무안군)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1	-	29	답	135.0		5.0	331	-	29	답	135.0		5.0		국(전라남도)					관로	무안천제방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3	-	19	도	347.0		111.2	333	-	19	도	347.0		111.2		국(무안군)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3	-	24	도	161.0		150.5	333	-	24	도	161.0		150.5		국(무안군)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3	-	32	도	126.0		134.4	333	-	32	도	126.0		134.4		국(무안군)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3	-	35	답	117.0		20.1	333	-	35	답	117.0		20.1		국(무안군)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3	-	52	답	31.0		19.0	333	-	52	답	31.0		19.0		정미란	무안군무안읍성남리811-6서라A102-1104	무안신협	무안군무안읍성남리3-7	근저당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3	-	53	답	98.0		22.0	333	-	53	답	98.0		22.0		노영철	무안군무안읍성동리628-4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33	-	58	답	220.0		12.3	333	-	58	답	220.0		12.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42	-	5	도	287.0		254.9	342	-	5	도	287.0		254.9		국(무안군)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42	-	12	답	199.0		23.8	342	-	12	답	199.0		23.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42	-	14	답	138.0		37.0	342	-	14	답	138.0		37.0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42	-	15	도	210.0		79.6	342	-	15	도	210.0		79.6		국(무안군)		농업기반공사	의왕시포일동487	구분지상권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51	-	1	구	6,079.0		33.5	351	-	1	구	6,079.0		33.5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51	-	2	구	2,268.0		5.2	351	-	2	구	2,268.0		5.2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51	-	3	구	5,312.0		184.5	351	-	3	구	5,312.0		184.5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51	-	4	구	1,418.0		364.5	351	-	4	구	1,418.0		364.5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2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352	-	1	천	7,094.0		127.5	352	-	1	천	7,094.0		127.5		국(국토해양부)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25	-	8	구	6,420.0		65.4	925	-	8	구	6,420.0		65.4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97	-	1	임	1,345.0	307.4		997	-	9	임	274.0	274.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97	-	3	임	2,767.0	39.7		997	-	11	임	31.0	31.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97	-	4	임	988.0	8.9		997	-	12	임	9.0	9.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97	-	5	전	1,806.0	56.9		997	-	13	전	41.0	41.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97	-	14	전	7.0	7.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97	-	7	임	1,445.0		119.2	997	-	7	임	1,445.0		119.2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997	-	8	임	8.0		8.2	997	-	8	임	8.0		8.2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001	-	1	전	282.0	127.9		1001	-	5	전	121.0	121.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001	-	2	전	906.0	196.6		1001	-	7	전	182.0	182.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001	-	3	전	1,202.0		3.9	1001	-	3	전	1,202.0		3.9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002	-	0	임	1,884.0	199.3		1002	-	3	임	190.0	190.0			박명석	광주북구일곡동817-4일곡대림2차A202-1205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005	-	0	전	1,124.0	120.8		1005	-	4	전	132.0	132.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005	-	1	전	821.0	158.4		1005	-	5	전	123.0	123.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006	-	0	전	399.0	140.0		1006	-	2	전	159.0	159.0			송기신	무안군무안읍고절리36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42	-	6	도	1,304.0		83.7	1142	-	6	도	1,304.0		83.7		박용화	무안군망운면피서리55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49	-	0	도	1,630.0		12.7	1149	-	0	도	1,630.0		12.7		박용화	무안군망운면피서리55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51	-	5	천	112.0		70.2	1151	-	5	천	112.0		70.2		국(국토해양부)					관로	무안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51	-	21	천	13,249.0		197.1	1151	-	21	천	13,249.0		197.1		국(국토해양부)					관로	무안천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고절리	1159	-	1	도	641.0		17.6	1159	-	1	도	641.0		17.6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475	-	4	도	2,063.0		97.2	475	-	4	도	2,063.0		97.2		국(무안군)					관로	소도로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475	-	5	도	93.0		1.2	475	-	5	도	93.0		1.2		국(무안군)					관로	소도로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483	-	1	임	1,606.0		84.4	483	-	1	임	1,606.0		84.4		김진구	목포시용해동255라이프2차A2-1108				관로	소도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483	-	9	도	26.0		3.3	483	-	9	도	26.0		3.3		국(국토해양부)					관로	소도로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483	-	11	도	105.0	13.4		483	-	20	도	15.0	15.0			김승규외2인	광주서구양림동93-39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6	-	5	도	78.0		22.3	506	-	5	도	78.0		22.3		국(국토해양부)					관로	소도로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6	-	6	도	335.0		48.5	506	-	6	도	335.0		48.5		국(국토해양부)					관로	소도로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6	답	445.0		13.0	508	-	6	답	445.0		13.0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7	답	152.0		8.3	508	-	7	답	152.0		8.3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10	답	1,409.0		62.5	508	-	10	답	1,409.0		62.5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11	답	2,759.0		77.5	508	-	11	답	2,759.0		77.5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12	답	631.0		19.5	508	-	12	답	631.0		19.5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13	답	2,678.0		46.9	508	-	13	답	2,678.0		46.9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22	답	382.0		2.5	508	-	22	답	382.0		2.5		국(전라남도)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23	답	1,102.0		24.8	508	-	23	답	1,102.0		24.8		국(전라남도)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08	-	24	답	1,088.0		22.6	508	-	24	답	1,088.0		22.6		김광철	무안군무안읍교촌리957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11	-	8	답	1,395.0		141.9	511	-	8	답	1,395.0		141.9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11	-	9	답	830.0		93.4	511	-	9	답	830.0		93.4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22	-	0	구	16,357.0		162.1	522	-	0	구	16,357.0		162.1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점용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22	-	2	구	428.0		3.9	522	-	2	구	428.0		3.9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점용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23	-	8	도	2,016.0		107.3	523	-	8	도	2,016.0		107.3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33	-	3	도	27.0		12.1	533	-	3	도	27.0		12.1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88	-	1	전	1,782.0		27.8	588	-	1	전	1,782.0		27.8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88	-	2	도	56.0		2.2	588	-	2	도	56.0		2.2		국(무안군)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89	-	0	전	271.0	136.7		589	-	3	전	138.0	138.0			김일종	서울강동구명일동28삼익A303-1205	성북구청		압류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89	-	1	전	1,082.0		56.9	589	-	1	전	1,082.0		56.9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89	-	2	전	330.0		282.7	589	-	2	전	330.0		282.7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90	-	0	전	1,260.0		25.8	590	-	0	전	1,260.0		25.8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91	-	0	전	555.0	370.5		591	-	3	전	250.0	250.0			이계수	무안군무안읍교촌리999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91	-	1	전	715.0		20.7	591	-	1	전	715.0		20.7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91	-	2	전	290.0		274.6	591	-	2	전	290.0		274.6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93	-	1	답	1,606.0	268.3		593	-	4	답	270.0	270.0			김삼옥외1인	무안군무안읍교촌리971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593	-	3	답	87.0		99.9	593	-	3	답	87.0		99.9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03	-	24	임	6,806.0		241.8	603	-	24	임	6,806.0		241.8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03	-	29	임	472.0	50.7		603	-	39	임	59.0	59.0			임공례	무안군무안읍교촌리974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03	-	31	임	1,515.0		1,308.9	603	-	31	임	1,515.0		1,308.9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03	-	32	임	24.0		43.4	603	-	32	임	24.0		43.4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03	-	33	도	55.0		12.8	603	-	33	도	55.0		12.8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04	-	0	전	350.0		330.7	604	-	0	전	350.0		330.7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604	-	1	전	1,316.0		187.6	604	-	1	전	1,316.0		187.6		모문원	함평군대동면향교리586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17	-	35	전	116.0		3.4	917	-	35	전	116.0		3.4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17	-	37	전	299.0		20.7	917	-	37	전	299.0		20.7		정영부	무안군무안읍교촌리917-3	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은행무안축협박양래	서울마포구공덕동254-5 서울중구을지로2가50 무안군무안읍성동리873-16 서울노원구상계동720주공A604-202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28	-	0	전	1,341.0	42.0		928	-	2	전	16.0	16.0			서항석	서울강남구삼성동33-27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28	-	3	전	13.0	13.0			서항석	서울강남구삼성동33-27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28	-	1	전	1,039.0		813.1	928	-	1	전	1,039.0		813.1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29	-	0	전	645.0	206.3		929	-	3	전	201.0	201.0			조기모	무안군망운면목동리621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29	-	1	전	747.0		50.4	929	-	1	전	747.0		50.4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29	-	2	전	350.0		341.8	929	-	2	전	350.0		341.8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0	-	0	전	1,105.0	227.4		930	-	3	전	204.0	204.0			조기모	무안군망운면목동리621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0	-	2	전	270.0		224.7	930	-	2	전	270.0		224.7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2	-	0	전	1,247.0	372.6		932	-	9	전	336.0	336.0			한광택	무안군무안읍교촌리989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2	-	1	전	1,312.0	429.3		932	-	10	전	413.0	413.0			민경섭	경기도용인시기흥구마북동625교동마을현대필그린A101-1202	평택상호저축은행	경기도평택시평택동66-19	근저당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2	-	2	대	195.0	136.0		932	-	11	대	126.0	126.0			민경섭	서울노원구하계동273A602-1101				관로	보상대상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2	-	3	전	1,214.0		151.8	932	-	3	전	1,214.0		151.8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2	-	6	전	455.0		430.5	932	-	6	전	455.0		430.5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2	-	7	전	568.0		156.6	932	-	7	전	568.0		156.6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932	-	8	대	122.0		102.2	932	-	8	대	122.0		102.2		국(국토해양부)					관로	점용,남부권	보호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014	-	11	도	4,623.0		12.7	1014	-	11	도	4,623.0		12.7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014	-	14	도	1,676.0		36.2	1014	-	14	도	1,676.0		36.2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1014	-	15	도	3,150.0		65.5	1014	-	15	도	3,150.0		65.5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	-	22	임	4,559.0		51.7	산 29	-	22	임	4,559.0		51.7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	-	25	임	2,222.0		3.3	산 29	-	25	임	2,222.0		3.3		국(국토해양부)					관로	지방도60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0	-	4	미	4,605.0		238.9	0	-	4	미	4,605.0		238.9		국(미등록지)	미등록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252	-	4	전	449.0		15.8	252	-	4	전	449.0		15.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252	-	5	전	948.0		34.5	252	-	5	전	948.0		34.5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277	-	3	도	109.0		77.7	277	-	3	도	109.0		77.7		국(무안군)					관로	점용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277	-	4	도	30.0		17.8	277	-	4	도	30.0		17.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299	-	1	도	56.0		35.9	299	-	1	도	56.0		35.9		국(미등기)	토지대장상:강진군강진읍동성리434 김충식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299	-	3	답	799.0		102.8	299	-	3	답	799.0		102.8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300	-	3	답	414.0		44.2	300	-	3	답	414.0		44.2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304	-	2	도	192.0		32.2	304	-	2	도	192.0		32.2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305	-	2	도	33.0		8.7	305	-	2	도	33.0		8.7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429	-	1	도	6,838.0		10.3	429	-	1	도	6,838.0		10.3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429	-	4	구	524.0		267.3	429	-	4	구	524.0		267.3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430	-	1	도	8,812.0		300.7	430	-	1	도	8,812.0		300.7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430	-	2	구	416.0		29.4	430	-	2	구	416.0		29.4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430	-	4	구	5,171.0		14.0	430	-	4	구	5,171.0		14.0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431	-	0	구	12,824.0		31.0	431	-	0	구	12,824.0		31.0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483	-	1	도	17.0		5.4	483	-	1	도	17.0		5.4		국(무안군)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18	-	1	도	10.0		7.3	518	-	1	도	10.0		7.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18	-	2	유	44,802.0		44.8	518	-	2	유	44,802.0		44.8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22	-	1	도	132.0		5.9	522	-	1	도	132.0		5.9		국(무안군)					관로	점용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26	-	1	도	93.0		66.9	526	-	1	도	93.0		66.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7	진흥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26	-	3	전	355.0		3.0	526	-	3	전	355.0		3.0		고신남	무안군무안읍용월리634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28	-	1	도	60.0		34.9	528	-	1	도	60.0		34.9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28	-	2	전	30.0		5.5	528	-	2	전	30.0		5.5		고태석	무안군무안읍용월리666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29	-	1	도	50.0		28.0	529	-	1	도	50.0		28.0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29	-	3	전	200.0		25.6	529	-	3	전	200.0		25.6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33	-	2	도	13.0		3.5	533	-	2	도	13.0		3.5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33	-	3	임	45.0		35.0	533	-	3	임	45.0		35.0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34	-	2	도	10.0		5.8	534	-	2	도	10.0		5.8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46	-	2	도	106.0		13.8	546	-	2	도	106.0		13.8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46	-	3	임	302.0		108.4	546	-	3	임	302.0		108.4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51	-	20	답	227.0		23.3	551	-	20	답	227.0		23.3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52	-	2	도	215.0		81.6	552	-	2	도	215.0		81.6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54	-	2	도	1,059.0		50.2	554	-	2	도	1,059.0		50.2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557	-	0	구	5,336.0		70.2	557	-	0	구	5,336.0		70.2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675	-	1	구	2,858.0		54.4	675	-	1	구	2,858.0		54.4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675	-	2	도	1,435.0		86.5	675	-	2	도	1,435.0		86.5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942	-	1	도	357.0		16.9	942	-	1	도	357.0		16.9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942	-	3	임	531.0		187.0	942	-	3	임	531.0		187.0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1006	-	0	도	14,908.0		675.4	1006	-	0	도	14,908.0		675.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1009	-	2	도	3,486.0		83.8	1009	-	2	도	3,486.0		83.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1009	-	3	도	2,039.0		57.7	1009	-	3	도	2,039.0		57.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7	진흥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산 23	-	2	도	496.0		174.9	산 23	-	2	도	496.0		174.9		배병효	무안군무안읍용월리653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산 27	-	2	도	595.0		27.8	산 27	-	2	도	595.0		27.8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산 28	-	3	도	17.0		6.9	산 28	-	3	도	17.0		6.9		국(무안군)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무안군 무안읍 용월리	산 77	-	0	도	298.0		12.8	산 77	-	0	도	298.0		12.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7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39	-	17	임	1,478.0		156.9	939	-	17	임	1,478.0		156.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39	-	18	임	988.0		78.2	939	-	18	임	988.0		78.2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39	-	20	임	986.0		44.0	939	-	20	임	986.0		44.0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39	-	21	임	1,969.0		69.7	939	-	21	임	1,969.0		69.7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39	-	28	전	205.0		42.5	939	-	28	전	205.0		42.5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41	-	3	임	155.0		54.2	941	-	3	임	155.0		54.2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41	-	11	임	542.0		121.6	941	-	11	임	542.0		121.6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41	-	12	임	16.0		14.7	941	-	12	임	16.0		14.7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64	-	1	도	682.0		177.9	964	-	1	도	682.0		177.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65	-	1	도	1,130.0		370.4	965	-	1	도	1,130.0		370.4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69	-	1	도	626.0		110.1	969	-	1	도	626.0		110.1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970	-	1	도	657.0		145.5	970	-	1	도	657.0		145.5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1057	-	0	도	1,676.0		43.4	1057	-	0	도	1,676.0		43.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1057	-	4	도	3,040.0		178.3	1057	-	4	도	3,040.0		178.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68	-	4	도	500.0		32.8	68	-	4	도	500.0		32.8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68	-	9	도	1,141.0		80.3	68	-	9	도	1,141.0		80.3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1	-	4	도	141.0		36.2	71	-	4	도	141.0		36.2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91	-	2	도	102.0		30.5	91	-	2	도	102.0		30.5		정오보	함평군엄다면신계리256				관로	군도 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94	-	2	도	43.0		27.6	94	-	2	도	43.0		27.6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13	-	2	도	91.0		2.2	413	-	2	도	91.0		2.2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25	-	2	도	112.0		11.3	425	-	2	도	112.0		11.3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25	-	12	도	237.0		12.7	425	-	12	도	237.0		12.7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26	-	2	도	96.0		33.3	426	-	2	도	96.0		33.3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28	-	0	답	116.0		45.0	428	-	0	답	116.0		45.0		이정구	함평군엄다면신계리326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52	-	2	도	96.0		77.9	452	-	2	도	96.0		77.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52	-	3	전	915.0		123.3	452	-	3	전	915.0		123.3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54	-	1	답	618.0		9.3	454	-	1	답	618.0		9.3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55	-	1	전	216.0		8.3	455	-	1	전	216.0		8.3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72	-	2	전	1,600.0		198.9	472	-	2	전	1,600.0		198.9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73	-	1	전	533.0		73.9	473	-	1	전	533.0		73.9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74	-	4	도	616.0		22.5	474	-	4	도	616.0		22.5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474	-	5	전	301.0		59.8	474	-	5	전	301.0		59.8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30	-	1	도	1,820.0		671.3	730	-	1	도	1,820.0		671.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35	-	0	도	16,193.0		750.9	735	-	0	도	16,193.0		750.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35	-	2	도	269.0		167.9	735	-	2	도	269.0		167.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79	-	6	답	265.0		19.4	779	-	6	답	265.0		19.4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79	-	7	답	465.0		20.7	779	-	7	답	465.0		20.7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88	-	0	제	3,424.0		11.6	788	-	0	제	3,424.0		11.6		국(국토해양부)					관로	엄다천제방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89	-	0	천	21,108.0		216.7	789	-	0	천	21,108.0		216.7		국(국토해양부)					관로	엄다천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90	-	0	제	3,986.0		7.2	790	-	0	제	3,986.0		7.2		국(국토해양부)					관로	엄다천제방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92	-	0	도	4,511.0		95.5	792	-	0	도	4,511.0		95.5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점용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98	-	0	구	3,042.0		127.7	798	-	0	구	3,042.0		127.7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점용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799	-	0	도	1,076.0		228.6	799	-	0	도	1,076.0		228.6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점용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802	-	0	구	2,137.0		68.9	802	-	0	구	2,137.0		68.9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점용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819	-	14	도	86.8		15.3	819	-	14	도	86.8		15.3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819	-	15	도	267.6		36.5	819	-	15	도	267.6		36.5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833	-	2	구	2,937.8		13.9	833	-	2	구	2,937.8		13.9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점용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45	-	6	임	371.0		77.6	산 45	-	6	임	371.0		77.6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구역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46	-	4	도	16,760.0		67.0	산 46	-	4	도	16,760.0		67.0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47	-	16	임	2,861.0		151.9	산 47	-	16	임	2,861.0		151.9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48	-	4	임	2,627.0		276.8	산 48	-	4	임	2,627.0		276.8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51	-	8	임	1,970.0		275.4	산 51	-	8	임	1,970.0		275.4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54	-	1	도	2,069.0		60.9	산 54	-	1	도	2,069.0		60.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55	-	3	도	705.0		41.0	산 55	-	3	도	705.0		41.0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55	-	4	도	994.0		72.1	산 55	-	4	도	994.0		72.1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56	-	2	도	1,245.0		47.8	산 56	-	2	도	1,245.0		47.8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신계리	산 57	-	3	도	431.0		6.5	산 57	-	3	도	431.0		6.5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514	-	2	도	59.0		15.0	514	-	2	도	59.0		15.0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515	-	2	도	99.0		24.2	515	-	2	도	99.0		24.2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515	-	3	도	165.0		8.4	515	-	3	도	165.0		8.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516	-	3	도	272.0		35.9	516	-	3	도	272.0		35.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517	-	4	전	642.0		86.1	517	-	4	전	642.0		86.1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518	-	1	전	95.0		8.7	518	-	1	전	95.0		8.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519	-	2	전	95.0		3.3	519	-	2	전	95.0		3.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863	-	6	도	168.0		4.6	863	-	6	도	168.0		4.6		국(함평군)					관로	점용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41	-	2	도	404.0		6.4	941	-	2	도	404.0		6.4		국(함평군)					관로	점용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48	-	2	도	26.0		1.7	948	-	2	도	26.0		1.7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49	-	2	도	53.0		22.9	949	-	2	도	53.0		22.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49	-	3	도	7.0		8.7	949	-	3	도	7.0		8.7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49	-	4	도	604.0		14.8	949	-	4	도	604.0		14.8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59	-	2	도	76.0		11.9	959	-	2	도	76.0		11.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73	-	2	도	46.0		8.5	973	-	2	도	46.0		8.5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73	-	3	도	420.0		42.1	973	-	3	도	420.0		42.1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74	-	2	도	139.0		25.0	974	-	2	도	139.0		25.0		강호남	함평군엄다면화양리338-1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74	-	3	도	669.0		97.0	974	-	3	도	669.0		97.0		허재범	서울영등포구도림동156-8	허재원 영등포구청	서울서대문구홍은동277-96.	가등기압류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75	-	3	도	175.0		3.0	975	-	3	도	175.0		3.0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80	-	2	도	53.0		9.0	980	-	2	도	53.0		9.0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80	-	4	답	434.0		39.9	980	-	4	답	434.0		39.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80	-	5	도	99.0		2.2	980	-	5	도	99.0		2.2		국(함평군)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82	-	1	전	573.0		62.8	982	-	1	전	573.0		62.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83	-	1	전	335.0		47.6	983	-	1	전	335.0		47.6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985	-	1	전	159.0		5.4	985	-	1	전	159.0		5.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003	-	0	도	1,980.0		209.7	1003	-	0	도	1,980.0		209.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004	-	6	도	5,236.0		685.2	1004	-	6	도	5,236.0		685.2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4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004	-	17	도	297.0		65.5	1004	-	17	도	297.0		65.5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004	-	18	도	1,090.0		414.9	1004	-	18	도	1,090.0		414.9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4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223	-	0	구	1,507.3		18.5	1223	-	0	구	1,507.3		18.5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1229	-	0	도	938.5		150.8	1229	-	0	도	938.5		150.8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보호구역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산 32	-	1	도	708.0		60.8	산 32	-	1	도	708.0		60.8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엄다면 화양리	산 39	-	1	도	670.0		64.4	산 39	-	1	도	670.0		64.4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95	-	1	도	3,331.0		463.1	295	-	1	도	3,331.0		463.1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296	-	0	도	3.0		1.3	296	-	0	도	3.0		1.3		국(함평군)					관로	점용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48	-	1	도	205.0		111.8	348	-	1	도	205.0		111.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63	-	1	도	17.0		3.7	363	-	1	도	17.0		3.7		국(미등기)	토지대장 : 함평리169 모기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92	-	2	도	32.0		5.0	392	-	2	도	32.0		5.0		국(미등기)	토지대장 : 내교리392-1 천원학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93	-	0	도	853.0		60.5	393	-	0	도	853.0		60.5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396	-	0	도	109.0		13.1	396	-	0	도	109.0		13.1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88	-	0	도	1,050.0		118.0	488	-	0	도	1,050.0		118.0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491	-	1	도	847.0		77.3	491	-	1	도	847.0		77.3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40	-	2	도	393.0		35.6	540	-	2	도	393.0		35.6		조희자	함평군함평읍내교리240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40	-	4	도	192.0		66.5	540	-	4	도	192.0		66.5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40	-	6	도	319.0		18.3	540	-	6	도	319.0		18.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41	-	2	도	198.0		42.0	541	-	2	도	198.0		42.0		손영환	함평군함평읍수호리132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42	-	2	도	119.0		11.4	542	-	2	도	119.0		11.4		정연석외3인	함평군함평읍내교리494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47	-	1	도	56.0		6.6	547	-	1	도	56.0		6.6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47	-	5	도	220.0		4.1	547	-	5	도	220.0		4.1		국(전라남도)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51	-	7	도	3,109.0		218.8	551	-	7	도	3,109.0		218.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51	-	8	도	126.0		8.8	551	-	8	도	126.0		8.8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52	-	8	도	129.0		8.6	552	-	8	도	129.0		8.6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53	-	1	도	248.0		48.2	553	-	1	도	248.0		48.2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59	-	3	도	1,367.0		203.5	559	-	3	도	1,367.0		203.5		국(전라남도)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59	-	4	도	185.0		7.5	559	-	4	도	185.0		7.5		국(전라남도)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59	-	5	도	2,510.0		66.9	559	-	5	도	2,510.0		66.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561	-	3	대	476.0		38.5	561	-	3	대	476.0		38.5		국(전라남도)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611	-	4	도	387.0		62.4	611	-	4	도	387.0		62.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614	-	10	도	76.0		3.4	614	-	10	도	76.0		3.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04	-	4	도	5,036.0		7.3	804	-	4	도	5,036.0		7.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04	-	12	도	9,769.0		28.9	804	-	12	도	9,769.0		28.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08	-	0	도	620.0		35.7	808	-	0	도	620.0		35.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13	-	4	구	3,054.0		19.7	813	-	4	구	3,054.0		19.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14	-	2	도	6,406.0		42.6	814	-	2	도	6,406.0		42.6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14	-	3	도	341.0		1.8	814	-	3	도	341.0		1.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24	-	0	구	2,886.0		21.1	824	-	0	구	2,886.0		21.1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0	-	8	도	129.0		59.0	120	-	8	도	129.0		59.0		노춘행외1인	함평군함평읍수호리122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1	-	2	도	53.0		29.1	121	-	2	도	53.0		29.1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2	-	3	도	157.0		53.7	122	-	3	도	157.0		53.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3	-	1	도	24.0		9.6	123	-	1	도	24.0		9.6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4	-	2	도	30.0		23.6	124	-	2	도	30.0		23.6		김영창	함평군함평읍수호리275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7	-	5	도	66.0		41.5	127	-	5	도	66.0		41.5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8	-	2	도	542.0		1.3	128	-	2	도	542.0		1.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8	-	4	도	56.0		31.1	128	-	4	도	56.0		31.1		국(산림청)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30	-	8	도	66.0		35.9	130	-	8	도	66.0		35.9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30	-	9	도	50.0		26.8	130	-	9	도	50.0		26.8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30	-	11	도	995.0		112.3	130	-	11	도	995.0		112.3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30	-	13	도	100.0		3.9	130	-	13	도	100.0		3.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49	-	2	답	152.0		30.0	149	-	2	답	152.0		30.0		김태평	함평군월야면월야리463-3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49	-	3	도	235.0		58.6	149	-	3	도	235.0		58.6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49	-	4	도	271.0		10.9	149	-	4	도	271.0		10.9		국(함평군)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49	-	5	도	420.0		43.4	149	-	5	도	420.0		43.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50	-	2	도	7.0		1.6	150	-	2	도	7.0		1.6		국(미등기)	토지대장 : 내교리150-2 신덕심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13	-	2	도	13.0		4.7	413	-	2	도	13.0		4.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13	-	3	도	83.0		13.1	413	-	3	도	83.0		13.1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27	-	2	도	116.0		4.2	427	-	2	도	116.0		4.2		국(전라남도)					관로	국도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27	-	5	도	466.0		47.5	427	-	5	도	466.0		47.5		국(함평군)					관로	국도2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29	-	2	도	59.0		29.0	429	-	2	도	59.0		29.0		임권재외3인	함평군함평읍기각리838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38	-	2	도	89.0		39.5	438	-	2	도	89.0		39.5		모인원	함평군함평읍수호리201				관로	군도1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50	-	3	도	131.0		2.7	450	-	3	도	131.0		2.7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451	-	5	도	13.0		3.6	451	-	5	도	13.0		3.6		황보칠성	함평군함평읍기각리864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55	-	1	도	174.0		4.7	655	-	1	도	174.0		4.7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59	-	3	도	28.0		4.8	659	-	3	도	28.0		4.8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60	-	2	도	112.0		4.3	660	-	2	도	112.0		4.3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62	-	1	대	79.0		21.6	662	-	1	대	79.0		21.6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62	-	3	도	10.0		5.2	662	-	3	도	10.0		5.2		국(함평군)					관로	군도14	진흥지역밖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63	-	0	대	56.0		16.2	663	-	0	대	56.0		16.2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64	-	0	대	59.0		9.6	664	-	0	대	59.0		9.6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81	-	2	도	344.0		76.6	681	-	2	도	344.0		76.6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683	-	4	도	262.0		11.9	683	-	4	도	262.0		11.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34	-	0	전	149.0		37.9	734	-	0	전	149.0		37.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35	-	1	도	601.0		152.1	735	-	1	도	601.0		152.1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36	-	3	도	160.0		65.1	736	-	3	도	160.0		65.1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37	-	1	도	212.0		66.9	737	-	1	도	212.0		66.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38	-	1	도	383.0		102.9	738	-	1	도	383.0		102.9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47	-	1	도	363.0		62.2	747	-	1	도	363.0		62.2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48	-	1	도	526.0		61.7	748	-	1	도	526.0		61.7		국(함평군)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751	-	0	전	703.0		121.0	751	-	0	전	703.0		121.0		국(기획재정부)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63	-	2	구	8,978.0		7.8	1063	-	2	구	8,978.0		7.8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69	-	0	도	4,265.0		164.7	1069	-	0	도	4,265.0		164.7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70	-	0	도	1,038.0		45.1	1070	-	0	도	1,038.0		45.1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77	-	0	구	8,378.0		18.4	1077	-	0	구	8,378.0		18.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78	-	0	도	4,245.0		340.9	1078	-	0	도	4,245.0		340.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80	-	9	도	8,740.0		633.4	1080	-	9	도	8,740.0		633.4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080	-	11	도	4,215.0		57.9	1080	-	11	도	4,215.0		57.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 1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01	-	0	구	3,108.0		9.3	1201	-	0	구	3,108.0		9.3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1207	-	0	구	950.1		16.6	1207	-	0	구	950.1		16.6		국(농림수산식품부)					관로	군도 14	보호구역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산 17	-	1	임	32.0		5.2	산 17	-	1	임	32.0		5.2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산 17	-	3	임	226.0		27.9	산 17	-	3	임	226.0		27.9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산 18	-	1	임	1,157.0		37.8	산 18	-	1	임	1,157.0		37.8		국(국토해양부)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수호리	산 18	-	2	임	965.0		84.8	산 18	-	2	임	965.0		84.8		국(국토해양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구 남대문로5가6-1	가압류	관로	국도 24	진흥지역밖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1	-	1	도	691.0		125.1	11	-	1	도	691.0		125.1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2	-	0	도	680.0		25.0	22	-	0	도	680.0		25.0		김재선	함평군함평읍함평리12	동대문세무서		압류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4	-	2	도	368.0		43.0	24	-	2	도	368.0		43.0		김재선	함평군함평읍함평리12	동대문세무서 동대문구청		압류 압류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24	-	4	도	25.0		11.6	24	-	4	도	25.0		11.6		김재선	함평군함평읍함평리12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2	-	1	도	49.0		11.7	32	-	1	도	49.0		11.7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4	-	0	전	397.0		90.9	34	-	0	전	397.0		90.9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69	-	1	도	122.0		242.7	69	-	1	도	122.0		242.7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02	-	2	대	79.0		21.5	102	-	2	대	79.0		21.5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03	-	1	도	96.0		19.9	103	-	1	도	96.0		19.9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46	-	6	도	307.0		5.3	146	-	6	도	307.0		5.3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0	-	3	도	666.0		2.5	150	-	3	도	666.0		2.5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	-	2	도	155.0		18.1	154	-	2	도	155.0		18.1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8	-	0	도	844.0		76.7	158	-	0	도	844.0		76.7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81	-	0	도	614.0		131.8	381	-	0	도	614.0		131.8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82	-	6	도	773.0		150.4	382	-	6	도	773.0		150.4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86	-	1	도	553.0		151.1	386	-	1	도	553.0		151.1		국(함평군)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86	-	5	도	190.0		14.9	386	-	5	도	190.0		14.9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87	-	2	도	145.0		40.6	387	-	2	도	145.0		40.6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389	-	0	대	222.0		24.4	389	-	0	대	222.0		24.4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500	-	0	도	11,461.0		553.3	500	-	0	도	11,461.0		553.3		국(국토해양부)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501	-	0	구	8,879.0		3.1	501	-	0	구	8,879.0		3.1		국(국토해양부)					관로	군도1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산 4	-	0	임	17,137.0		98.1	산 4	-	0	임	17,137.0		98.1		국(전라남도교육감)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산 4	-	2	수	802.0		1.8	산 4	-	2	수	802.0		1.8		국(함평군)					관로	점용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산 4	-	5	도	200.0		39.2	산 4	-	5	도	200.0		39.2		국(함평군)					관로	점용	진흥지역밖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산 4	-	7	도	75.0		43.0	산 4	-	7	도	75.0		43.0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소재지	당초							변경								소유자		소유권이외의권리			시설구분	비고	농지법지역/지구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성명또는명칭	주소	성명또는명칭	주소	권리의종류			
					공부	편입	점용					공부	편입	점용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산 4	-	8	도	231.0		6.1	산 4	-	8	도	231.0		6.1		국(함평군)					관로	소도로	진흥지역밖
합 계						5,328.5	29,866.2						4,986.0	29,866.2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2-73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 조성사업(한화케미칼(주) 전기공급시설 설치사업) 실시계획승인 신청건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승인하고 그 결과를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사업의 명칭 : 전기공급시설(지중관로 154kv) 설치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
   가. 확장단지
   - 기정 : 한국수자원공사
   - 변경 : 한국수자원공사, 한화케미칼주식회사(154kv 송전선로매설, 중흥동 1687번지외 1필지 및 확장단지 6블럭내)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가. 사업의 목적
   용성변전소에서 한화케미칼(주)에 전기공급을 목적으로 함.
   나. 사업의 개요
   지중관로 1.8km 매설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여수시 중흥동 1687번지외 1필지 ,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6블럭내
   나. 면 적 : 3,960㎡
5.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승인일 ~ 2012. 05. 31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가)토지이용계획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편입면적(㎡)	신청외면적	소유권이외의 이해관계인		비고
	시	동						주소	성명	
1	여 수	중 흥	1687	도	44,758	1,332	43,426			
2			1691	천	26,669.3	51	26,618,3			
3	여수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6블럭내					2,577	-			
계			71,427.3			3,960	309,609			

나. 전력계획(변경)

① 기존단지(변경없음)

○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시설용량(kw, Gcal/h)	위 치	비 고
호 남 화 력	60만(kw)	여수시 월내동	
여 수 화 력	50만(kw)	여수시 중흥동	
용성변전소	24만(kw)	여수시 중흥동	
열병합발전소	154만(kw)	여수시 월하동144-16	A=34,276㎡ 금호석유화학(제1발전소)
열병합발전소	11.913만(kw), 256(Gcal/h)	여수시 화치동 1293	A=44,682㎡ 금호석유화학(제2발전소)

○ 송전선로(변경없음)

시설번호	연장(km)	면적(㎡)	송전용량(v)	기점	종점	비 고
1	0.861	7,905	154,000	월내동 산133	월내동 산115-1	와이엔텍
2	0.608	10,207	154,000	화치동 1293	화치동 산100	금호석유화학(주)
3	1.200	2,640	154,000	중흥동 765	중흥동 1686	한화케미칼(주)
4	0.467	6,250	154,000	월내동 산 115-1	월내동 7-6	휴켐스(주)

② 확장단지(변경)

○ 전력시설(변경없음)

구 분	면적(㎡)	위 치	비 고
변전소	7,475	중로2-1 좌측	
열병합발전소	82,645	확장단지 내 9-3블럭	전력시설:25만(kw) 열공급시설:276(Gcal/h)

○ 송전선로(변경)

시설번호	연장(km)	면적(㎡)	송전용량(v)	기점	종점	비 고
5	1.8	3,960	154,000	중흥동 1691	확장단지내 6블럭	<신설> 한화케미칼(주)

7.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변경없음)

◉충청지방우정청고시제2012-3호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 및 폐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충청지방우정청장

o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폐국) 내역

총괄국명	취급국명	수탁자	설 치 장 소	취급업무	해지(폐국)일	사 유
대전둔산	명학소	김귀순	서구 탄방동 54-13	필 수	2012.2.29. 업무종료후	수탁자희망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1호

우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지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내역

보 관 교 부 지 역 명	우편물 교부 장소	
	현 행	변 경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대동리, 대곡리 전지역	간동면 간척리 푸른주유소	폐지

2. 폐지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을 특수지 집배구로 전환 운영

※ 관보 제8585호(80.7.3. 강원체신청 공고 제16호)

3. 시행일자 : 2012. 3. 5.자

◉강원지방우정청고시제2012-2호

우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위탁) 및 우편업무취급세칙 제294조(집배구의 신설)의 규정에 의거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강원지방우정청장

1.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

특수지 계약 지역명	지정내역	
	현 행	변 경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대동리, 대곡리 전지역	간동(보관교부지)	간동(특수지집배구)

2. 지정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 집배구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지 계약 집배구로 전환 운영

3. 시행일자 : 2012. 3. 5.자

◉인천어항사무소고시제2012-1호

어촌·어항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거 국가어항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인천어항사무소장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당 초	변 경
선진포항	국가어항	인천광역시 옹 진 군 대 청 면 대 청 리	외곽시설	동방파제	642	642
				방 사 제	160	160
				외과호안	114	114
				내항호안	130	80
				투기장호안	-	58

항 명	항 종	위 치	시 설 명		물 량(m)	
					당 초	변 경
			계류시설	물 양 장	340	340
				선 류 장	136	-
				선 양 장	40	40
				카페리부두	135	135
			기타	준 설	157	157
				부 대 공	1식	1식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2-58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지식경제부고시 제2009-282호(2009.12.03)로 변경 고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개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왕산마리나)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결과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 결과 등을 반영한 위치 및 면적 변경

○ 사업착수시기 조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의 변경.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칭 (변경 없음)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

나. 위치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원

다. 면적 (변경)

○ 기정 : 24,410,494㎡

○ 변경 : 24,429,806㎡ (증 19,312㎡)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목적 : 변경 없음

3.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위치 ·면적 및 시행자

가. 위치 (변경)

○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 남북, 덕교, 무의동 일원

나. 면적 (변경)

○ 기정 : 24,410,494㎡

○ 변경 : 24,429,806㎡ (증 19,312㎡)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 변경 없음

○ 인천광역시장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가. 개발기간 (변경 없음)

○ 2003년 ~ 2020년

나. 재원조달방법

○ 사업비 : 10조2천억원(토지보상비 : 5조 3천억원, 기반시설비 : 4조 9천억원)

○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재원별	합계	연차별 투자계획(억원)					비고
		기투자 (~11년)	2012	2013	2014	2015이후	
국 비	50	-	16	22	12	-	
시 비	207	-	128	51	28	-	
지방채	-	-	-	-	-	-	
민간투자	101,743	63	14,256	38,027	23,660	25,737	
합 계	102,000	63	14,40	38,100	23,700	25,737	

다.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변경 없음)

○ 수용 및 사용에 의한 방식

5.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변경사유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요트경기장 건설을 위하여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고 진입도로 개설을 반영

나.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24,410,494	24,429,806	증)19,31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 계		4,639,463	4,639,463	-	19.0	
	단독 주택	일반단독	663,841	663,841	-	2.7	
		블록형단독	724,849	724,849	-	3.0	
	공동주택용지		2,863,164	2,863,164	-	11.7	
	근린생활시설용지		387,609	387,609	-	1.6	
상업 업무 시설 용지	소 계		1,587,970	1,587,970	-	6.5	
	상업시설용지		766,564	766,564	-	3.1	
	업무시설용지		525,521	525,521	-	2.2	
	주상복합용지		295,885	295,885	-	1.2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증감		
관 광 시 설 용 지			6,378,148	6,378,148	-	26.1	
공공시설용지	소 계		10,443,857	10,463,169	증)19,312	42.7	
	공원녹지	소 계	5,521,440	5,518,389	감)3,051	22.6	
		근린공원	4,028,842	4,028,842	-	16.5	
		어린이공원	32,109	32,109	-	0.1	
		경관녹지	1,460,489	1,457,438	감)3,051	6.0	
	공공청사		81,309	81,309	-	0.3	
	도서관		36,327	36,327	-	0.1	
	사회복지시설		29,583	29,583	-	0.1	
	문화시설		130,230	130,230	-	0.5	
	교육연구시설		64,206	64,206	-	0.3	테스코 글로벌리더쉽 아카데미
	종합의료시설		52,046	52,046	-	0.2	
	체육시설용지		79,292	98,604	증)19,312	0.4	요트경기장 (왕산마리나)
	광장		40,399	40,399	-	0.2	
	학교		594,409	594,409	-	2.4	
	종교시설		33,009	33,009	-	0.1	
	폐기물처리시설		45,643	45,643	-	0.2	
	하수종말처리장		84,583	84,583	-	0.3	
	공급처리시설		117,751	117,751	-	0.5	전기공급, 열공급
	수도용지		58,000	58,000	-	0.2	배수지, 가압장
	주차장		187,863	187,863	-	0.8	
	도로		3,287,767	3,290,818	증) 3,051	13.5	
유보지			1,361,056	1,361,056	-	5.7	

다. 주요기반시설계획

1) 도로 등 교통시설계획

○ 주차장 : 변경 없음

○ 가로망 102개 노선 (변경)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101	137,737	3,219,172	61	71,037	1,420,740	23	41,406	1,095,724	18	25,294	702,708
	변경	102	138,037	3,222,223	62	71,337	1,423,791	23	41,406	1,095,724	18	25,294	702,708
광로	기정	1	1,833	91,650	-	-	-	1	1,833	91,650	-	-	-
	변경	1	1,833	91,650	-	-	-	1	1,833	91,650	-	-	-
대로	기정	15	43,907	1,428,720	-	-	-	4	27,203	816,090	11	16,704	417,600
	변경	15	43,907	1,428,720	-	-	-	4	27,203	816,090	11	16,704	417,600
중로	기정	82	85,242	1,631,760	61	71,037	1,420,740	16	12,116	185,952	5	2,089	25,068
	변경	82	85,242	1,631,760	61	71,037	1,420,740	16	12,116	185,952	5	2,089	25,068
소로	기정	2	254	2,032	-	-	-	2	254	2,032	-	-	-
	변경	3	554	5,083	1	300	3,051	2	254	2,032	-	-	-

※ 가각전제 등 68,595㎡

2)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3) 공원 : 변경 없음

4) 체육시설 (변경)

구 분	개소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체육시설	1개소	1개소	79,292	98,604	요트경기장(왕산마리나)

5) 배수지 및 오수배제계획 : 변경 없음

6) 인구 수용계획 및 주거시설 조성계획 등 : 변경 없음

7)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없음

8)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없음

6.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9항에 의한 관계도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개발과(032-453-7603)에서 열람 가능.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기술표준원고시제2012-90호

한국산업표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사유와 주요 폐지내용을 산업표준화법 제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기술표준원장

한국산업표준 폐지 예고

1. 표준번호 및 표준명

구 분	표준번호	표 준 명	비 고
폐지	KSDISOTR17270	마이크로빔 분석 - 분석전자현미경 - 전자 에너지 손실 분광분석기의 실험변수 결정 검사방법	표준안
폐지	KSD6762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관의 도체	표준안

2. 폐지 사유

○ 참고표준의 폐지로 사실상 사장된 표준임

3. 주요 폐지 내용

○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관의 도체에 대한 규정

○ 마이크로빔 분석에서 전자에너지 손실 분광기의 실험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

4. 의견 제출

○ 이 폐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관련기관은 2012년 4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자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주력산업표준과 육근성 연구관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전화: 02-509-7274~7277, FAX: 02-509-7303, E-MAIL: yooksung@k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고

◉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90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재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는 당해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만 참여할 수 있으며, 외부인사는 당해 대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가 가능한 바, 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 학내 구성원의 참여 범위를 확대(학내 인사는 대학 여건에 따라 자율 구성)하고,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 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대학의 구성원과 대학외의 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외부 위원을 4분의 1 이상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 02-2100-6805, FAX 02-2100-6908

4. 기 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에 게재(홈페이지-알림마당-공지사항)되어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국립대학제도과(☏ 02-2100-6805, FAX 02-2100-6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0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97호

2. 단체명칭 : 동방해오름교류재단

3. 대표자 : 강승규

4. 소재지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1209호(여의도동, 진미파라곤오피스텔)

5. 주된 사업 : 국제문화 환경개선과 구제구호 및 차세대 리더 육성

6. 등록연월일 : 2012.2.21(최초 2010. 2. 17.)

◉외교통상부공고제2012-32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외교통상부장관

1. 등록번호 : 외교통상부 제113호

2. 단체명칭 : 국제날개달기운동본부

3. 대표자 : 최영준

4. 소재지 :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118길 29, 103동 1709호(상계동, 불암현대아파트)

5. 주된 사업 : 세계 빈곤국 아동들에 대한 보건, 교육, 환경 후원사업 및 아동복지관련 단체와의 협력 사업

6. 등록연월일 : 2012.2.21(최초 2010. 12. 27.)

◉법무부공고제2012-42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법 무 부 장 관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입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2. 2. 10. 공포, 2012. 8. 11. 시행 예정)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목등록업무와 산림사업의 담당기관을 일원화 (안 제5조)

입목등록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시장(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을 포함) 또는 군수'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으로 변경

나.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안 제7조, 제8조)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등 구체적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규정들을 삭제하고 대법원규칙에 위임

3. 제출의견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전화 2110-3164, 팩스 503-703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수정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공고제2012-50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은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정하고 있고 그 조문수도 많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법제처 주관)에 의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통합하려는 것임(조문 내용 변경 없음)

2. 주요내용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향토예비군 복제령에 관한 사항을 통합·신설함(안 제19조내지 제22조 신설)

나. 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대원 복제령이 폐지됨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국방부공고제2012-51호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국 방 부 장 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및 향토예비군 부대기령은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정하고 있고 그 조문수도 많지 않으므로,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법제처 주관)에 의거,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에 통합하려는 것임(조문 내용 변경 없음)

2. 주요내용

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규칙을 장별로 구분하고 예비군 특별감사 및 부대기에 관한 사항을 통합·신설함(안 제24조내지 제38조 신설)

나. 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함과 동시에 향토예비군 특별감사규칙, 향토예비군 부대기령이 폐지됨을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동원기획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 02-748-5217, Fax : 02-748-5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행정안전부공고제2012-57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단체가 우리부에 변경등록을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등록번호	단체 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최 초 등록일	주 된 사 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구분
212	(사)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서울시 마포구 월 드 컵 북 로 110(성산동)	김성은	'09.2.25	·(예비)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교육사업, 네트워킹사업 및 지원사업	02-3142-0238	민 간 협력과	주무부처 변경등록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0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등록체육시설의 사업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취소 등의 현황은 승인 등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 또는 변경승인 및 취소 현황을 매분기말로 각각 보고 하고 있는 것을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해 1월까지 년 1회 일괄보고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간소화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법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취소 및 승인거부 현황의 보고를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하도록 함.(제28조제1항제2호)

나.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 및 등록취소 현황의 보고를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해 1월말까지 하도록 함.(제28조제1항제2호)

3. 의견제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3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41호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고시를 통해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를 지정하였으나, 스키장의 경우 회원권의 확인·발급의 실효성이 없어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고시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회원제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 중에서 스키장업 회원증 확인자를 삭제함.

○ 회원제골프장업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 스키장업 : 사단법인 한국스키장사업협회장(삭제)

3. 의견제출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2년 3월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체육진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 02-3704-9855, 팩스 02-3704-984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0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우편번호 : 110-360)

◉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54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가 국민불편법령 개선과제(8차)로 선정하여 법 규정의 취지와 다른 의미로 오해될 수 있는 규정의 정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의미가 불분명한 문구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안 제14조제1항)

1) 현행 규정은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을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의 사이에 투자해야 된다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문구 정비 필요

2)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이행기간을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그 다음 날까지”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로 변경

3)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후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오해의 소지 제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녹색미래전략과장, 전화: 02-500-2437, FAX: 02-503-7214, E-mail: saram111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지식경제부공고제2012-75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지식경제부장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로 인해 일부 제조업, 서비스업의 피해가 우려되나, 그간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엄격한 지정기준과 복잡한 지정절차로 실효적인 기업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정기준 완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률이 '12.1.17일 공포됨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12.7.18)을 위한 세부요건, 운영절차 등 하위법령인 시행령의 정비를 추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무역조정지원기업 신청 기업에게만 인정되던 상담지원을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6개월 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대비 5%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에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의 지원요건상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신설(안 제4조의2)하고, 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와 필요시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4조의3)

○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업에게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피해기준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안 제5조)

○ 무역조정지원대책을 수립하는 무역조정지원위원회의 소속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 그 구성위원을 차관급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개정법률을 반영하여 시위원회 구성원을 변경하고, 실무위원회 조항을 삭제(안 제12조, 제13조)

○ 무역조정지원제도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무역조정지원센터(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신설되는 경쟁력확보 상담지원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조항 신설(안 제24조)

3. 의견제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 전화 : 02-2110-5316, 전송 : 02-502-1754
- 이메일 : christin@mke.go.kr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법령정보 → 법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12-86호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개념과 기능 재정립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그 취지와 내용 등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0517호, 2011. 3.30. 공포)」됨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체결이 어려운 장애인의 대리 계약체결 범위, 복지시설 이용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 산출 및 부과기준 등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용계약체결 대행 범위(안 제36조의2 신설)

지적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본인 스스로 장애인거주시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한하여 계약체결을 대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

나. 거주시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산정 및 부과방법 규정(안 제43조제1항 개정 및 제2항 신설)

1) 시설 이용자 본인부담금은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이 매년 시설운영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장관 고시로 산정

2) 시설 이용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과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되, 자산과 소득 산정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준용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참조: 장애인권익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전화 2023-8640, 팩스 2023-86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71호

「악취방지법」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개정(법률 제11259호, 2012.2.1 공포・시행)시행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1조의2제2항,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7조 개정)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나.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규정(안 제8조의2 신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술 지원의 대상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악취저감기술 지원 대상, 정보 보호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

다. 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술 지원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개정).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02-2110-6789,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2-72호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환 경 부 장 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악취방지법」 개정(법률 제11259호, 2012.2.1 공포·시행)으로 인해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시장 추가(안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11조의2제1항·제2항 개정)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여 국민의 혼란을 없애고자 함.

나. 악취저감기술 지원 신청절차 등에 대한 규정(안 제19조2 신설)

1) 악취저감기술 지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 지원의 절차, 신청 방식, 결과 통보 등을 정함.

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수수료 인하(안 제20조 개정)

1)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대민 관계 행정수수료가 적정 수준인지 점검, 인하여부를 검토할 것을 지시('11.11. 8. 대통령)함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운영신고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납부시 1만원에서 9천원으로 인하함.

라. 악취저감기술 지원 위탁업무 보고사항을 정함(안 제21조 개정).

3. 의견제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대기관리과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기관리과[전화:02-2110-6789, FAX : 02-507-7028, 전자우편 : bungwoon@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의 전문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청공고제2012-102호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571호, 2012.2.5.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화기구의 명칭 및 설치장소별 적응성 변경(안 제3조·제4조·제5조·별표1)

1) 법률(령 별표 1)과 일치하도록 소화기구의 명칭 변경

종 전	개정안	비 고
수동식소화기	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기	캐비넷형 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 자동식 소화용구	소공간 자동소화장치	가스 식 · 분말식 · 고체에어로졸식
자동확산 소화용구	자동확산 소화장치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 소화용구	

2) 현행 소화기구의 설치방소별 적응성을 소화기구로 구분하던 것을 소화약제로 구분하여 변경(안 별표 1)

소화약제 구분 / 설치장소별 적응대상		가스			분말		액체				기타			
		이산화탄소소화약제	할로겐화물소화약제	청정소화약제	인산염류소화약제	중탄산염류소화약제	산알칼리소화약제	강화액소화약제	포소화약제	물·침윤소화약제	고체에어로졸화합물	마른모래	팽창질석·팽창진주암	그밖의 것
건축물, 기타 공작물		-	○	○	○	-	○	○	○	○	○	-	-	-
전기실 및 전산실		○	○	○	○	○	-	-	-	-	○	-	-	-
통신기기실		○	○	○	-	-	-	-	-	-	○	-	-	-
특수가연물	가연성고체류 또는 합성수지류	○	○	○	○	○	○	○	○	○	○	○	○	-
	가연성액체류	○	○	○	○	○	○	○	○	○	○	○	○	-
	그밖의 것	-	-	-	○	-	○	○	○	○	-	-	-	-
가연성가스		○	○	○	○	○	○	○	○	○	○	-	-	-

나. 용어의 정의 현행 부합화 및 조문 각호이동 반영(안 제3조제1호~제6호)

1)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2호의 가목과 나목으로 이동, 제3조제3호 및 제6호를 각각 제3호의 가목과 라목으로 이동,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이동

2)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범주에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기”를 포함하여 재분류 하고 해당 제3조제9호 삭제(안 제3조제3호의 다목 신설)

3)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능력단위”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3호의 나목 및 같은 조 제6호)

다.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설치장소에 오피스텔의 주방을 포함하여 설치기준 개정하고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 및 “소공간자동소화장치”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4조제7호·제10호·제11호)

라.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분류체계를 령 별표 2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안 제1조~제6조, 별표1~별표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110-755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1405호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58(팩스번호 : 02-2100-5339)

○ 이 메 일 : ohsy119@korea.kr

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정책토론→전자공청회→입법/행정예고란 또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 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지리정보원공고제2012-15호

지도박물관 유물 구입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유물구입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장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27일

국토지리정보원장

1. 구입대상유물 : 국내·외 고지도 및 측량관련 자료
   - 동해·독도·간도 등이 우리영토로 표기된 고지도(1945년 이전)
   - 1800년대 우리나라 측량관련 자료
2. 신청자격 : 문화재매매업자
   ※ 도굴 및 도난품 등 불법유물은 매도신청 불가
3. 구입절차 : 서류심사 후, 선정된 유물에 한하여 매도신청을 접수하며,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유물구입
   ○ 서류심사(구입예정유물 선정)
   - 신청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도착분에 한함)
   - 신청기간 : 2012년 2월 27일부터 4월 6일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제외
   - 신청장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92(원천동 111)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031-210-2786)
   -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유물칼라사진(3×5〃) 유물 1건당 각 4매(동일한 사진)
   ※ 양식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 유물사진은 인화(印畵) 사진 사용
   ○ 서류심사 결과통지
   - 구입 예정유물 선정결과 및 접수기간 신청자 개별 통보
   ○ 유물접수(매도신청서류 및 실물접수)
   - 접수대상 : 서류심사를 통과한 유물
   - 접수기간 : 2012년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 유물접수 시 제출서류
   ① 유물매도신청서 1부(※서류심사 선정유물에 한해 재작성)
   ② 매도신청유물명세서 1부
   ③ 매도신청유물(실물)
   ④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통
   ⑤ 대리접수의 경우 소장자 본인이 작성한 자필 위임장 1통 및 대리접수자의 신분증
   ⑥ 국가지정 문화재의 경우 지정서 사본 1부
   ⑦ 매도신청인의 도장

○ 유물감정평가 및 매매협의

- 국토지리정보원 지도박물관 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의거 매매협의

○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 제외유물 반환

4. 소유권 이전

구입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매도신청자의 동의 하에 유물매매약정을 체결한 뒤 대금이 지급되며, 이와 동시에 유물에 대한 소유권은 국토지리정보원(지도박물관)으로 이전됩니다.

5. 유물 매도 신청시 주의사항

○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거나 소장자와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한 유물, 도굴품 및 장물 등 불법 취득 유물은 매도할 수 없습니다.

○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서류심사 후 실물 평가대상유물로 선정되더라도 유물접수 시 구입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되는 유물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매매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포장비, 운송비, 약정 체결시 수입인지세)은 매도신청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구입대상으로 선정된 유물에 대한 매매약정 체결시 구입가격은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심의 평가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6. 기타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http://www.ngii.go.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지도박물관 학예연구실(031-210-27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2-33호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일반국도 14호선

2. 구 간

- 시 점 : 창원시 의창구 동읍 덕산리(국도14호선)
- 종 점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국도14호선)
- 연 장 : 8.14km

3. 통행의 방법 : 누구든지 자동차(2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한다)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함.

4. 지정사유 :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

5. 당해구간을 연결하는 일반교통용 다른 도로 :

기존국도14호선이용 : 남산I/C ↔ 남산교차로 ↔ 기존국도14호선 ↔ 공설운동장교차로 ↔ 기존국도25호선 ↔ 진영교차로

6. 기 타

가. 이 자동차 전용도로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또는 허가없이 다른 도로, 통로 기타시설을 연결한 자는 도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나.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051-660-10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별첨 1:50,000)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3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03. 1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2-2007-20-0000403	301명양호	조 태 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전북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2-14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
3. 의견제출 일시 : 2012. 3. 19.(월)

4. 송달대상 및 내역

순번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처분예정	시설자주소
1	41-2003-20-0000089	310삼우호	(주)삼우환경 사장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2가
2	42-2007-20-0000338	302광진호	오 경 진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3	42-2010-20-0000375	DSQE5	미래해운(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4	73-2010-20-0000087	DS341	미래해운(주)	정기검사 불응	운용정지1월	부산시 동구 초량동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규정에 따라 처분될 예정이므로,

나. 의견제출 기한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74,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법 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9, 100(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신전화물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대진운수 주식회사)

소재지 부산 사상구 엄궁동 392

대표이사 정경남

검 사 서정화(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9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2. 7. 8.자 2002고약5106

[10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1. 6. 7.자 2001고약3793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99]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정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1. 12. 07. 18:15경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에 있는 초남교 앞 2번 국도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3축에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9바4232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0]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인규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1. 1. 30. 16:28경 경인고속도로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4축에 11.7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81아2308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1, 102(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주식회사 삼일

소재지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287

대표이사 한정희

검 사 서정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코리아 담당 변호사 김태성, 김경율, 박규철, 박태우

재심대상 약식명령 [10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3. 2. 13.자 2003고약101

[10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4. 30.자 2007고약1506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01]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태경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26. 15:56경 남해고속도로

113km 지점 산인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총중량 44.8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충남98사3164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신동일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6. 12. 2. 08:04경 한국도로공사 삼례영업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2축에 10.29톤, 총중량 44.04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충남98사3291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또는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각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 또는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각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병합) 도로법위반

피 고 인 유한회사 배성기업

소재지 경남 산청군 산청읍 송경리 123-1

송달장소 양산시 동면 석산리 1420-7

대표이사 김영화

검 사 서정화(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10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4. 8.자 96고약2016

[10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5. 9.자 96고약2444

[10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7. 13.자 96고약4143

[10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3. 22.자 96고약5076

[10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9. 4.자 98고약6615

[10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9. 2.자 98고약6201

[10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9. 4.자 98고약6731

[1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7. 7.자 98고약4799

[1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5. 7.자 98고약2778

[1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8. 3. 31.자 98고약1746

[1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996. 11. 10.자 96고약7552

판 결 선 고 2012. 2. 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단103]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윤병훈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2. 6. 00:43경 한국도로공사 부곡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2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바2694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4]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손태익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1. 26. 16:20경 한국도로공사 익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4축에 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아6375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5]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조중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2. 28. 03:30경 마산시 합포구 진전면 국도 2호선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2축에 12.0톤, 제3축에 11.0톤, 총중량 47.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아6364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6]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장현주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4. 25. 06:29경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4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아6354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7]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종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6. 23. 16:20경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에 있는 국도 26호선 개정과적검문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5축에 11.3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9바6638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8]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정현호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4. 11:38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에 있는 지방도 1008호선 부곡검문소 앞 도로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중량 32.4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총중량 39.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 81아5252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09]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영득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5. 22. 03:20경 한국도로공사 곤양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4축에 11.2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9바6607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10]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심재익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4. 28. 14:43경 한국도로공사 곤양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2축에 11.1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9바6611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11]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김수용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12. 26. 08:27경 한국도로공사 마산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4축에 11.6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9바6653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12]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이진호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8. 1. 23. 15:55경 한국도로공사 서청주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제5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9바6642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012고단113]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최석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6. 7. 29. 22:21경 한국도로공사 북대구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곳임에도, 총중량 44.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경남9아6387호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83조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1999. 2. 8. 법률 제5894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병합) 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되어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철

지 방 자 치 단 체

◉경상북도고시제2012-59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 토지 등 세목(변경)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2010.5.4)로 지정 고시한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경상북도지사

1. 사업의 명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축물과 그 밖의 권리의 세목(별지와 같음)
   - 경상북도 고시 제2010-177호(관보 제17253호, 2010.5.10) 및 경상북도 고시 제2011-334호(관보 제17580호그2, 2011.8.26), 경상북도 고시 제2011-1074호(관보 제17653호, 2011.12.12) 고시 내용중 변경 부분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 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	풍천면 가곡리	498-1	498-1	답	답	208	208	208	권용태	서울 광진구 자양동 695 한양APT 6동 506호	안동권씨검교공파원당영광파총회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05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1/3
2	풍천면 가곡리	559-6	559-6	답	답	1947	1947	1947	이기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2-2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3	풍천면 가곡리	712-3	712-3	답	답	1174	1174	1174	최희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350-2				11/1008
4	풍천면 가곡리	717	717	답	답	93	93	93	최희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350-2				11/252
5	풍천면 가곡리	718	718	답	답	249	249	249	최희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350-2				11/252
6	풍천면 가곡리	733-4	733-4	대지	대지	542	542	542	최희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350-2				11/252
7	풍천면 가곡리	745	745	전	전	499	499	499	안성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40				1/3
									안병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84				1/3
									안기영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52				1/3
8	풍천면 가곡리	750	750	전	전	2180	2180	2180	최희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350-2				11/252
9	풍천면 가곡리	759	759	전	전	1468	1468	1468	최희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350-2				11/25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0	풍천면 가곡리	1009-6	1009-6	답	답	1927	1927	1927	최희걸	경기 김포시 양촌면 석모리 350-2				11/252
11	풍천면 가곡리	1017-2	1017-2	전	전	879	879	879	안성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40				1/3
									안병오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84				1/3
									안기영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52				1/3
12	풍천면 가곡리	1024	1024	전	전	694	694	694	안종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				1/5
									안영선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	손홍안씨충정공파청원 정공종중	경북 안동시 송현동 389-8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1/5
									안영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				1/5
13	풍천면 가곡리	1057	1057	전	전	149	149	149	안종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				1/5
									안영선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	손홍안씨충정공파청원 정공종중	경북 안동시 송현동 389-8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1/5
									안영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				1/5
									안태선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640				1/5
14	풍천면 가곡리	1061	1061	전	전	132	132	132	이기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2-2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풍천면 가곡리	1071	1071	답	답	2278	2278	2278	이기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2-2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6	풍천면 가곡리	1077-1	1077-1	답	답	5649	5649	5649	이기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2-2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7	풍천면 가곡리	산41-2	산41-2	임야	임야	269	269	269	권암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54				1/3(합유)
									권오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0				1/3(합유)
									권오창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3				1/3(합유)
18	풍천면 가곡리	산41-6	산41-6	임야	임야	153	153	153	권암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54				1/3(합유)
									권오섭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410				1/3(합유)
									권오창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3				1/3(합유)
19	풍천면 가곡리	산46-2	산46-2	임야	임야	1397	7187	1397	이기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2-2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 구담리 454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20	풍천면 가곡리	산46-6	산46-6	임야	임야	239	239	239	이기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2-2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21	풍천면 갈전리	58	58	임야	임야	1580	1580	1580	권유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				1/2
									권상삼	경북 안동시 풍산읍 오미동				1/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22	풍천면 갈전리	77	77	전	전	2658	2658	2658	우원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월포리 74-2				13664/2751840
									우선희	경북 구미시 봉곡동 5 구미봉곡 뜨란채 105-502				13664/2751840
									우명희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율리 633				13664/2751840
23	풍천면 갈전리	319	319	답	답	3780	3780	3780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24	풍천면 갈전리	356-18	356-21	답	답	6047	7293	6047	안종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1				분할
25	풍천면 갈전리	356-18	356-22	답	답	1218	7293	1218	안종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6-1				분할
26	풍천면 갈전리	434-1	434-1	임야	임야	1435	1435	1435	안영창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9
									안섭					1/9
									안원환					1/9
									안기영					1/9
									안목환					1/9
									안기영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재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영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9
									안기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27	풍천면 갈전리	434-4	434-4	임야	임야	46	46	46	안영창					1/9
									안섭					1/9
									안원환					1/9
									안기영					1/9
									안목환					1/9
									안기영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재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영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9
									안기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28	풍천면 갈전리	434-9	434-9	도로	도로	7	7	7	안영창					1/9
									안섭					1/9
									안원환					1/9
									안기영					1/9
									안목환					1/9
									안기영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재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영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9
									안기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29	풍천면 갈전리	434-10	434-10	도로	도로	119	119	119	안영창					1/9
									안섭					1/9
									안원환					1/9
									안기영					1/9
									안목환					1/9
									안기영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재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안영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9
									안기학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1/9
30	풍천면 갈전리	578-1	578-1	답	답	3997.3	3997.3	3997.3	조제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44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 안교리 123	근저당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31	풍천면 갈전리	578-2	578-2	답	답	4704.7	4704.7	4704.7	조제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44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 안교리 123	근저당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32	풍천면 갈전리	616-1	616-6	답	답	2306	2306	2306	장세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55				분할
33	풍천면 갈전리	789-1	789-1	전	전	2087	2087	2087	조장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 태양아파트 다동 908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34	풍천면 갈전리	789-2	789-2	답	답	2070	2070	2070	조장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 태양아파트 다동 908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35	풍천면 갈전리	806	806	전	전	3629	3629	3629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36	풍천면 갈전리	807	807	전	전	2770	2770	2770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37	풍천면 갈전리	814	814	대지	대지	576	576	576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38	풍천면 갈전리	814-2	814-2	전	전	2274	2274	2274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39	풍천면 갈전리	872-2	872-2	임야	임야	13124	13124	13124	권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
									권중구					1/3
									권태종					1/3
40	풍천면 갈전리	969-1	969-1	대지	대지	783	783	783	최호열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성원상떼빌아파트 102동 1503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41	풍천면 갈전리	969-2	969-2	전	전	228	228	228	최호열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성원상떼빌아파트 102동 1503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42	풍천면 갈전리	969-3	969-3	전	전	630	630	630	최호열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성원상떼빌아파트 102동 1503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43	풍천면 갈전리	969-4	969-4	전	전	414	414	414	최호열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성원상떼빌아파트 102동 1503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44	풍천면 갈전리	969-5	969-5	전	전	490	490	490	최호열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성원상떼빌아파트 102동 1503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풍천면 갈전리	970-1	970-1	창고용지	창고용지	316	316	316	이승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4				임시특례 등록전환
46	풍천면 갈전리	970-2	970-2	목장용지	목장용지	452	452	452	이승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4				임시특례 등록전환
47	풍천면 갈전리	974-1	974-1	답	답	1831	1831	1831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48	풍천면 갈전리	994-1	994-1	답	답	3231	3231	3231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15/54
									김미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00 동수원3차 쌍용스윗닷홈 303-307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5/54
									김미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135 -4층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5/54
									김미숙	경기 광명시 하안동 13 고층주공아파트 901-1402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5/54
									김지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107 산호아파트 102-1012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8/54
									김도영	인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 104-601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8/54
									김문숙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9 주공아파트 201-1305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8/54
49	풍천면 갈전리	1006	1006	전	전	3434	3434	3434	이창준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0-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50	풍천면 갈전리	1016	1016	전	전	932	932	932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51	풍천면 갈전리	1031	1031	전	전	3455	3455	3455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65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65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65
52	풍천면 갈전리	1032-1	1032-1	전	전	164	164	164	김영자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7/13
									권두진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권지은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 타운 101-701				1/13
53	풍천면 갈전리	산32-1	산32-1	임야	임야	33235	33235	33235	권중명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48				1/2
54	풍천면 갈전리	산39-1	산39-1	임야	임야	363	363	363	김상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81				1/2
55	풍천면 갈전리	산45	산45	임야	임야	13530	17455	13530	조장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65-2 태양아파트 다동 908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56	풍천면 갈전리	산49-2	산49-2	임야	임야	1615	2978	1615	최호열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성원상떼빌아파트 102동 1503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57	풍천면 갈전리	산49-4	산49-4	임야	임야	1048	2039	1048	최호열	울산 동구 서부동 248-24 성원상떼빌아파트 102동 1503호				임시특례 등록전환
58	풍천면 갈전리	산59-3	산59-3	임야	임야	198	198	198	조제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44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59	풍천면 도양리	275-2	275-2	답	답	992.8	992.8	992.8	김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55-5				소유자 변경 1/6
60	풍천면 도양리	343-1	343-1	답	답	1345.1	1345.1	1345.1	권태철	대구 동구 신청5구 197-1	한국주택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3	가압류	1/6
61	풍천면 도양리	372-2	372-2	답	답	1625.2	1625.2	1625.2	김한수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5	김순늠	대전 중구 태평동 422 버드내아파트 118-802	가압류	관계인 고시누락
62	풍천면 도양리	390-1	390-1	전	전	30	30	30	권대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530				1/3
									권대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3
									권중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기산리				1/3
63	풍천면 도양리	391-3	391-3	전	전	2156	2156	2156	임재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5				임시특례 등록전환
64	풍천면 도양리	392-1	392-1	전	전	538	538	538	김순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5				임시특례 등록전환
65	풍천면 도양리	392-2	392-2	답	답	98	98	98	김순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5				임시특례 등록전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66	풍천면 도양리	392-3	392-3	전	전	846	846	846	김순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5				임시특례 등록전환
67	풍천면 도양리	484-3	484-3	임야	임야	2810	5451	2810	류수춘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1-1	김미화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1-55 미진주택 나동 401호	소유권 일부(120분의 17)가 처분	임시특례 등록전환
68	풍천면 도양리	484-8	484-8	과수원	과수원	1869	1869	1869	류수춘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1-1	김미화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1-55 미진주택 나동 401호	소유권 일부(120분의 17)가 처분	임시특례 등록전환
69	풍천면 도양리	484-9	484-9	답	답	516	516	516	류수춘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1-1	김미화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1-55 미진주택 나동 401호	소유권 일부(120분의 17)가 처분	임시특례 등록전환
70	풍천면 도양리	484-10	484-10	임야	임야	256	256	256	류수춘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1-1	김미화	인천 부평구 부개동 191-55 미진주택 나동 401호	소유권 일부(120분의 17)가 처분	임시특례 등록전환
71	풍천면 도양리	508-6	508-6	답	답	1433	1433	1433	유경상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185 지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강제 경매	관계인 고시누락 2/15
72	풍천면 도양리	516-2	516-2	답	답	2331	2331	2331	유진모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5-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73	풍천면 도양리	571-2	571-2	대지	대지	502	502	502	유경상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185 지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강제 경매	관계인 고시누락 2/15
74	풍천면 도양리	575-2	575-2	답	답	1803	1803	1803	이재성 경북 안동군 풍서면 갈전동 968				1/3
									이종식 경북 안동군 풍서면 갈전동 960				1/3
									이봉석 경북 안동군 풍서면 도양동 510				1/3
75	풍천면 도양리	595-1	595-1	전	전	317	317	317	이재성 경북 안동군 풍서면 갈전동 968				1/3
									이종식 경북 안동군 풍서면 갈전동 960				1/3
									이봉석 경북 안동군 풍서면 도양동 510				1/3
76	풍천면 도양리	595-4	595-4	전	전	14	14	14	이재성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8				1/3
									이종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0				1/3
									이봉석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0				1/3
77	풍천면 도양리	614-11	614-11	전	전	115	115	115	권종석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170-28				임시특례 등록전환
78	풍천면 도양리	614-12	614-12	전	전	206	206	206	권종석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170-28				임시특례 등록전환
79	풍천면 도양리	614-13	614-13	전	전	177	177	177	권종석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170-28				임시특례 등록전환
80	풍천면 도양리	645-5	645-5	전	전	3107	3107	3107	유진모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45-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81	풍천면 도양리	650-13	650-13	임야	임야	565	565	565	임동빈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2				1/2
82	풍천면 도양리	650-14	650-14	임야	임야	30	30	30	임동빈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2				1/2
83	풍천면 도양리	664-2	664-2	전	전	1325	1325	1325	권태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1	풍천단위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62-1	근저당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84	풍천면 도양리	696-2	696-2	전	전	2046	2046	2046	유경상	서울 노원구 상계동 389-185 지층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4	강제경매	관계인 고시누락 2/15
85	풍천면 도양리	산4-5	산4-5	임야	임야	1512	2479	1512	김순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5				임시특례 등록전환
86	풍천면 도양리	산4-6	산4-6	임야	임야	942	942	942	임재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5				임시특례 등록전환
87	풍천면 도양리	산14-2	산14-2	임야	임야	6583	6583	6583	김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55-5				소유자 변경 1/6
88	풍천면 도양리	산15-2	산15-2	임야	임야	1378	1378	1378	신태래					소유자 변경
89	풍천면 도양리	산16-1	산16-1	임야	임야	57145	57145	57145	김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55-5				소유자 변경 1/6
90	풍천면 도양리	산16-8	산16-8	임야	임야	12113	12113	12113	김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55-5				소유자 변경 1/6
91	풍천면 도양리	산16-9	산16-9	임야	임야	9485	9485	9485	김태연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55-5				소유자 변경 1/6
92	풍천면 도양리	산20-5	산20-5	임야	임야	38306	38807	38306	권종석	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 170-28				임시특례 등록전환
93	호명면 금능리	20-1	20-1	답	답	20144	20144	20144	이상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35	호명농업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89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94	호명면 금능리	20-2	20-2	임야	임야	97	97	97	이상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35	호명농업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89	근저당	면적정정
95	호명면 금능리	산75-4	산75-4	임야	임야	25548	25548	25548	이상계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455				1/6
									이경우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455				1/6
									이상선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455				1/6
									이상직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455				1/6
									이상철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455				1/6
96	호명면 금능리	산83-2	산83-2	임야	임야	14262	14262	14262	이풍돌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64				1/3
97	호명면 산합리	2	2	전	전	4265	4265	4265	김순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5	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용상동 1260-1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용상동 1260-1	지상권	관계인 고시누락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98	호명면 산합리	39	39	전	전	516	516	516	김순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5	안동용성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용상동 1260-1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99	호명면 산합리	58-2	58-2	전	전	1133	1133	1133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1/2
100	호명면 산합리	58-3	58-3	전	전	2209	2209	2209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1/2
101	호명면 산합리	91-4	91-4	임야	임야	605	605	605	김귀숙	대구 남구 대명동 2260-22				임시특례 등록전환
102	호명면 산합리	91-5	91-5	전	전	961	961	961	김귀숙	대구 남구 대명동 2260-22				임시특례 등록전환
103	호명면 산합리	91-6	91-6	임야	임야	496	496	496	김귀숙	대구 남구 대명동 2260-22				임시특례 등록전환
104	호명면 산합리	220-3	220-3	전	전	1124	1124	1124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05	호명면 산합리	220-4	220-4	답	답	173	173	173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106	호명면 산합리	300-1	300-1	대지	대지	446	446	446	김종진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0	예천농업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22-220	근저당	관계인 주소정정
107	호명면 산합리	334-5	334-5	답	답	3061	3061	3061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15/54
									김미순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700 동수원3차 쌍용스윗닷홈 303-307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5/54
									김미자	서울 강동구 천호동 167-135 -4층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5/54
									김미숙	경기 광명시 하안동 13 고층주공아파트 901-1402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5/54
									김지숙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상덕리 107 산호아파트 102-1012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8/54
									김도영	인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 104-601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8/54
									김문숙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9 주공아파트 201-1305	김근호	서울 강남구 개포동 187 주공아파트 504-1109	가처분	관계인 고시누락 8/54
108	호명면 산합리	396-1	396-1	전	전	859	859	859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09	호명면 산합리	412	412	임야	임야	614	614	614	전순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동 207				임시특례 등록전환 1/5
									임시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91-1	호명신용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52-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김범식	대구 북구 태전동 1066-23 태전대백맨션 103-40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전장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지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노인갑	인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 105-120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110	호명면 산합리	412-2	412-2	답	답	8817	8817	8817	전순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동 207				임시특례 등록전환 1/5
									임시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91-1	호명신용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52-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김범식	대구 북구 태전동 1066-23 태전대백맨션 103-40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전장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노인갑	인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 105-120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111	호명면 산합리	412-3	412-3	임야	임야	1813	1813	1813	전순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동 207				임시특례 등록전환 1/5
									임시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91-1	호명신용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52-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김범식	대구 북구 태전동 1066-23 태전대백맨션 103-40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전장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노인갑	인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 105-120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12	호명면 산합리	412-4	412-4	임야	임야	1791	1791	1791	전순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동 207				임시특례 등록전환 1/5
									임시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91-1	호명신용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52-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김범식	대구 북구 태전동 1066-23 태전대백맨션 103-40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전장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노인갑	인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 105-120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113	호명면 산합리	412-5	412-5	전	전	1091	1091	1091	전순이	경북 예천군 예천읍 왕신동 207				임시특례 등록전환 1/5
									임시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91-1	호명신용협동조합	경북 예천군 호명면 오천리 152-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김범식	대구 북구 태전동 1066-23 태전대백맨션 103-40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전장순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95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노인갑	인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 105-1201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4/5
114	호명면 산합리	501	501	답	답	1349	1349	1349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1길 47-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115	호명면 산합리	505	505	전	전	2205	2205	2205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1길 47-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116	호명면 산합리	505-1	505-1	임야	임야	439	439	439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72-1				임시특례 등록전환
117	호명면 산합리	505-2	505-2	답	답	1845	1845	1845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1길 47-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	임시특례 등록전환
118	호명면 산합리	505-3	505-3	임야	임야	172	172	172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72-1				임시특례 등록전환
119	호명면 산합리	507	507	전	전	2103	2103	2103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1길 47-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120	호명면 산합리	508	508	전	전	1898	1898	1898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1길 47-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121	호명면 산합리	553-1	553-1	전	전	23001	23001	23001	이주형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69				임시특례 등록전환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22	호명면 산합리	651	651	답	답	3214.6	3214.6	3214.6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1길 47-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123	호명면 산합리	761	761	답	답	2833	2833	2833	정중모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1길 47-1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풍산중앙길 127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124	호명면 산합리	798-2	798-2	임야	임야	6252	6252	6252	김상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81				5/7
125	호명면 산합리	798-14	798-14	임야	임야	420	420	420	김상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81				5/7
126	호명면 산합리	817-3	817-3	답	답	1966	1966	1966	황병현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택지개발1지구 161블록 17롯트				임시특례 등록전환
127	호명면 산합리	821-6	821-6	답	답	8525	8525	8525	신동황	경북 예천군 호명면 봉호로 3914-27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28	호명면 산합리	826-1	826-1	답	답	3084	3084	3084	신인섭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26	풍천신용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454	가압류	관계인 고시누락
											풍천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62-1	근저당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근저당	
129	호명면 산합리	877	877	대지	대지	503	503	503	박경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운골길 242-17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근저당	소유자 변경 3/9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지상권	
									김도희	경북 예천군 호명면 운골길 242-17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근저당	소유자 변경 2/9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지상권	
									김도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운골길 242-17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근저당	소유자 변경 2/9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지상권	
									김경미	경북 예천군 호명면 운골길 242-17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근저당	소유자 변경 2/9
											서안동농업협동조합	경북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123	지상권	
130	호명면 산합리	890-1	890-1	대지	대지	1041	1041	1041	김시흠	대구 북구 산격동 1201-6. 301호	대현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대현동 390-19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1/5
131	호명면 산합리	967	967	답	답	1244.9	1244.9	1244.9	김상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81				5/7
132	호명면 산합리	산54-2	산54-2	임야	임야	8584	9826	8584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133	호명면 산합리	산82-1	산82-1	임야	임야	4886	8132	4886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1/2
134	호명면 산합리	산82-2	산82-2	임야	임야	891	891	891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1/2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 소	권리의 종류및 내용	
135	호명면 산합리	산92	산92	임야	임야	7208	7141	7208	김정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임시특례 등록전환
136	호명면 산합리	산98	산98	임야	임야	2490	2490	2490	김시흠	대구 북구 산격동 1201-6. 301호	이종선	서울 중구 신당동 103-3	가압류	
											대현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대현동 390-19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대현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대현동 390-19	지상권	관계인 고시누락
137	호명면 산합리	산98-1	산98-1	임야	임야	4431	4431	4431	김시흠	대구 북구 산격동 1201-6. 301호	이종선	서울 중구 신당동 103-3	가압류	
											대현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대현동 390-19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대현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대현동 390-19	지상권	관계인 고시누락
138	호명면 산합리	산98-2	산98-2	임야	임야	1682	1682	1682	김시흠	대구 북구 산격동 1201-6. 301호	이종선	서울 중구 신당동 103-3	가압류	
											대현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대현동 390-19	근저당	관계인 고시누락
											대현새마을금고	대구 북구 대현동 390-19	지상권	관계인 고시누락
139	호명면 산합리	산108-2	산108-2	임야	임야	397	397	397	김현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 446	안동세무서		압류	관계인 고시누락

수용 또는 사용할 건축물·분묘 등의 세목(변경) 조서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1	풍천면	가곡리	506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70-1	권신희				고시 누락
				급수관	PE관-50mm	100M	〃	〃				〃
				모터	2HP	1식	〃	〃				〃
				급수관	PE관-50mm	30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2-14	조성래				고시 누락
				모터	2HP	1식	〃	〃				〃
				농사용전기	3kw	1식	〃	〃				〃
2	풍천면	가곡리	710-2	양수장	블럭스레트콘크리트바닥	4.4㎡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07-12	박석호				소유자 주소 정정
				급수관	P.V.C-100mm	200M	〃	〃				〃
				농사용전기	10kw	1식	〃	〃				규격 변경
				모터	10마력(컨트롤박스포함)	1식	〃	〃				고시 누락
				모터	0.5마력	1식	〃	〃				〃
				물탱크	콘크리트(1.2m*1.2m)	1식	〃	〃				〃
3	풍천면	가곡리	733-1	육묘전열관	150*25H	3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3	최병섭				고시 누락
				농장집기류	선반등(동산이전비)	1식	〃	〃				〃
				관정	150m(수중모터포함)	1식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4	풍천면	가곡리	738	잣나무	30년	1주	경북 안동시 용상동 1600-4	권대근				고시 누락
				뽕나무	10년	5주	〃	〃				〃
5	풍천면	가곡리	793	뽕나무	40년	70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48	김명자				고시 누락
				모터	2HP	1주	〃	〃				〃
				급수관	PE관-50mm	10M	〃	〃				〃
6	풍천면	가곡리	1058	사과상자	플라스틱	200개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02-2	안삼호				고시 누락
				사과상자	목재	300개	〃	〃				〃
7	풍천면	가곡리	1062-6	배롱나무	7년	120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39	권오선				규격 변경
				대추나무	10년	70주	〃	〃				〃
				대추나무	5년	30주	〃	〃				〃
				매실	5년	37주	〃	〃				〃
				무궁화	20년	4주	〃	〃				〃
				모과나무	7년	11주	〃	〃				〃
				은행나무	4년	2주	〃	〃				〃
				주목	15년	1주	〃	〃				〃
				향나무	10년	2주	〃	〃				〃
8	풍천면	가곡리	산41	주목나무	15년	7주	안동시 태화동 656 태성아파트 506호	권우칠				고시 누락
				향나무	10년	4주	〃	〃				〃
				회양목	10년	12주	〃	〃				〃
9	풍천면	가곡리	산41-6	주목나무	40년	3주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238	권대균				고시 누락
10	풍천면	가곡리	산42	급수관	PE관-50mm	10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02-2	안삼호				고시 누락
11	풍천면	가곡리	산46	밤나무	5년	1주	경북 안동시 태화동 183-14	안강호				고시 누락
				뽕나무	10년	50주	〃	〃				〃
				뽕나무	10년	50주	〃	〃				〃
12	풍천면	가곡리	산46-1	급수관	PE관-50mm	500M	경북 안동시 태화동 183-14	안강호				고시 누락
13	풍천면	가곡리	산49-1	노간주	30년	1주	경북 안동시 태화동 183-14	안강호				고시 누락
				향나무	20년	3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374	안배근				〃
				복숭아	20년	1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97번지	안충호				〃
				복숭아	10년	12주	〃	〃				〃
14	풍천면	가곡리	산51	김나무	30년	5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997번지	안충호				고시 누락
				김나무	20년	4주	〃	〃				〃
				김나무	10년	9주	〃	〃				〃
				김나무	5년	4주	〃	〃				〃
				엄나무	10년	1주	〃	〃				〃
				두릅나무	20m*2m	1식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15	풍천면	갈전리	43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2-1	조한래				고시 누락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96	조현대				〃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1-5	조현욱				〃
				급수관	PE-50mm	120M	〃	〃				〃
16	풍천면	갈전리	51-5	사과상자	플라스틱	3000EA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1-5	조현욱				고시 누락
				기름탱크	frp-1톤	3EA	〃	〃				〃
17	풍천면	갈전리	92-4	지하관정	150m 수중모터포함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73	마을공동재산대표자권영대				규격 변경
18	풍천면	갈전리	93-1	급수관	PE-50mm	20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3-1	강성식				고시 누락
				흄관	800mm	8M	〃	〃				〃
19	풍천면	갈전리	117	자두나무	15년	1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05	권태연				고시 누락
				감나무	10년	1주	〃	〃				〃
20	풍천면	갈전리	122-2	CCTV	방범용	1대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73	권영대				고시 누락
21	풍천면	갈전리	125-1	급수관	PE-50mm	100m	〃	〃				고시 누락
22	풍천면	갈전리	184-1	급수관	PE-50mm	50m	〃	〃				고시 누락
23	풍천면	갈전리	199-3	지하관정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51-5	조현욱				고시 누락
				전기시설	23kw	1식	〃	〃				〃
				컨테이너	1~1.5평	1식	〃	〃				〃
24	풍천면	갈전리	217-1	절단기		1EA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50	조동호				고시 누락
25	풍천면	갈전리	248	바닥포장	콘크리트	171㎡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48	조욱동				고시 누락
26	풍천면	갈전리	283-1	두릅나무	10년	5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48	조성래				고시 누락
27	풍천면	갈전리	325	급수관	흄관-300mm	3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0-2	김대기				고시 누락
28	풍천면	갈전리	329	무궁화	15년	5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가곡리 733	최병섭				고시 누락
				무궁화	10년	65주	〃	〃				〃
				무궁화	8년	38주	〃	〃				〃
29	풍천면	갈전리	432-2	상여집기	동산이전비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448번지	박정길				고시 누락
30	풍천면	갈전리	587-2	지하관정	150m 수중모터포함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291-1	최창원				고시 누락
31	풍천면	갈전리	592-1	오가피	10년	4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48	조휘성				고시 누락
32	풍천면	갈전리	621-1	배수관	PE주름관-200mm	10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6	김태영				고시 누락
33	풍천면	갈전리	685-1	배수관	PE-800mm	6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10-4	최병욱				고시 누락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34	풍천면	갈전리	751-1	헛개나무	12년	37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1	황금순				고시 누락
				음나무	12년	13주	〃	〃				〃
				산딸나무	12년	1주	〃	〃				〃
				고욤나무	10년	6주	〃	〃				〃
				호두나무	10년	2주	〃	〃				〃
				은행나무	10년	1주	〃	〃				〃
35	풍천면	갈전리	762	뽕나무	25년	64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0	조욱제				소유자 성명 정정
				호두나무	10년	1주	〃	〃				고시 누락
				고염나무	10년	1주	〃	〃				〃
36	풍천면	갈전리	782-1	양수기보호차양	철재스레트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73	권영대				고시 누락
37	풍천면	갈전리	784-1	비닐하우스1	철재비닐	34.9㎡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69-7	엄재복				소유자 변경
				비닐하우스2	철재비닐	163.2㎡	〃	〃				〃
				농업용전기	5kw	1식	〃	〃				〃
				뽕나무	10년	22주	〃	〃				〃
38	풍천면	갈전리	798-3	농사용전기	5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8	조인제				소유자 변경
39	풍천면	갈전리	810-4	담장	콘크리트 철판-1.6m	8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10-4	최병욱				고시 누락
40	풍천면	갈전리	814	가옥1	벽돌시멘트조양철스레트	56.75㎡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김영자				소유자 변경 7/13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타운 101-701	권두진				소유자 변경 1/13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사동 6-2 우방청운타운 101-701	권지은				소유자 변경 1/13
				가옥2	흙벽돌조스레트	17.7㎡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김영자				소유자 변경 7/13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타운 101-701	권두진				소유자 변경 1/13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사동 6-2 우방청운타운 101-701	권지은				소유자 변경 1/13
				가옥및우사	창고,흙벽돌조스레트	26.6㎡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김영자				소유자 변경 7/13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산동 6-2 우방청운타운 101-701	권두진				소유자 변경 1/13
							경북 포항시 북구 학사동 6-2 우방청운타운 101-701	권지은				소유자 변경 1/13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배수관	PVC,100mm	5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273	김영자				소유자 변경
				화덕	벽돌시멘트	1식	〃	〃				〃
41	풍천면	갈전리	816	보온덮개거치대	철재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0	조원현				고시 누락
42	풍천면	갈전리	831	농사용전기	5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71	조순태				소유자 변경
43	풍천면	갈전리	845	흄관	1000mm	18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4	이승호				고시 누락
44	풍천면	갈전리	887	급수관	PE-50mm	35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873	권영대				고시 누락
45	풍천면	갈전리	892	급수관	PE-50mm	80m	〃	〃				고시 누락
46	풍천면	갈전리	915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7	권영원				고시 누락
				급수관	PE-50mm	30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47	권영원				〃
47	풍천면	갈전리	931	급수관	PE-50mm	25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0-2	김대기				고시 누락
48	풍천면	갈전리	931-4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0	최직열				고시 누락
49	풍천면	갈전리	950	가옥	철근콘크리트적벽돌조적슬라브	72.04㎡	경북 구미시고아읍 문장로22길 20,104동1001호(원호점보타운)	최동열				소유자 변경 2/15
				차양	목조스레트	1㎡	〃	〃				〃
				우사	블럭스레트	36.8㎡	〃	〃				〃
				화장실	블럭스레트	3.2㎡	〃	〃				〃
				보일러실	블럭시멘트-계단밑위치	1식	〃	〃				〃
				하우스	철재	28.8㎡	〃	〃				〃
				장독대	벽돌시멘트조	3.04㎡	〃	〃				〃
				수도대	벽돌시멘트,1.3*1.2	1식	〃	〃				〃
				문주	적벽돌조적	1식	〃	〃				〃
				담장1	콘크리트판,H=1.6m	6M	〃	〃				〃
				담장2	블럭조,H=1.6m	18M	〃	〃				〃
				화단	적벽돌조	1식	〃	〃				〃
				계사	목조철망스레트	9.9㎡	〃	〃				〃
				배수관1	P.V.C-100mm	8M	〃	〃				〃
				배수관2	P.V.C-300mm	58M	〃	〃				〃
				지하관정	25m-모터포함	1식	〃	〃				〃
				바닥포장	적벽돌조	86.12㎡	〃	〃				〃
				건조대	철재-옥상위치	1식	〃	〃				〃
50	풍천면	갈전리	953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3	김종운				고시 누락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51	풍천면	갈전리	963	배수관	PE-200mm	6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0-1	이창준				고시 누락
				사철나무	5년	40주	〃	〃				〃
52	풍천면	갈전리	1009	급수관	PE-50mm	3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47-1	황옥조				고시 누락
				배수관	PE주름관-100mm	6M	〃	〃				〃
53	풍천면	갈전리	1014	급수관	PE-50mm	50M	경북 의성군 의성읍 735-1 청구아파트 101/1310	이문호				고시 누락
54	풍천면	갈전리	1021-11	농사용전기	5kw	1식	경북 의성군 의성읍 735-1 청구아파트 101/1310	이문호				고시 누락
55	풍천면	갈전리	산32-1	감나무	15년	3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08	권기락				고시 누락
				호두나무	20년	4주	〃	〃				고시 누락
				밤나무	30년	2주	〃	〃				고시 누락
				급수관	PE-50mm	40m	〃	〃				고시 누락
56	풍천면	도양리	347-1	배수관	PE관-150mm	6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6-1	조숙제				고시 누락
57	풍천면	도양리	396-2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396-2	임영구				고시 누락
58	풍천면	도양리	396-5	담장	블럭조	15M	경북 안동시 옥동휴먼시아 8단지 804동 706호	임재하				고시 누락
59	풍천면	도양리	549	배수로(콘크리트 U형 측구)	H0.5*0.5	195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49	류택상				고시 누락
60	풍천면	도양리	554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0	권영화				고시 누락
61	풍천면	도양리	555-1	오동나무	5년	10주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132	광산김씨 현감공파 문중대표자김준식				소유자 주소정정
62	풍천면	도양리	574-1	캐비닛		1EA	경북 안동시 화성동 151-2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유지재단				고시 누락
				책상		2EA	〃	〃				〃
				컴퓨터		1EA	〃	〃				〃
				교회의자		20EA	〃	〃				〃
				강대상		3EA	〃	〃				〃
				에어컨		2EA	〃	〃				〃
				온풍기		1EA	〃	〃				〃
				피아노		3EA	〃	〃				〃
				냉장고		1EA	〃	〃				〃
				가구		2EA	〃	〃				〃
				프로젝트		1EA	〃	〃				〃
				천막		1EA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프로젝트 받침대		1EA	〃	〃				〃
				헌금함		1EA	〃	〃				〃
				헌금봉투꽂이		1EA	〃	〃				〃
				벽걸이 선풍기		10EA	〃	〃				〃
				강대상의자		2EA	〃	〃				〃
				보면대		1EA	〃	〃				〃
				신발장		1EA	〃	〃				〃
				칠판		2EA	〃	〃				〃
				접이식상		9EA	〃	〃				〃
				OHP		1식	〃	〃				〃
				정수기		2식	〃	〃				〃
63	풍천면	도양리	578-3	배수관	PE관-150mm	6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2	류영일				고시 누락
64	풍천면	도양리	619-2	담장	블록조(1.7H*80M)	8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803	임영빈				고시 누락
65	풍천면	도양리	668	배수관	250mm	38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68	유영목				고시 누락
66	풍천면	도양리	670-1	배수관	300mm	1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68	유영목				고시 누락
				배수관	300mm	15M	〃	〃				〃
67	풍천면	도양리	759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20-1	임창빈				고시 누락
68	풍천면	도양리	784-1	배수관	PVC관	2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19	임영빈				고시 누락
69	풍천면	도양리	1198	연산홍	5년	2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7	김명환				규격 변경
				무궁화	5년	7주	〃	〃				〃
				은행나무	6년	1주	〃	〃				고시 누락
				장미	4년	3주	〃	〃				규격 변경
				작약		1주	〃	〃				고시 누락
				사철나무	10년	1주	〃	〃				규격 변경
				꽃나무	10년	1주	〃	〃				고시 누락
70	풍천면	도양리	1243	감나무	7년	1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29	김정휘				고시 누락
				감나무	15년	1주	〃	〃				〃
71	풍천면	도양리	1262	담장	블록-1.6H	21.5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39	신중식				고시 누락
				농막	비닐하우스 4*10	1EA	〃	〃				〃
				배수관	PVC관-100mm	50M	〃	〃				〃
72	풍천면	도양리	1270-1	고추건조기	한성-혈풍형선박식3형	1대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32	박갑식				고시 누락
73	풍천면	도양리	산16-1	담장	조립식시멘트(42*1.5H)	42M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산16-1	조숙제				고시 누락
				배수관	PVC관-150mm	50M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74	풍천면	도양리	산21-1	두릅	8년	180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570	박순화				고시 누락
				낙엽송나무	15년	25주	〃	〃				〃
				은사시나무	20년	120주	〃	〃				〃
75	풍천면	도양리	산27	밤나무	20년	400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606	최옥순				고시 누락
76	풍천면	도양리	산32-6	느티나무	300년	1주		마을공동재산(원도양)				고시 누락
77	호명면	금능리	81-4	감나무	20년생	1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6	신만식				고시 누락
78	호명면	금능리	96	농사용전기	1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9-12	김진수				고시 누락
79	호명면	금능리	121	농사용전기	1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27-7	김금순				고시 누락
80	호명면	금능리	129-1	바닥포장	세멘	176.43㎡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29-1	문동준				고시 누락
81	호명면	금능리	153-6	지하관정	모터포함	2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179-12	김진수				고시 누락
				지하관정	모터포함	2식	〃	〃				〃
82	호명면	금능리	171-1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627-7	김금순				고시 누락
83	호명면	금능리	177-3	농사용전기	1KW	1식	경기 인천 남구 도희동 47-11	이병수				고시 누락
84	호명면	금능리	183	대추나무	4년생	4주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자유로 아이파크 316동304호	김영인				고시 누락
				감나무	4년생	8주	〃	〃				〃
				복숭아나무	3년생	1주	〃	〃				〃
				감나무	4년생	1주	〃	〃				〃
				벚나무	3년생	1주	〃	〃				〃
				배수관	PE주름관(300mm)	20M	〃	〃				〃
85	호명면	금능리	238	배수관	흄관(600mm)	3M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55-1	이승우				고시 누락
86	호명면	금능리	339-4	심야전기보일러	2300L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39-4	이용기				고시 누락
87	호명면	금능리	354-1	심야전기보일러	2000L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55-1	이승우				고시 누락
88	호명면	금능리	362	바닥포장	자갈	67.8㎡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62	이종진				고시 누락
89	호명면	금능리	372-5	가옥	블럭조시멘트와즙	56.6㎡	대구 북구 태전동 564	이봉일				소유자 변경
				가추차양	쇠파이프스레트	28.35㎡	〃	〃				〃
				화장실	블럭조슬라브	2.73㎡	〃	〃				〃
				세면대	목재스레트	3.45㎡	〃	〃				〃
				대문	철재(H1.7-3.2M)	1식	〃	〃				〃
				담장	블록(H1.6)	24.9M	〃	〃				〃
				계사	목재스레트	3㎡	〃	〃				〃
				무궁화나무	10년생	1주	〃	〃				〃
				무궁화나무	5년생	1주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90	호명면	금능리	650-1	용수관	PE관(50mm)	60M	경기 인천 남구 도희동 47-11	이병수				고시 누락
91	호명면	산합리	6	관수시설	PE관 50MM	50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6	정동재				고시 누락
					15년	1주	〃	〃				〃
92	호명면	산합리	18	관수시설	PE관 50MM	25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6	권영복				고시 누락
93	호명면	산합리	25-1	두릅나무	23M*11M	253㎡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6	권영복				고시 누락
94	호명면	산합리	65-1	관수시설	PE관 50mm	6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3	김종운				소유자 변경
95	호명면	산합리	75	관수시설	PVC관 100MM	1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2	김종인				소유자 변경
96	호명면	산합리	84-3	잣나무	40년	1주	대구 달서구 월성동 월성화성타운 103동 206호	김호태				고시 누락
97	호명면	산합리	117-2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3	김종운				소유자 변경
98	호명면	산합리	126-1	배수관	PVC관 400MM*4M	2EA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34번지	김기환				고시 누락
99	호명면	산합리	126-2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안동시 풍천면 신성리 734번지	장금분				고시 누락
100	호명면	산합리	155	관수시설	PE관 50MM	200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송곡리 120	심남량				고시 누락
101	호명면	산합리	159	관수시설	PE관 50MM	350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89	임대혁				소유자 변경
102	호명면	산합리	242	작약		1021㎡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338-77	오장근				고시 누락
103	호명면	산합리	293-1	가옥	철근콘크리트벽돌조 슬라브	46.44㎡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김귀성				소유자 변경
				가추1 (보일러실)	칼라시트조	1.92㎡	〃	〃				〃
				가추2(창고)	블럭스레트	12.38㎡	〃	〃				〃
				대문	철재문주포함 (H=2.05*3.9)	1식	〃	〃				〃
				담장	블럭 H=1.6m	14M	〃	〃				〃
				화덕	블럭조	1식	〃	〃				〃
104	호명면	산합리	301-1	창고	철골샌드위치판넬 콘크리트바닥	180㎡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2	김윤호				소유자 정정 1/7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2	김종인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0	김종진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2	임대일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1	오성철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85	정남수				〃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2	정휘섭				〃
105	호명면	산합리	319	배수관	PE관 50MM	30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16-1	김해기				고시 누락
				배수관	콘크리트U관 2.5M	2EA	〃	〃				〃
				배수관	PE주름관 400MM	25M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106	호명면	산합리	321	비닐하우스2	철골 비닐	97.5㎡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2	임대일				소유자 변경
				배수관	흄관 300MM	27M	〃	〃				고시 누락
107	호명면	산합리	324-1	가옥	벽돌조 슬라브	79.46㎡		새터마을 공동재산				소유자 명칭 정정
				가추1(창고)	블럭 스레트	11.55㎡		〃				〃
				가추2(주방및화장실)	블럭조슬라브	15.52㎡		〃				〃
				가추3(보일러실및창고)	샌드위치판넬	5.25㎡		〃				〃
				화단1	적벽돌 자연석	1식		〃				〃
				화단2	자연석쌓기(4.6m*1.1m)	1식		〃				〃
				장미	7년	2주		〃				〃
				향나무	7년	7주		〃				〃
				마을회관바닥포장	큰크리트	174㎡		〃				〃
108	호명면	산합리	324-4	관수시설	PE관 50MM	85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02	김종인				소유자 변경
109	호명면	산합리	324-12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75	김원기				고시 누락
110	호명면	산합리	326-1	한우	48개월	1두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26-1	임동빈				고시 누락
111	호명면	산합리	388-1	상여창고	블럭조스레트(1.6*3M)	1식		새터마을 공동재산				소유자 명칭 정정
112	호명면	산합리	397	홍단풍나무	10년	3주	경북 안동시 태화동 410	김복수				고시 누락
113	호명면	산합리	420-2	급수관	PVC관 50MM	70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95	석정훈				고시 누락
114	호명면	산합리	510	자두나무	10년	1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68	이한원				고시 누락
				자두나무	5년	1주	〃	〃				〃
115	호명면	산합리	512	밤나무	20년	3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68	이한원				고시 누락
				밤나무	15년	10주	〃	〃				〃
				밤나무	7년	3주	〃	〃				〃
116	호명면	산합리	546-1	지하관정	깊이60M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316-1	김해기				고시 누락
					조적조(1.4*1.4*0.7M)	1식	〃	〃				〃
					콘크리트(5*3.6M)	18㎡	〃	〃				〃
					PE이중관 250MM*6M	2EA	〃	〃				〃
117	호명면	산합리	569	대추나무	10년	7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86	정영한				소유자 변경
118	호명면	산합리	570-1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70-1	김동한				고시 누락
119	호명면	산합리	574-1	대나무	10년 (1~1.5*21)	1군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83	박경범				소유자 변경
120	호명면	산합리	577-8	뽕나무	10년	2주	경북 영주시 가흥동 1381-484	박장환				고시 누락
				매실나무	35년	1주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주목	30년	1주	〃	〃				〃
				모과나무	30년	1주	〃	〃				〃
				탱자나무	30년	21M	〃	〃				〃
				오가피나무	10년	18㎡	〃	〃				〃
				닥나무		6군	〃	〃				〃
				담장	블록 H=1.5M	19M	〃	〃				〃
121	호명면	산합리	583-1	차양2	경량철골 스레트	13.86㎡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83	임경호				물건명칭정정
122	호명면	산합리	740-4	흄관	1000MM*2.5M	8EA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572-1	정간모				고시 누락
				흄관	800MM*2.5M	6EA	〃	〃				〃
				흄관	700MM*2.5M	3EA	〃	〃				〃
				흄관	600MM*2.5M	1EA	〃	〃				〃
				흄관	500MM*2.5M	7EA	〃	〃				〃
				플륨관	1500MM*2M	1EA	〃	〃				〃
				플륨관	1200MM*2M	7EA	〃	〃				〃
				플륨관	1000MM*2M	3EA	〃	〃				〃
				플륨관	800MM*2M	12EA	〃	〃				〃
				플륨관	600MM*2M	3EA	〃	〃				〃
				PE이중관	1000MM*4M	1EA	〃	〃				〃
				PE이중관	800MM*4M	1EA	〃	〃				〃
				PE이중관	700MM*4M	1EA	〃	〃				〃
				PE이중관	500MM*4M	1EA	〃	〃				〃
				PE이중관	300MM*4M	22EA	〃	〃				〃
				PVC관	100MM*4M	2EA	〃	〃				〃
				각목		60EA	〃	〃				〃
				콘크리트믹서통	철재	2EA	〃	〃				〃
				자연석	23M*6M	138㎡	〃	〃				〃
				자연석	5M*16M	80㎡	〃	〃				〃
				자연석	5M*5M	25㎡	〃	〃				〃
				안전펜스	플라스틱	150EA	〃	〃				〃
				드럼펜스	플라스틱	50EA	〃	〃				〃
				공사용간판	철재	20EA	〃	〃				〃
				콤팩트	가와사끼엔진	1대	〃	〃				〃
				콘크리트실험기	스텐	1대	〃	〃				〃
				스틸그레이팅	철재	5EA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강관연결소켓	철재	10EA	〃	〃				〃
				아이드로리	철재	2EA	〃	〃				〃
				동산이전비	기타기자재 일체	1식	〃	〃				〃
123	호명면	산합리	744	농사용전기	10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34-1	정현모				고시 누락
				비료칼슘		7000포	〃	〃				〃
124	호명면	산합리	744-8	다용도건조기	자동온도조절기,넥카포함, 6평형	6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744-8	이상무				소유자 변경 4/6
				다용도건조기	자동온도조절기,넥카포함, 6평형	6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55-1	이승우				소유자 변경 1/6
				다용도건조기	자동온도조절기,넥카포함, 6평형	6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385-3	박수종				소유자 변경 1/6
125	호명면	산합리	780	마을진입다리	콘크리트(4*5.6M)	1식		새터마을 공동재산				소유자 명칭 정정
				마을진입다리	콘크리트(5.1*2.6M)	1식		〃				〃
				마을진입다리	콘크리트(4*5M)	1식		〃				〃
				마을진입다리	콘크리트(7.2*5.3M)	1식		〃				〃
				마을진입다리	콘크리트(3.6*6.2M)	1식		〃				〃
126	호명면	산합리	798-19	물탱크	FRP-10톤 콘크리트기초포함	1식	-	산합2리 작목반				고시 누락
127	호명면	산합리	817-1	구기자	5년	341㎡	경북 안동시 정하동 240-2 현진에버빌 106-805	권금자				고시 누락
128	호명면	산합리	822-4	두릅나무	100M*2M	200㎡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6	신만식				고시 누락
129	호명면	산합리	869-6	사과나무	15년	131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77	김명환				고시 누락
130	호명면	산합리	884	감나무	45년	1주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6	신만식				고시 누락
131	호명면	산합리	886	가옥	조적조슬라브	96.46㎡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86	전경자				소유자 변경
				계단밑창고	블럭조시멘트벽돌	1식	〃	〃				〃
				테라스밑창고	조적조	1식	〃	〃				〃
				차양1	경량철골조스레트	56.63㎡	〃	〃				〃
				차양2	알루미늄 썬라이트	4.46㎡	〃	〃				〃
				창고1	블럭조스레트	20.58㎡	〃	〃				〃
				창고2	경량철골조칼라시트	72㎡	〃	〃				〃
				비닐하우스	철골조비닐	51.15㎡	〃	〃				〃
				수도대	시멘트블럭 (1.6m*1.7m)	1식	〃	〃				〃
				대문	철재2짝 (H=1.8m*3.2m)	1식	〃	〃				〃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담장	블럭조 H=1	8M	〃	〃				〃
				화단	적벽돌	5.16㎡	〃	〃				〃
				화덕	흙벽돌	2식	〃	〃				〃
				지하관정	80m-모터포함	1식	〃	〃				〃
				바닥포장	콘크리트	213.48㎡	〃	〃				〃
				맨홀	블럭 (1.5m*1.15m)	1식	〃	〃				〃
				은행나무	10년	1주	〃	〃				〃
				소나무	15년	1주	〃	〃				〃
				사철나무	15년 (22m*1m)	22㎡	〃	〃				〃
				단풍나무	15년	2주	〃	〃				〃
				뽕나무	30년	5주	〃	〃				〃
				음나무	15년	1주	〃	〃				〃
				자두나무	15년	4주	〃	〃				〃
				살구나무	15년	1주	〃	〃				〃
				고욤나무	15년	2주	〃	〃				〃
				능수화	10년	3주	〃	〃				〃
				매화나무	15년 (12.3m*1m)	12.3㎡	〃	〃				〃
				호두나무	5년	1주	〃	〃				〃
				호두나무	10년	1주	〃	〃				〃
				참죽나무	15년	3주	〃	〃				〃
				연산홍	10년	1주	〃	〃				〃
				목단	10년	1주	〃	〃				〃
				작약	10년	1주	〃	〃				〃
				무화과	10년	1주	〃	〃				〃
				느릅나무	10년	1주	〃	〃				〃
132	호명면	산합리	895-3	동산이전비	상여품일체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61	예천군호명면산합2동우음리				고시 누락
133	호명면	산합리	916	배수시설	PE이중관-1000MM	10M		새터마을공동재산				소유자 명칭 정정
134	호명면	산합리	921	스탠드	콘크리트 2단(2.8*4M)	1식		〃				소유자 명칭 정정
				양수장	블럭시멘트슬라브 (2.3*2.3)	5.29㎡		〃				〃
				연좌방아	화강석	1식		〃				〃
				농사용전기	5kw	1식		〃				소유자 변경

일련번호	물건소재지			물건의 종 류	구 조 및 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사유)
	읍면	리	지번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권리	
135	호명면	산합리	961-4	감나무	10년	2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양리 1222	신현기				고시 누락
				호두나무	5년	3주	〃	〃				〃
				살구나무	7년	1주	〃	〃				〃
				오미자	5년	3주	〃	〃				〃
136	호명면	산합리	972-8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86	전경자				소유자 변경
137	호명면	산합리	산42	작약	(22*5M,38*4.3M)	273.4㎡	경북 안동시 풍천면 구담리 528번지	김동춘				고시 누락
138	호명면	산합리	산74-2	비닐하우스1	철골비닐	72.8㎡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51	김태기				고시 누락
				비닐하우스2	철골비닐	54.08㎡	〃	〃				〃
139	호명면	산합리	산87-1	배수시설	PE관 50MM	15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293	김정기				소유자 변경
				관수시설	PE관 50MM	15M	〃	〃				〃
				농사용전기	3kw	1식	〃	〃				〃
140	호명면	산합리	산95-4	관수시설	PE관 50MM	50M	경북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961-4	김도선				소유자 변경
141	호명면	산합리	산96-1	관수시설	PE관 50MM	15M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86	전경자				소유자 변경
142	호명면	산합리	산106-1	농사용전기	3KW	1식	경북 예천군 호명면 산합리 822-6	신만식				고시 누락
143	풍천면	도양리	496-1	가옥	목조양철기와	39.68㎡	경북 안동시 와룡면 오천리 산28-1	광산김씨예안파종중대표자김석중				소유자 명칭 정정
				가추1(방)	블럭시멘트	5㎡	〃	〃				〃
				가추2(가옥)	블럭시멘트양철슬레이트	18.5㎡	〃	〃				〃
				차양1 (기존담장이용)	철파이프조슬레이트	10㎡	〃	〃				〃
				차양2 (기존지붕이용)	슬레이트	16㎡	〃	〃				〃
				창고	블럭시멘트슬레이트	24.94㎡	〃	〃				〃
				작업장	목조슬레이트	25㎡	〃	〃				〃
				이동식화장실	기성품	1식	〃	〃				〃
				견사	철재	1식	〃	〃				〃
				비닐하우스	철파이프비닐구조물기초포함	16㎡	〃	〃				〃
				담장	벽돌조적문주포함, H=1.5	2M	〃	〃				〃
				담장	블럭, H=1.2	2M	〃	〃				〃
				담장	블럭, H=1.6	18M	〃	〃				〃
				담장	콘크리트, H=1.6	22M	〃	〃				〃
				바닥포장	콘크리트	74㎡	〃	〃				〃
				무궁화	10년	2주	〃	〃				〃
				석류나무	10년	1주	〃	〃				〃
				감나무	10년	1주	〃	〃				〃

◉괴산군고시제2012-20호

토지세목

괴산군 고시 제2011-71호(2011.07.08)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백봉3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농어촌도로206호)에 편입되는 토지의 세목을 「도로법」제24조 제3항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2년 2월 27일

괴 산 군 수

1.사 업 명 : 백봉3농어촌도로확포장공사

2.사업구간

- 시 점 :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136-5
- 종 점 :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533-1

3. 사업시행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3. 12.

4. 사업시행자 : 괴 산 군 수

5. 수용할 토지 및 물건 기타의 세목 : 아래과 같음

세목고시 명세서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 명	미 등기	등기
괴산	청안	백봉	234-16		임	196	141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807-201	이미숙					0
괴산	청안	백봉	234-16		임	196	27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807-201	이미숙					0
괴산	청안	백봉	234-16		임	196	28	청주시 상당구 용정동 807-201	이미숙					0
괴산	청안	백봉	234-17	234-19	대	236	7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234-7	이명남					0
괴산	청안	백봉	472-1		도	56	56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91	정인학					0
괴산	청안	백봉	469	469-1	전	1,438	160	청안면 백봉리 239	김정옥 (3/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9	469-1	전	1,438	160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민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9	469-1	전	1,438	160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기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8	468-1	목	2,397	365	청안면 백봉리 239	김정옥 (3/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8	468-1	목	2,397	365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민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68	468-1	목	2,397	365	청안면 백봉리 239	이상기 (2/7지분)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가압류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935-6 서울 중구 충청로1가75 청안면 부흥리 285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595-1	증평농업협동조합 농협협동조합중앙회(괴산군지부) 최상영 괴산신용협동조합		0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47	변종필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화성시 반송동 101 동탄시범다은마을 롯데대동다숲캐슬@303-1604	변종주 (1/4지분)					0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	편입면적 (㎡)	주 소	소유자	소유자이외의 권리			등기여부	
시군	면	리	당초	분할						권리의 종 류	주소	성 명	미 등기	등기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25	변성남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1		도	242	242	청원군 북일면 영하리 361	변남수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47	변종필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화성시 반송동 101 동탄시범다은마을 롯데대동다숲캐슬@303-1604	변종주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청원군 북일면 비상리 225	변성남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8	458-2	전	1,490	653	청원군 북일면 영하리 361	변남수 (1/4지분)					0
괴산	청안	백봉	459-3		도	25	25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85	최삼봉				0	
괴산	청안	백봉	456-1		도	32	32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213	고개용					0

물건세목고시명세서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	단위	소유자	
시군	읍	리						주소	성명
괴산	청안	백봉	234-5	비닐하우스	철재,비닐	15	1식	괴산군 청안면 백봉리 234-7	이명남

◉인천광역시공고제2012-239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인천광역시장

1) 업 체 명 : (주)이피아이티
2) 대 표 자 : 김 종 문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2동 부평우림라이온밸리 C동 1102호
4) 방지시설업의종류 : 대기분야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 71호
6) 등 록 일 자 : 2012. 2. 21.

◉(서울)영등포구공고제2012-198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취소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등록취소일
환경전문공사업	제31호(수질) 제37호(대기)	(주)립코	박용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6 한국기계산업진흥회관 11층	2012. 2.21

인 사

교육과학기술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원근(李元根)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2.27

광주지방기상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명수(金明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2.2.24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영주경찰서장

경정 김우락(金佑洛)

총경에 임함

2012.2.24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김제경찰서장

경정 이상주(李相珠)

총경에 임함

2012.2.24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성주경찰서장

경정 권오덕(權五德)

총경에 임함

2012.2.24

경찰청 중앙경찰학교 교무과

경감 백금철(白金哲)

경정에 임함

2012.2.24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

경감 이재현(李在炫)

경정에 임함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형사과장에 보함

2012.2.24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경무과

경감 옥영미(玉永美)

경정에 임함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중부경찰서 경무과장에 보함

2012.2.24

경찰청 수사국

경감 이충섭(李忠燮)

경정에 임함

2012.2.24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서울금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감 이정찬(李政燦)
경정에 임함
2012.2.24

(대 통 령)

기 타

○공 고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물건의 환부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 청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2년 2월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죄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량
2009형제141070	2009압제5139	김민채 외 5	업무상횡령 등	김민채	5	김민채 개인수첩	1
				〃	6	김민채 개인다이어리	1
				〃	8	2008다이어리(서울대학교)	1
				김종문	16	2008KEB 개인수첩	1
				〃	18	2007 다이어리(think)	1
2011형제80030	2011압제2833	김경옥 외 13	도박 등	김영란	6	1만원권	9매
				〃	7	5천원권	1매
				김명순	13	1만원권	5매
2011형제109105	2011압제3865	최동하 외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신성광	5	휴대폰(모토로라-VU20)	1대
				〃	6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7매
				〃	7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3매
2012형제525	2012압제3호	안상헌	절도 등	불상	2	카메라(DSC-P51)	1대
2012형제12577	2012압제342	함영군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	삼천리 자전거	1대

---

1. 다음의 물건을 환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 게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우리청에 환부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하여 국고에 귀속하거나 폐기처분합니다.

2012년 2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건명	수 량
2011 형제24955	2011년압제1091호	정용찬	불상	2	가방(구찌)	1 점
2011 형제24955	2011년압제1091호	정용찬	불상	3	선글라스(구찌)	1 점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압수물		
				증제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1 형제 24955	2011년압제 1091호	정용찬	불상	4	넷북(MSI, U135DX)	1 점
2011 형제 25400	2011년압제 1097호	김현영외 1명	불상	1	슈퍼캡 50cc 오토바이(KM4CA12A7R1209154)	1 대
2011 형제 25400	2011년압제 1097호	김현영외 1명	불상	2	가위	1 개
2011 형제 25666	2011년압제 1103호	정상우	불상	1	자전거	1 대
2012 형제 231	2011년압제 1129호	이의형외 1명	불상	1	오토바이(50cc 노란색센스, KM4CA13A7V1 151828)	1 대
2012 형제 231	2011년압제 1129호	이의형외 1명	불상	2	오토바이 열쇠	1 개
2011 형제 25392	2011년압제 1130호	신세동외 1명	불상	2	기업체크카드1점	1 점
2011 형제 25392	2011년압제 1130호	신세동외 1명	불상	3	기업체크카드1점, 국민체크카드2점	3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2	타카(NAILER TG90P)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4	충전드라이버(AIMSAK)	2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5	타카(JIT CT64)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8.1	전기햄머드릴(MAKITA)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9	용접기(KEYANG HA-160)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12	JIT타카기(CT64)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13	근풍타카기(CT-764P)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15	JIT타카기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16	전기해머드릴(MAKITA)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17	그라인더(KEYANG 230mm)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18	그라인더(KEYANG)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19	그라인더(KEYANG)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20	힐티(TE-1)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23	전기드릴(PA6-GF30)	1 점
2011 형제 26172	2011년압제 1132호	윤만섭외 3명	불상	24	그라인더(KEYANG)	1 점
2011 형제 2353	2011년압제 59호	최명록외 4명	불상	12	일천원권	13 매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 건 명	수 량
2011 형제 2353	2011년압제 59호	최명록외 4명	불상	13	카드	52 매
2012 형제 1135	2012년압제 21호	조도형	불상	2	자동차경보기(리모콘)	1 개
2012 형제 1135	2012년압제 21호	조도형	불상	3	자동차열쇠	2 개
2012 형제 1135	2012년압제 21호	조도형	불상	4	부적	1 개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3	신한카드(5107-3709-6418-9003)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8	신세계포이트카드 (9350-1500-2205-2495)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0	주민등록증(김형호)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3	일만원권	6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4	오천원권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5	일천원권	5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6	오백원권지폐(구폐)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7	인도지폐(TEN RUPEES)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8	오스트레일리아지폐(TEN DOLLARS)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19	중국지폐(YI YUAN)	1 매
2012 형제 1345	2012년압제 25호	이상배	불상	22	BMW차키	1 점
2012 형제 1797	2012년압제 30호	김태민	불상	1	LESPO 흰색 자전거	1 대
2012 형제 1795	2012년압제 31호	김미래	불상	1	레스포 자전거	1 대
2012 형제 1795	2012년압제 31호	김미래	불상	2	프로코렉스	1 대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당청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되거나 폐기됩니다.

2012년 2월 27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장

사건번호 (형제)	압제번호	피의자 (피고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번호	물 건 명	수량
2012-2970	2012-84	박상현 외1	특수절도 등	불상	2	중국산 모비스타	

1. 다음 물건을 환부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내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2년 2월 27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수물건	수량
2008형제41526	2008압제876	박종호 외11	한국마사회법 위반등	박종호 유족	1	COMPAQ노트북	3
				박종호 유족	2	거래계좌목록표	1
				박종호 유족	3	우리은행직불카드 (9000243257086386)	1
				박종호 유족	4	휴대전화	1
				박종호 유족	7	컴퓨터본체(조립식,검정)	1
				박종호 유족	8	체크무늬손가방(DAKS)	1
				박종호 유족	11	일천원권지폐(FD0795869C)	1
2010형제3306	2010압제65	이서호	절도	불상	1	코렉스 델타자전거	1
				불상	2	알톤라요자전거	1
				불상	3	스마트 시티즌 자전거	1
2011형제32369	2011압제647	정용진 외 1	특수절도	불상	2	알톤(ALTON)은색 자전거	1
2009형제21768	2009압제465	황의준 외 1	점유이탈물횡령	불상	1	이륜차(km4ca15c641107652)	1
2010형제24683	2010압제478	신희순	상습절도	이희숙	1	USB휴대용저장장치 (MWR-Mstyle,8G)	1
2011형제16200	2011압제316	이남영 외 1	특수절도	불상	2	500원	1
				불상	3	100원	1
2011형제13313	2011압제267	정광호 외 2	특가법(절도)등	불상	73	남성용 VACHERONCONSTANTIN시계	1
				불상	74	여성용 COACH 시계	1
				불상	75	여성용귀금속세트 (목걸이,귀걸이)	1
				불상	76	여성용 목걸이	1
2012형제168	2012압제1	김승현 외 1	특수절도	불상	1	자전거(ALTONRCTSUMTAL) 차대번호:Y10707583	1
2009형제21119	2009압제452	김민석 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불상	1	한국은행발행 일천원권	3
2011형제30160	2011압제607	문성호 외 1	특수절도등	불상	1	메시지 오토바이	1
2009형제19789	2009압제426	한경훈 외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등	한경훈	1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25
				한경훈	2	tmoney 카드	1
				한경훈	3	휴대폰(삼성애니콜)	1

사건번호	압제번호	피의자	죄 명	피환부인	증제번호	압 수 물 건	수량
2011형제 9894	2011압제 164	서성수	장물취득등	서성수	5	삼성매직스테이션 (제조번호:Y75797AX800048B)	1
2011형제 22168	2011압제 444	정민기 외 2	특수절도	정민기 외 2	6	2달러 화폐	1
				정민기 외 2	7	한국은행발행 일만원권	1

대 차 대 조 표

201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자 산		
Ⅰ.유 동 자 산		446,432,616
1.현 금	23	
2.지 금 은	2,498,781	
3.특 별 인 출 권 보 유	3,975,095	
4.유 가 증 권	333,481,398	
5.예 치 금	26,130,064	
6.당 좌 대 출		
7.자 금 조 정 대 출		
8.할 인 어 음		
9.어 음 대 출	7,893,175	
10.증 권 대 출		
11.환매 조건부 매입 증권		
12.정 부 대 출 금	1,117,200	
13.국제 금융 기구 대출금	799,197	
14.외 국 환	250,921	
15.대 리 점	806,857	
16.본 지 점 환		
17.기 타 자 산	69,479,905	
Ⅱ. 비 유 동 자 산		9,908,257
1.투 자 자 산	9,447,584	
2.유 형 자 산	455,904	
3.무 형 자 산	4,769	
자 산 총 계		456,340,873
부 채		
Ⅰ.유 동 부 채		445,468,895
1.화 폐 발 행	48,657,565	
2.통 화 안 정 증 권 발 행	164,792,321	
3.통 화 안 정 계 정	4,000,000	
4.정 부 예 금	7,358,487	
5.예 금	124,683,757	
6.환매 조건부 매각 증권	7,125,049	
7.특 별 인 출 권 배 분	4,243,870	
8.본 지 점 환		
9.기 타 부 채	84,607,846	
Ⅱ. 비 유 동 부 채		1,242,297
1.차 입 금		
2.퇴 직 급 여 충 당 금	117,661	
3.출 자 증 권 발 행	1,124,636	
부 채 총 계		446,711,192
자 본		
가.법 정 적 립 금	2,470,793	
나.임 의 적 립 금	4,023,850	
다.이 월 이 익 잉 여 금		
라.당 기 순 이 익	3,135,038	
자 본 총 계		9,629,681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56,340,873

한 국 은 행 총 재